

議政白書

(第4代)

(2002. 7. 1 ~ 2006. 6. 30)



軍浦市議會

議 政 白 書

(第4代)

(2002. 7. 1 ~ 2006. 6. 30)



軍 浦 市 議 會



「열심히 일하는 의회상! 시민의 대변자, 봉사자인 의회」

존경하는 28만 군포시민 여러분!

풀뿌리 지방자치의 정착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변화와 개혁을 주도하고 민의를 겸허하게 수렴 하면서 군포시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보여준 제4대 군포시의회를 마감하고 희망찬 제5대 군포시의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군포시의회에 항상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해 주신 시민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혼신의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제4대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제4대 의회는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의원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시민의 입장에서 복리증진과 균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특히 열심히 일하는 의회상과 시민의 대변자이자 봉사자로서 지역의 소리와, 시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며 지방의회의 기본임무인 집행부의 감시와 견제에도 소홀함이 없는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쳤다고 생각합니다.

금번에 발간되는 의정백서는 제4대의회가 임기동안 활동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수록하여 시민여러분께서 군포시 의정을 이해하시는데 보탬이 되고자 일반안전 처리는 물론, 시정 질문, 각종 위원회활동, 행정사무감사 등 지난 제4대 의회의 모든 의정활동을 총 망라하여 수록한 보고서로서 향후 지방자치 발전의 비전을 제시하는 밑거름으로 소중하게 활용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끝으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제4대의회 의원님들과 본 의정백서가 발간되기까지 애써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민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07. 1.

군포시의회 의장 김 제 길

사진으로 보는 제4대 의정활동



1. 제4대 의회 전반기 권원혁의장 당선인사(2002. 7. 3)



2. 제4대 의회 개원모습(2002. 7. 3)

제4대 의정백서



3. 제4대 의회 전반기 의장선출 투표장면(2002. 7. 3)



4. 러시아 우수리크시 보건국장 시의회 방문(2003. 1. 23)



5. 행정사무감사 초막골 근린공원 현장 확인(2003. 7. 9)

사진으로 보는 제4대 의정활동



6.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위원 위촉(2003. 10. 9)



7. 업무보고청취특위 학생견학(2003. 11. 1)



8. 제107회 2차정례회 기간중 민원현장방문(2003. 12. 1~17)

제4대 의정백서



9. 양지의 집방문(2004. 1. 10)



10. 모범시민 표창후 기념사진(2004. 2. 14)



11. 제4대 의회 후반기 김제길 의장 당선인사(2004. 6. 29)

사진으로 보는 제4대 의정활동



12. 2005 상반기 국내 의정연수(2005.1.26)



13. 독도사진 및 자료전시회(2005.3.14)



14. 미국 클락스빌시 시절단 의회방문(2005.4.2)



15. 경기도시·군의원 체육대회(2005. 5. 31)



16. 통장한마음연수 격려(2005. 6. 16)



17. 행정사무감사 현장확인(2005. 6. 20)

사진으로 보는 제4대 의정활동



18. 복합터미널 확장반대 단식농성(2005. 6. 23)



19. 6.25기념비 제막식 참석(2005. 6. 24)



20. 제121회 1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위 모습(2005. 7. 2)

제 4 대 의정백서



21. 을지훈련참가자 격려(2005. 8. 25)



22. 의원 및 직원합동연수(2006. 1. 9)

제 4 대 군포시의회의원 현황

성 명	학력 및 경력
 군포1동 권원혁 1949. 1. 14	· 선인상고 졸업 · 경기방송 고문 · 경기일보 자문위원 · 군포시 도로관리심의 위원 · 군포시 뽕소니감시단 고문 · 군포 개인택시조합 조합장 · 군포시 교통안전위원회 부위원장 · 군포시 모범운전자회 고문 · 군포시 문화육성기금심의위원 · 군포시 공공근로심의위원 부위원장 · 군포시 문화예술회관운영위원 · 제2, 3, 4대 군포시 의원 · 3대 후반기 부의장 · 제4대 군포시의회 전반기 의장 · 민주당 군포시지역 운영위원회 수석위원장
주 소 및 전 화	
군포시 당동775-15 (사) 390-0515 (자) 452-1171 (휴) 011- 474-1171 e-Mail:kwhk21@hanmail.net	

성 명	학력 및 경력
 군포2동 대 야 동 이재수 1958. 11. 23	· 군포초 · 안양 신성중 · 고 졸업 · 방송통신대 행정학 졸업 · 한세대 사회복지대학원 중퇴 · (주)보광농장 대표 군포시당동921 · 신성고등학교 총동문회장 역임 · 군포청년회의소 특우회회장 역임 · 군포 · 안양 · 의왕한경운동연합 집행위원 · 군포 YMCA이사 · 군포 G · B 주민대책위원회 고문 · 군포시 도시계획 위원 · 군포시 장애인복지관 운영위원 · 군포시 노인복지회관 운영위원 · 뇌성마비 재활원 양지의집 운영위원 · 군포문화센터 운영위원 · 군포시 여성발전기금 심의위원 · 군포2동, 대야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군포2동, 대야동 체육회 고문 · 제3, 4대 군포시 의원 · 제4대 군포시의회 후반기 부의장
주 소 및 전 화	
군포시 당동921 (사) 399-9936 (자) 393-6223 (휴) 016-348-6223 (e-Mail) ljSCO21@hanmail.net	

제 4 대 의정백서

성 명



산본1동

송정열

1968. 11. 16

주소 및 전화

군포시 산본동 235-2 201호

(사) 392-4001

(자) 391-0546

(휴) 011-238-5994

e-Mail: ilovegunpo@yahoo.co.kr

학력 및 경력

- 안양 만안초등학교 졸업
- 안양 신안중학교 졸업
- 안양 양명고등학교 졸업
- 한양대학교 무역학과 4년 졸업
- 한양대학교 경상대학 학생회장
- 초대 민선 군포시장 비서실장
- 군포시 성오장학재단 사무국장
- 군포시 생활체육 야구협회 감사
- 미래연대 회원
- 사)한국지역복지정책연구회 회원
- 산본1동 재향군인회 부회장
- 군포시 시정발전 위원
- 군포시 시립도서관 운영위원
- 군포시 도로관리 심의위원
- 군포시 창업보육센터 운영위원
- 복합터미널 확장반대 군포시의회 소위원장
- 복합화물터미널 확장반대 범시민 공동대표

성 명



산본 2동

김재일

1967. 10. 10

주소 및 전화

군포시 산본동1059

동백(A)1303-1501

(사) 392-4002

(자) 393-1002

(휴) 011-733-9486

e-Mail: jeilpro@lycos.co.kr

www.ilovesanbon.co.kr

학력 및 경력

- 군포초등학교 졸업
- 안양 신성중 · 고등학교 졸업
- 안양과학대 졸업
- 군포청년회의소 감사
- 군포시 장애인학부모 회원
- 군포경제정의실천협의 회원
- 군포신문 후원회 이사
- (주)제이오커뮤니티 대표이사
- 군포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
- 군포시 노인복지기금 운용 심의위원
- 푸른희망 군포21 실천 협의위원
- 군포시 체육진흥협의위원
- 군포시 창업보육센터 운영위원

제4대 군포시의회의원 현황

성 명

학력 및 경력



금정동

최진학

1957. 3. 25

주소 및 전화

군포시 금정동 725-31
(사) 453-2233
(자) 395-3344
(휴) 019-245-3344
e-Mail:kunpo_choi@yahoo.co.kr
www.higunpo.co.k

-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2년) 졸업(행정학 석사)
- 중앙대 대학원 박사 취득(행정학 박사)
- 해군병장 만기 제대
- 한국우주소녀단 경기도지부 부지부장
- 재향군인회 금정동 회장
- 금정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군포YMCA 부이사장
- 군포시 평생학습추진 위원
- 폐기물관리시민위원회 위원장
- 한국국제기아대책 군포지역회 이사
- 재단법인 군포시청소년수련관 이사
- 군포시 지역정보화 추진위원
- 국가정책연구소 전임연구원
- 한나라당 군포시협의회 운영위원
- 제2, 3, 4대 시의원

성 명

학력 및 경력



제궁동

김진호

1966. 1. 10

주소 및 전화

군포시 금정동 876
율곡(A) 338-202
(사) 392-4001
(자) 395-9562
(휴) 011- 9741-9562
e-Mail:1000ceo@hanmail.net

- 서울 한강중, 오산고 졸업
- 인하대학교 전기공학과 졸업
-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에너지대학원 졸업
(에너지 정책과 석사 취득)
- 에너지정책연구소 연구원
- 군포시 공직자윤리 위원
- 군포시 여성발전기금운용 심의 위원
- 군포교육청 학교급식 위원
- 군포고등학교 운영위원
- 한국스카우트 군포지구연합회 명예위원
- 군포시 폐기물관리 시민위원회 위원
- 군포환경관리소 운영을 위한 주민지원협의회위원
- 복합화물터미널 확장반대 범시민
대책위원회집행위원장
- 군포시 지역사회 복지협의회 위원
- 제4대 군포시의회 전반기 부의장

제4대 의정백서

성 명

학력 및 경력



오금동

김제길

1952. 9. 5

주소 및 전화

군포시 금정동871-11
소월(아)372-202
(사) 392-4000
(자) 392-0050
(휴) 011-334-0500
e-Mail:kcgco21@hanmail.net

- 상명대학교 정치경영대학원 재학
- 금환건설(주) 대표이사
- 대한주택건설협회 경기도회 감사
- 안양만안로타리클럽 회장 역임
- 화산초등학교 운영위원 역임
- 흥진중학교 학부모회 감사 역임
- 흥진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산본 새마을금고 이사
- 민주평통 군포시협의회 위원
- 군포시 시정발전 위원
- 군포시 중소기업융자 심의위원
- 오금동 주민자치위원장 역임
- 바르게살기 오금동 자문위원
- 군포시 환경관리소주민지원협의체 위원
- 제2, 3, 4대 군포시 의원
- 제2대 전반기 운영위원장
- 제4대 군포시의회 후반기 의장

성 명

학력 및 경력



수리동

김판수

1957. 1. 8

주소 및 전화

군포시 수리동1152-7
계룡(A)838-1301
(사) 392-4001
(자) 392-9180
(휴) 011-270-9180
e-Mail:kps9180@hanmail.net

- 경기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금천세무회계 무료상담 소장
- 군포청년포럼 자문위원장
- 군포환경관리소 운영을 위한 주민 지원협의체위원
- 군포시 자원봉사 발전위원
- 군포시 건축심의위원회 위원
- 군포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
- 군포시 폐기물관리 심의위원
- 푸른희망군포21 실천협의위원
- 재단법인 군포시청소년수련관 이사
- 군포시 체육진흥회 위원
- 군포시 새마을회 이사
- 복합화물터미널 확장반대 군포시의회 소위원회위원
- 도장초등학교 운영위원
- 군포시 가야사회복지관 운영위원

제 4 대 군포시의회의원 현황

성 명

학력 및 경력



궁내동

이경환

1962. 9. 26

주소 및 전화

군포시 궁내동 한양(아)
996-2101
(사) 399-1007
(자) 391-1199
(휴) 011-257-9747
e-Mail:dkb119@hanmail.net
www.gunpo.net
www.blog.naver.com/dkb119

- 신성중 · 양명고 · 호서대학교 졸업
- 수원대학교 경영대학원졸업(경영학 석사)
- 안양청년회의소(JC)회장 역임
- 사단법인)e-환한 시민경제포럼 이사장
- 군포시 성오장학재단 이사
- 군포문화원 이사
- 군포 YMCA이사
- 푸른희망 군포21추진협의회 운영위원
- 군포시 지체장애인협회 자문위원
- 군포시 법무부 범죄예방 자문위원
- 군포시 생활체육죽구연합회 회장
- 사)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군포지회자문위원
- 한나라당 군포지구당 부위원장
- 제3, 4대 시의원

성 명

학력 및 경력



광정동

조완기

1963. 9. 14

주소 및 전화

군포시 산본동1120
주봉(A)1003-1002
(사) 392-4001
(자) 398-4246
(휴)011-784-7904
e-Mail:wgcho2002@hanmail.net
www.okgunpo.com

- 한신대학교 사회학과 졸업
- 경기남부 민주청년단체협의회 의장
- 푸른희망 군포21실천협의회 사무국장
- 안양, 군포, 의왕 환경운동연합 집행위원
- 군포시 시정발전위원
- 군포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
- 군포시 자원봉사 발전위원
- 군포시 좋은학교만들기 추진위원
- 군포시 학교급식 지원위원
- 한국청년연합회(KYC) 지방자치센터 부소장
- (사)디딤돌문화원 전문위원
- 군포YMCA 시민사업위원
- (사)자치분권 연구소 이사
- 자치분권 전국연대 상임운영위원회

1. 이 백서는 제4대 군포시의회(2002. 7. 1 ~ 2006. 6. 30)의 회기별 의정활동 내용을 수록하였다.
2. 이 백서는 총3편(제1편 기본현황, 제2편 의정, 제3편 자료)으로 구분하고 현황편은 군포시와 군포시의회의 기본현황을 수록하고, 의정편은 한 회기를 장으로 구분하였으며, 자료편은 1개장으로 나누어 수록 하였다.
3. 의정편의 제1절 개관에는 회기의 개최배경, 의사일정, 의회 활동에 관한 사항과 안건처리 결과를 수록하였고, 의정편의 제2절 주요안건 처리 경과 및 결과는 조례안, 예산안, 동의안, 결의안 등 안건별로 구분하여 제안자, 제안년월일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처리결과, 질의·답변내용을 요약하여 기술하였다.
4. 자료편은 제4대 군포시의회 의장, 부의장, 의원총람, 특별위원장의 선거·선임에 관한 사항을 수록하였고, 집회와 회기에 관한사항, 안건처리 상황을 회기별, 년도별로 수록하였다.
5. 의회활동의 성과, 의미 등 주관적인 서술은 하지않고 객관적 의정 운영 사항만을 수록하였다.

목 차

제1편 기본현황

제1장 군포시 현황

1. 연 혁	41
2. 유 래	44
3. 위치 및 지역여건	47
4. 인구 및 면적	49
5. 재정규모	50

제2장 군포시의회 현황

1. 연 혁	53
2. 의원현황	56
3. 조 직	57
4. 청사현황	57

제2편 의 정 편

제1장 제93회 임시회

제1절 개 관

1. 개최배경	63
2. 의사일정	63
3. 의회활동	63
4. 안건처리상황	64

제2절 주요안건 처리경과 및 결과

1. 제4대 제1기 의장단 선출	65
2. 제4대 군포시의회 개원식	66
3. 기타안건	66

제2장 제94회 임시회

제1절 개 관

1. 개최배경	71
2. 의사일정	71
3. 의회활동	71
4. 안전처리상황	72

제2절 주요안건 처리경과 및 결과

1. 기 타 안	73
2. 조 례 안	73

제3장 제95회 제1차 정례회

제1절 개 관

1. 개최배경	77
2. 의사일정	77
3. 의회활동	78
4. 안전처리상황	78

제2절 주요안건 처리경과 및 결과

1. 조 례 안	80
2. 결 산 안	83
3. 동 의 안	84

4. 행정사무감사	85
5. 시정질문	89

제4장 제96회 임시회

제1절 개 관

1. 개최배경	95
2. 의사일정	95
3. 의회활동	96
4. 안전처리상황	96

제2절 주요안건 처리경과 및 결과

1. 조 례 안	97
2. 예 산 안	99
3. 동 의 안	101

제5장 제97회 임시회

제1절 개 관

1. 개최배경	105
2. 의사일정	105
3. 의회활동	105
4. 안전처리상황	105

제2절 주요안건 처리경과 및 결과

1. 건 의 안	106
----------------	-----

제6장 제98회 제2차 정례회

제1절 개 관

1. 개최배경	111
2. 의사일정	111
3. 의회활동	112
4. 안전처리상황	112

제2절 주요안건 처리경과 및 결과

1. 조 례 안	114
2. 예 산 안	117
3. 동 의 안	118
4. 시정질문	124

제7장 제99회 임시회

제1절 개 관

1. 개최배경	131
2. 의사일정	131
3. 의회활동	131
4. 안전처리상황	132

제2절 주요안건 처리경과 및 결과

1. 예 산 안	133
----------------	-----

제8장 제100회 임시회

제1절 개 관

1. 개최배경	137
---------------	-----

2. 의사일정	137
3. 의회활동	138
4. 안전처리상황	138

제2절 주요안건 처리경과 및 결과

1. 조 례 안	139
2. 동 의 안	141
3. 예 산 안	141

제9장 제101회 임시회

제1절 개 관

1. 개최배경	145
2. 의사일정	145
3. 의회활동	146
4. 안전처리상황	146

제2절 주요안건 처리경과 및 결과

1. 조 례 안	147
2. 동 의 안	149

제10장 제102회 임시회

제1절 개 관

1. 개최배경	153
2. 의사일정	153
3. 의회활동	154
4. 안전처리상황	154

제2절 주요안건 처리경과 및 결과

1. 조 례 안	155
2. 예 산 안	157

제11장 제103회 제1차 정례회

제1절 개 관

1. 개최배경	161
2. 의사일정	161
3. 의회활동	162
4. 안건처리상황	162

제2절 주요안건 처리경과 및 결과

1. 조 례 안	164
2. 결 산 안	167
3. 동 의 안	168
4. 행정사무감사	171
5. 시정질문	176

제12장 제104회 임시회

제1절 개 관

1. 개최배경	181
2. 의사일정	181
3. 의회활동	182
4. 안건처리상황	182

제2절 주요안건 처리경과 및 결과

1. 조 례 안	183
----------------	-----

2. 동 의 안	186
----------------	-----

제13장 제105회 임시회

제1절 개 관

1. 개최배경	191
2. 의사일정	191
3. 의회활동	192
4. 안전처리상황	192

제2절 주요안건 처리경과 및 결과

1. 예 산 안	193
2. 조 례 안	193
3. 동 의 안	197

제14장 제106회 임시회

제1절 개 관

1. 개최배경	201
2. 의사일정	201
3. 의회활동	202
4. 안전처리상황	202

제2절 주요안건 처리경과 및 결과

1. 조 례 안	203
2. 동 의 안	203

제15장 제107회 제2차 정례회

제1절 개 관

1. 개최배경	207
2. 의사일정	207
3. 의회활동	208
4. 안전처리상황	208

제2절 주요안건 처리경과 및 결과

1. 조 례 안	210
2. 예 산 안	213
3. 동 의 안	215
4. 시정질문	217

제16장 제108회 임시회

제1절 개 관

1. 개최배경	223
2. 의사일정	223
3. 의회활동	224
4. 안전처리상황	224

제2절 주요안건 처리경과 및 결과

1. 예 산 안	225
2. 동 의 안	226

제17장 제109회 임시회

제1절 개 관

1. 개최배경	231
2. 의사일정	231
3. 의회활동	232
4. 안전처리상황	232

제2절 주요안건 처리경과 및 결과

1. 조 례 안	233
2. 동 의 안	235

제18장 제110회 임시회

제1절 개 관

1. 개최배경	241
2. 의사일정	241
3. 의회활동	242
4. 안전처리상황	242

제2절 주요안건 처리경과 및 결과

1. 조 례 안	243
2. 동 의 안	245

제19장 제111회 임시회

제1절 개 관

1. 개최배경	249
2. 의사일정	249
3. 의회활동	250
4. 안전처리상황	251

제2절 주요안건 처리경과 및 결과

1. 조 례 안	252
2. 예 산 안	255
3. 동 의 안	257
4. 기 타 안	258

제20장 제112회 임시회

제1절 개 관

1. 개최배경	261
2. 의사일정	261
3. 의회활동	261
4. 안건처리상황	262

제2절 주요안건 처리경과 및 결과

1. 조 례 안	263
2. 제4대 제2기 의장단 선출	264

제21장 제113회 제1차 정례회

제1절 개 관

1. 개최배경	269
2. 의사일정	269
3. 의회활동	270
4. 안건처리상황	270

제2절 주요안건 처리경과 및 결과

1. 조 례 안	272
2. 예 산 안	274

3. 동 의 안	275
4. 행정사무감사	276
5.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279
6. 시정질문	280

제22장 제114회 임시회

제1절 개 관

1. 개최배경	285
2. 의사일정	285
3. 의회활동	286
4. 안전처리상황	286

제2절 주요안건 처리경과 및 결과

1. 예 산 안	287
2. 조 례 안	288
3. 건 의 안	291

제23장 제115회 임시회

제1절 개 관

1. 개최배경	295
2. 의사일정	295
3. 의회활동	296
4. 안전처리상황	296

제2절 주요안건 처리경과 및 결과

1. 조 례 안	297
----------------	-----

제24장 제116회 제2차 정례회

제1절 개 관

1. 개최배경	301
2. 의사일정	301
3. 의회활동	302
4. 안전처리상황	302

제2절 주요안건 처리경과 및 결과

1. 예 산 안	304
2. 조 례 안	306
3. 동 의 안	311
4. 시정질문	313

제25장 제117회 임시회

제1절 개 관

1. 개최배경	319
2. 의사일정	319
3. 의회활동	320
4. 안전처리상황	320

제2절 주요안건 처리경과 및 결과

1. 예 산 안	321
2. 조 례 안	322
3. 동 의 안	324

제26장 제118회 임시회

제1절 개 관

1. 개최배경	327
2. 의사일정	327
3. 의회활동	328
4. 안전처리상황	328

제2절 주요안건 처리경과 및 결과

1. 조 례 안	329
2. 동 의 안	333

제27장 제119회 임시회

제1절 개 관

1. 개최배경	337
2. 의사일정	337
3. 의회활동	338
4. 안전처리상황	338

제2절 주요안건 처리경과 및 결과

1. 예 산 안	340
2. 조 례 안	341
3. 동 의 안	347

제28장 제120회 임시회

제1절 개 관

1. 개최배경	351
2. 의사일정	351
3. 의회활동	352

4. 안전처리상황	352
-----------------	-----

제2절 주요안건 처리경과 및 결과

1. 조 례 안	353
2. 동 의 안	353
3. 기 타 안	354

제29장 제121회 제1차 정례회

제1절 개 관

1. 개최배경	357
2. 의사일정	357
3. 의회활동	358
4. 안전처리상황	358

제2절 주요안건 처리경과 및 결과

1. 결 산 안	360
2. 조 례 안	361
3. 행정사무감사	364
4. 시정질문	371

제30장 제122회 임시회

제1절 개 관

1. 개최배경	377
2. 의사일정	377
3. 의회활동	378
4. 안전처리상황	378

제2절 주요안건 처리경과 및 결과

1. 조 례 안	380
2. 동 의 안	389

제31장 제123회 임시회

제1절 개 관

1. 개최배경	395
2. 의사일정	395
3. 의회활동	396
4. 안건처리상황	396

제2절 주요안건 처리경과 및 결과

1. 예 산 안	397
2. 조 례 안	398
3. 동 의 안	400

제32장 제124회 임시회

제1절 개 관

1. 개최배경	405
2. 의사일정	405
3. 의회활동	406
4. 안건처리상황	406

제2절 주요안건 처리경과 및 결과

1. 조 례 안	407
2. 동 의 안	409

제33장 제125회 제2차 정례회

제1절 개 관

1. 개최배경	415
2. 의사일정	415
3. 의회활동	416
4. 안전처리상황	416

제2절 주요안건 처리경과 및 결과

1. 예 산 안	418
2. 조 례 안	419
3. 동 의 안	420
4. 시정질문	423

제34장 제126회 임시회

제1절 개 관

1. 개최배경	433
2. 의사일정	433
3. 의회활동	434
4. 안전처리상황	434

제2절 주요안건 처리경과 및 결과

1. 예 산 안	435
2. 조 례 안	436

제35장 제127회 임시회

제1절 개 관

1. 개최배경	441
2. 의사일정	441
3. 의회활동	441
4. 안전처리상황	442

제2절 주요안건 처리경과 및 결과

1. 조 례 안	443
----------------	-----

제36장 제128회 임시회

제1절 개 관

1. 개최배경	449
2. 의사일정	449
3. 의회활동	450
4. 안전처리상황	450

제2절 주요안건 처리경과 및 결과

1. 조 례 안	451
----------------	-----

제37장 제129회 임시회

제1절 개 관

1. 개최배경	457
2. 의사일정	457
3. 의회활동	458
4. 안전처리상황	458

제2절 주요안건 처리경과 및 결과

1. 예 산 안	460
----------------	-----

2. 조 례 안	461
3. 동 의 안	464

제38장 제130회 임시회

제1절 개 관

1. 개최배경	469
2. 의사일정	469
3. 의회활동	470
4. 안전처리상황	470

제2절 주요안건 처리경과 및 결과

1. 조 례 안	471
----------------	-----

제3편 자 료 편

제1장 운영 현황

제1절 제4대 군포시의회 운영 현황

1. 의회조직 및 구성의 변화	
1) 의 장	477
2) 부 의 장	477
3) 제4대 의원총람	478
4) 특별위원회 구성	483
5) 사무국(과)	487
6) 의회시설	487

제2절 제4대 군포시의회 회기운영 실적

1. 회기운영 실적

- 1) 회기별 집회요구 488
- 2) 회의일수 490

2. 의정활동 실적

- 1) 회기별 의안처리 492
- 2) 의안별 처리현황 494
- 3) 조례개정 및 폐폐 496
- 4) 시정질문 497
- 5)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498
- 6) 진정서 처리 498

제1편 기본현황

제1장 군포시 현황

제1장 군포시 현황

1. 연 혁

우리 군포는 기원전 75년 진국이 삼한으로 분리되면서 마한의 땅으로 되었다가 기원전 18년 백제의 시조 온조왕이 하남 위례성에 도읍지를 정함으로써 우리 군포는 400년 동안 백제의 영지가 되었다.

서기405년 고구려 제19대 광개토대왕은 영토확장을 위해 남진정책을 펼쳤고 계속 남진하여 임진·한강의 양 유역일대를 점령하였으며 광개토대왕에 이어 왕위에 오른 장수왕은 국도를 평양으로 옮겨 남진정책을 계속 추진하여 수도 한산(지금의 광주)을 점령하였다. 이로 인하여 백제는 수도를 한산에서 웅진으로 천도하였으며, 그 뒤로 경기도 전지역이 고구려의 영토가 되었고 고구려의 영지가 되었다.

백제의 수도 공략에 성공한 고구려는 현재의 과천시, 군포시, 안양시 지역을 1개군으로 묶고 울목군이라 칭하여 오던 중 반도 동남부에서 세력을 키워오던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면서 신라의 영지에 속하게 되는데 신라 제35대 경덕왕 16년에 당나라 제도를 모방하여 전국 9주제를 실시한 바 경기도 지역은 한주에 속하게 되었고 군포지역은 울진군으로 개칭되었다. 이 때의 울진군은 군포시, 과천시, 서울시의 용산구, 동작구, 서초구의 일부지역을 포함하고 있었다.

고려시대의 군포는 울진군에서 과주군으로 명칭이 바뀌었으며, 별호로서는 [부안] 또는 [부림]이라고 칭하였는데 이러한 별호는 고려 성종9년(990년)에 정하여졌다.

그 후 조선을 건국한 태조는 수도를 개경에서 한양으로 옮기고 정치체제와 제도를 정비하였으며 태종2년에는 종전의 경기 좌·우도를 통합 경기도라 칭하고 1413년에는 1목 8도호부 6군 26현으로 지방행정구역을 개편하였으며 과주군은 현으로 강등되면서 과천현으로 칭해졌다.

1910년 8월 조선을 강제로 합병한 일본은 같은 해 9월 30일 일본칙령 제354호로 조선총독부 및 소속관서 관제를 공포하였고 이듬해 4월 1일에는 경기도령 제3호에 따라 府·郡·面制를 도입하는 등의 부분적 道·府·郡·面간의 경계조정이 이루어졌으며 당시의 군포시는 과천군 남면으로 행정구역이 개편되어 산본동, 당리, 용호동, 장간리, 부곡리, 괴곡리, 금정리, 당정리, 봉성리, 초막동 등 10개리를 관할하였다.

그로부터 2년 뒤인 1914년 3월 1일 조선총독부는 행정구역을 재편하여 시흥군, 과천군, 안산군 등 3개 군을 시흥군으로 합병하였으며 과천군 남면은 시흥군 남면이 되었고 당리와 용호동이 합쳐 당리로, 당정리와 봉성리가 합쳐 당정리로, 금정리와 괴곡리를 합쳐 금정리로, 산본동을 산본리로, 부곡리와 장간리를 합쳐 부곡리로 하는 등 10개리가 5개리로 통폐합되었다.

1914년 3월 1일 시흥군 남면이 된 후 일제를 거쳐 건국 후에도 행정구역의 변동이나 명칭에 대한 변경 없이 지내오다가 1979년 4월 7일 대통령령 제9409호(1979. 4. 7공포)에 의하여 동년 5월 1일 시흥군 남면이 시흥군 군포읍으로 승격하였다.

그 후 경제개발이 활발히 전개되고 산업시설의 입지가 유리한 군포지역으로 이전되면서 지역의 개발속도가 급진전되었다. 이에 수반하여 행정의 수요도 날로 증가하므로 이에 대한 효율적인 지역관리를 위하여 정부에서는 법률 제4050호(1988.12.31공포)로 1989년 1월 1일 시흥군을 분리하여 군포읍을 군포시로, 의왕읍을 의왕시로, 소래읍과 수암면, 군자면을 통합하여 시흥시로 승격시켰다. 이로 인하여 군포시는 기초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주민위주의 행정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관할하는 법정 동으로는 군포시동의명칭 및 관할구역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군포시 당동, 당정동, 부곡동, 산본동, 금정동 등 5개 동을 관할하게 되었다. 또한 하부기관으로는 군포시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관한 조례(1989. 1. 1 공포)에 의하여 당동 일부를 군포1동으로, 당동 일부와 부곡동을 합쳐 군포2동으로, 당정동을 당정동으로, 산본동을 분할하여 산본1동과 산본2동으로, 금정동을 금정동으로 하여 6개의 행정동을 설치하였다.

그 후 신도시 건설로 인하여 산본동과 금정동 일부지역이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되고 주택이 건설되면서 입주민이 증가하고 행정수요가 증가하면서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조례 제281호(1992. 4.28공포)에 의하여 1992년 5월1일 금정동을 분동하여 행정동인 재궁동을 설치 하였다. 이로 인하여 행정동이 7개동이 되었다. 또한 조례 제295호(1993. 1.14 공포)로 재궁동을 분동하여 1993년 1월 14일 오금동을 신설하여 행정동이 8개동이 되었다.

조례 제308호(1993. 6. 8 공포)에 의하여 산본2동을 분할하여 1993년 6월 8일 수리동을 신설함으로써 행정동이 9개동이 되었다.

1년 후에는 조례 제347호(1994. 7.19공포)로 수리동을 분할하여 1994년 7월 19일 궁내동을 신설함으로써 행정동이 10개동이 되었다. 시로 승격한 후에 법정동은 변동 없이 내려오다가 대통령령 제14434호(1994.12.26 공포)에 의하여 행정구역의 일부조정으로 화성군 반월면 둔대리, 속달리, 대야미리, 도마교리 등 4개리가 군포시로 편입됨에 따라 조례 제363호(1994.12.29 공포)에 의하여 군포시 둔대동, 속달동, 대야미동, 도마교동 등 4개 법정동이 증설되어 총 9개동이 되었으며 조례 제364호(1994.12.29 공포)에 의하여 4개 동의 행정을 수행할 행정동으로 대야동이 설치되었다. 이로 인하여 행정동이 11개 동으로 증가하였다.

그 후 입주시민의 증가로 동 행정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산본2동이 조례 제381호(1995. 2.28 공포)에 의하여 1995년 2월 28일 분할되어 광정동을 신설하여 행정동은 12개동이 되었으며,

'98년 유사·중복기구의 통·폐합 및 기능쇠퇴 부서를 과감히 폐지하여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도록 한 정부방침에 따라 시조례 제520호('98.10. 1)로 당정동을 군포1동에 흡수 통합하여 11개동이 되었다.

시 대(연대)	연 혁
삼국시대	○ 백제의 도읍지인 광주(廣州)의 속현(屬縣)
삼국시대(475년)	○ 고구려 장수왕 63년에 남진정책으로 경기도의 전역이 고구려의 영토가 되면서 울목국(栗木郡)이라 칭함
통일신라시대(757년)	○ 경덕왕 16년 울진군(栗津郡)으로 개칭
고려시대(940년)	○ 태조 23년 주·군·현의 행정지명을 전면적으로 개정하여 과주군(果州郡)으로 개칭
조선시대(1413년)	○ 태종13년 지방행정구역 개편으로 과천현(果川縣)으로 개칭
조선시대(1895년)	○ 고종 31년 갑오개혁으로 과천군(果川郡)으로 개칭
1914. 3. 1	○ 시흥군(始興郡), 과천군(果川郡), 안산군(安山郡)의 3개군이 통합 시흥군(始興郡)이 됨(南面)
1979. 5. 1	○ 시흥군(始興郡) 남면(南面)을 군포읍(軍浦邑)으로 승격
1989. 1. 1	○ 시흥군(始興郡) 군포읍(軍浦邑)을 군포시(軍浦市)로 승격
1992. 5. 1	○ 금정동(衿井洞)을 금정동(衿井洞), 재궁동(齋宮洞)으로 분동
1993. 1. 6	○ 시청사(市廳舍)를 당동(堂洞)에서 금정동(衿井洞)으로 이전
1993. 1.14	○ 재궁동(齋宮洞)을 새궁동(齋宮洞), 오금동(五禁洞)으로 분동
1993. 6. 8	○ 산본2동(山本2洞)을 산본2동(山本2洞), 수리동(修理洞)으로 분동
1994. 7.19	○ 수리동(修理洞)을 수리동(修理洞), 궁내동(宮內洞)으로 분동
1994.12.26	○ 화성군 반월면 둔대리, 속달리, 대야미리, 도마교리 등 4개 법정리를 군포시(軍浦市)로 편입 ○ 행정구역 개편으로 대야동(大夜洞) 신설 (11個 行政洞)
1995. 2.28	○ 산본2동(山本2洞)을 산본2동(山本2洞), 광정동(光亭洞)으로 분동
1998.10. 1	○ 당정동(堂井洞)을 군포1동(軍浦1洞)에 통합 (11個 行政洞)

2. 유 래

군포는 본래 과천 지역으로 과천읍내 남쪽이 되므로 남면이라 하여 왔으며 1912년에 간행된 [구한국 지방행정 명칭일람]에 의하면 산본, 당리, 용호, 장간, 부곡, 괴곡, 금정, 당정, 봉성, 초막 등 10개 동리를 관할하였는데 1914년 3월 1일 군·면 통폐합에 따라 시흥군 남면이 되어 산본, 금정, 당리, 당정, 부곡의 5개리로 개편 관할하였다. 1979년 5월 1일 군포읍으로 승격되고 1989년 1월 1일 군포시로 승격됐으며 1994년 12월 26일 행정구역 조정으로 화성군 반월면 4개리(속달리, 대야미리, 둔대리, 도마교리)가 군포시로 편입되었다.

우리 군포시의 지명유래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설이 밝혀지지 않고 있다.

첫 번째 설은 조선 선조(1592년) 임진왜란 당시 우리 조선 병사들이 왜군에게 패하여 후퇴하던 중 지금의 구군포에서 주민들이 관군에게 식사를 제공하였다 하여 군포라 칭하였다고는 하나 고증할만한 자료가 없어 정설로 믿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1982년 내무부 [지방행정 지명사], 1987년 [경기도 지명유래집])

두 번째 설은 청일전쟁(1894~1895년)때 청나라 군사가 군함을 타고 한강을 거쳐 안양천을 경유 이곳에 머물렀다하여 군포라 칭했다하나 하천의 폭이 좁아 군함이 드나들었다고는 믿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고증할만한 자료가 없어 지명유래로 확정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최근에 발굴된 유래는 고증자료가 충분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역여건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군포시와 안양시 사이를 흐르는 하천이 군포천인데 이 하천이 북류하면서 안양천을 경유하여 한강에 합류되므로 한강의 지류이며 안양천의 상류하천이다. 이 하천이 군포천인데 북류하면서 안양천과 합류하여 한강으로 흐르고 있어 이를 보통 안양천이라 부르고 있다.

지금은 국토개발, 풍화작용에 의한 지형의 변모로 인하여 형태가 많이 달라졌으나, 당시의 실정으로 본다면 서해안의 조수간만의 차가 심했던 옛날에는 새우젓 배 등 작은 배들이 밀물 때를 이용하여 이곳 군포천까지 드나들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이 추정하는 근거는 조선 숙종 25년(1699년)에 편찬된 과천현 신수읍지에 [군포천]이라 표기되었고 과천지도에도 [군포천]이라 표기되어 있으며 철종 12년(1861년) 김정호 선생께서 발간한 [대동여지도]에도 [군포천]이라 표기되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의문의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 대동여지도상의 군포 〉



또한 육로 수송이 어려웠던 옛날에는 수로를 이용하여 농수산물, 생활필수품 등을 수송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이면에는 지금의 구군포(안양시 호계3동)를 중심으로 5일장이 섰고, 이를 군포장(軍浦場)이라 한 점이 군포 명칭의 확실한 근거를 뒷받침하고 있다.

매월 5일과 10일을 장날로 한 군포장은 담배를 비롯하여 소금, 광목 등의 생필품과 쌀, 콩, 조, 보리 등 농산물이 주로 거래되었으며 주요고객은 군포, 안양, 의왕, 과천에 거주하는 주민과 상인들이고 멀리로는 용인, 판교, 남양 등지의 상인들이 성시를 이루었다 한다.

또한 오늘날 군포역이 위치한 군포시 당동은 ‘당말’이라 하였는데 1905년 경부선 철도가 개통되면서 군포장역(軍浦場驛)이 생기고 민가가 늘어나 군포라 부르면서 호계동 지역을 ‘구군포’라 칭하였다.

다시 군포의 지명유래를 상술해보면 호계파출소 앞 약100미터 지점에 있는 군웅산(軍雄山 : 해발40m)은 안양시 호계3동 996-1번지일대에 위치한 야산으로써 낮은 구릉지대이면서도 산의 호칭을 얻었고 주민들이 한해의 평안을 기원하는 군웅제(軍雄祭)를 지내는 산으로 1980년대전까지 산제를 지내왔으나 지금은 주택으로 덮여있다. 또한 구군포 사거리를 흐르는 군포천(軍浦川)은 70년대 중반까지 물고기를 잡고 먹을 감던 맑은내로 불리워 왔다.

따라서 이 군웅산 아래에 있는 군포천의 물가 마을이므로 군웅산의 군(軍)자와 물가 포(浦)자를 합하여 군포라고 이름한 것이 몇 백년은 된 듯하다.

그렇다면 군포란 지명유래를 가늠하기가 어렵지만 문헌상으로 볼 때 군웅산의 군(軍)자와 물가 포(浦)가 합쳐 되어 [군포천(軍浦川)]이 되었고 군포란 지명도 군포천에서 유래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군포(軍飽)]가 [군포(軍浦)]로 바뀐 것은 잘못 전해온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軍飽가 軍浦로 바뀐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軍浦로 전해오고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와 같은 군포의 지명유래를 근거로 1979년 5월 1일 남면이 읍이 되면서 행정구역의 명칭이 군포읍으로 개칭되었고, 시로 승격된 오늘에 이르기까지 군포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3. 위치 및 지역여건

군포시는 동북아시아에 길게 뻗은 한반도의 서부 중앙지역에 자리한 경기도의 남서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쪽으로는 의왕시, 북동쪽은 안양시, 남서쪽은 안산시와 경계를 이루고 주변에는 서울시, 과천시, 수원시, 광명시가 위치하고 있으며 동쪽의 모락산(해발 385m) 북서쪽의 수리산(해발 474.8m) 남쪽의 오봉산(해발 205m)에 둘러싸인 도시이다. 경위도상으로는 동경 126° 52' ~ 58' , 북위 37° 18' ~ 23' 에 위치해 있다.

군포시의 면적은 경기도 면적의 0.35%인 36.35km²로서 동서남북의 길이는 약 8km로서 마름모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단	지 명	극 점	연장거리(km)
극 동	당 정 동	북위 37° 21' 28" 동경 126° 58' 22"	동서간 8.45km
극 서	속 달 동	북위 37° 21' 02" 동경 126° 54' 41"	
극 남	도마교동	북위 37° 21' 35" 동경 126° 56' 12"	
극 북	산 본 동	북위 37° 22' 46" 동경 126° 56' 57"	남북간 8.4km

군포시의 입지적 특성은 서울시와 수원시의 중간지점으로 안양시, 의왕시와 광역도시권을 형성하고 수도권 배후 위성도시로 시세의 신장이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경수전철, 안산선 전철, 신갈~안산간 고속도로, 서해안 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 고속도로, 국도 47호선이 도시를 통과하는 교통의 요충지이다.

일반행정권은 군포시 행정구역 면적 36.38km²의 범위로 현재 11개 행정동으로 편제되어있고 도시계획 행정권은 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으로서 군포도시계획 구역과 안양도시계획 구역으로 이원화되어 있었으나 민선자치개막과 더불어 행정구역과 도시계획구역을 일치시키는 도시계획 구역 정비작업을 추진, 행정구역과 도시계획 구역을 일원화 하였다.

도시의 경제권은 출·퇴근 및 고용인구, 소비상품, 시장이용권 등 위치 및 거리 특성상 안양, 서울 등 대도시의 경제적 의존성이 높으며,

사회문화적으로는 산본신도시 개발 및 도시발전에 따른 외부 인구유입으로 역사적, 문화적 동질성이 약화되고 있어 군포시민이란 주민의식의 응집력 증대를 위한 사회문화적 영향력 발휘가 요구되며, 군포시 전역을 동질성 있는 사회문화권으로의 조성이 요구되고 있다.

4. 인구 및 면적

가. 인구증가 추이

(단위 : 세대, 명)

구분 \ 연도별	1989년	1990년	1991년	1992년	1993년	1994년	1995년
세 대	29,489	27,481	34,689	40,806	55,255	70,128	78,036
인 구	104,595	100,059	107,387	130,947	178,076	223,606	245,190

구분 \ 연도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세 대	81,600	83,903	85,223	86,906	86,970	87,485	89,706
인 구	254,832	261,653	266,061	270,951	271,306	269,080	268,559

구분 \ 연도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6월현재)			
세 대	93,689	95,845	98,061	99,124			
인 구	273,758	275,761	277,781	278,457			

나. 동별 현황

동별 \ 구분	인구(명)	세대(가구)	면적(k㎡)	비고
계	278,457	99,124	36,35	
군포1동	33,111	12,935	3.84	
군포2동	39,604	12,996	5.78	
산본1동	23,520	9,647	0.72	
산본2동	26,655	8,806	1.17	
금정동	21,036	8,257	1.26	
재궁동	25,540	9,401	0.87	
오금동	27,576	9,342	1.07	
수리동	22,279	7,751	2.73	
궁내동	24,354	7,634	1.68	
광정동	29,559	10,391	1.89	
대야동	5,223	1,964	15.34	

5. 재정규모

2006. 6월말 현재 군포시 총 예산규모는 334,544,717천원으로 재정자립도는(55.5 %)이다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액	비 고
계		334,544,717	
일 반 회 계		235,374,759	
기 타 특 별 회 계		99,169,958	
회 계 별	수 도 사 업	28,144,856	
	하수도사업	24,060,921	
	의료보호기금	673,149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815,260	
	당동지구토지구획정리	286,720	
	대야지구토지구획정리	15,253,822	
	당동제2지구토지구획정리	10,526,503	
	당정지구토지구획정리	11,694,177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937,921	
	교통사업	6,745,606	
	주택사업	31,023	

제2장 군포시의회 현황

제2장 군포시의회 현황

1. 연 혁

가. 제1대 의회

1947년 11월 17일 법률 제8호로써 ‘지방행정에관한임시조치법’이 제정되어 시행된 후, 1949년 7월 4일에 법률 제32호로 지방자치법이 처음 공포됨으로써 형식적인 의미의 지방자치제가 시작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동법은 실제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과 그 권한, 보조기관, 하급지방행정관청, 재정권에 관한 규정만이 시행되었을 뿐이고 실질적 시행은 1952년 4월과 5월의 지방의원 총선거를 통하여 지방의회가 구성됨으로써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지방자치가 시작되었다.

제1대 의회(1952년~1956년), 제2대 의회(1956년~1960년), 제3대 의회(1960년~1961년)로 이어오던 지방자치시대가 1961년 5월 16일에 지방의회가 해산된 이래, 중앙집권 체제하에서 관치 지방행정 중심의 형식적인 지방자치의 명맥만을 유지하여 오다가 1990년 12월말 국회에서 지방의회의원 선거법을 개정함으로써 30년이란 휴면에서 깨어나 새로운 민주주의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1991년 3월 26일 전국기초의회 의원선거가 실시되어 9인이 당선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군포시장이 1991년 4월 9일 집회공고를 하여 동년 4월 15일 개원식을 갖고 제1대 군포시의회가 출범하여 의정 활동을 시작하였다.

시·군·자치구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14434호, 1994.12.26)에 의거 경기도 화성군 반월면 둔대리, 대야미리, 속달리, 도마교리 일원이 군포시 관할구역으로 편입됨에 따라 화성군 의회 반월면지역 출신의원 1인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군포시의회 의원등록을 함으로써 1994년 12월 26일부터 총 10인의 의원이 활동하였다.

제1대 의원의 임기는 4년이었으나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1995년 6월 30일까지 연장되었다.

나. 제2대 의회

제2대 군포시의회의 의원선거는 1995년 6월 27일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시·도지사, 시장, 군수, 도의원, 시군구의원)으로 실시되어 동별 인구비례에 의하여 20명의 의원이 선출되면서 명실상부한 지방시대를 개막하게 되었다.

제2대 의원은 지방자치법 부칙 제3조에 의하여 1995년 7월 1일부터 1998년 6월 30일까지 3년의 임기로 의정활동을 전개하였다.

다. 제3대 의회

1994년 3월 16일 제정 공포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3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1998년 6월 4일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면서 군포시 11개 선거구에서 11명의 의원이 선출되었다.

제3대 군포시의회는 지난 1, 2대 의회의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지방의회의 목적과 그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함으로써 지역의 균형발전과 시민대통합의 근간이 되었으며, 지방자치가 한단계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며 2002년 6월 30일까지 의정활동을 전개하였다.

라. 제4대 의회

제4대 군포시의회의 의원선거는 2002년 6월 13일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시·도지사, 시장, 군수, 도의원, 시·군·구의원)으로 실시되어 군포시 10개 선거구에서 10명의 의원이 선출되어 지난 1, 2, 3대 의회의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마인드로 의정활동을 펼쳐 지방자치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며 2006년 6월 30일까지 의정활동을 전개했다.

〈 군포시의회 연혁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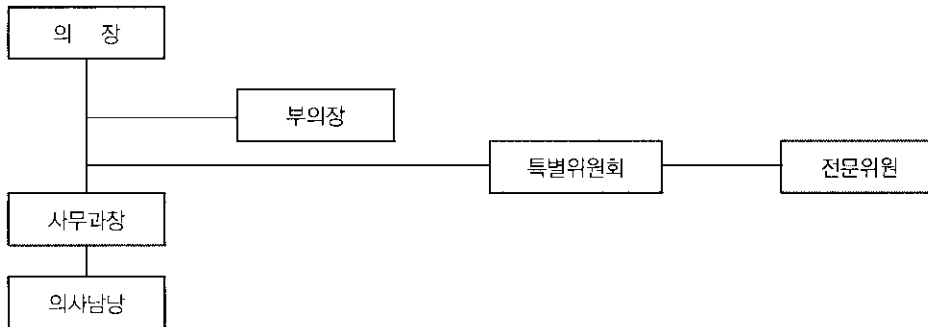
일 자 별	주 요 연 혁	비 고
1991. 3.26	· 시·군·구 의원선거	
1991. 4. 9	· 제1대 군포시의회 개원 · 제1기 (의장 류지연, 부의장 송윤석 선출)	1대
1993. 4.13	· 제2기 (의장 류지연, 부의장 이재권 선출)	
1993. 4.15	· 군포시의회 청사준공식(현위치)	
1994.12.26	· 화성군 반월면 4개리 편입(의원1인 증원)	
1995. 6.27	·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1995. 7.11	· 제2대 군포시의회 개원 · 제1기 (의장 노재영, 부의장 이원남 선출)	2대
1997. 1. 7	· 제2기 (의장 이재권, 부의장 김진용 선출)	
1998. 6. 4	·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	
1998. 7. 7	· 제3대 군포시의회 개원 · 제1기 (의장 송만용, 부의장 김영숙 선출)	3대
2000. 7. 1	· 제2기 (의장 김진용, 부의장 권원혁 선출)	
2002. 6.13	·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02. 7. 3	· 제4대 군포시의회 개원 · 제1기 (의장 권원혁, 부의장 김진호 선출)	4대
2004. 6.29	· 제2기 (의장 김세길, 부의장 이세수 선출)	

2. 의원현황(제4대)

선거구명	성명	성별	나이	직업	경 력
군포1동	권원혁	남	57	자영업	· 제2, 3, 4대 시의회 의원 · 군포시 개인택시조합장
군포2동 대야동	이재수	남	48	자영업	· 제3, 4대 시의회 의원 · (주)보광농장 대표
산본1동	송정열	남	38	정당인	· 군포시 성오장학재단 사무국장 · 사)한국지역복지정책연구회 회원
산본2동	김재일	남	39	기업인	· 군포경제정의실천회의 회원 · 군포시 체육진흥협의회 위원
금정동	최진학	남	49	자영업	· 제2, 3, 4대 시의회 의원 · 군포시 평생학습추진위원
새궁동	김진호	남	40	회사원	· 에너지정책연구소 연구원 · 군포시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위원
오금동	김제길	남	54	건설업	· 제2, 3, 4대 시의회 의원 · 대한주택건설협회 경기도회 감사
수리동	김판수	남	49	자영업	· 군포시 폐기물관리 심의위원 · 군포시 자원봉사발전 위원
궁내동	이경환	남	44	자영업	· 제3, 4대 시의회 의원 · 군포 성호장학재단 이사
광정동	조완기	남	43	정당인	· 군포시 시정발전 위원 · (사)자치분권 연구소 이사

3. 조 직

가. 의회기구표



나. 직원현황

계	행정5급	행정6급	행정7급	행정8급	기능직	비고
13	2	1	4		6	

4. 청사현황

1991년 초대의회 개원당시 군포시의회 청사는 당동 773번지의 보건소 건물을 사용하다가 1993년 3월 30일 금정동 844번지 군포시청내 부지에 연건평 471평의 새 청사를 완공하여 이전하고, 1993년 4월 15일 의회청사 준공식을 가졌다.

산본신도시가 조성되면서 동사무소가 증설되고 제2대의회 의원수가 20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청사를 확장하고자 기존부지에 총 공사비 17억 5천만원을 투자하여 '94년 12월 설계를 완료하고 '96년 5월 3일 준공을 보게 되었다.

군포시의회 의사당의 건축규모는 기존면적 471평과 증축면적 656평을 포함 연면적 1,127평(지상 3층)이다.

〈 층별 구성 및 면적 〉

(단위 : ㎡)

1층	계	사무실	특위회의실	의원사무실	간담회장
	827	161	198	389	79

(단위 : ㎡)

2층	계	의 장·부부장실	소회의실	본회의장	접견실
	648	79	75	386	108

(단위 : ㎡)

3층	계	체력단련실	의정자료실	청사대기실
	213	82	108	23

제2편 의정편

제1장 제93회 임시회

제1장 제93회 임시회

제1절 개 관

1. 개최배경

제93회 임시회는 2002년 6월 13일 실시된 제4대 지방의회 의원선거 후 최초의 집회이다. 본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원 임기 개시일로부터 25이내에 소집토록 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에 의거 군포시장이 집회 공고하여 2002년 7월 3일 1일간의 회기로 개최되었다.

제93회 임시회에서는 의장·부의장 선거를 실시하여 제4대 전반기 의장단을 구성하고 개원식을 가졌다.

2. 의사일정

일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고
7. 7(화)	1	1. 의장선거 2. 부의장선거 3. 제93회군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4. 제93회군포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5. 제1차정례회집회일결정의건 6. 본회의장의석배정의건	
		○ 제4대 군포시의회 개원식	

3. 의회활동

제9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에서는 제4대 군포시의회 원구성을 위해 의장단을 선출하고, 제4대 의회 개원식을 개최하였으며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건을 처리하였다.

4. 안건처리상황

안 건		의결일자	처리결과
총 계 : 6 건			
선거 · 선임	소 계 : 3건		
	• 의장선거	'02. 7. 3(제1차)	선출(권원혁)
	• 부의장선거	"	선출(김진호)
	• 본회의장의석배정의건	"	배정의결
회의 진행 안건	소 계 : 3건		
	• 제93회임사회회기결정의건	'02. 7. 3(제1차)	원안가결
	• 제93회임사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선 임
	• 제1차정례회집회일결정의건	"	결 정

제2절 주요안건 처리경과 및 결과

1. 제4대 제1기 의장단 선출

□ 의장선거

의장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2조 제1항 및 군포시의회의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명 투표로 선출함에 따라 의장 직무대행 권원혁 의원의 임시사회로 실시되었다

1차 투표결과 총 투표수 10표중 권원혁의원 5표, 최진학의원 2표, 이경환의원 2표, 기권 1표로 군포시의회의회의규칙 제8조 제3항에 의거 과반수를 득표한 의원이 없기 때문에 2차투표 실시 2차 투표결과 총 투표수 10표중 권원혁의원 5표, 최진학의원 5표로 과반수를 득표한 의원이 없기 때문에 군포시의회의회의규칙 제3조에 의거 결선투표 실시, 결선 투표결과 권원혁의원 5표, 최진학의원 5표로 군포시의회의회의규칙 제8조 제4항에 따라 연장자인 권원혁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되었다.

〈 의장 당선 인사 〉

고맙습니다. 부족한 저를 군포시의회 의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저 또한 의원 여러분과 같이 의장이라는 직함이 아닌 의원으로서의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의정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부의장선거

부의장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2조 제1항 및 군포시의회의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명 투표로 선출함에 따라 권원혁 의장의 사회로 김판수 의원, 김진호 의원 등 2인의 감표위원을 지명하여 부의장 선거가 실시되었다.

총 투표수 10표중 이재수 의원 4표, 김진호 의원 6표로 군포시의회의회의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반수를 득표한 김진호 의원이 부의장으로 당선되었다.

〈 부의장 당선 인사 〉

감사합니다. 초선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의장으로 선출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젊은이답게 항상 공부하고 노력하는 시의원으로서 시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제4대 군포시의회 개원식

2002년 7월 3일 제4대 군포시의회 개원식을 가졌다. 의원 10명을 비롯하여 유관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에 이어 권원혁 의장의 선창에 따라 모든 의원은 다음과 같이 의원선서를 하였다.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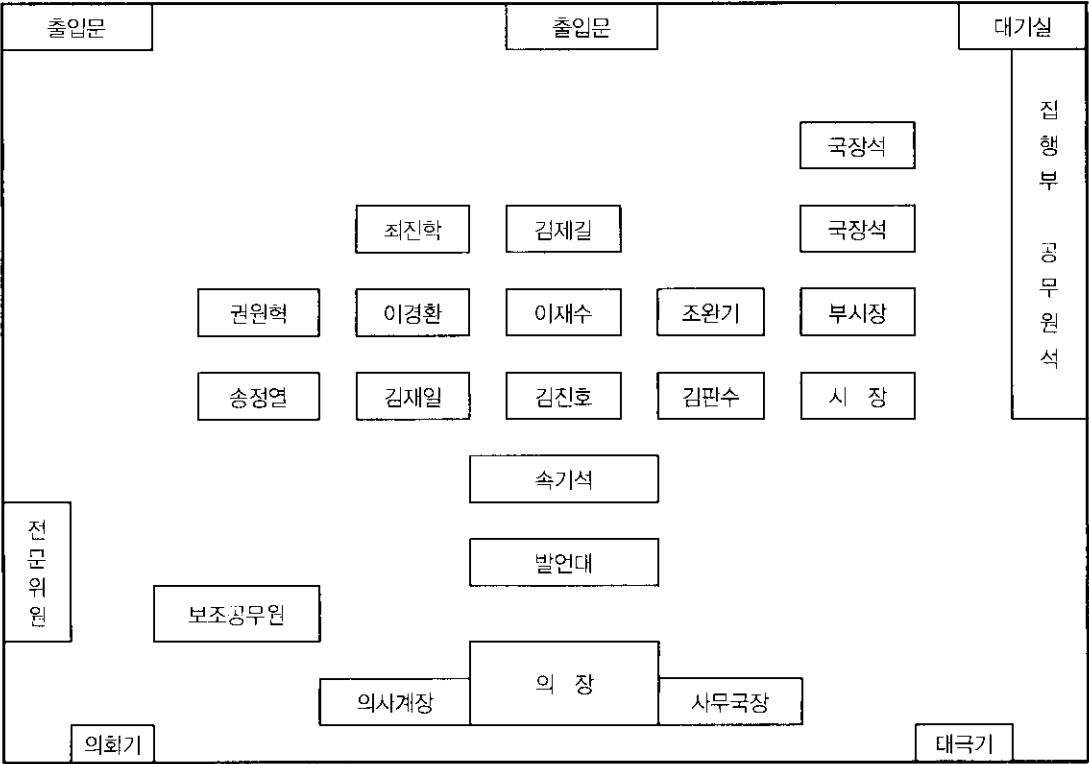
이어서 김진호 부의장의 의원 윤리강령 낭독이 있었고 권원혁 의장의 개회사에 이어 김윤주 군포시장의 개원을 축하하며 축사를 하였다.

3. 기타안건

□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

군포시의회정례회 운영에 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써 7, 8월중에 따로 정하도록 되어 찬반토론 없이 전원 만장일치로 2002.8.31일에 집회하기로 할 것을 원안 가결함.(2002.7.3)

□ 제4대 군포시의회 본회의장 좌석배치도



제2장 제94회 임시회

제2장 제94회 임시회

제1절 개 관

1. 개최배경

제94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재수의원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02년 7월 20일 집회공고를 하여 2002년 7월 26일 개최되었으며 본 회기중에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등 2건의 일반안건을 다루어 졌으며, 회기는 2002년 7월 26일부터 7월 29일까지 4일간으로 2차의 본회의를 가졌다.

2. 의사일정

일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고
7.26(금)	1	1. 제94회군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94회군포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군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 휴회의건	
7.27(토) ~ 7.28(일)		휴회(특별위원회 활동)	
7.29(월)	2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3. 의회활동

제9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에서는 군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군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고 2002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승인하였다.

4. 안전처리상황

안 건		의결일자	처리결과
총 계 : 6건			
조 례 안	소 계 : 1건		
	• 군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02. 7.26(제1차)	원안가결
건의 결의 동의	소 계 : 1건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02. 7.26(제1차)	원안가결
선거 선임	소 계 : 1건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02. 7.26(제1차)	선 임
기타	소 계 : 1건		
	•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02. 7.29(제2차)	원안가결
회의 진행 안건	소 계 : 2건		
	• 제94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제94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02.7.26(제1차)) .	원안가결 선 임

제2절 주요안건 처리경과 및 결과

1. 기타안

□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

-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
 - 강영시 전문위원으로부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및 토론없이 원안대로 가결함.
- 감사기간 : 2002.9.3 ~ 9.9일(7일간)
- 대상기관 : 시민만족실, 기획감사실, 시민봉사국, 경제환경국, 건설도시국, 수도사업소, 행정지원국, 보건소, 의회사무과
- 감사반 편성
 - 위 원 장 : 이재수 의원
 - 간 사 : 송정열 의원
 - 위 원 : 김재일의원, 최진학의원, 김진호의원, 김제길의원, 김판수의원, 이경환의원, 조완기의원

2. 조례안

□ 군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제안이유 : 그동안 정부의 구조조정으로 발생된 초과 현원의 경과일자에 대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7개월간 연장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사항임.
- 주요골자
2002년 1월 14일 조례 제609호로 공포된 지방공무원조례부칙 제2조 2항 초과현원의 경과조치 중 '2002년 7월 31'을 '2003년 2월 28일'로 변경.
- 의 결 : 원안가결('02.7.29)

제3장 제95회 제1차 정례회

제3장 제95회 제1차 정례회

제1절 개 관

1. 개최배경

제95회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조 및 군포시의회정례회 운영에 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02년 8월 24일 집회공고를 하여 2002년 8월 31일 개최되었으며 본 회기중에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에 관한 질문, 2001회계년도 결산안과 조례 및 기타안건이 다루어 졌으며, 회기는 2002년 8월 31일부터 9월 17일까지 18일간으로 3차의 본회의를 가졌다.

2. 의사일정

일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고
8.31(토)	1	1. 제95회군포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제95회군포시의회(제1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2001회계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4. 2001회계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7.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8.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0.시장출석요구의건	
9. 2(월)	2	1. 시정질문의 건 ○ 휴회의 건	
9. 3 ~ 9.16		휴회(특별위원회 활동)	
9.17(화)	3	1. 2001회계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2001회계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군포시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설치 및 운영조례안 5. 군포시여성발전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6. 군포시창업보육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일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고
9.17(화)	3	7. 군포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8. 군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오금동사무소 청사증축 규모변경의 건) 10.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 보건소건물 철거의 건) 11.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군포시립어린이집 건립의 건) 12. 군포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3. 의회활동

제95회 군포시의회 임시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례 및 기타안전심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01년도 결산안과 조례 및 기타안건을 심의·의결하고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으며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였다.

4. 안전처리상황

안 건		의결일자	처리결과
총 계 : 18 건			
결 산 안	소 계 : 2건		
	▪ 2001회계년도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 2001회계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승인의건	'02.09.17(제3차) '02.09.17(제3차)	원안가결 원안가결
조 례 안	소 계 : 6건		
	• 군포시기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설치 및 운영 조례안 • 군포시여성발전기금조성 및 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 군포시창업보육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안 • 군포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 군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군포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02.09.17(제3차)	부 결 원안가결 수정의결 수정의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안 건		의결일자	처리결과
건의 · 결의 · 동의	소 계 : 6건		
	• 조례 및 기타안전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02.08.31(제1차)	원안채택
	•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02.08.31(제1차)	원안채택
	•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오금동사무소 청사증축 규모변경의 건)	'02.09.17(제3차)	원안가결
	•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구,보건소건물 철거의 건)	'02.09.17(제3차)	원안가결
	•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군포시립 어린이집 건립의 건)	'02.09.17(제3차)	원안가결
	•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02.09.17(제3차)	원안채택
선거 · 선임	소 계 : 2건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02.08.31(제1차)	선 임
	• 조례 및 기타안전심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02.08.31(제1차)	선 임
회의 · 진행 · 안건	소 계 : 2건		
	• 제95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02.08.31(제1차)	원안가결
	• 제95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02.08.31(제1차)	선 임

제2절 주요안건 처리경과 및 결과

1. 조례안

□ 조례 및 기타안전심사특별위원회 구성

○ 운영기간 : 2002.9.14 ~ 16(3일간)

○ 위 원 수 : 9인

이재수, 송정열, 김재일, 최진학, 김진호, 김제길, 김판수, 이경환, 조완기 의원
(위원장 김제길 의원, 간사 김판수 의원)

□ 군포시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설치 및 운영조례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제안이유

가정폭력피해여성 복지대책의 일환으로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을 설치, 운영함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여 보호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피해여성에 대한 보호 강화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함.

○ 주요골자

- 보호시설의 업무는 가정폭력피해여성의 일시보호 및 상담, 기타 성폭력 피해자 보호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업무.
- 보호시설의 입소대상은 가정폭력피해자 및 가족구성원으로서 보호시설의 장이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하며, 퇴소대상은 보호의 목적달성 및 입소자가 퇴소를 희망하는 경우로 함.
- 보호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토록 함.

○ 의 결 : 제1차조례 및 기타안전심사 특별위원회(2002.9.14)에 상정되어 거수표결결과 재석위원 9인중 찬성2인, 반대4인, 기권 2인으로 부결되어 상정하지 아니하였음.

□ 군포시여성발전기금조성 및 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제안이유 : 군포시여성발전기금의 관리 및 운용과정에서 드러난 불합리한 조문 및 상위 법령과 불부합되는 조문을 정비하여 원활한 기금운용의 틀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기금의 용도를 취약계층 여성의 자활자립 및 보로를 위한 사업과 여성의 사회활동 촉진 및 능력 개발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
 -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및 의회 제출기한을 상위법령과 부합되도록 정리
- 의 결 : 원안가결(2002.9.17)

□ 군포시창업보육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안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제안이유 : 창업보육센터의 설치·운영 및 운영위원회의 구성을 포함한 보육센터의 사업에 대한 운영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창업보육센터의 육성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벤처 및 중소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육센터를 설치·운영함.
 - 보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학연구소 또는 관련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보육센터의 운영 및 창업지원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육센터 내에 군포시창업보육센터운영위원회를 둔다.
- 의 결 : 제1차 조례 및 기타안건 심사특별위원회(2002.9.14)에 상정되어 송정열위원의 수정안에 대한 거수표결 결과 재석위원 9인중 찬성 7인 기권 2인으로 수정 의결(2002.9.17)

□ 군포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제안이유 : 도로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현행 조례의 미비사항을 개선
· 보완코자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물을 명시
 - 무단점용에 대한 변상금을 점용료의 120%로 부과
 - 점용료 및 변상금 분할납부금과 기납부한 금액을 반환할 때 연 8%의 이자를 가산하여 징수·지급함.
- 의 결 : 제2차 조례 및 기타안전 심사특별위원회(2002.9.16)에 상정되어 김판수위원의 수정안에 대한 거수표결 결과 재석위원 9인중 찬성 9인으로 수정의결(2002.9.17)

□ 군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제안이유 : 업무추진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부서를 통합 운영하여, 청소년 및 평생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함으로써 조직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최대한 확보하여 시민을 위한 서비스행정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시설관리과를 폐자함에 따른 업무 조정
 - 문화체육과를 문화공보과와 청소년과로 분리
- 의 결 : 원안가결(2002.9.17)

□ 군포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조완기의원 외 2인
- 제안이유 : 2002년 1월 4일 공무원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 주요골자
 - 국내여비 지급기준표에 의한 여비기준 개정
- 의 결 : 원안가결(2002.9.17)

2. 결산안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 운영기간 : 2002.9.10 ~ 9.13(4일간)
- 위 원 수 : 9인

이재수, 송정열, 김재일, 최진학, 김진호, 김제길, 김판수, 이경환, 조완기 의원
(위원장 최진학 의원, 간사 김재일 의원)

□ 2001년도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 총괄내역

- 200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는 세입예산 2,193억원에 대하여 3,011억 1천9백 만원을 수납하였고, 세출예산현액은 2,697억 5천만원에 지출액은 2,024억 1천6백 만원으로 수입과 지출액의 차인잔액 987억 3백만원은 잉여금으로 발생되어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됨.
- 이월금 내역은 명사이월 53억 7천 6백만원, 사고이월 6억 3백만원, 계속 비이월 482억 6천 7백만원, 보조금집행잔액 3억 2천 2백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3억 2천 2백만원, 순세계잉여금 441억 3천 5백만원으로 결산되었음.

○ 의 결 : 원안가결(2002.9.17)

□ 2001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 예산안 규모

- 2001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는 수납액 262억 6백만원이며 지출액은 188억 1천 8백만원 으로 이월사업비가 57억 3천 2백만원, 순세계잉여금은 16억 5천 6백만원으로 결산되었음.

○ 의 결 : 원안가결(2002.9.17)

3. 동의안

□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오금동사무소 청사증축 규모변경)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제안이유
 -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을 위하여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임.
- 주요골자
 - 사 업 명 : 오금동사무소 청사증축
 - 위 치 : 금정동 871-13
 - 건축규모 : 당초 194.77㎡계획에서 354.57㎡로 증축면적을 변경
 - 사 업 비 : 당초 130백만원에서 200백만원으로 변경
- 의 결 : 원안가결(2002.9.17)

□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구 보건소건물 철거)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제안이유
 -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을 위하여 2002년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임.
- 주요골자
 - 사업명 : 구 보건소건물 철거
 - 위 치 : 당동 773
 - 규 모 : 대지 701.7㎡, 건축연면적 1,243㎡, 지하1층/지상3층
 - 사업비 : 재산가액 366백만원, 사업비 80천원
- 의 결 : 원안가결(2002.9.17)

□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군포시립 어린이집 건립)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제안이유

-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을 위하여 2002년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임.

○ 주요골자

- 사업명 : 군포시립 어린이집 건립
- 위 치 : 당동 773
- 건축규모 : 대지면적 701.7㎡, 건축연면적 826㎡, 지상2층
- 사업비 : 1,086백만원

○ 의 결 : 원안가결(2002.9.17)

4. 행정사무감사

□ 감사기간 : 2002.9.3 ~ 9.9(7일간)

□ 대상기관 : 시민만족실, 기획감사실, 시민봉사국, 경제환경국, 건설도시국, 행정지원국, 수도사업소, 보건소, 시민회관, 시립도서관, 의회사무과

□ 감사반 편성

○ 위 원 수 : 9인

이재수, 송정열, 김재일, 최진학, 김진호, 김제길, 김판수, 이경환, 조완기 의원
(위원장 이재수 의원, 간사 송정열 의원)

□ 시정사항

○ 공통사항

- 각종 시 홍보물 제작시 특정업체에 집중되어 있는 바 기술력, 용역단가 등을 비교하여 업체경쟁을 통한 예산절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
- 행정수행에 있어 실·과·소별 업무의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방안강구
- 의회에 제출하는 감사 자료에 대한 정확성 요구
- 행정사무감사시 시정요구, 건의된 사항들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요망
- 시민 건의사항에 대해 포괄적이고 원론적인 답변이 아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해결방안 강구

○ 시민만족실

- 군포문화센터 홈페이지의 조속한 구축
- 군포문화센터 운영관련 예산의 편성 및 사용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방안 강구, 위법 사항에 대한 행정조치 요구
- 군포문화센터 적자해소방안, 지역별 수강인원 격차해소, 자체평가 실시방안 강구

○ 기획감사실

- 예비비 적법사용 요구
- 예산편성전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 지방채중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도 감채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상급기관의 직원에 대한 징계요구시 주민을 위해 소신있게 업무를 추진하다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공무원을 보호해 줄 수 있도록 할것.
-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지급시 자부담금액 확보사항 확인 후 지급

○ 시민봉사국

- 금정역 주변 유흥음식점의 탈·불법행이 근절대책 강구
- 민원후견인제의 실효성이 없는 바 전면적 재검토 요구
- 현장민원실 운영 활성화 방안 강구
-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교육 강화
- 체납차량 조회용 PDA기기 활용방안 강구
-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예산 세입의 정확성을 기할 수 있는 체계적 방안 강구
- 결손처분에 앞서 철저한 검증과 공평과세(은폐, 누락방지 등)를 실현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 마련
- 부과오류에 의한 과오납 환급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
- 두산아파트 및 전양아파트의 개발부담금 체납 조기해소
-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감독 철저
- 공시지가 및 부동산중개수수료 안내 자동응답기의 사후관리 철저
- 장애인복지를 위한 리프트 구입 검토
- 장애인복지관내 전문교육강사 확충방안 강구
- 1회성 봉사활동을 지양하고 지속적인 봉사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하는 프로그램 개발

- 장애인 재활작업장의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작업시스템 마련
- 결식아동등 저소득층을 지원함에 있어 신청을 통한 지원이 아닌 전수조사를 통해 지원할 수 있는 방안 강구
- 맞벌이 부부를 위한 보육시설 확대방안 강구

○ 경제환경국

- 재래시장 활성화방안 강구
- 농가소득 증가를 위한 대책 마련
- 지역난방비 인상에 따른 시의 적극적 대처 방안 마련
- 아파트형 공장부지의 조속한 활용방안 강구
- 노사분규 사업장에 대한 행정지도의 명확한 한계를 유지
- 노동단체 예산지원과 관련하여 노사 자체행사에 예산을 지원함에 있어 세밀한 심사요구
- 중소기업육성자금의 한도액 인상방안 강구
- 금정역 주변 유흥업소의 탈·불법행위 근절대책 마련
- 관내 하천 수질개선사업의 지속적 추진
- 환경오염물질 배출 및 소음업체에 대한 근절대책 마련
- 환경관리소 안전도 성능검사시 권고사항중 안전관련 문제의 조속한 이행
- 쓰레기봉투 제작업체에 대한 지도·감독 철저와 관내 업체에 발주 할 수 있도록 조치요구
- 산업폐기물 처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 타시의 쓰레기 반입문제에 대한 인근주민의 의견수렴
- 청소용역을 위한 원가계산 용역시 격년제 실시 검토
- 이마트로 인한 교통체증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검토
- 도시계획세의 10%를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으로 편성
-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타워 건설 검토
- 도장역사 건설사업비의 차질없는 확보와 계획대로 공사

○ 건설도시국

- 자전거도로 부설시공 부분에 대한 하자보수 철저
- 공사관련 설계금액 오류로 인한 설계변경 금지
- 노점상 단속시 민원인과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용역업체에 대한 지도감독

- 도로변 광고게시판 단속
- 금정역세권 개발과 관련 구체적 계획마련, 금정역세권 개발시 금정동1, 2통 지역 포함 검토
- 부곡동 G·B구역 해제와 관련하여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과 현실적 보상방안 강구
- 부곡화물터미널 확장공사에 따른 교통문제 등 예상문제점을 확인하고 사전대책 수립
- 대형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도시계획 대책마련
- 토지구획정리지구내 단독주택지가 공동주택지로 변경되지 않도록 관리
- 초막골 근린공원 조성사업비중 국·도비 확보
- 중앙분리대를 녹지대로 조성하는 방안과 시외곽 도로의 특색있는 가로수 식재방안 검토
- 주택가 및 학교주변 송전철탑의 이설대책 강구
- 강남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하여 폐도후 우회도로를 건설 시공사 부담으로 개설
- 장기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조속한 공사재개 추진
- 강남아파트의 재건축시 고층아파트는 도시미관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재검토
- 양심 자전거 및 양심 우산에 대한 철저한 관리방안 강구
- 해외 자매결연도시 방문시 상호주의에 입각한 경비지출 요구
- 해외 자매결연도시와의 행사성 교류를 지양하고 경제협력등 실질적 교류를 할 수 있는 방안 강구
- 자율방법대 지원과 관련하여 명확한 근거등 제도적장치 마련
- 공무원 해외연수 시 그동안 소외되었던 직원 우선배정
- 수의계약 대상사업을 2000만원이하로 조정 검토
- 전자입찰시 수수료 폐지검토
- 수의계약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완료후 결과에 따라 업체별로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줄 수 있는 제도 도입 검토
-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따른 주변 교통영향평가 실시 및 주차장 확보방안 강구
- 궁내동 문화의 거리 관련 후속 공사 마무리
- 군포를 상징하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특화사업 검토
- 청소년수련원 매입과 관련하여 구거상 지상물에 대한 보상에 대해 적법성을 확인하고 구상권 행사요구

- 청소년수련원 감정평가와 관련하여 사인간 거래금액을 국세청등에 확인 후 감정평가가
과다 평가되었을 경우 법적대응 요구
- 홈페이지 관련 서버의 성능저하나 이용자 급증으로 인한 대책 마련
- 정보화마을과 시티넷의 구성과 운영이 부실한 바 이에 대한 대책마련
- 공연의 질 향상을 이해 공연 기획전문가 고용 검토
- 도서관 신·증축 검토
- 도서관 식당관련 민원의 적극적인 검토

○ 보건소

- 민간 자율방역단 활동의 내실있는 지원책 마련
- 정신보건센터의 효율적 운영방안 강구
- 방영위탁업체의 중도포기에 대한 대책 강구

○ 수도사업소

- 수도물의 안전성에 대한 대시민 홍보강화
- 수도요금납부시 시중은행에서 수납을 거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마련

5. 시정질문

제95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2002.9.2)에서 군포시장을 비롯한 관계 실·국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김재일 의원외 2인의 의원이 다음과 같이 시정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았다.

□ 시정에 관한 질문

○ 질 문 : 김 재 일 의원

• 질문내용

군포를 문화도시로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 답 변(시장)

지역대표 축제 개발로 군포시가 문화도시로의 이미지를 널리 알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고 있으며 전통문화의 전 승·보급 측면에서는 우리 시는 다른 지역에 비해 전통문화 자원이 상대적으로 빈약한 실정이나 조선백자도요지, 전통종가,

방짜유기전수관 등 문화탐방 코스를 개발중에 있으며 문화전용 공간 외에도 시민체육 광장, 실내체육관, 공연, 수리산, 대단이 쇼핑몰 등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 가능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

• 질문내용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계획은?

→ 답 변(경제환경국장)

건축물 부설주차장 세대당 설치기준을 한층 강화하였으며 단독주택의 담장을 허물어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시민에게는 예산을 지원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 시행하고 있으며 연차적으로 도심지 내 공한지 및 구획정리사업지구 내 부지를 매입하여 중·소형의 공용주차장을 지속적으로 건설해 나가면서 주택가 내 이면도로를 일방 통행으로 지정하여 여유공간을 노상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현재 시행중으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임.

○ 질 문 : 김 진 호 의원

• 질문내용

환경관리소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 답 변(시장)

환경오염에 대한 주민 의혹과 불신을 해소코자 환경관리소 전학 실시와 홈페이지 운영 및 자동감시장치인 TMS를 24시간 가동하고 있으며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법적 검사 이외의 안전도 성능검사를 독일업체에서 실시하여 오염물질 측정결과 및 건물 안전도 성능에 대한 적합한 판정을 받아 환경관리소가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음이 입증되었음.

• 질문내용

에너지시장 민영화에 따라 발생되고 있는 문제에 대한 우리시의 기본적인 정책방향과 향후 정책방향은?

→ 답 변(경제환경국장)

민영화로 무리한 요금인상이 있을 경우 시의회, 시민단체 등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아울러 이와 같은 문제를 함께 할 인근 안양, 과천, 부천시와 연계하여 중앙 정부 및 관계기관에 시정할 것을 건의할 것임.

• 질문내용

한미아파트 재건축 관련 민원사항에 대한 시장의 입장은?

→ 답 변(건설도시국장)

민원을 제기한 상가건물 소유자들과 한미아파트재건축조합 측과의 내부적인 분쟁에 대한 원만한 협의를 이끌어 내지 못한 점에 대하여는 아쉬움이 있지만 시 행정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한계에 있음, 그러나 시에서는 동 민원사항이 최대한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 질문내용

예산공개에 대하여?

→ 답 변(기획감사실장, 행정지원국장)

주민의견이 반영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시민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군포시 홈페이지에 예산을 공개 운영하고 있음.

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의 행정책임자로서 지역개발, 주민화합, 지역안정 등 포괄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기관·단체와 업무협조, 불우한 주민이나 하위 공무원의 격려, 각종 시책에 따른 간담회는 물론이고 시정협조자에 대한 사례 등에도 사용되는 경상적 경비입니다. 따라서 본 지출내용이 여과 없이 공개될 경우 상대방에 대한 명예나 인격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고 교류범위에 대한 논란의 소지와 함께 상대방 간의 수혜도 비교 등에 공개에 따른 긍정적인 측면보다 역효과가 우려되어 각 지방자치 단체가 비공개로 하여 왔던 것이 관례화 되어왔습니다. 그러나 주변여건 변화 등 행정의 투명성이 중요시 되어 가는 상황이므로 우리 시에서도 적절한 시기에 상황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공개해 나가도록 할 것임.

• 질문내용

예산편성시 시민단체를 참여시킬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 답 변(기획감사실장)

예산심의 확정권의 의회의 고유권한으로 의회에서 요청을 한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질문내용

시금고 선정에 관한 투명성 확보방안에 대하여?

→ 답 변(시민봉사국장)

시금고 선정은 시정여건과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금고대행업무 취급능력이 있어야 하며 특히 지방자치단체 예금은 대부분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공금이나 현재 예금자보호법에 의해서 제외되고 있어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어 안정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제규정에 의한 종합적인 방안을 검토하여 최대한 공정하고 안정성 있게 선정되도록 하겠음.

○ 질 문 : 조 완 기 의원

• 질문내용

시 이미지 특성화를 위한 거리조성에 대하여?

→ 답 변(시장)

특색있는 군포시 만들기 및 도심지 녹화를 위한 녹지공간 확보를 위해 군포시에 가능한 주요도로 중앙선에 녹지분리대를 조성하고 군포시 외곽도로변 가로수를 연차적으로 교체하여 금정역, 구주공 아파트 단지의 벚꽃거리와 함께 특색있는 도시를 만들도록 하겠음.

제4장 제96회 임시회

제4장 제96회 임시회

제1절 개 관

1. 개최배경

제96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군포시장의 임시회 소집요구로 2002년 10월 5일 집회공고를 하여 2002년 10월 12일 개최되었으며 본 회기 중에는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2건과 군포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 및 기타안건 7건의 안건이 다루어 졌으며 회기는 2002년 10월 12일부터 10월 22일까지 11일간으로 2차의 본회의를 가졌다.

2. 의사일정

일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고
10.12(토)	1	1. 제96회군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96회군포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7.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8.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 휴회의건	
10.14 ~ 10.21		휴회(특별위원회 활동)	
10.22(화)	2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군포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군포시민원재심의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5. 군포시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6. 군포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7. 군포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8. 군포시경기충북지역정보센타설립운영조례폐지조례안 9.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3. 의회활동

제9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에서는 군포시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례 및 기타안전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02년도 제2회추경예산안과 조례 및 기타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4. 안전처리상황

안 건		의결일자	처리결과
총 계 : 14건			
예산 안	소 계 : 2건		
	·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02.10.22(제2차) "	수정의결 원안가결
조 례 안	소 계 : 6건		
	1.군포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02.10.22(제2차)	원안가결
	2.군포시민원재심의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	부 결
	3.군포시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 및 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4.군포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5.군포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6.군포시경기중부지역정보센터설립운영조례폐지조례안	"	원안가결
건의 · 결의 · 동의	소 계 : 2건		
	·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조례 및 기타안전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02.10.12(제1차) "	원안가결 "
선거 · 선임	소 계 : 2건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 조례 및 기타안전심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02.10.12(제1차) '02.10.12(제1차)	선 임 선 임
회의 · 진행 · 안건	소 계 : 2건		
	· 제96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제96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02.10.12(제1차) "	원안가결 선 임

제2절 주요안건 처리경과 및 결과

1. 조례안

□ 조례 및 기타안전심사특별위원회 구성

- 운영기간 : 2002.10.19 ~ 10.21(3일간)
- 위 원 수 : 9인
이재수, 송정열, 김재일, 최진학, 김진호, 김제길, 김판수, 이경환, 조완기 의원
(위원장 이재수 의원, 간사 송정열 의원)

□ 군포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제안이유 :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라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시장 권한 중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조정하여 주민등록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함.
- 주요골자
 - 주민등록증 발급용지 관리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
 - 주민등록표의 열람 등·초본 교부관련 법 조항을 조정함.
- 의 결 : 원안가결(2002.10.22)

□ 군포시민원재심의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제안이유 : 민원재심의 안전이 발생될 경우는 민원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법률시행령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민원조정위원회를 통해 수시로 심의할 수 있어, 군포시민원재심의위원회 운영조례를 폐지하기 위함.
- 주요골자
 - 동 조례 폐지
- 의 결 : 부결(2002.10.19일 조례 및 기타안전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되었으나 재석의원 7인중 반대 7인으로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함)

□ 군포시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 및 수수료등의부과 · 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제안이유 : 유통매장이나 종량제봉투판매소 등에서 1회용 비닐봉투 대신 종량제봉투를 쇼핑백의 대용으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환경 의식을
- 주요골자
 - 쓰레기봉투의 종류 중 재사용종량제 봉투를 추가하여 색상은 연두색으로 하고 용량은 10리터, 20리터 2종류로 한다.
 - 재사용종량제봉투의 색상 개선
- 의 결 : 원안가결(2002.10.22)

□ 군포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제안이유 : 군포시도시계획조례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정한 용적율에도 불구하고 동조례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적율의 완화규정으로 인하여 완화규정을 적용 받는 일부 건축물과 인접한 주택 등 건축물과의 용적을 불균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조권과 사생활의 침해 및 도시미관의 저해를 예방하고자 용적을 완화규정을 삭제코자 함.
- 주요골자
 - 준주거지역 · 중심상업지역 · 일반상업지역 · 근린사업지역 · 전용공업지역 · 일반공업지역 ·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의 완화규정 삭제
- 의 결 : 원안가결(2002.10.22)

□ 군포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제안이유 :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정보화마을의 조성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 주요골자
 - 정보화마을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

-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신청 및 행·재정적 지원할 수 있는 사항과 시설장비에 대한 제반권리를 규정하고 지도감독에 대한 사항을 정함
- 의 결 : 수정가결(2002.10.22 조례 및 기타안전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재석의원 8인중 찬성 8인 반대 1인으로 수정가결)

□ 군포시경기중부지역정보센터설립 및 운영조례폐지조례안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제안이유
 - 군포·안양시 지역정보화공동추진위원회에서 ‘지역정보센터 설립 유보(2001.10.8)’로 결정되면서 동조례에 대한 효력을 존속할 필요가 상실됨
 - 2002.4.9일에 있는 경기도의 안양시 종합감사에서 지역정보화공동사업에 대한 행·재정적 장비요인을 지적하고 시정할 것을 권고함.
- 주요골자
 - 동조례 폐지
- 의 결 : 원안가결(2002.10.22)

2. 예산안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 운영기간 : 2002.10.14 ~ 10.18(5일간)
- 위 원 수 : 9인
이재수, 송정열, 김재일, 최진학, 김진호, 김제길, 김판수, 이경환, 조완기 의원
(위원장 이경환 의원, 간사 조완기 의원)

□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예산규모

(단위 : 천원)

구 모	예산안	기정예산	증감	비고
총 계	218,296,845	202,135,502	16,161,343	
일반회계	160,116,089	141,164,917	18,951,172	
특별회계	58,180,756	60,970,585	△2,789,829	

○ 의 결 : 수정의결(2002.10.22)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일반행정비 7,822천원, 사회개발비 17,150천원, 경제개발비 41,000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

□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예산규모

(단위 : 천원)

구분		사업예산	자본예산	자금예산
수 입	예 산 액	12,000,975	5,401,600	25,531,967
	기정예산	11,819,197	5,292,200	25,240,789
	증 감	181,778	109,400	291,178
지 출	예 산 액	11,724,963	8,075,106	25,231,967
	기정예산	11,578,710	7,930,181	25,231,967
	증 감	146,253	144,925	291,178

○ 의 결 : 원안가결(2002.10.22)

3. 동의안

□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제안이유
 -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을 위하여 200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임.
- 주요골자
 - 당동 830-1번지의 1건의 대지를 한미아파트 재건축 조합에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임
- 의 결 : 원안가결(2002.10.22)

제5장 제97회 임시회

제5장 제97회 임시회

제1절 개 관

1. 개최배경

제97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재수의원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02년 11월 12일 집회공고를 하여 2002년 11월 18일 개최되었으며 본 회기 중에는 군포부곡지구택지개발사업에관한 건의안 1건의 안건이 다루어졌으며, 회기는 2002년 11월 18일 1일간으로 1차의 본회의를 가졌다..

2. 의사일정

일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고
11.18(월)	1	1. 제97회군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97회군포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군포부곡지구택지개발사업에관한건의안	

3. 의회활동

제97회 군포시의회 임시회에서는 군포부곡지구택지개발사업에관한 건의안을 심의·의결하였다.

4. 안건처리상황

안 건		의결일자	처리결과
총 계 : 3건			
건의	소 계 : 1건		
	• 군포부곡지구택지개발사업에관한건의안	'02.11.18(제1차)	원안채택
회의 진행 안건	소 계 : 2건		
	• 제97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제97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02.11.18(제1차) "	원인가결 선 임

제2절 주요안건 처리경과 및 결과

1. 건의안

□ 군포부곡지구택지개발사업에관한건의문

- 제 출 자 : 이재수의원외 6인
- 제안이유 : 공동주택건설계획이 25.7평이하 소규모 평형이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산본 신도시에 소규모 영구임대아파트가 많이 건설된 점을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동 사업은 최소한의 주거공간이 확보 될 수 있는 24평 이상의 아파트들이 건설되어야하며, 동 사업지구는 30년 동안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유재산권의 침해로 인한 금전적·정신적 손해를 마땅히 보상받아야 하기에 군포시의회 의원일동은 해당지역 주민의 불편해소와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합리적인 도시개발계획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되어 건의
- 의 결 : 원안가결(2002.11.18)

※ 군포부곡지구택지개발사업에관한건의안

군포부곡지구 개발계획은 군포시 부곡동 일원에 택지의 효율적인 개발과 저렴한 공급으로 주택난을 완화하고 국민주거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코자 대한주택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산본신도시를 조성할 당시에 영구임대아파트가 타도시보다 많이 건설된 점을 감안,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비율을 당초 58.4%:41.6%에서 75%:25%로 낮추고, 임대주택은 장기임대주택 위주로 건설토록 하여 소형평형보다는 실질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최소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24평형 이상으로 건설하여 시민들이 정주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주대책 단독 필지를 주민들이 요구하는 606번지를 중앙기점으로 6블럭 단지구역으로 변경하여 원주민의 우선권에 의한 선택권을 부여하여 집단민원을 사전 예방토록 하여주시고,

군포부곡지구는 기존 시가지 지역과 생활권이 분리되어 있으므로 주민불편이 예상되니 사전 군포시와 충분히 협의하여 동 사업지구 전·출입도로를 기존 도시계획 도로와 연계 할 수 있도록 반드시 도로망을 확충하고 이에 대한 사업은 시행자(대한주택공사) 부담으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발지역의 수용인구와 생활권을 감안하여 사업시행자가 관련기관(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경찰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군포2동으로부터 분동, 파출소 설치, 소방파출소의 설치 등 최소한의 행정설치 계획을 명확히 하여 향후 입주민들이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행정여건을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 사업지구를 광역도시계획수립 지침에 의거 그린벨트를 선 해제 후 주민의 의견을 청취 후 개발토록 하기 바라며, 사업시행에 따른 보상은 토지는 제한받지 아니한 토지로 평가되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대토부지에는 무료주차장 설치, 고목의 이식보존, 의왕시 초평동과 연결 할 수 있는 도로 설치, 방음벽을 추가 설치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되도록 하여 주시고,

부곡천을 자연친화적으로 개발하고, 초평천은 상습 범람지역으로 배수용량이 현재의 2.5배 이상의 배수시설을 설치토록 하여주시기 바라며, 동 사업지구는 산본 신도시와 생활권역이 떨어진 지역으로 도시기반시설이 취약하고 자족도시의 기능이 없는 관제로 15,000명 ~ 20,000명을 수용 될 수 있도록 사업면적이 확대 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군포부곡지구 개발계획은 택지의 효율적인 개발과 저렴한 공급으로 주택난을 완화하고 국민 주거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으로 지역주민과의 충분한 협으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상기와 같은 건의안을 적극 수용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6장 제98회 제2차 정례회

제6장 제98회 제2차 정례회

제1절 개 관

1. 개최배경

98회 정례회는 군포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02년 11월 22일 집회공고하고 2002년 12월 2일 개최한 제2차 정례회로서 시정에 관한 질문, 2003년도 예산안을 비롯한 조례 및 기타안건이 다루어졌으며, 회기는 2002년 12월 2일부터 12월 18일까지 17일간으로 3차의 본회의를 가졌다.

2. 의사일정

일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고
12. 2(월)	1	1. 제98회군포시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제98회군포시의회(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2003년도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2003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7.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8.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9. 시장출석요구의건	
12. 3(화)	2	1. 시정에관한질문 ○ 휴회의건	
12. 4 ~ 12.17		• 휴회(특별위원회 활동)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12.18(수)	3	1. 2003년도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03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군포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제정안 4. 군포시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군포시새마을기금조성 및 관리조례폐지조례안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고
12.18(수)	3	6. 군포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 7. 군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8. 군포시하수도사용료조례중개정조례안 9.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대야동 둔터마을 경로당 건립) 10.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노인복지회관증축) 11.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금정동사무소 시립어린이집 설치에 따른 건물 일부철거 및 신축) 12.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군포시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13.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공유재산 관사 매각) 14.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시청사 부속시설 철거 및 건립) 15. 군포·의왕 도시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해제)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건 16.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취락지구 지정에 따른 군포시도시계획결정(변경)인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8.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	

3. 의회활동

제98회 군포시의회 정례회에서는 군포시장으로부터 2003년도 시정전반에 걸친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고 12월 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시장등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최진학 의원외 1인의 의원이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군포시장 및 관계공무원에게 답변을 들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례 및 기타안전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03년도 예산안과 조례 및 기타안전을 심의·의결하였다.

4. 안전처리상황

안 건		의결일자	처리결과
총 계 : 25 건			
예 산 안	소 계 : 2건		
	2003년도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3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02.12.18(제3차)	수정의결 원안가결

안		의결일자	처리결과
조 례 안	소 계 : 6건		
	1. 군포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제정안	'02.12.18(제3차)	원안가결
	2. 군포시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
	3. 군포시새마을기금조성 및 관리조례폐지조례안	"	"
	4. 군포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	"	"
	5. 군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	"
	6. 군포시하수도사용료조례중개정조례안	"	"
보 고 질 문	소 계 : 1건		
	• 시정에관한질문	'02.12.3(제2차)	질문,답변
건의 결의 동의	소 계 : 11건		
	•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02.12. 2(제1차)	원안가결
	• 조례 및 기타안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
	•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대야동 둔터마을 경로당 건립)	'02.12.18(제3차)	"
	•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노인복지회관 증축)	"	"
	•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금정동사무소 시립어린이집 설치에 따른 건물일부 철거 및 신축)	"	"
	•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군포시 근로자중 합복지관 건립)	"	부 결
	•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공유재산관사 매각)	"	원안가결
	•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시청사부속시설 철거 및 건립)	"	"
	• 군포·의왕 도시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해제)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
	•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취락지구 지정에 따른 군포시도시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	"
	• 새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	"	"
선거 · 선임	소 계 : 2건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 조례 및 기타안검심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02.12. 2(제1차) "	선 임 "
기타	소 계 : 1건		
	• 시장출석요구의건	'02.12. 2(제1차)	원안가결
회의 진행 안건	소 계 : 2건		
	• 제98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 제98회제2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02.12. 2(제1차) "	원안가결 선 임

제2절 주요안전 처리경과 및 결과

1. 조례안

□ 조례 및 기타안전심사특별위원회 구성

○ 운영기간 : 2002.12.4 ~ 12.5

○ 위 원 수 : 9명

이재수, 송정열, 김재일, 최진학, 김진호, 김제길, 김판수, 이경환, 조완기 의원

(위원장 : 이재수 의원, 간사: 송정열 의원)

□ 군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제안이유 : 교통정비촉진법의 개정으로 상주인구 10만 이상의 도시에서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교통유발량이 현저히 적거나 공익상 부과가 적절하지 아니한 무인변전소, 정수처리장 및 배수지등에 대하여 부담금 면제
- 시설물의 단위부담금을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당 500원, 2천 제곱미터 미만은 1제곱미터당 350으로 함
- 교통유발 부담금의 경감절차, 방법, 경감대상시설물의 범위, 경감비율, 감축기간 및 교통량감축 이행계획서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
- 승용차부제운행, 출근시차제등 교통감축프로그램 이행에 따른 경감비율은 교통유발 부담금의 100분의2 내지 100분의 30으로 함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함

○ 의 결 : 원안가결(2002.12.18)

□ 군포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등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제안이유 : 조례근거법령인 도로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과 상이한 부분이 있어
기 개정완료 하였으나 경기도에서 검토결과 일부 규정이 상위법에 저촉되어
재개정하라는 권고사항에 따라 조례의 일부를 수정하고자함.
- 주요골자
 - 도로는 관리청이 당연조치 및 관리할 사항으로 단서조항 삭제
 - 법령의 취지와 달리 유권해석의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법령과 동일하게 하거나 법령과
중복되므로 삭제함
 - 의의신청에 관한 규정 중 '준용'이 아닌 '적용'이라는 용어사용
- 의 결 : 원안가결(2002.12.18)

□ 군포시 마을기금 조성 및 관리조례 폐지 조례안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제안이유 : 마을기금의 조성과 관리에 기준을 정하여 마을기금의 생산적인 활용을 기하고자
'89년도에 제정된 이후 실효성 없이 존치됨에 따라 폐지하기 위함.
- 주요골자 : '동 조례 폐지'
- 의 결 : 원안가결(2002.12.18)

□ 군포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제안이유 : 새마을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기 위한 금고 설치·운영을 위해
제정되었으나 자금의 운용규모가 적고 '96년 이후 융자실적이 유명무실하게
존치됨에 따라 폐지하기 위함
- 주요골자 : '동 조례 폐지'
- 의 결 : 원안가결(2002.12.18)

□ 군포시 수도급수조례중 개정 조례안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제안이유 : 상수도 요금이 생산원가보다 현저히 낮아 매년 적자가 발생하고 있어 상수도 요금을 생산원가 수준으로 현실화 하고, 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과 옥내누수 요금감면 대상기간을 명확히 하기 위함
- 주요골자
 - 수도사용자등의 관리상의 책임 범위에 검침을 위한 장치 추가
 - 옥내누수에 대한 요금감면 대상기간을 1월분으로 명확히 규정
 - 상수도요금 평균 27.8% 인상
- 의 결 : 원안가결(2002.12.18)

□ 군포시 하수도급수조례중 개정 조례안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제안이유 : 표준하수도사용조례기준 변경으로 일부조항 변경과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누적적자 해소 및 하수도지방공기업전환에 대비하기 위하여 하수도 요금을 인상하고자 함
- 주요골자
 -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을 위하여 군포시 하수도사용조례를 매년 개정하였으나 동 조례 개정으로 원인자 부담금 부과에 따른 하수발생량 및 부과 등에 대하여 시보등에 별도고시
 - 하수도 사용료의 요율표 및 업종구분을 군포시수도급수조례와 동일하게 변경 및 사용료 평균 20%인상
 - 환경부의 표준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방식 변경으로 군포시 하수도사용조례 원인자 부담금 산정방식 변경
- 의 결 : 원안가결(2002.12.18)

2. 예산안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 운영기간 : 2002.12.6 ~ 12.17(12일간)

○ 위 원 수 : 9명

이재수, 송정열, 김재일, 최진학, 김진호, 김제길, 김판수, 이경환, 조완기 의원

(위원장: 최진학 의원, 간사: 김재일 의원)

□ 200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예산규모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안 (A)	전년도예산액 (B)	증△감 (A-B)	비고
총 계	194,402,553	156,323,629	38,078,924	
일반회계	151,270,769	127,289,342	23,981,427	
특별회계	43,134,874	29,034,287	14,097,497	

○ 의 결 : 수정가결(2002.12.18)

군포시장이 제출한 200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일반회계 세입 예산 24억 867만원 감액으로 총 예산 1,944억 255만 3천원에서

1,919억 9,388만 3천원으로 예산규모가 감소되었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68억6,600만 8천원을 삭감하여 국·도비 감액분을 제외한 44억 5,733만 8천원을 예비비로 증액하여 수정가결

□ 2003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예산규모

(단위: 천원)

구 분		사 업 예 산	자 본 예 산	자 금 운 영
수 입	예 산 액	14,413,444	1,691,377	16,104,821
	전년도예산	12,520,031	3,363,324	16,183,355
	증감	1,893,413	△1,917,947	△78,534
지 출	예 산 액	13,484,273	2,620,548	16,104,821
	전년도예산	12,114,414	4,074,267	16,183,355
	증감	1,369,859	△1,453,719	△78,534

○ 의 결 : 원안가결(2002.12.18)

3. 동의안

□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대아동 둔터마을 경로당 건립)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제안이유 :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을 위하여 200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결을 받고자하는 것임.

○ 주요골자

(단위 : m², 백만원)

위 치	지 목	용 도 지 역	건 립 규 모				사 업 비	사 업 기 간	비고
			대지 면적	건 축 면적	층수	구조			
하천 부지	G/B	264	132	지상 2층	적벽돌철근 콘크리트 스라브	199 토지: 24 건축:175	2003.1 ~ 2003.12	둔대동 555-13	하천 부지

○ 의 결 : 원안가결(2002.12.18)

□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노인복지회관 증축)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제안이유 :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을 위하여 200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임.
- 주요골자

(단위 : ㎡, 백만원)

위 치	지 목	용 지 역	증 축 규 모				사 업 비	사 업 기간	비고
			현재 면적	증 축 면적	층수	구조			
대지	일반 주거 지역	2,498	1996	2개층	철근콘크리트 스라브	1,286	2003.1 ~ 2003.12	남동 887	대지

- 의 결 : 원안가결(2002.12.18)

□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금정동사무소 시립어린이집 설치에 따른 건물 일부철거 및 신축)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제안이유 :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을 위하여 200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임.
- 주요골자

(단위: ㎡, 백만원)

위 치	지 목	용도 지역	건 립 규 모					사 업 비	사업 기간	비고
			철거 면적	대지 면적	신축 면적	층수	구조			
대지	공공시설 용지	257.4	729.8	284.3	지상 2층	철근콘크리트	301	2003.3 ~ 2003.7	금정동 728-10	대지

- 의 결 : 원안가결(2002.12.18)

□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포시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제안이유 :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을 위하여 200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임.
- 주요골자

(단위: ㎡, 백만원)

위 치	지 목	용도 지역	건 립 규 모				사 업 비	사업 기간	비고
			대지 면적	건 축 면적	층수	구조			
대지	공공시설 용지	257.4	729.8	지상 2층	철근콘크리 트스라브	7,650	2003.3 ~ 2005.12	금정동 728-10	대지

- 의 결 : 부결(찬성1, 반대6, 기권2) (2002.12.18)

□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공유재산 관사 매각)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제안이유 :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을 위하여 200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임.
- 주요골자

(단위: ㎡, 백만원)

소 재 지	면 적	건축년도	층 수	취득가액	재산가액	사업기간
오금동 삼익소월 (0)379-902호	149.58	'96	9층/25층	240	295	2003.3
금정동 신한(아) 101-1003	84.98	'89	10층/15층	43	130	2003.7

- 의 결 : 원안가결(2002.12.18)

□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청사 부속시설 철거 및 건립)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제안이유 :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을 위하여 200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결을 받고자하는 것임.

○ 주요골자

(단위: ㎡, 백만원)

위 치	지 목	용도 지역	건 립 규 모					사 업 비	사업 기간	비고
			철거 면적	대지 면적	신축 면적	층수	구조			
대지	공공시설 용지	720	3,510	6,064.92	지상 4층	철 골 구조물	1,491	2003.1 ~ 2003.8	금정동 844	대지

○ 의 결 : 원안가결(2002.12.18)

□ 군포·의왕 도시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해제)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제안이유

- 수도권등 대도시권에서 진행하고 있는 광역도시계획중에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의 설정기준에 부합되는 지역에 대하여 서민층의 주거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한 국민임대주택 단지조성을 하고자함
- 건설교통부에서 도시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 절차를 추진하기 위하여 개발 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의 구정에 의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함.

○ 주요골자

- 도시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안)내용

도시명	구 역 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 경	변경후	
의왕	개발제한구역	의왕시삼동,초평동 일원	24,710	감)0.460	24,250	
군포	개발제한구역	군포시 부곡동 일원	49,810	감)0.010	49,800	

- 도시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안)내용

구분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군포시 부곡동, 당동, 당정동, 산본동, 금정동, 둔대동, 속달동, 대야미동, 도마교동	24,710	
	의왕시 삼동, 초평동, 고천동, 이동, 왕곡동, 오전동, 학의동, 내손동, 청계동, 포일동, 월암동	49,810	
변경	군포시 부곡동, 당동, 당정동, 산본동, 금정동, 둔대동, 속달동, 대야미동, 도마교동	24,520	감 0.460km ² (부곡동일원)
	의왕시 삼동, 초평동, 고천동, 이동, 왕곡동, 오전동, 학의동, 내손동, 청계동, 포일동, 월암동	49,800	감 0.010km ² (삼동,초평동일원)

○ 의 결 : 원안가결(2002.12.18)

□ 개발제한구역해제 및 취락지구지정에 따른 군포시도시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제안이유

- 개발제한구역안의 집단취락에 대하여 지역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고, 개발제한 구역의 해제를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 및 제14조에 의거 입안하고 동법 제7조에의거 도시계획으로 결정하고자 동법 제6조의 규저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임

○ 주요골자

- 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내용

구 역 명	위 치	면적(m ²)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개발제한구역	군포시 일원	24,711,000	감)463,687	24,247,313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내용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지구단위 계획구역	당동 신기마을외 8개소	24,711,000	간)463,687	24,247,313	

- 집단취락지구 결정(변경)내용

구 분	지 구 명	위 치	면 적(㎡)	비 고
신 설	남다골	군포시 속달동 358-3번지 일원	51,574	
신 설	새골	군포시 도마골동 11번지 일원	15,471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내용

- 도로 : 소로 78개 노선
- 어린이공원 : 6개소
- 주차장 : 9개소

○ 의 결 : 원안가결(2002.12.18)

□ 제3기 지역보건 의료 계획안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제안이유 : 지역주민의 건강에 대한 관심증대와 지역 공공 의료기관으로서의 보건소의 역할과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보건의료 사업을 개발하고, 보건의료시책의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사업추진으로 시민 만족의 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우리시의 제3기(2003~2006년) 계획을 수립 시행 하고자함.

○ 주요골자

-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 목표
- 지역현황과 전망

-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간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

- 보건소 업무의 추진방향과 향후 추진계획

○ 의 결 : 원안가결(2002.12.18)

4. 시정질문

제9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02.12.3)에서 군포시장을 비롯한 관계 실·국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최진학 의원 등 2인의 의원이 다음과 같이 시정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았다.

□ 시정에 관한 질문

○ 질 문 : 최진학 의원

• 질문내용

가칭 '도장역사'의 신설에 관한 그간의 추진현황과 철도청과의 협약에 의한 공사진척 및 이행현황에 대하여?

→ 답 변(시장)

도장역사 신설사업은 '98.9.8일 4·5단지 주민 6,600세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90%이상이 적극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으며 타당성 조사는 철도청 및 철도기술연구원등과 협의하여 '99.3.24일부터 2개월간에 걸쳐 서울 대학교 공학연구소에 의뢰하여 시행하였고 그 결과 경기도 철도청 예산청등 관련기관 협의를 하였으며, 이후에도 수차에 걸쳐 철도청장과 면담하고 추진방법과 사업비 분담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한 끝에 '99.12.6일 철도청과 도장역사 신설 협약서를 체결하였으며, 도장역사 신설사업비는 철도청과의 협약에 1백억 5백만원을 산정하였으나 공사과정 노약자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추가되어 당초대비 24억 1천 3백만원을 증액된 1백 24억 1천 8백만원으로 증액되었으며, 기 체결된 협약서에 따라 군포시와 철도청이 각각 75%와 25%를 분담하도록 되어있으며 역사준공은 반드시 사업비 정산후 처리하도록 할것입니다. 도장역사의 현재공정은 60%의 공정으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도장역사가 완공되면 명실상부한 사통팔달의 교통 중심지로서 인근주민의 편익증진과 더불어 경제적으로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질문내용

당정·대야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택지조성시 단독주택지와 공동주택지의 배치가 당초 사업계획과 달리 변경되는 사안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하여?

→ 답변(시장)

당정·대야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는 단독주택지와 공동주택지가 입지특성에 따라 적절하게 배분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지구는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단독주택지에도 다세대, 다가구, 주택전축이 가능합니다.

당정지구 일부지역의 단독주택지가 공동주택지로 변경 될 경우 당초 수용계획보다 인구가 현저히 증가하여 공공시설인 학교, 녹지공간 등의 추가확보가 필요하며 현재 공정율이 54%로서 2003년말까지 공사완료 후 확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어 변경 시에는 토지매입 및 인허가 절차인 교통영향평가 재협의,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시행사업 및 환지계획 변경인가 이행 등으로 약 2년간 소요되어 다른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가 늦어지는데 따른 추가민원이 우려 됩니다! 따라서 당정지구내 일부 단독주택지의 공동주택지로의 변경은 제반여건상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대야 지구는 인구수용계획 기준으로 공동주택을 건립할 경우 오히려 수용인구가 감소되고 주거지역의 용도 세분화 계획에 의거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한 2종 일반주거지역내 건축행위가 가능하므로 조례규정에 의한 법적 건축한도 내에서 사업시행 예정자가 대상지의 토지를 완전히 확보하여 등기이전 완료 후 도시기반시설 허용범위 내에서 공공시설을 추가확보하고 인구수용계획 내에서 건축계획을 수립할 경우 주거환경이 양호한 공동 주택지로의 전환에 대해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 질문내용

민선2기 4년간의 공과와 민선3기의 최우선 시정목표 및 리더십의 지도방침과 시장의 정치적 철학에 군포시민과 시의회의 어떤 도움과 지지가 필요한지 대하여?

→ 답 변(시장)

지난 민선 2기에는 제2의 국난이라고 불리던 IMF 위기를 맞아 시정을 운영하는데 에도 많은 고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7만 군포시민과 6백여 공직자가 일심동체가 되어

『큰시민 작은시』라는 시정이념을 바탕으로 시민과 각급단체의 사정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한편 행정 내부적으로는 관료의식의 타파와 규제완화 등을 통해 시민이 주인이 되는 열린시정과 생산적인 경영행정이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민선2기 4년간의 시정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재선된 민선3기에는 그 동안의 성과에 자만하지 않고 언제나 초심신의 자세로 시장직을 수행해 나갈 계획이며 한편 시민 시의회와 시장은 각기 고유의 권한과 의무를 부여받고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협조적 동반자의 위치에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각기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같이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질문내용

군포배수지 역할무용론과 관리예산 과다투입 송·배수관로 지하매설도 확보여부 등에 대하여?

→ 답 변(시장)

군포배수지는 산본 신도시가 조성되기 이전인 '90년도에 금정배수지 배수구역을 제외한 기존도시 전 지역의 급수난을 해소하기위해 총 15억 1,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배수용량 1만톤 규모로 '91.11월에 완공한 시설로서 '93년 5월 군포정수장 통수이후에는 지대가 높은 군포정수장과 군포배수지 관로를 연결하여 사용 하였으나 당동, 대야동, 부곡동 등 고지대 지역의 잦은 단수발생으로 기능이 저하됨에 따라 부득이 정수장에서 단수 발생지역에 직접 수돗물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정수장 1일 평균 생산량이 80,000톤이고 금정배수지 외 3개 배수지의 담수용량은 34,800톤 규모이기 때문에 그동안 군포배수지는 계절적으로 물을 많이 사용하는 여름철과 원수의 단수 및 비상시를 대비하여 예비 및 비상용으로 사용했으며 2001년부터 급수구역 개량사업을 실시하여 2002.11.4일부터 1일 약 3,000톤 수돗물을 산본1동과 금정동 저지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27만 군포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을 충분히 생산 공급하여 칭찬받는 수도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질 문 : 이경환 의원

• 질문내용

특수목적고 설립을 위한 부지선정 및 재원조달 방안과 기존 고등학교를 명문고로 육성하는 방안 등 에 대하여?

→ 답 변(시장)

고교평준화 적용지역이 확대되면서 지자체별로 특수목적고를 설립하는 지역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우리시에서도 우수인재의 외지유출 방지 등을 위해 관내에 특수목적고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시민들 중심으로 적극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이러한 시민들의 욕구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설립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나 특수목적고 설립사업이 경기도 교육청 권한사항 인데다 지자체에서 학교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시설비의 50%이상을 부담해야하는 등의 조건이 있으므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할 방침입니다.

기존 고등학교를 명문고로 육성하기 위해 100억원 규모의 교육발전기금을 내년부터 조성하여 교육환경 개선사업 등에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 질문내용

군포복합화물터미널 확장과 관련한 중앙정부 협의내용과 환경오염과 주민폐해 등에 대한 예방대책에 대하여?

→ 답 변(시장)

국토연구원의 군포복합화물터미널 시설확장 타당성 검토 용역결과에 의하면 2011년 군포복합화물터미널의 수요측인 정부 안양축에 상당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전자상거래 및 홈쇼핑 등으로 택배화물이 급증하여 시설용량이 수도권 물류 기지로서의 한계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에서는 국가경쟁력 향상과 물류 수송체계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2010년 말까지 민간투자 방식으로 총 3,325억원을 단계적으로 투자 현재 11만 5천 평인 시설부지를 27만 7천 평으로 확장코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용역결과를 토대로 우리시의 대처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건교부 등 중앙 정부와 사업 시행자인 한국복합물류주식회사에 정식으로 건의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는 건교부나 사업시행자가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해 우리시와 협의하거나 약속한 사항이 없으며 군포복합화물터미널 시설확장과 관련하여 관련기관 협의 등을 통하여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장 제99회 임시회

제7장 제99회 임시회

제1절 개관

1. 개최배경

제99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송정열의원의 7인의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02년 12월 12일 집회공고를 하여 2002년 12월 21일 개최되었으며 본 회기 중에는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건이 다루어 졌으며 회기는 2002년 12월 21일 12월 26일까지 6일간으로 2차의 본회의를 가졌다.

2. 의사일정

일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고
12.21(토) 10:00	1	1. 제99회 군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99회 군포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3. 2002년도세3회추가감정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 · 세출예산안 4. 2002년도세3회추가감정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 · 세출예산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 휴회의건	
12.22 ~ 12.25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12.22-12.25)	
12.26(목) 10:00	2	1. 2002년도세3회추가감정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 · 세출예산안 2. 2002년도세3회추가감정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 · 세출예산안	

3. 의회활동

제9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 · 세출예산안 등 예산안 2건을 심의 · 의결하였다.

4. 안건처리상황

안 건		의 결 일 자	처리결과
총 계 : 6건			
예산 · 안	소 계 : 2건		
	•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02.12.26(목)	원안가결
	•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02.12.26(목)	원안가결
건의 · 결의 · 동의	소 계 : 1건		
	•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	'02.12.21(토)	원안가결
선거 · 선임	소 계 : 1건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02.12.21(토)	선 임
회의 · 진행 · 안건	소 계 : 2건		
	• 제99회군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02.12.21(토)	원안가결
	• 제99회군포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건	'02.12.21(토)	선 임

제2절 주요안건 처리경과 및 결과

1. 예산안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 운영기간 : 2002.12.21 ~ 2002.12.26(6일간)

○ 위 원 수 : 9인

이재수, 송정열, 김재일, 최진학, 김진호, 김제길, 김판수, 이경환, 조완기 의원

(위원장: 이경환 의원, 간사: 조완기 의원)

□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예산규모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안 (A)	기정예산안 (B)	증△감 (A-B)	비 고
총 계	234,197,532	218,296,845	15,900,687	
일반회계	161,972,005	160,116,089	1,855,916	
특별회계	72,225,527	58,180,756	14,044,771	

○ 의 결 : 원안가결(2002.12.26)

□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수도사업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예산규모

(단위: 천원)

구 분		사 업 예 산	자 본 예 산	자 금 운 영
수 입	예 산 액	12,000,975	5,401,600	25,531,967
	기정예산	12,000,975	5,401,600	25,531,967
	증 감	0	0	0
지 출	예 산 액	11,724,963	8,075,106	25,231,967
	기정예산	11,724,963	8,075,106	25,231,967
	증 감	0	0	0

○ 의 결 : 원안가결(2002.12.26)

제8장 제100회 임시회

제8장 제100회 임시회

제1절 개관

1. 개최배경

제100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3년 2월 27일 군포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03년 2월 27일 집회공고를 하여 2003년 3월 5일 개최 되었으며 본 회기 중에는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등 2건과 군포시 시세감면 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및 기타 안건 5건이 다루어 졌으며, 회기는 2003년 3월 5일부터 3월 13일까지 9일간으로 2차의 본회의를 가졌다.

2. 의사일정

일 시	차 수	부 의 안 건	비 고
3. 5(수) 10:00	1	1. 제100회군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100회군포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7.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8.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 휴회의건	
3. 6 ~ 3.12		○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활동(3. 6)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3.7~3.12)	
3.13(목) 10:00	2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군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군포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안 5. 군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미국워싱턴주그랜트카운티와자매결연체결계획안 7.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3. 의회활동

제10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예산안 2건과 군포시 시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및 기타 안건 5건을 심의·의결하였다.

4. 안건처리상황

안 건		의 결 일 자	처 리 결 과
총 계 : 13건			
조 례 안	소 계 : 3건		
	1. 군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03. 3. 13(목)	원안가결
	2. 군포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안	'03. 3. 13(목)	원안가결
	3. 군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03. 3. 13(목)	원안가결
예 산 안	소 계 : 2건		
	•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03. 3. 13(목)	수정가결
	•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03. 3. 13(목)	원안가결
건의 · 결의 · 동의	소 계 : 4건		
	•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03. 3. 5(수)	원안가결
	•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03. 3. 5(수)	원안가결
	• 미국워싱턴주그랜트카운티와자매결연체결계획안	'03. 3. 13(목)	원안가결
	•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군포시근로자종합복지관건립)	'03. 3. 13(목)	원안가결
선거 · 선임	소 계 : 2건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03. 3. 5(수)	선 임
	•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건	'03. 3. 5(수)	선 임
회의 · 진행 · 안건	소 계 : 2건		
	• 제100회군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03. 3. 5(수)	원안가결
	• 제100회군포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03. 3. 5(수)	선 임

제2절 주요안건 처리경과 및 결과

1. 조례안

□ 조례 및 기타 안건심사 특별위원회 구성

○ 운영기간 : 2003.3.6

○ 위 원 수 : 9명

이재수, 송정열, 김재일, 최진학, 김진호, 김제길, 김판수, 이경환, 조완기 의원

(위원장 : 이재수 의원, 간사: 송정열 의원)

□ 군포시 시세감면조례 중 개정 조례안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제안이유 : 감면조항의 명확성 제고 및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코자 함.

○ 주요골자

-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규정중 단서 조항 삭제
-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감면대상 범위가 노인복지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 시설에서 노인 복지시설로 개정되어 조문 정비
- 농수산물가공업육성법이 농산물가공업육성법과 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분리 개정되어 조문 정비

○ 의 결 : 원안가결 (2003.3.13)

□ 군포시 명예시민증서수여 조례안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제안이유 : 시정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재외동포 또는 시를 방문하는 외빈에 대한 군포시 명예시민증서의 수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주요골자

- 명예시민증서의 수여대상은 시정에 공로가 크고 시민에게 귀감이 되는 외국인·재외동포 또는 시를 방문하는 외빈으로 함.

- 명예시민증서의 수여후보자 추천권 자는 동장·공공기관의 장 및 50인 이상의 정회원을 둔 사회단체장의 장으로 함.
- 명예시민증서의 수여 시기는 시 주요행사 또는 필요한 때에 수여토록 함.
- 명예시민증서의 수여대상은 군포시 명예시민증서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하고 시의회에 결과를 보고토록 함.
- 명예시민증서를 수여 받은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에 의한 주민의 권리 및 예우를 가질 수 있도록 함.
- 명예시민증서의 수여를 취소할 경우에는 명예시민증서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소하고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토록 함.
- 명예시민증서수여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의 결 : 원안가결(2003.3.13)

□ 군포시 지방공무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제안이유 :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5급 1명과 정보화사업추진 인력 전산8급 1명의 한시적 승인 일이 2002.12.31일에서 2004.6.30일까지 재연장 되어 이에 따른 부칙 일부의 개정과, 초과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기한(2003.2.28)이 도래함에 따라 그 기한을 2003.8.31일까지 연장 협의(기능직 9급 1명, 별정직 1명)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 및 규칙에 명시하라는 행정자치부의 권고사항에 따른 부칙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2001.7.28일 조례 제 709호로 공포된 부칙 제2조 제1항 중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변경 (한시정원 2명이 존속기한 '2002년 12월 31일' 까지를 '2004년 6월 30일' 까지로 함.)
- 2003.8.31일까지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정원의 총수 명시(정원과 불부합한현원 2명 (기능직 9급 1명, 별정직 1명)에 대하여 2003.8.31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봄.)

○ 의 결 : 원안가결(2003.3.13)

2. 동의안

□ 미국 워싱턴주 그랜트카운티와 자매결연 체결 계획안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제안이유 : 해외 선진 도시와의 선린 우호관계 증진은 물론 지식, 정보의 상호교환으로 내부역량을 확충해 가기 위한 토대로써 자매결연을 체결하기 위함.
- 주요골자
 - 자매결연 협정 체결 : 2003.4.21(월)
 - 장 소 : 군 포 시
 - 서명자 : 군포시장, 그랜트카운티 커뮤서너
- 의 결 : 원안가결(2003.3.13)

□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군포시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제안이유 :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을 위하여 2003년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안을 지방자치법 제 3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임.
- 주요골자

(단위:㎡, 백만원)

위치	지목	용도 지역	건 립 규 모				사업비	사업기간
			대지 면적	건 축 연면적	총 수	구 조		
당동 제2지구 토지구획정리 지구내	대지	체비지	2,357.8	5,620	지하층 지상3층	철근 콘크리트 스라브	9,792 -토지:2,142 -건축:7,650	2003.3 ~ 2005.12

- 의 결 : 원안가결(2003.3.13 찬성5인, 반대4인)

3. 예산안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 운영기간 : 2003.3.7 ~ 2003.3.12(6일간)

○ 위 원 수 : 9명

이재수, 송정열, 김재일, 최진학, 김진호, 김제길, 김판수, 이경환, 조완기 의원

(위원장: 최진학 의원, 간사: 김재일 의원)

□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예산규모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안 (A)	기정예산안 (B)	증△감 (A-B)	비 고
총 계	205,703,251	191,993,883	13,709,368	
일반회계	158,880,229	148,862,099	10,018,130	
특별회계	46,823,022	43,131,784	3,691,238	

- 의 결 :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29억3,681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증액하여 수정가결 (2003.3.13)

□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도사업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예산규모

(단위: 천원)

구 분		사업예산	자본예산	현 이월금	수용가 미수금	자금운영
수 입	예 산 액	14,486,310	2,285,377	4,931,428	783,669	22,486,784
	기정예산	14,413,444	1,691,377	0	0	16,104,821
	증 감	72,866	594,000	4,931,428	783,669	6,381,963
지 출	예 산 액	14,486,310	8,000,474			22,486,784
	기정예산	13,484,273	2,620,548			16,104,821
	증 감	1,002,037	5,379,926			6,381,963

- 의 결 : 원안가결(2003.3.13)

제9장 제101회 임시회

제9장 제101회 임시회

제1절 개관

1. 개최배경

제101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3년 5월 1일 군포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03년 5월 1일 집회공고를 하여 2003년 5월 7일 개최되었으며 본 회기 중에는 군포시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등의 가입조례안 등 조례안 및 기타안건 5건이 다루어 졌으며 회기는 2003년 5월 7일부터 5월 12일까지 6일간으로 2차의 본회의를 가졌다.

2. 의사일정

일 시	차 수	부 의 안 건	비 고
5. 7(수) 10:00	1	1. 제101회군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101회군포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5. 2002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안 ○ 휴회의건	
5. 8(목) ~ 5. 11(일)		○ 조례 및 기타 안건심사 특별위원회활동	
5. 12(월) 10:00	2	1. 군포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2. 군포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3. 군포시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공영주차장부지매입)	

3. 의회활동

제101회 군포시의회 임시회에서는 조례 및 기타안전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군포시 인감 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안 등 조례안 및 기타 안전을 심의·의결하였다.

4. 안전처리상황

안		의 결 일 자	처 리 결 과
총 계 : 10건			
조 례 안	소 계 : 4건		
	1. 군포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03. 5. 12(월)	원안가결
	2. 군포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03. 5. 12(월)	수정가결
	3. 군포시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03. 5. 12(월)	수정가결
	4. 군포시교육발전기금설치 및 운용에관한조례안	'03. 5. 12(월)	부 결
건의 결의 동의	소 계 : 2건		
	· 조례 및 기타안전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공영주차장부지매입)	'03. 5. 7(수) '03. 5. 12(월)	원안가결 원안가결
선거 선임	소 계 : 2건		
	· 조례 및 기타안전심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 · 2002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	'03. 5. 7(수) '03. 5. 7(수)	선 임 원안가결
회의 진행 안전	소 계 : 2건		
	· 제101회군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제101회군포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03. 5. 7(수) '03. 5. 7(수)	원안가결 선 임

제2절 주요안건 처리경과 및 결과

1. 조례안

□ 조례 및 기타안전심사 특별위원회 구성

○ 운영기간 : 2003.5.8 ~ 5.11(4일간)

○ 위 원 수 : 9명

이재수, 송정열, 김재일, 최진학, 김진호, 김제길, 김판수, 이정환, 조완기 의원

(위원장: 김제길 의원 간사: 김판수)

□ 군포시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안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제안이유 :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 주요골자

-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해 정기적으로 직위포관계약방식 보험에 가입함.
-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가입비는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함.
-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될 사유가 발생한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청구하고 보험금액은 세입금으로 징수함.

○ 의 결 : 원안가결(2003.5.12)

□ 군포시 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 조례안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제안이유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1조 및 주차장법 제21조의2 규정에 의거 군포시교통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교통시설의 정비촉진, 교통수단, 교통체계의 개선과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세입 범위를 명시

- 1) 주차요금, 주차장관리수탁자 부담금, 노외주차장관리위반 과징금
 - 2) 부설주차장설치비용 납부금, 주차장법위반 과태료, 주·정차위반 과태료
 - 3) 주차위반차의 이동·보관·공고·매각 또는 폐차 등에 소요된 비용징수금
 - 4) 교통유발부담금, 주차목적 도로점용료 또는 사유재산 대부료
 - 5) 여객,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관리법 과징금 및 과태료
 - 6)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도시교통과 관련한 수입, 기타잡수입
-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세출 범위를 명시(안 제3조)
- 1) 주차장의 설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 2) 대중교통시설의 확충 및 운영개선을 위한 작업
 - 3) 도시교통관련 조사 및 연구사업
 - 4) 교통안전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업
 - 5) 특별회계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 의 결 : 수정가결(2003.5.12)

□ 군포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제안이유
- 차량증가와 주차시설 부족으로 주택가 주차난이 갈수록 심각하여 다가구주택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가구당 1대로 증설하여 주차난 완화와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공영주차장 주차기기 도입으로 현행 요금방식으로는 기계가 정확한 요금을 판독을 할 수 없어 일부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골자
- 주차장설치 용자 및 보조금관리에 따른 일부 조문을 교통사업 특별회계로 설치하고 불필요한 조문 폐지
 - 공영주차장 주차기기 도입으로 현행 요금방식으로는 요금판독이 어려워 일부조항 삭제
 -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일부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되, 단독 및 다세대 주택 주차비율을 세대당 1대로 하고자 함(안 별표2)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세입 범위를 명시
- 의 결 : 수정가결(2003.5.12)

□ 군포시 교육발전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제안이유

- 21세기를 주도 할 수 있는 자율적 창의적 중심교육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우수 인재육성으로 전국 최고의 교육도시로의 발전을 위하여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함.

○ 주요골자

- 기금의 재원조성의 범위를 규정함
- 기금의 지원사업에 대한 용도를 지정함
-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군포시교육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심의하도록 규정함
-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
- 기금의 운영상황에 대한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함

○ 의 결 : 부 결(2003.5.12)

2. 동의안

□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안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제안이유 :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을 위하여 200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결을 받고자하는 것임.

○ 주요골자

(단위 : ㎡, 백만원)

위 치	지 목	지 적	소 유 자	사 업 비	사업기간
군포시 금정동 774번지	대 지	3,210.1	랜드피아이구구의일 유동화전문유한회사 (실소유자 : 한국토지공사)	3,800	2003.6월

○ 의 결 : 원안가결(2003.5.12)

제10장 제102회 임시회

제10장 제102회 임시회

제1절 개 관

1. 개최배경

제102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3년 5월 29일 군포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03년 5월 30일 집회공고를 하여 2003년 6월 7일 개최되었으며 본 회기 중에는 2003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건과 군포시 주민감사청구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이 다루어 졌으며 회기는 2003년 6월 7일부터 6월 14일까지 8일간으로 2차의 본회의를 가졌다

2. 의사일정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6. 7(토) 10:00	1	1. 제102회군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102회군포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7.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8.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9.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0.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 휴회의건	
6. 9(월)		○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활동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활동	
6.10 ~ 6.13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	
6.14(토) 10:00	2	1.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군포시주민감사청구조례중개정조례안 4. 군포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5. 군포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회활동

제 102회 군포시의회 임시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례 및 기타안전심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03년도 결산안과 조례 및 기타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4. 안전처리상황

안 건		의 결 일 자	처 리 결 과
총 계 : 13건			
조 례 안	소 계 : 3건		
	1. 군포시 주민감사청구조례중 개정조례안	'03. 6. 14(토)	원안가결
	2. 군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안	'03. 6. 14(토)	원안가결
	3. 군포시 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03. 6. 14(토)	원안가결
예 산 안	소 계 : 2건		
	• 2003년도제2회추가정정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03. 6. 14(토)	수정의결
	•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03. 6. 14(토)	수정의결
건의 · 결의 · 동의	소 계 : 3건		
	•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03. 6. 7(토)	원안가결
	• 조례 및 기타안전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03. 6. 7(토)	원안가결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03. 6. 7(토)	원안가결
선거 · 선임	소 계 : 3건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03. 6. 7(토)	선 임
	• 조례 및 기타안전심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03. 6. 7(토)	선 임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03. 6. 7(토)	선 임
회의 · 진행 · 안건	소 계 : 2건		
	• 제102회군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03. 6. 7(토)	원안가결
	• 제102회군포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03. 6. 7(토)	선 임

제2절 주요안건 처리경과 및 결과

1. 조례안

□ 조례 및 기타안전심사 특별위원회 구성

○ 운영기간 : 2003.6.9

○ 위 원 수 : 9명

이재수, 송정열, 김재일, 최진학, 김진호, 김제길, 김판수, 이경환, 조완기 의원

(위원장: 이경환 의원, 간사: 조완기 의원)

□ 군포시 주민감사청구조례중 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제안이유 :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주민의 지방자치 참여를 유도하고자 마련된 주민감사 청구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의 청구인수 하향조정 권고사항에 따라 청구인 수를 조정코자 함.

○ 주요골자 : 주민감사 청구인 수를 500명 이상에서 200명 이상으로 하향 조정함.(안 제2조)

○ 의 결 : 원안가결(2003.6.14)

□ 군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안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제안이유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동법시행령 및 경기도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 의하여 시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광고물로 인한 공중의 피해를 방지하고 광고물 난립을 사전에 예방하여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고자 함.

○ 주요골자

-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에 대한 관리사항을 규정함

- 옥외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옥외광고물의 시설물 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1인 이상의 자를 지정하여 안전도검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현수막지정계시대·지정계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관리능력이 있는 광고사업협회 등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긴급히 제거할 수 있는 광고물 등의 범위를 정함
-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을 교유실시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교육기관 등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신고), 안전도검사 및 옥외광고업신고에 대한 수수료의 금액과 납부방법을 정함.
- 과태료,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방법 등에 대하여 정함

○ 의 결 : 원안가결(2003.6.14)

□ 군포시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제안이유

- 신규아파트 입주 등으로 인한 인구의 증가로 통·반 신설
- 불균형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통·반 관할구역 조정

○ 주요골자

- 군포1동의 26통, 29통, 30통 관할구역 조정 및 아파트 입주에 따라 3개통을 신설함.
- 군포2동의 5통 및 9통 관할구역 조정 및 아파트 입주에 따라 8개통 72개반을 신설함.
- 산본2동 11통의 6개반을 7개반으로 조정함.
- 금정동의 16통 관할구역 조정 및 아파트 입주에 따라 1개통 4개반을 신설함.
- 오금동 6통의 6개반을 7개반으로 조정함.
- 광정동의 32통 관할구역 조정 및 오피스텔 입주에 따라 1개통 4개반을 신설함.

○ 의 결 : 원안가결(2003.6.14)

2. 예산안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 운영기간 : 2003.6.10 ~ 6.13(4일간)

○ 위 원 수 : 9명

이재수, 송정열, 김재일, 최진학, 김진호, 김제길, 김판수, 이경환, 조완기 의원

(위원장: 이재수 의원, 간사: 송정열 의원)

□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예산규모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안 (A)	기정예산안 (B)	증△감 (A-B)	비 고
총 계	244,765,358	205,703,251	39,062,107	
일 반 회 계	169,291,320	158,880,229	10,411,091	
특 별 회 계	75,474,038	46,823,022	28,651,016	

○ 의 결 : 수정가결(2003.6.14)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3억 2,464만 7천원을 삭감하여전액 예비비로 증액)

□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도사업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예산규모

(단위: 천원)

구 분		사 업 예 산	자 본 예 산	현 이 월 금	수 용 가 금 수 금	자 금 운 영
수 입	예 산 액	14,486,310	2,285,377	4,957,577	852,125	22,581,389
	기정예산	14,486,310	2,285,377	4,931,428	783,669	22,486,784
	증 감	0	0	26,149	68,456	94,605
지 출	예 산 액	12,747,335	9,834,054			22,581,389
	기정예산	14,486,310	8,000,474			22,486,784
	증 감	-1,738,975	1,833,580			94,605

○ 의 결 : 수정가결(2003.6.14)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1억 9,79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증액)

제11장 제103회 제1차 정례회

제11장 제103회 제1차 정례회

제1절 개 관

1. 개최배경

제103회 정례회는 군포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1차 정례회로서 2003년 6월 24일 집회공고하고 2003년 7월 1일 개최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 2002년도 결산안을 비롯한 조례 및 기타 안건이 다루어 졌으며 회기는 2003년 7월 1일부터 7월 18일까지 18일간으로 3차의 본회의를 가졌다.

2. 의사일정

일 시	차 수	부 의 안 건	비 고
7. 1(화) 10:00	1	1. 제103회군포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제103회군포시의회(제1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2002회계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4. 2002회계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7.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8.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9. 시장출석요구의건	
7. 2(수) 10:00	2	1. 시정질문의건 ○휴회의건	
7. 3 ~ 7. 16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7. 3~7. 9)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7. 10~7. 14) ○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활동(7. 15~7. 16)	
7. 18(금) 10:00		1. 2002회계년도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2002회계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4. 군포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5. 군포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안	

일 시	차 수	부 의 안 건	비 고
7. 18(금) 10:00	3	6. 군포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 7. 군포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군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 군포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공유재산매각 및 대체재산매입) 10. 군포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군포시청소년수련원1단계조성) 11. 군포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민체육광장내체육 및 부대시설건립) 12. 군포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군포시립중앙도서관건립)	

3. 의회활동

제103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례 및 기타안전심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02년도 예산안과 조례 및 기타 안전을 심의·의결하고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으며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였다.

4. 안전처리상황

안 건		의 결 일 자	처 리 결 과
총 계 : 19건			
조 례 안	소 계 : 5건		
	1. 군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03.7.18(금)	원안가결
	2. 군포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인사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안	'03.7.18(금)	원안가결
	3. 군포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	'03.7.18(금)	수정의결
	4. 군포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03.7.18(금)	수정의결
	5. 군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03.7.18(금)	원안가결
결 산 안	소 계 : 2건		
	• 2002회계년도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 2002회계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03.7.18(금) '03.7.18(금)	원안가결 원안가결

안 건		의 결 일 자	처 리 결 과
건의 · 동의 · 결의	소 계 : 7건		
	•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03.7.1(화)	원안가결
	•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03.7.1(화)	원안가결
	• 군포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공유재산매각 및 대체재산매입)	'03.7.18(금)	원안가결
	• 군포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군포시청소년수련원1단계조성)	'03.7.18(금)	원안가결
	• 군포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시민체육광장내체육 및 부대시설건립)	'03.7.18(금)	원안가결
	• 군포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군포시립중앙도서관건립)	'03.7.18(금)	원안가결
	•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03.7.18(금)	원안채택
선거 · 선임	소 계 : 2건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03.7.1(화)	선 임
	•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03.7.1(화)	선 임
회의 · 진행 · 안건	소 계 : 2건		
	• 제103회군포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03.7.1(화)	원안가결
	• 제103회군포시의회(제1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03.7.1(화)	선 임
보고 · 질문	소 계 : 1건		
	• 시정에 관한 질문	'03.7.2(수)	질문, 답변

제2절 주요안건 처리경과 및 결과

1. 조례안

□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 특별위원회 구성

○ 운영기간 : 2003.7.15 ~ 7.16(2일간)

○ 위 원 수 : 9명

이재수, 송정열, 김재일, 최진학, 김진호, 김제길, 김판수, 이경환, 조완기 의원
(위원장: 이재수 의원, 간사: 송정열 의원)

□ 군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제안이유 : 군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 조례의 각종 수수료 요율이 1989년 1월 제정된 이래 그간 14차례의 개정과정을 거쳐 왔으나 대부분의 수수료가 장기간 미조정되어 현실에 불부합할 뿐만 아니라 시대가 바뀌어 실효성이 상실된 수수료가 많이 있고 특히 상위법률, 기타 조례의 제·개정에 따른 수수료 항목을 신설 및 삭제하고 기존치 수수료를 경기도 원가산출 표준(안)에 맞추어 재검토 조정 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조례명 ‘군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군포시수수료징수조례’로 변경함.
- 수수료의 징수방법을 수입증지 및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함.
- 주민등록법의 면제규정을 참조하여 수수료면제 대상을 일원화 함.
-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함.
- 다른 조례에서 따로 수수료를 정한 사항을 삭제함.

○ 의 결 : 원안가결(2003.7.18)

□ 군포시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 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제정안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제안이유 : 2003.1.1일부터 시행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도시계획 시설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도시계획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았을 경우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한하여 시장에게 매수를 청구할 수 있게 되어 보상재원의 안정적, 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주요골자

- 대지매수자금의 효율적인 총괄관리 부서 지정
- 대지보상 특별회계의 재원마련 규정
- 대지보상 특별회계의 지출용도의 규정

- 의 결 : 원안가결(2003.7.18)

□ 군포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제안이유 : 종전의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3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당해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우리시의 특성에 맞게 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골자

-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청회 개최 전에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 또는 군포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함.
-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공청회는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공청회개최 14일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시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등에 1회 이상 공고하도록 함.

- 의 결 : 수정가결(2003.7.18)

(제1차 조례 및 기타안건 심사특별위원회(2003.7.15)에 상정되어 송정열 위원의 수정안에 대한 거수표결 결과 재석위원 7인중 찬성 6인, 반대 1인으로 수정의결)

□ 군포시 사무의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제안이유 : 군포시 사무의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제명 및 수탁기관 선정 방법을 현실에 적합하게 개정하여 행정의 능률 및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제명을 현실에 맞게 개정
 - 수탁기관 선정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지 아니하고 위탁할 수 있는 규정 마련
- 의 결 : 수정의결(2003.7.18)
(제1차 조례 및 기타안건 심사특별위원회(2003.7.15)에 상정되어 김제길 위원의 수정안에 대한 거수표결 결과 재석위원 5인중 찬성 5인으로 수정의결)

□ 군포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현행 규정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마련한 행정자치부의 개정 표준안 권고사항에 따라 본문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도유재산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였을시 시에 귀속되는 사용료 등의 귀속비율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9조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삭제 함.
 -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분할납부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율을 1내지 2퍼센트로 인하함.
 -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중 농경지를 제외한 영리목적에 대하여는 특례를 적용하지 않음.
 - 대부료 등에 관한 연체요율은 연15퍼센트에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차등인하토록 개정함.
- 의 결 : 원안가결(2003.7.18)

2. 결산안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 운영기간 : 2003.7.10 ~ 7.14(5일간)

○ 위 원 수 : 9명

이재수, 송정열, 김재일, 최진학, 김진호, 김제길, 김판수, 이경환, 조완기의원

(위원장: 김제길 의원, 간사: 김판수 의원)

□ 2002회계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안

○ 총괄내역

- 2002년도 일반회계 총수입은 198,965,254,270원으로서
지방세 수입이 61,744,436,000원, 세외수입 64,995,538,110원
지방교부세 15,241,000,000원, 지방양여금 3,365,050,000원,
조정교부금 27,459,916,000원 보조금 26,159,314,160원이 수납되었으며,
- 일반회계의 세출예산현액은 197,017,100,430원으로 이중 155,125,006,570원이
지출되었고 34,451,954,600원이 익년도로 이월되었으며 7,440,139,260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음

○ 의 결 : 원안가결(2003.7.18)

□ 2002회계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안

○ 총괄내역

- 2002년도 군포시 수도사업특별회계의 수입결산은
총예산 규모 12,000,975,000원에서 징수결정액이 12,051,575,470원이고
수납액은 11,477,093,880원 목표액 대비 95.26%를 달성하여 574,481,590원의 미수액이
발생하였고
자본적 수입은 총예산 5,401,600,000원에 징수결정액이 5,663,205,000원으로 목표액
대비 100% 달성하였으며
총수입은 17,402,575,000원에 징수결정액이 17,714,780,470원이고

수납액은 17,140,298,880원 으로 목표액대비 96.8%를 달성하였으나 574,481,590원의 미수액이 발생하였음.

- 2002년 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사업비용은 예산현액 11,724,963,000원 대비 88.2%인 10,341,240,810원을 지출하였고 자본적 지출은 예산현액 13,807,004,480원 대비 67.5%인 9,314,170,260원을 지출하였으며 총예산 현액 25,380,657,014원 대비 77.52%인 19,655,411,070원을 지출하였으며 차기 이월액은 5,725,245,944 원임

○ 의 결 : 원안가결(2003.7.18)

3. 동의안

□ 군포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공유재산매각 및 대체재산매입)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제안이유 :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을 위하여 200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지방재정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임.

○ 주요골자

- 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중 규모 및 형상·입지여건 등으로 보아활용 가치가 없는 산재한 잡종재산을 매각하고 향후 공공목적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체재산을 매입하고자 하는 것임.
- 매각대상 재산현황

(단위: ㎡, 백만원)

소 재 지	지 목	면 적	재산가액	현재 이용실태	사업기간
합 계		819,02	1,028		
토 지	2필지	632,7	728		
의왕시 삼동 166-24 (의왕시 부곡동사무소 내)	대 지	406	406	의왕시사용	2003.8~ 2003.12
군포시 당동 745 (당동 우리은행 앞)	대 지	226,7	322	대 부	2003.8~ 2003.12
건 물	1동				
당동 쌍용상가 201호	생활 편익시설	186,32	300	대 부	2003.8~ 2003.12

- 매입대상 재산현황 (단위: m², 백만원)

소 재 지	지 목	면 적	용 도	소유자	재산가액	사업기간
합 계	2필지	3,292.4			1,677	
금정동 845-1 (등기소 옆)	대 지	2,787.8	공공시설용지 (사무서용지)	주택공사	1,452	2003.8~ 2003.12
산본동 1057-16 (권투훈련장옆)	대 지	504.6	공공시설용지 (파출소용지)	주택공사	225	2003.8~ 2003.12

○ 의 결 : 원안가결(2003.7.18)

□ 군포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군포시청소년수련원1단계조성)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제안이유 :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을 위하여 200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결을 받고자하는 것임.

○ 주요골자

- 청소년수련원 조성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대규모 사업비 투자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 하고 청소년수련시설 등록에 필요한 시설이면서 이용효율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단계별로 추진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1단계 조성사업은 「청소년수련지원시설」로서 청소년들의 창의성과 올바른 인성개발 지원을 위한 시설로 다양한 자연체험 및 소규모 공동체 활동이 가능한 기본적인 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

○ 의 결 : 원안가결(2003.7.18)

□ 군포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시민체육광장내체육 및 부대시설건립)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제안이유 :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을 위하여 200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임.

- 주요골자 : 우리시의 유일한 체육공간인 시민체육 광장에 탁구장을 신축하고 체육 광장의 부대시설인 화장실 및 단상을 건립하여 이용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임.
- 의 결 : 원안가결(2003.7.18)

□ 군포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군포시립중앙도서관건립)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제안이유 :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을 위하여 200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결을 받고자하는 것임.
- 주요골자 : 현재의 도서관 시설로는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욕구를 해소할 수 없음에 따라 큰 규모의 도서관시설이 필요한 실정이므로 사유지인 구, 보영운수 차고지에 도서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임.
- 의 결 : 원안가결(2003.7.18)

□ 군포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시립 어린이도서관 건립)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제안이유 :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을 위하여 200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임.
- 주요골자 : 도서관을 이용하는 유아·어린이의 수는 자료실 이용자의 52%에 해당하며 이는 학생과 일반인을 합한 인원수 보다 더 높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음에 따라 어린이들을 위한 특성화된 교육시설이 될 수 있는 도서공간을 제공해 주기 위하여 어린이 도서관을 건립 하고자 하는 것임.
- 의 결 : 심의보류(2003.7.18)

4. 행정사무감사

□ 감사기간 : 2003.7.3 ~ 7.9(7일간)

□ 대상기관 : 시민만족실, 기획감사실, 시민봉사국, 경제환경국, 건설도시국, 행정지원국,
수도사업소, 보건소, 시민화관, 시립도서관, 의회사무과

□ 감사반 편성

○ 위 원 수 : 9인

이재수, 송정열, 김재일, 최진학, 김진호, 김제길, 김판수, 이경환,
조완기 의원(위원장 최진학 의원, 간사 김재일 의원)

□ 시정사항

○ 공통사항

- 전문을 요구하는 부서에는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전문지식 습득을 위한교육기관(대학, 대학원)을 통한 교육 실시 요망.
- 일반 행정 수행에 있어 실·과·소별 업무의 유기적 협조체계구축 방안 강구
- 의회에 제출하는 감사자료에 대하여는 사전 충분한 검토 후 정확한 자료를 작성바람.
- 각종 보조금 지급 후 철저한 정산 실시(10만원이상 카드나 세금계산서사용)

○ 시민만족실

- 백화점식 주민자치프로그램 보다는 특화된 프로그램 개발을 하여 보다 더 많은 주민이 참여토록 하는 방안 강구.
- 군포문화센터 운영관련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대한 기준 마련 및 향후운영계획 방안 강구 등 철저한 지도감독 강화요구
- 향후 정책개발시 관련부서 참석하는 방안을 강구 보다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책개발요망

○ 기획감사실

- 임의단체보조금 지원시 '자부담의 원칙' 등의 기준을 수립 원칙에 맞게 집행 할 수 있도록 시정요구

- 예비비 사용과 관련 예측 가능한 사업에 대하여는 사용하지 않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기획실에서는 시정 전반을 총괄 조정역할을 하는 부서로써 시민만족실의 정책개발 업무 수행시 조정할 수 있는 방안 강구

○ 시민봉사국

- 종합민원처리과
 - 세외수입의 체납액 감소 방안 강구
- 세정과
 - 세무행정의 전문인력 확대방안 강구
 - 지방세 결손처리자 관리 만전 요구
 - 지방세 체납액 전문 관리팀 운영 방안 강구
- 토지관리과
 - 부동산 중개업소의 철저한 행정 단속 요구
- 사회과
 - 각종 기금의 집행은 기금의 목적에 맞게 집행토록 시정요구
 -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
 - 각종 위탁 시설물의 투명하고 깨끗한 경영을 위해 전문인력의 근무 방안 강구
 - 사회복지 분야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전문인력 배치방안 강구
- 여성복지과
 - 군포·금정 시립어린이집에 대한 정상적인 예산집행과 향후 시립어린이집 추진 시 중앙정부 예산을 받는 방안 강구
 - 군포시 여성발전기금 운용시 여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자립능력을 키울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여 지원하는 방안 강구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쉼터)의 설치 계획이 없으면 인근 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 추진 요망

○ 경제환경국

- 지역경제과

- 지역난방 민영화 관련 인근 시와 공동협의체를 성하여 중앙정부 기관에 공동대응 및 건의사항 전달 요구
- 군포시에 있는 3개 재래시장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는 재래시장이 되는 방안 강구
- 지역경제과와 노사지원과의 업무 분장을 재조정하여 과의 본연 업무를 추진하는 방안 강구
- 농가의 지원방안을 적극 모색하여 찾아서 지원 할 수 있는 방안 강구
- 노사지원과
 - 2002년도 노동단체 예산지원 정산에 대하여 철저한 감사를 통한 예산집행 요구
 - 근로자복지회관 추진에 따른 현 부지에 재검토 요구
 - 11단지 아파트형 공장부지에 대한 부지 최적개발 타당성 용역의 사장에 대한 용역비의 낭비 시정 요구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해외자매 결연도시와의 경제교류 요망
 - 청소년 지방행정체험연수제의 구체적인 문제점등을 미확인 하고 동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행정의 낭비로 대책 강구
- 환경위생과
 - 전문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대책 강구
- 청소과
 - 환경관리소 안전도성능검사 관련 다이옥신 측정 미이행 부분을 당초의 과업지시서대로 측정 또는 구상권 청구 등 시정 요구
 - 당동 골프장 폐기물 처리와 관련 생활폐기물은 군포환경관리소에서 처리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조례) 정비 요구
- 교통행정과
 - 민원다량 발생부서에서는 전문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 능동적인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인력부서와 협의토록 할 것
 - CCTV단속과 관련 테입 관리의 철저로 개인 사생활 보호대책 방안 강구
 -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와 관련 수의 계약시 경쟁 입찰과 비교하여 차이가 심하므로 형평성에 맞게 낙찰율 및 금액을 형평성에 맞도록 하는 방안강구

○ 건설도시국

• 건설과

- 자전거 도로관련 설계상의 중대 착오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여 세금이 낭비되었으므로 향후에는 하자부분을 보증서가 아닌 연대 보증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요구함
- 블라드 설치와 관련 규격보다 낮을 경우 시각장애인에게는 발목 지뢰와 같은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규격이상으로 설치되도록 시정 요구함
- 홍수조절지(중앙공원)의 본래 목적대로 이용하기 위하여 문개폐 권한을 공원녹지과에서 건설과로 이관되도록 시정 요구
- 국·공유지 임대 및 관리를 건설과와 회계과로 이원화 되어있어 현황 파악도 안되는 등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일원화 시켜 1개 부서에서 관리토록 시정요구
- 자전거 전용도로 고무매트 시공 공법은 조각조각 쪼개져 하수구로 유입되어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시공 공법을 교체할 것을 시정 요구함

• 도시과

- 구획정리지구 체비지 매각시 골고른 혜택을 위하여 수의계약을 배제하고 공개경쟁 입찰로 매각토록 시정 요구
- 1인 응찰을 유찰로 처리 수의계약 가격이 1인 응찰가격보다 적어 손해 본 부분을 시정토록 할 것
- 당동2지구 고가차도 설치 계획은 교통영향 평가시 조건부 승인 사항으로 해당사업이 변경되면 경기도와 재협의를 거쳐 주민들한테 공표하여야 하므로 정당한 절차를 밟도록 시정요구
- 체비지 매각시 입찰방법 착오로 입은 손실에 대하여는 배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결과 송부토록 할 것을 요구

• 공원녹지과

- 초막골 근린공원 조성과 관련 주민의견 수렴 확대를 위한 공청회 또는 주민투표제 실시 방안 요구
- 심는 나무보다 가꾸는 나무행정 추진요구
- 수목식재 공사 및 구입 시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단가계약제도 도입으로 효율적인 행정 도모 요구

- 건축과
 - 불법광고물 과태료 체납자들의 채권확보토록 시정요구
 - 행정사무감사 답변시 성실한 답변자세 요구
- 행정지원국
 - 행정지원과
 - 가설 건축물(콘테이너) 설치 축조 신고 후 설치토록 시정요구
 - 수로원과 임금협상 원만한 해결 촉구
 - 공무원 위탁교육비 법령에 맞게 집행토록 시정요구
 - 각 단체별 지원 보조금 정산시 영수증 처리(10만원이상 간이영수증 처리 관계) 시정 요구
 - 공무원의 장기근무(3년) 또는 전문직화 될 수 있도록 시정요구
 - 위탁운영 시설물 자체감사 실시토록 시정 요구
 - 회계과
 - 청소용역 인건비 지급 시 용역업체 종사자 인건비의 현실화가 될 수 있도록 시정 요망
 - 중요사업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시기를 일실하여 절차가 바뀌지 않도록 시정 요구
 - 청소년과
 - 보조금 정산 시 10만원 이상은 카드나, 세금계산서로 정산토록 시정 요구
 - ‘청소년수련원’ 명칭을 ‘군포시 수련원’으로 개명하는 방안 강구
 - 청소년 문화의 집 관련 독립된 시설로 이전하는 종합적인 방안 강구
- 보건소
 - 마약류 약품 점검을 년4회 이상 실시 할 것을 요구
 - 경로당 이동진료 사업을 현행 5개 경로당에서 관내 모든 경로당으로 확대 하는 방안을 검토
 -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노인전문요양시설의 운영형태를 입소 형태에서 주간 보호형태로 전환 하는 방안 강구

- 군포시 어린이 건강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건강조사 연구용역은 향후에는 ‘건강검진 사업비’로 추진할 것을 시정요구
- 어린이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직원들의 벤치마킹을 통한 전문 지식 습득 기회를 증대하여야 함

○ 수도사업소

- 수의계약공사 발주시 예측 가능한 사업과 유사업종 사업의 경우 통합 발주하여 공개 경쟁입찰을 하도록 시정요구
- 시민이 부담하는 공시라 하더라도 연간 단가계약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시행하고 단가 계약 불가시라도 시 발주공사와 동일하게 정산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 시립도서관

- 공유재산변경안 (가칭 ‘중앙도서관’, ‘어린이도서관’)과 관련하여 절차가 바뀌었음을 지적하여 향후에는 시정 요망
- 가칭 ‘어린이도서관’을 현재의 부지에 건립 할 경우 대중교통 노선이 증가 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의 요망
- 대야미도서관이 제때에 개소 할 수 있도록 도서와 운영인력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방안 강구

○ 의회사무과

-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상 실현하는 방안 강구

5. 시정질문

제103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2003.7.2)에서 군포시장을 비롯한 관계 실·국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최진학 의원 등 2인의 의원이 다음과 같이 시정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았다.

□ 시정에 관한 질문

○ 질 문 : 최진학 의원

• 질문내용

산본동 1096번지의 사유지 관리방안과 활용계획에 대하여?

→ 답 변(시장)

21세기를 선도하는 국제 경쟁력을 갖춘 지식·정보화 산업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첨단산업단지 조성하고 연계하여 과학기술산업 연구·집적시설 유치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최적의 활용방안을 강구

• 질문내용

기존도시의 국·공유지의 점유현황 및 향후 관리계획 등에 대하여?

→ 답 변(시장)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지는 총2,005필지에 기존도시에는 192필지에 6만9천2백2십4평방미터가 있으며, 그 중 74필지 2만6천7백십 평방미터는 대부하였고, 나머지는 관리만하고 있는 상태임 연말 완공 목표로 당정천 복개공사가 추진 중에 있으며, 당정천의 기존 지류의 활용계획 및 현재 방치된 지천관리는 효율적인 활용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결과에 따라 폐천부지 활용 및 하수도 설치공사를 실시할 계획임. 아울러 당정토지개발 구역 내에 설치되는 도로 등 공공용지는 사업 준공후 업무별로 해당되는 관리부서에서 유지관리 할 계획임.

• 질문내용

보건의로 정책에 있어 질병의 조기발견이나 예방을 위하여 어느 계층에 중점을 두고 시행하는지에 대하여?

→ 답 변(시장)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생애 주기별로 영·유아, 학생, 성인, 모성, 노인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보건의로 사업을 개발하고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다양한 가족 건강교실 사업을 운영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자기 관리능력을 향상시켜 나가며, 예방이 필요한 시민에게는 운동처방 등의 체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질 문: 김진호 의원

• 질문내용

초막골 근린공원의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주민의견수렴 및 시민공청회 실시에 대하여?

→ 답 변(시장)

2002년 8월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시민단체 토론회, 인터넷 투표를 비롯한 시민의견 수렴에 이르기까지 공원조성 계획 과정에서 시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앞으로 공원조성 사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까지 많은 절차들이 남아 있어, 실시설계 단계에서도 시민들은 물론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계획임.

• 질문내용

경기도노동조합과의 임금협상과 관련하여 협상체결이 되지 않는 이유와, 향후 대책 등에 대하여?

→ 답 변(시장)

금년도 대폭적인 임금인상에도 불구하고 작년도 임금을 두 번씩이나 인상해 달라 집회와 농성을 하고 있으나, 무리한 요구이기 때문에 시는 농성에 흔들리지 않고 시민의 세금을 올바르게 사용하며 시민을 위해 일하는 시청과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임

제12장 제104회 임시회

제12장 제104회 임시회

제1절 개 관

1. 개최배경

제104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3년 9월 15일 군포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03년 9월 16일 집회공고를 하여 2003년 9월 22일 개최되었으며 본 회기 중에는 군포시 시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조례 및 기타안건이 다루어 졌으며 회기는 2003년 9월 22일부터 9월 26일까지 5일간으로 2차의 본회의를 가졌다.

2. 의사일정

일 시	차 수	부 의 안 건	비 고
9.22(월) 10:00	1	1. 제104회군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104회군포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회원선임의건 ○휴회의 건	
9.23(화) ~ 9.25(목)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 특별위원회 활동	
9.26(금) 09:00	2	1. 군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 군포시사회복지관설치 및 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군포시장애인복지시설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군포시보육조례안 5. 군포시시립보육시설간위탁동의요구안 6. 군포시제2의견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7. 군포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8. 재단법인군포시청소년수련관설립 및 운영에관한조례안 9. 군포시교육발전기금설치 및 운영에관한조례안 10. 군포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군포시어린이도서관립)	

3. 의회활동

제10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에서는 조례 및 기타안전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군포시 시세 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조례 및 기타안전이 다루어졌다.

4. 안전처리상황

안		의 결 일 자	처 리 결 과
총 계 : 14건			
조 례 안	소 계 : 8건		
	1. 군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03. 9. 26(금)	원안가결
	2. 군포시사회복지관설치 및 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03. 9. 26(금)	원안가결
	3. 군포시장애인복지시설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03. 9. 26(금)	원안가결
	4. 군포시보육조례안	'03. 9. 26(금)	수정가결
	5. 군포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03. 9. 26(금)	원안가결
	6. 군포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03. 9. 26(금)	원안가결
	7. 군포시청소년수련관설립 및 운영에관한조례안	'03. 9. 26(금)	수정가결
	8. 군포시교육발전기금설치 및 운영에관한조례안	'03. 9. 26(금)	수정가결
건의 · 결의 · 동의	소 계 : 3건		
	• 조례 및 기타안전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03. 9. 22(월)	원안가결
	• 군포시시립보육시설민간위탁동의안	'03. 9. 26(금)	원안가결
	• 군포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군포시어린이도서관건립)	'03. 9. 26(금)	원안가결
선거 · 선임	소 계 : 1건		
	• 조례 및 기타안전심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03. 9. 22(월)	선 임
회의 · 진행 · 안전	소 계 : 2건		
	• 제104회군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03. 9. 22(월)	원안가결
	• 제104회군포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03. 9. 22(월)	선 임

제2절 주요안건 처리경과 및 결과

1. 조례안

□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 특별위원회 구성

- 운영기간 : 2003.9.23 ~ 9.25(3일간)
- 위 원 수 : 9명
이재수, 송정열, 김재일, 최진학, 김진호, 김제길, 김판수, 이경환, 조완기의원
(위원장: 이경환 의원, 간사: 조완기 의원)

□ 군포시 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제안이유 : 감면조항의 형평성 제고 및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규정 신설
 -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조문 정비
- 의 결 : 원안가결(2003.9.26)

□ 군포시 사회복지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제안이유 : 사회복지관 운영의 위탁기간을 하향 조정하여 다변화 되어가는 주민의 사회복지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키는 복지시책을 실현하기 위함.
- 주요골자
 - 사회복지관 설치관련 사회복지사업법 적용 법조문을 조정함
 - 사회복지관 시설위탁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하향 조정함
- 의 결 : 원안가결(2003.9.26)

□ 군포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제안이유 :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의 위탁기간을 하향 조정하여 다변화되어 가고있는 주민의 장애인복지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키는 복지시책을 실현하기 위함
- 주요골자
 - 장애인복지시설 설치관련 사회복지사업법과 장애인복지법 적용법 조문을 조정함
 - 장애인복지시설 위탁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하향 조정함
- 의 결 : 원안가결(2003.9.26)

□ 군포시 보육조례안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제안이유 : 보육환경이 확대되고 보육의 중요성이 점차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 발맞추어 우리시의 특성에 맞는 보육조례를 제정하여 보육의 질 향상 및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코자 함
- 주요골자
 -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 및 아동의 보호와 육성으로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지원 및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조례제정의 목적을 규정함
 - 영유아 보육에 관한 사업을 심의하기 위한 보육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운영에 관하여 규정함
 - 영유아 보육에 대한 제반 정보의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을 규정함
 - 보육정보센터의 운영을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보육정보센터의 업무의 범위를 규정함
 - 보육수요를 감안하여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에 우선적으로 시립보육시설을 설치토록 함
 - 시립보육시설을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수탁자의 의무사항 등을 규정함
 -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범위를 정함
 -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군포시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하도록 함

○ 의 결 : 수정가결(2003.9.26)

(제2차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 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조완기 의원의 수정안에 대한
거수표결 결과 재석위원 7인중 찬성 7인으로 수정의결)

□ 군포시 제2의견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제안이유 : 제2의견국이념과 관련된 개혁의 추진과 범국민 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98년도에 제정되었으나, 제2의견국범국민추진위원회의 활동이 2003년
8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동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조례안 폐지

○ 의 결 : 원안가결(2003.9.26)

□ 군포시 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제안이유 : 국가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이 인상됨에 따라 의무직렬 공무원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을 통하여 원활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 주요골자 : 일반직 및 전임계약직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을 각각 300,000원 인상

○ 의 결 : 원안가결(2006.9.26)

□ 군포시 청소년수련관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제안이유 : 청소년수련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법인의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청소년수련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재단법인 설립
- 수련관의 운영, 청소년의 수련활동 지원 등 법인의 사업에 관한 사항
- 법인의 이사장, 이사, 감사등 임원에 관한 사항

- 법인의 재원조성에 관한 사항

○ 의 결 : 수정가결(2003.9.26)

(제3차 조례 및 기타안전심사 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조완기 의원의 수정안에 대한
거수표결 결과 재석위원 6인중 찬성 5인으로 기권1인으로 수정의결)

□ 군포시 교육발전기금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제안이유 : 21세기를 주도 할 수 있는 자율적 창의적 중심교육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우수 인재육성으로 전국 최고의 교육도시로의 발전을 위하여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함

○ 주요골자

- 기금의 재원조성의 범위를 규정함
- 기금의 지원사업에 대한 용도를 지정함
-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군포시 교육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심의
하도록 규정함
-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
- 기금의 운영상황에 대한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함

○ 의 결 : 수정가결(2003.9.26)

(제3차 조례 및 기타안전심사 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조완기 의원의 수정안에 대한
거수표결 결과 재석위원 7인중 찬성 6인으로 반대1인으로 수정의결)

2. 동의안

□ 군포시 시립보육시설민간위탁동의안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제안이유 : 2003.12월 준공예정인 군포 및 금정 어린이집과 기존 운영시설인 두산 및
무궁화 어린이집이 2004.1.9일자로 위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새로운 운영자
에게 위탁 운영코자 함.

○ 주요골자

- 수탁자가 관련법규나 협약 등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으며, 협약이 해지된 경우에 수탁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수탁자는 시설 및 장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관리를 하여야하며 천재 지변을 제외한 수탁자의 부주의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복구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수탁자는 위·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약이 해지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설과 장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 수탁자는 보육료, 기부금등 모든 수익금에 대해서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시중 금융기관에 독립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고 회계처리는 투명한 방법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 시장은 어린이집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연도 보육 사업지침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 수탁자는 보조금을 관계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하게 관리 집행하고 다음달 10일 이내에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의 결 : 원안가결(2003.9.26)

□ 군포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군포시 어린이도서관건립)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제안이유 :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을 위하여 200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임.

○ 주요골자

- 도서관을 이용하는 유아·어린이의 수는 자료실 이용자의 52%에 해당하며, 이는 학생과 일반인을 합한 인원수보다 더 높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음에 따라 어린이들을 위한 특성화된 교육시설이 될 수 있는 도서공간을 제공해 주기위하여 어린이 도서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임

○ 의 결 : 원안가결(2003.9.26)

제13장 제105회 임시회

제13장 제105회 임시회

제1절 개 관

1. 개최배경

제105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3년 10월 2일 군포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03년 10월 2일 집회공고를 하여 2003년 10월 9일 개최되었으며 본 회기 중에는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군포시 사회복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조례 및 기타 안건이 다루어졌으며 회기는 2003년 10월 9일부터 10월 16일까지 8일간으로 2차의 본회의를 가졌다.

2. 의사일정

일 시	차 수	부 의 안 건	비 고
10.9(목) 10:00	1	1. 제105회군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105회군포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원선임의건 6. 조례 및 기타안전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7. 조례 및 기타안전심사특별위원회회원선임의건 ○ 휴회의 건	
10.10 ~ 10.11		○ 조례 및 기타안전심사특별위원회 활동	
10.13 ~ 10.15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10.16(목) 10:00	2	1.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군포시사회복지사업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3. 군포시고문공인노무사운영조례안 4. 군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군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군포시보건소수가조례개정조례안 7. 군포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 8. 군포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 군포시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 10.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차량등록민원실건립)	

3. 의회활동

제105회 군포시의회 임시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례 및 기타안전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군포시 사회복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조례 및 기타 안전을 심의·의결하였다.

4. 안전처리상황

안		안	의 결 일 자	처 리 결 과
		총 계 : 16건		
예 산 안	소 계 : 1건			
	•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03.10.16(목)	원안가결
조 례 안	소 계 : 8건			
	1. 군포시사회복지사업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03.10.16(목)	부 결
	2. 군포시고문공인노무사운영조례안		'03.10.16(목)	원안가결
	3. 군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03.10.16(목)	원안가결
	4. 군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03.10.16(목)	원안가결
	5. 군포시보건소수가조례개정조례안		'03.10.16(목)	원안가결
	6. 군포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		'03.10.16(목)	원안가결
	7. 군포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03.10.16(목)	원안가결
	8. 군포시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		'03.10.16(목)	심의보류
건의 · 결의 · 동의	소 계 : 3건			
	•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03.10.9(목)	원안가결
	• 조례 및 기타안전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03.10.9(목)	원안가결
선거 · 선임	소 계 : 2건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03.10.9(목)	선 임
	• 조례 및 기타안전심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03.10.9(목)	선 임
회의 · 진행 · 안건	소 계 : 2건			
	• 제105회군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03.10.9(목)	원안가결
	• 제105회군포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03.10.9(목)	선 임

제2절 주요안건 처리경과 및 결과

1. 예산안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 운영기간 : 2003.10.13 ~ 10.15(3일간)
- 위 원 수 : 9명
이재수, 송정열, 김재일, 최진학, 김진호, 김제길, 김판수, 이경환, 조완기의원
(위원장: 최진학 의원, 간사: 김재일 의원)

□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예산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안 (A)	기정예산안 (B)	증△감 (A-B)	비 고
총 계	256,968,325	244,765,358	12,202,967	
일반회계	181,807,500	169,291,320	12,516,180	
특별회계	75,160,825	75,474,038	-313,213	

- 의 결 : 수정가결(2003.10.16)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에서는 364만원 감액으로 총 예산 2,569억 6,832 만 5천원에서 2,569억 6,468만 5천원으로 예산규모가 감소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3억 2,705만 1천원을 삭감하여 도비 보조금 감액 분을 제외한 3억 2,341만 1천원을 예비비로 증액

2. 조례안

□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구성

- 운영기간 : 2003.10.10 ~ 10.11(2일간)

○ 위 원 수 : 9명

이재수, 송정열, 김재일, 최진학, 김진호, 김제길, 김판수, 이경환, 조완기의원

(위원장: 이재수 의원, 간사: 송정열 의원)

□ 군포시 사회복지사업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제안이유 :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저소득 국가유공자, 저소득 참전유공자 및 보훈 단체, 참전유공자단체에 대한 생활안전 및 복지증진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유공자등에 대하여 응분의 예우와 명예를 선양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기금설치 목적 중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지원 범위에 보훈단체 참전 유공자단체도 포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국가유공자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참전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저소득 국가유공자와 저소득 참전유공자, 보훈단체 및 참전 유공자 단체에 기금을 지원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임.

○ 의 결 : 부결(재석위원 8인중 반대7인, 기권1인으로 본회의에 부의치 않기로 함)

□ 군포시 고문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제안이유 : 우리시를 당사자로 하고 있는 노조관련 업무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노동관계 법의 정확한 해석과 노·사분규의 해결을 원만히 처리하기 위한 고문 공인 노무사 위촉을 통하여 노사관련 업무의 명확성을 제고하고, 노사문제에 대하여 사전에 법률 및 실무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여 우리시의 권익 보호와 합리적인 노사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고문노무사의 자문범위를 규정함
- 고문노무사 1인을 위촉하고 고문노무사의 임기 및 해촉에 관하여 규정함
- 고문노무사의 자문수당 및 수입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의 결 : 원안가결(2003.10.16)

□ 군포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제안이유 : 업무추진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부서를 통합 운영토록 하고, 날로 민원이 증가되고 있는 교통 업무를 보강하여 조직의 안정성을 도모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최대한 확보하여 시민을 위한 서비스행정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
- 주요골자
 - 노사지원과를 폐지하고 지역경제과와 통합하여 노사경제과로 하고, 공원녹지과를 건설도시국에서 경제환경국 소속으로 조정함
 - 교통행정과를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로 분리하여 건설도시국 소속으로 조정함
 - 시민회관 및 시립도서관의 명칭을 변경함
- 의 결 : 원안가결(2003.10.16)

□ 군포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제안이유 :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자치권 강화를 위한 행정조직운영의 자율성·탄력성을 제고하고자 1998년부터 지방구조조정 추진에 따라 일시정지한 표준정원제를 개선 시행하면서 표준정원 및 보정정원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변경되어 금년도 정원을 증원할 수 있는 최대의 범위로 정원을 증원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정원의 총수를 개정하고자 함.
- 의 결 : 원안가결(2003.10.16)

□ 군포시 보건소수가조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제안이유 : 보건소진료비 징수근거법규인 의료보험법 폐지 및 국민건강보험법이 공포, 의료법 개정에 따른 진료 대상범위를 정비하고, 수도시설의 확대보급과 간이급수시설 폐쇄에 따른 수질관련 항목을 조정하는 등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보건소 진료비 징수근거법규인 의료보험법이 폐지되고, 국민건강보험법이 공포됨으로써 관련근거 법규 및 조항 정비
- 상수도의 확대보급으로 간이급수시설이 폐쇄되어 수질검사 관련 조항을 삭제
- 유료접종 비용을 최근 구입가격으로 규정하고, 100원 이하의 금액은 100원으로 상향 조정함
- 의료법 개정에 따라 보건소 진료비 면제대상에 독립유공자와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1~3등급 장애인 및 무의탁자 포함

○ 의 결 : 원안가결(2003.10.16)

□ 군포시 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제안이유 : 보건소 미설치 기간에 보건의료 사업을 의료기관에 촉탁하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증진 하고자 '90년도에 제정되었으나, 의료법 제62조(의료촉탁)규정이 삭제되고, 보건소 장비의 현대화와 인력확보 등으로 의료촉탁의 실효성이 없어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 주요골자 : 동조례 폐지

○ 의 결 : 원안가결(2003.10.16)

□ 군포시 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제안이유 :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기준 중 부과대상을 정비하고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과태료의 부과 기준중 부과대상별 과태료를 현행 '100만원'에서 '200만원' 또는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부과대상을 추가지정 함.
-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을 통보하는 과태료부과 징수결정통지서를 과태료부과 통지서로 변경함.

○ 의 결 : 원안가결(2003.10.16)

□ 군포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제안이유 : 일반회계의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는 하수도사업을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여 사업의 투명성 및 경쟁력을 제고하여 경영의 합리화 기반을 조성코자 함.

○ 주요골자

- 하수도사업을 지방공기업으로 설치하는 조례제정의 목적을 규정함
- 하수도사업의 범위를 규정함
- 하수도사업의 업무관리를 위하여 관리자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

○ 의 결 : 심의보류(재석위원 6인중 찬성 6인)

3. 동의안

□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차량등록민원실건립)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제안이유 :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을 위하여 200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임.

○ 주요골자 : 군포시 금정동 845-1번지 나대지상에 차량등록민원실을 건립, 민원공간을 확보하여 시민들에게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하는 것임.

○ 의 결 : 원안가결(2003.10.16)

제14장 제106회 임시회

제14장 제106회 임시회

제1절 개 관

1. 개최배경

제106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3년 11월 10일 최진화 의원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03년 11월 12일 집회공고를 하여 2003년 11월 18일 개최되었으며 본 회기 중에는 군포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조례안 등 조례 및 기타 안건이 다루어졌으며 회기는 2003년 11월 18일부터 11월 21일까지 4일간으로 2차의 본회의를 가졌다.

2. 의사일정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고
11.18(화) 10:00	1	1. 제106회군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106회군포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회원선임의건 5. 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6. 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회원선임의건 ○ 휴회의 건	
11.18(화) 11:00		○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활동	
11.19~ 11.20		○ 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 활동	
11.21(금) 10:00	2	1. 군포시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 2.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공유재산매각) 3.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공유재산매입)	

3. 의회활동

제10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에서는 조례 및 기타안전심사특별위원회, 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군포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 등 조례 및 기타 안전을 심의·의결하였다.

4. 안전처리상황

안		의 결 일 자	처 리 결 과
총 계 : 9건			
조 례 안	소 계 : 1건		
	1. 군포시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	'03.11.21(금)	수정의결
건의 · 결의 · 동의	소 계 : 4건		
	• 조례 및 기타안전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03.11.18(화)	원안가결
	• 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03.11.18(화)	원안가결
	•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공유재산매입)	'03.11.21(금)	원안가결
	•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공유재산매각)	'03.11.21(금)	부 결
선거 · 선임	소 계 : 2건		
	• 조례 및 기타안전심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03.11.18(화)	선 임
	• 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03.11.18(화)	선 임
회의 · 진행 · 안전	소 계 : 2건		
	• 제106회군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03.11.18(화)	원안가결
	• 제106회군포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03.11.18(화)	선 임

제2절 주요안건 처리경과 및 결과

1. 조례안

□ 조례 및 기타안전심사특별위원회 구성

- 운영기간 : 2003.11.18(1일간)
- 위 원 수 : 9명
이재수, 송정열, 김재일, 최진학, 김진호, 김제길, 김판수, 이경환, 조완기의원
(위원장: 김제길 의원, 간사: 김판수 의원)

□ 군포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제안이유 : 일반회계의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는 하수도사업을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여 사업의 투명성 및 경쟁력을 제고하여 경영의 합리화 기반을 조성코자 함
- 주요골자
 - 하수도사업을 지방공기업으로 설치하는 조례제정의 목적을 규정함
 - 하수도사업의 범위를 규정함
 - 하수도사업의 업무관리를 위하여 관리자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
- 의 결 : 수정가결(2003.11.21)
(제1차 조례 및 기타안전심사 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최진학 의원의 수정안에 대한
거수표결 결과 재석위원 9인중 찬성 9인으로 수정의결)

2. 동의안

□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공유재산매입)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제안이유 :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을 위하여 2003년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안을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임

- 주요골자 : 금번 취득코자 하는 재산은 수리동 한양아파트 뒤쪽에 수리산 산림욕장 주 진입로 우측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로서 수리산 산림욕장을 조성하면서 사유지에 각종 편의시설물이 설치되어 있고, 은판나비공중화장실과 관련한 상·하수도관 및 전기시설이 매설되어 있는 관계로 동 시설물의 안정적인 사용과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동 재산을 매입코자 하는 것임.
- 의 결 : 제석의원 9인중 찬성 5인, 반대 4인으로 원안가결(2003.11.21)

□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공유재산매각)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제안이유 :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을 위하여 200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임.
- 주요골자 : 산본동 310-2번지의 25필지상에 강남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시행되는바, 동사업 지구내 및 주변도로 중 도로로 이용되는 부분을 제척한 6필지 1,579.7㎡에 대하여 도로로서의 기능이 상실됨에 따라 강남아파트 재건축사업조합에 매각 하고자 하는 것임.
- 의 결 : 부 결
(재석의원 9인중 찬성 3인, 반대 6인으로 본회의에 부의치 않기로 함)

□ 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 구성

- 운영기간 : 2003.11.19 ~ 11.20(2일간)
- 위 원 수 : 9명
이재수, 송정열, 김제일, 최진학, 김진호, 김제길, 김판수, 이경환, 조완기의원
(위원장: 이경환 의원, 간사: 조완기 의원)

제15장 제107회 제2차 정례회

제15장 제107회 제2차 정례회

제1절 개 관

1. 개최배경

제107회 제2차 정례회는 군포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제2차 정례회로서 2003년 11월 25일 집회공고하고 2003년 12월 1일 개최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 200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의 예산안을 비롯해 군포시 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조례 및 기타 안건이 다루어 졌으며 회기는 2003년 12월 1일부터 12월 17일까지 17일간으로 3차의 본회의를 가졌다.

2. 의사일정

일 시	차 수	부 의 안 건	비 고
12.1(월) 10:00	1	1. 제107회군포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제107회군포시의회(제2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2004년도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2004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5. 2004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8.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9.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0.시장출석요구의건	
12.2(화) 10:00	2	1. 시정질문의건 ○휴회의건	
12.3 ~ 12.16		○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활동(12.3~12.4)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12.5~12.16)	

일 시	차 수	부 의 안 건	비 고
12.17(수) 10:00	3	1. 2004년도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04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2004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군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군포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재단법인군포시청소년수련관설립 및 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군포시시민회관운영 및 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8. 군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9.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리동사무소증축) 10.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재궁·오금 시립어린이집 건립) 11.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하연립 부지매입) 12.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기존(주)우신버스차고지 매입) 13.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포공영차고지 건물 증축) 14.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포시노인전문요양시설건립)	

3. 의회활동

제107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례 및 기타안전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0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3건의 예산안과 조례 및 기타 안전을 심의·의결하고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였다.

4. 안전처리상황

안 건		의 결 일 자	처 리 결 과
총 계 : 21건			
조 례 안	소 계 : 5건		
	1. 군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03.12.17(수)	원안가결
	2. 군포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03.12.17(수)	원안가결
	3. 재단법인군포시청소년수련관설립 및 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03.12.17(수)	부 결
	4. 군포시시민회관운영 및 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03.12.17(수)	원안가결
	5. 군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03.12.17(수)	원안가결

안 건		의 결 일 자	처 리 결 과
예산 안	소 계 : 3건		
	• 2004년도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03.12.17(수)	수정의결
	• 2004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03.12.17(수)	수정의결
	• 2004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03.12.17(수)	수정의결
건의 동의 결의	소 계 : 8건		
	•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03.12.1(월)	원안가결
	•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03.12.1(월)	원안가결
	•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리동사무소증축)	'03.12.17(수)	원안가결
	•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재궁·오금시립어린이집건립)	'03.12.17(수)	원안가결
	•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하연립부지 매입)	'03.12.17(수)	보 류
	•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기존(주)우신버스차고지매입)	'03.12.17(수)	원안가결
	•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포공영차고지건물증축)	'03.12.17(수)	원안가결
	•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포시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	'03.12.17(수)	원안가결
선거 선임	소 계 : 2건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03.12.1(월)	선 임
	•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03.12.1(월)	선 임
회의 진행 안건	소 계 : 2건		
	• 제107회군포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03.12.1(월)	원안가결
	• 제107회군포시의회(제2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03.12.1(월)	선 임
보고 질문	소 계 : 1건		
	• 시정질문의건	'03.12.2(화)	질문, 답변

제2절 주요안건 처리경과 및 결과

1. 조례안

□ 조례 및 기타안전심사특별위원회 구성

○ 운영기간 : 2003.12.3 ~ 12.4(2일간)

○ 위 원 수 : 9명

이재수, 송정열, 김재일, 최진학, 김진호, 김제길, 김판수, 이경환, 조완기 의원
(위원장: 이재수 의원, 간사: 송정열 의원)

□ 군포시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제안이유 : 군포시 시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3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하고, 감면대상을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 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던 것을 100분의 50만을 경감하도록 함.
-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영구임대주택에 대하여만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를 면제하였으나, 임대임대기간이 30년인 국민임대주택에 대하여 면제 하도록 함.
- 주택건설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율 1,000분의 3을 적용 하던 것을 5년간에서 3년간으로 단축 함.
- 준공업지역내에서 도시형 공장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감면규정을 신설 함.
- 농업기반공사의 농지개량공사용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소세를 면제하던 것을 100분의 50만 경감하도록 함.

○ 의 결 : 원안가결(2003.12.17)

□ 군포시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제안이유 :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자원화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자치단체간 자원화를 목적으로 이동하는 음식물류폐기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은 물론 자원화가 활성화됨에 따라 일부 조문의 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음식물쓰레기를 법령상 용어인 음식물류폐기물로 변경하는 등 동 조례를 개정코자 함.

○ 주요골자

- 조례의 제명 및 본문, 별지 서식 내용 중 ‘음식물쓰레기’의 법령상의 용어가 ‘음식물류폐기물’로 변경됨에 따라 용어를 개정함
-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감량의무 이행계획 변경신고 및 과태료 부과근거를 신설함.
-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범위를 100세대 이상에서 20세대 이상으로 확대함.

○ 의 결 : 원안가결(2003.12.17)

□ 재단법인 군포시 청소년수련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제안이유 : 청소년수련원을 재단법인에 위탁 운영하게 됨에 따라 재단법인에게 청소년수련원을 위탁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조례의 제명을 ‘재단법인 군포시청소년수련관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군포시 재단법인 청소년수련시설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

○ 의 결 : 부결(재석위원 9인중 찬성 3인, 반대 6인으로 본회의에 부의치 않기로 함)

□ 군포시 시민회관운영 및 사용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제안이유 : 군포시시민회관의 명칭이 ‘군포시문화예술회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운영 및 시설의 명칭과 관련된 부분을 문화예술회관에 부합되도록 개정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조례명 ‘군포시시민회관운영 및 사용료징수조례’를 ‘군포시문화예술회관운영 및 사용료징수조례’로 변경함.
- 회관의 운영목적을 문화예술회관에 부합되도록 조문을 정비 함.
- 회관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한 명칭을 재정비하고자 함.
- 회관의 사용허가, 사용료의 납부, 사용료의 반환조항중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예외규정인 단서조항을 삭제 함.
- 회관운영의 활성화 및 공연홍보 등을 위하여 ‘문화가족회원제운영’ 및 ‘공연자원봉사자 운영’ 사항을 신설 함.
- 회관의 사용료 납부에 따른 시설의 명칭을 현실에 맞게 조정 함.

- 의 결 : 원안가결(2003.12.17)

□ 군포시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제안이유 : 상수도사용료 현실화 추진계획에 의하여 상수도요금을 생산원가 수준으로 현실화 하고 상수도요금 자동납부 수용가의 사용요금 감면 및 요금 징수 기여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수도사업의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결과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 계량기의 탈·부착 및 교체비용을 시장이 부담하도록 함
- 상수도요금 자동납부 수용가에 대하여는 5천원 범위안에서 당해 월 사용요금의 1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는 규정 신설 함
- 상수도요금 과년도분 징수자 및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한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 신설 함
- 상수도 사용료를 평균 16.1퍼센트 인상 함

○ 의 결 : 원안가결(2003.12.17)

2. 예산안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 운영기간 : 2003.12.5 ~ 12.16(12일간)

○ 위 원 수 : 9명

이재수, 송정열, 김재일, 최진학, 김진호, 김제길, 김판수, 이경환, 조완기 의원
(위원장: 최진학 의원, 간사: 김재일 의원)

□ 200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예산규모

(단위: 천원)

구분	예 산 안 (A)	전년도예산액 (B)	증△감 (A-B)	비고
총 계	213,398,838	185,386,821	28,012,017	
일 반 회 계	160,289,914	148,862,099	11,427,815	
특 별 회 계	53,108,924	36,524,722	16,584,202	

○ 의 결 : 수정의결(2003.12.17)

일반회계 세출예산 49억 8,447만 6천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증액하고 교통사업
특별 회계 세출예산 580만원은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 로 증액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

□ 2004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예산규모

(단위: 천원)

구 분		사 업 예 산	자 본 예 산	자 금 운 영
수 입	예 산 액	14,577,611	2,163,300	16,740,911
	전년도예산	14,413,444	1,691,377	16,104,821
	증감	164,167	471,923	636,090
지 출	예 산 액	12,487,984	4,252,927	16,740,911
	전년도예산	13,484,273	2,620,548	16,104,821
	증감	△996,289	1,632,379	636,090

○ 의 결 : 수정의결(2003.12.17)

(세출예산 3,1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고 기타부분은원안대로 가결)

□ 2004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예산규모

(단위: 천원)

구 분		사 업 예 산	자 본 예 산	자 금 운 영
수 입	예 산 액	5,862,782	1,338,000	8,200,782
	전년도예산			
	증감	5,862,782	1,338,000	8,200,782
지 출	예 산 액	5,336,814	2,863,968	8,200,782
	전년도예산			
	증감	5,336,814	2,863,968	8,200,782

○ 의 결 : 수정의결(2003.12.17)

(세출예산 16,2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

3. 동의안

□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리동사무소 증축)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제안이유 :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을 위하여 200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임.
- 주요골자 : 전국 시범으로 실시한 주민자차센터가 이용주민의 증가에 비하여 주민활용 시설 공간 부족으로 요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는 역부족인 실정으로 수리동사무소 청사를 증축하여 각종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여 주민자치 센터를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것임.
- 의 결 : 원안가결(2003.12.17)

□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재궁·오금 시립어린이집 건립)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제안이유 :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을 위하여 200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결을 받고자하는 것임.
- 주요골자 : 영유아의 건전육성 도모 및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향후 공공청사 건립이 불투명한 공용의 청사부지인 금정동 872-5번지 및 산본동 1156-6번지 시유지에 시립어린이집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임.
- 의 결 : 원안가결(2003.12.17)

□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산본동 은하연립 부지매입)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제안이유 :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을 위하여 200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결을 받고자하는 것임.
- 주요골자

(단위: ㎡, 백만원)

위 치	지목	매 입 규 모					사 업 비	사업 기간	비고
		연면적	건물 면적	층 수	소유주	구조			
산본동 251-4	임야	1,510	1,619	3개층 (지하1층 지상2층)	박병주의 29인	조적조	4,740 부지매입비:3,550 철거비: 970 설계비: 20 시설비: 200	2004.1 ~ 2005.12	공영 주차장 사용

○ 의 결 :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심의보류(2003.12.17)

□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기존(주)우신버스 차고지매입)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제안이유 :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을 위하여 200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결을 받고자하는 것임.

○ 주요골자

- 2001.6.30일 군포공영차고지가 준공되었으나 (주)우신버스 차고지 이전이 지연됨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소음과 환경공해로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주)우신버스 차고지가 2004년도에 군포공영차고지로 이전하기로 협의됨에 따라 지역 주민들의 장기민원을 해소하고 난개발 방지와 적합한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기존 차고부지를 시에서 매입하여 적합한 공공용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임.

○ 의 결 : 원안가결(2003.12.17)

□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포공영차고지 건물 증축)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제안이유 :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을 위하여 200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결을 받고자하는 것임.

○ 주요골자 : 군포공영차고지가 2001.6.30일 준공되어 5개의 운수업체가 이주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공영차고지내 건물의 협소로 사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던 바 2003.7.25일 건설교통부 중앙도시계획심의회에서 건물 증축에 대한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득하여 군포공영차고지를 입주업체들에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증축하고자 하는 것임.

○ 의 결 : 원안가결(2003.12.17)

□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포시 노인전문 요양시설 건립)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제안이유 :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을 위하여 200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결을 받고자하는 것임.

○ 주요골자 : 부곡동 산126-1번지(보건소 부지)일대 사유지에 노인전문 요양시설을 건립하여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중풍·치매노인의 보호 및 재활훈련을 통하여 보건의료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임.

○ 의 결 : 원안가결(2003.12.17)

4. 시정질문

제10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03. 12. 2)에서 군포시장을 비롯한 관계 실·국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이재수 의원 등 2인의 의원이 다음과 같이 시정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았다.

□ 시정에 관한 질문

○ 질 문 : 이재수 의원

• 질문내용

경기도의 ‘경기도민의 숲’ 조성과 관련한 군포시의 대책 및 입장은?

→ 답 변(시장)

급속한 개발로 인해 도심지내 녹지부족 현상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자연생태계 보전과 훼손된 녹지의 복원 확충을 위해 경기도민의 숲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며 최적지로 속달동 일원이 선정되었으나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과 마찰로 인하여 사업에 난항을 겪고 있음 경기도에서 간담회를 갖고 주민설명회와 용역보고회시 지역주민을 직접 참여하게 하는

등 대화와 합의를 통해 주민과 원만히 타협할 수 있도록 노력중이며 경기도와 긴밀히 협의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주민들과 함께 고심하며 풀어나가겠음.

• 질문내용

건설교통부의 '복합화물터미널부지확장'계획 관련 교통 및 환경문제에 대하여

→ 답변(시장)

복합터미널의 입지로 인하여 주차문제의 발생과 환경오염으로 주민생활에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으나 건설교통부에서는 물류수송체계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확장을 추진하고 있음. 그로인해 차량의 지·정체와 소음과 매연, 상당한 도시·교통·환경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전망되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교통성 검토용역을 완료하여 종합교통처리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도시관리계획과 실시계획 협의시 강력하게 요구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하며 시민 및 시민단체와 협조하여 강력 대응해 나갈 것임.

• 질문내용

군포부곡택지개발지구에 신설도로개설 및 토지 지장물보상원칙에 대하여?

→ 답 변(시장)

수도권지역의 주택난완화를 위한 임대주택단지의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추진시 복합화물터미널의 확장과 부곡지구의 개발로 인한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부곡택지개발지구의 도마교동 국도 47번 도로를 연결시키는 도로의 신설과 부곡택지 개발지구내 편입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충분한 보상과 이주대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요구하고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시 시의 의견이 적극 수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 질 문 : 조완기 의원

• 질문내용

건설교통부의 수도권서부고속도로(수원~광명)건설계획에 따른 우리시의 협의내용과 대책 및 입장에 대하여?

→ 답 변(시장)

경기 서부권 남·북 방향의 원활한 차량소통 도로 및 고속국도기능 부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우리시는 계획노선 중 김만기 선생과 정난중 선생의 묘역 및 속달마을 일원에 대한, 선형의 변경을 요구하는 의견을 제출하였고, 본 도로건설추진 반대대책위원회에서 우려하는 환경파괴라는 점에 대하여는 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 앞으로 도로 건설이 추진된다면, 환경·교통영향평가와 실시설계 단계에서, 세밀한 검토와 협의를 통하여 환경파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질문내용

산본천 복원문제 공론화에 따른 군포시의 계획과 입장에 대하여?

→ 답 변(시장)

산본천 복원에 대해 공감과 필요성을 느끼고는 있지만, 막대한 재원과 교통대책, 금정역세권개발사업 등에 따른 시민의 공감대 형성 등의 많은 난제와 하천유지수량 확보방안의 문제가 있음. 산본천 복원을 위한 독자적인 기구를 설치할 계획은 없으나, 향후, 산본천 복원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음.

• 질문내용

‘군포시 녹지 및 가로수 관리’ 정책입안과 포괄적인 녹지관리에 관한 정책의 제도화에 대하여

→ 답 변(시장)

도시녹화사업에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2004년 본예산에 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하여 ‘가로수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을 의뢰 장기적인 녹지비전을 제시할 계획이며, 공원·녹지관리에 대하여는 현재 입법예고 중인 도시공원법이 개정되어 시행에 들어가는 2004년7월 이후에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가로수 관리에 대해서는 산림법, 도시공원법, 도로법 등 관련 법령과의 규정을 연계하여, 가로수관리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겠음.

제16장 제108회 임시회

제16장 제108회 임시회

제1절 개 관

1. 개최배경

제108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3년 12월 12일 군포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03년 12월 13일 집회공고를 하여 2003년 12월 20일 개최되었으며 본 회기 중에는 2003년도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등 예산안 2건과 군포시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등의 기타 안건이 다루어 졌으며 회기는 2003년 12월 20일부터 12월 24일까지 5일간으로 2차의 본회의를 가졌다.

2. 의사일정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고
12.20(토) 10:00	1	1. 제108회군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108회군포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2003년도 제4회추가경정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2003년도 제3회추가경정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 휴회의 건	
12.22(월) ~ 12.23(화)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12.24(수) 09:30	2	1. 2003년도 제4회추가경정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03년도 제3회추가경정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군포시도로정비 및 유지관리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 4. 군포시하수도시설물유지관리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 5.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공유재산매각)	

3. 의회활동

제108회 군포시의회 임시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03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 2건의 예산안과 기타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4. 안전처리상황

안 건		의 결 일 자	처 리 결 과
총 계 : 9건			
예 산 안	소 계 : 2건		
	•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03.12.24(수)	원안가결
	•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03.12.24(수)	원안가결
건의 결의 동의	소 계 : 4건		
	•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03.12.20(토)	원안가결
	• 군포시도로정비 및 유지관리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	'03.12.24(수)	원안가결
	• 군포시하수도시설물유지관리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	'03.12.24(수)	원안가결
	•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공유재산매각)	'03.12.24(수)	부 결
선거 선임	소 계: 1건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03.12.20(토)	선 임
회의 진행 안건	소 계: 2건		
	• 제108회군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03.12.20(토)	원안가결
	• 제108회군포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03.12.20(토)	선 임

제2절 주요안건 처리경과 및 결과

1. 예산안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 운영기간 : 2003.12.22 ~ 12.23(2일간)

○ 위 원 수 : 9명

이재수, 송정열, 김재일, 최진학, 김진호, 김제길, 김판수, 이경환, 조완기 의원

(위원장: 김제길 의원, 간사: 김판수 의원)

□ 2003년도 제4회 추가경정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예산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안 (A)	기정예산안 (B)	증△감 (A-B)	비고
총 계	267,673,617	256,964,685	10,708,932	
일 반 회 계	183,629,491	181,803,860	1,825,631	
특 별 회 계	84,044,126	75,160,825	8,883,301	

○ 의 결 : 원안가결(2003.12.24)

□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예산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사 업 예 산	자 본 예 산	자 금 운 영
수 입	예 산 액	14,892,469	2,315,888	23,018,059
	기 정 예 산	14,486,310	2,285,377	22,581,389
	증감	406,159	30,511	436,670

구 분		사 업 예 산	자 본 예 산	자 금 운 영
지 출	예 산 액	13,221,168	9,796,891	23,018,059
	기 정 예 산	12,747,335	9,834,054	22,581,389
	증감	473,833	△37,163	436,670

○ 의 결 : 원안가결(2003.12.24)

2. 동의안

□ 군포시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제안이유

- 전문기술력과 장비를 갖춘 민간 업체에 위탁하여 파손된 도로 및 시설물을 정비 보수함으로써 작업 능률의 향상과 품질향상으로 주민불편사항 해소에 보다 향상된 서비스를 주민에게 제공
-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한 예산의 절감효과를 지양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하고자 민간위탁을 추진

○ 주요골자

- 수탁된 모든 사무는 하도급행위를 할 수 없음.
- 민간위탁업체로 선정시 기존의 도로수로원에 대하여 본인이 희망할 경우 전원 고용승계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중 해고를 금하며 부당노동행위를 시켜서는 아니됨
- 우리시 관할구역내 사무실을 확보하고 항상 장비 및 인력을 대기하여 도로(도로 시설물 포함) 긴급보수를 요하거나 도로상 재해발생시 즉시 출동하여 조치하여야 함.

○ 의 결 : 원안가결(2003.12.24)

□ 군포시 하수도시설물유치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제안이유

- 하수도 시설물 유지관리 사무는 시설관리의 단순행정사무로서 기동성과 준설 보수장비

및 전문인력을 갖춘 업체에 민간위탁하여 늘어나는 시민요구에 적극 부응하고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

-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예산의 절감효과를 거양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을 높이고자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의거 위탁 운영코자 함.

○ 주요골자

- 민간위탁사무는 관내 빗물받이 6,056개소, 맨홀 4,043개소, 우수집수정 30개소에 대하여 전반적인 관리와 준설실시
- 민간위탁업체는 민원발생시 1시간 이내에 응소 및 조치 후 보고하여야 한다.
- 우기시에는 장비 및 상근인력 4명이상이 24시간 대기하고 시의 지시에 따라 즉시 조치한다.
- 민간위탁업체는 상하수도설비업 면허를 보유하고 주된 영업소재지가 군포시 관할구역 내로서 준설장비, 1톤 트럭이상을 소유한 업체이어야 한다.
- 기존의 준설원에 대하여 본인이 희망할 경우 위탁업체는 전원 고용승계 하여야 한다.

○ 의 결 : 원안가결(2003.12.24)

□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공유재산 매각)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제안이유 :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을 위하여 200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임.

- 주요골자 : 산본동 310-2번지의 25필지상에 강남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시행되는바, 동사업 지구내 및 주변도로중 도로로 이용되는 부분을 제척한 6필지 1,579.7㎡에 대하여 도로로서의 기능이 상실됨에 따라 강남아파트 재건축사업조합에 매각 하고자 하는 것임.

○ 의 결 : 부결(재석위원10인중 찬성 5인, 반대4인, 기권1인)

제17장 제109회 임시회

제17장 제109회 임시회

제1절 개 관

1. 개최배경

제109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4년 2월 3일 군포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04년 2월 7일 집회공고를 하여 2004년 2월 14일 개최되었으며 본 회기 중에는 군포시 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조례안과 기타 안건이 다루어 졌으며 회기는 2004년 2월 14일부터 2월 18일까지 5일간으로 2차의 본회의를 가졌다.

2. 의사일정

일 시	차 수	부 의 안 건	비 고
2.14(토) 10:00	1	1. 제109회군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109회군포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조례 및 기타안전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조례 및 기타안전심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 휴회의 건	
2.16(월) ~ 2.17(화)		○ 조례 및 기타안전심사특별위원회 활동	
2.18(수) 10:00	2	• 군포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 군포시 화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 조례안 • 군포시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 • 군포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 당정동근린공원입안에 따른 의견제시의건	
2.18(수) 10:00	2	• 대야하수종말처리장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건 • 개발제한구역해제 및 취락지구지정에 따른 의견제시의건	

3. 의회활동

제10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에서는 조례 및 기타 안전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군포시 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조례안과 기타 안전을 심의·의결하였다.

4. 안전처리상황

안 건		의 결 일 자	처 리 결 과
총 계 : 12건			
조 례 안	소 계 4건		
	1. 군포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04.2.18(수)	원안가결
	2. 군포시 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04.2.18(수)	원안가결
	3. 군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04.2.18(수)	심의보류
	4. 군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04.2.18(수)	원안가결
건의 · 결의 · 동의	소 계 5건		
	• 조례 및 기타안전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04.2.14(토)	원안가결
	• 당정동근린공원입안에따른의견제시의건	'04.2.18(수)	원안가결
	• 대야하수종말처리장결정(변경)에따른의견제시의건	'04.2.18(수)	원안가결
	• 개발제한구역해제 및 취락지구지정에따른의견제시의건	'04.2.18(수)	원안가결
	•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공유재산매각)	'04.2.18(수)	원안가결
선거 · 선임	소 계 : 1건		
	• 조례 및 기타안전심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04.2.14(토)	선 임
회의 · 진행 · 안전	소 계 : 2건		
	• 제109회군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04.2.14(토)	원안가결
	• 제109회군포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04.2.14(토)	원안가결

제2절 주요안건 처리경과 및 결과

1. 조례안

□ 조례 및 기타 안건심사 특별위원회 구성

○ 운영기간 : 2004.2.16 ~ 2.17(2일간)

○ 위 원 수 : 9명

이재수, 송정열, 김재일, 최진학, 김진호, 김제길, 김판수, 이경환, 조완기의원

(위원장: 이경환 의원, 간사: 조완기 의원)

□ 군포시 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조완기 의원의 9인

○ 제안이유 : 2003.12.18일자로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경비 일부를 상향 조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의원의 의정자료수집·연구비를 월 55만원에서 월 9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보조 활동비를 월 2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 함

－ 의원의 국내외 여비지급 범위 중 숙박비를 지방자치법시행령 및 공무원여비 규정에 의거 상향 조정 함

○ 의 결 : 원안가결(2004.2.18)

□ 군포시 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제안이유 :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자원의 낭비가 심화되고 폐기물 발생량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음에도 1회용품 사용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관련 조례는 군포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에 홍보·계도에 관한 사항에 한정하여 규정되어 있어 신고포상금제 추진에 따른 포상금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현실에 부합되는 1회용품 사용에 따른 과태료 부과 근거를 조례로

제정하여 사업자의 의무준수와 주민참여를 통한 1회용품 사용의 효율적 사용
규제를 도모코자 함

○ 주요골자

-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사업장의 업종별로 지켜야할 사용억제·무상제공금지 1회용품 및 세부준수사항을 규정함
-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사업장의 준수사항 위반시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부과절차를 규정함.

○ 의 결 : 원안가결(2004.2.18)

□ 군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제안이유 : 2004년부터 당직수당을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산정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지침’으로 시달됨에 따라 우리시 실정에 적합한 당직수당 지급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임.

○ 주요골자 : 당직근무자에 대하여 수당 지급규정을 신설 함.

○ 의 결 : 심의보류(2004.2.18)

□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제안이유 : 지역단위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공공부문이 앞장서서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실업난 완화 및 민간부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보정 정원 내에서 정원 책정이 가능하도록 함에 따라 금년도 정원을 증원할 수 있는 최대의 범위로 정원을 증원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정원의 총수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정원의 총수를 644명에서 658명으로 개정함.
- 집행기관의 정원을 630명에서 644명으로 개정함.

○ 의 결 : 원안가결(2004.2.18)

2. 동의안

□ 당정동 근린공원 입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제안이유 : 쾌적한 지역주민의 휴식공간 및 편의제공과 건전하고 문화적인 주민정서 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근린공원 신설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하여 사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견을 청취 하고자 함.

○ 주요골자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 경	변경후		
신설	-	공원	근린 공원	당정동 761번지일원	-	증)25,093	25,093	-	

○ 의 결 : 원안가결(2004.2.18)

□ 대야 하수종말처리장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제안이유 : 2002년 12월 5일 군포 도시관리계획 결정시 진입도로 포함 하수종말처리장 으로(15,000㎡)로 결정되었으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부로 부터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시 진입도로는 별도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 하수종말처리장 부지 (9173㎡)만 승인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 주요골자

구 분	시 설 명	세부 시설명	위 치	면적(㎡)	비고
기 정	하 수 도	하수종말 처 리 장	군포시 둔대동 산40-8번지 일원	15,000	

구 분	등급	류별	번 호	폭원 (m)	기 능	연장 (m)	기 점	총 점	사용 형태	비고
변 경	소로	2	292	8	국지 도로	330.4	중1-59 호선	하수종말처리장 (둔대184)	일반 도로	
	시 설 명		세 부 시 설		위 치		면 적(m ²)		비 고	
	하 수 도		하수종말 처 리 장		군포시 둔대동 279외 13필		9,127		면적조정	

○ 의 결 : 원안가결(2004.2.18)

□ 개발제한구역해제 및 취락지구 지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제안이유 : 개발제한구역안의 집단취락에 대하여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군포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집단취락지구 지정,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4조 및 제14조에 의거 입안한 사항 중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로 심의의결됨에 따라 일부 변경사항에 대해 동법 제7조에 의거 도시 계획으로 결정하기전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 주요골자

도시명	구 역 명	위 치	면 적(m ²)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군 포	개발제한구역	군포시 일원	24,251,000	감)563,073	23,687,927	

- 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내용

도시명	구 분	구역명	위치	면적(m ²)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군포	개발제한구역해제	신 기	당동574-1일원	52,678	5,785	58,463	
"	"	대 감	둔대동194-1일원	69,727	3,255	72,982	
"	"	덕고개	속달동233-6일원	27,888	1,047	28,935	
"	"	납다골	속달동357일원	41,909	2,827	44,736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내용

도시명	구 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군포	개발제한구역해제	신 기	당동574-1일원	52,678	5,785	58,463	
"	"	대 감	둔대동194-1일원	69,727	3,255	72,982	
"	"	덕고개	속달동233-6일원	27,888	1,047	28,935	
"	"	납다골	속달동357일원	41,909	2,827	44,736	

○ 의 결 : 원안가결(2004.2.18)

□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공유재산 매각)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제안이유 :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을 위하여 200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결을 받고자하는 것임.

○ 주요골자 : 산본동 310-2번지의 25필지상에 강남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시행되는바, 동사업 지구내 및 주변도로 중 도로로 이용되는 부분을 제척한 6필지 1,579.7㎡에 대하여 도로로서의 기능이 상실됨에 따라 강남아파트 재건축사업조합에 매각 하고자 하는 것임.

○ 의 결 : 원안가결(재석위원 10인중 찬성 6인, 반대4인)

제18장 제110회 임시회

제18장 제110회 임시회

제1절 개 관

1. 개최배경

제110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4년 3월 12일 군포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소집요구일 당일 집회공고를 하여 2004년 3월 20일 개최되었으며 본 회기 중에는 군포시 행정운영동의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조례안과 기타 안건이 다루어 졌으며 회기는 2004년 3월 20일부터 3월 24일까지 5일간으로 2차의 본회의를 가졌다.

2. 의사일정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고
3.20(토) 10:00	1	1. 제110회군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110회군포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조례 및 기타안전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조례 및 기타안전심사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건 ○ 휴회의 건	
3.22(월) ~ 3.23(화)		○ 조례 및 기타안전심사특별위원회 활동	
3.24(수) 10:00	2	1. 군포시 행정운영동의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2. 군포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3. 군포시 청소년수련관설치 및 운영조례안 4. 군포시 청소년수련원설치 및 운영조례안 5.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산본동 은하연립부지매입)	

3. 의회활동

제11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에서는 조례 및 기타 안전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군포시행정운용동의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조례안과 기타 안전을 심의·의결하였다.

4. 안전처리상황

안		의 결 일 자	처 리 결 과
총 계 : 9건			
조 례 안	소 계 : 4건		
	1. 군포시 행정운용동의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04.3.24(수)	원안가결
	2. 군포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04.3.24(수)	원안가결
	3. 군포시 청소년수련관설치 및 운영조례안	'04.3.24(수)	원안가결
	4. 군포시 청소년수련원설치 및 운영조례안	'04.3.24(수)	수정의결
건의 · 결의 · 동의	소 계 : 2건		
	• 조례 및 기타안전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산본동 은하연립부지매입)	'04.3.20(토) '04.3.24(수)	원안가결 원안가결
선거 · 선임	소 계 : 1건		
	• 조례 및 기타안전심사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건	'04.3.20(토)	선 임
회의 · 진행 · 안건	소 계 : 2건		
	• 제110회군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04.3.20(토)	원안가결
	• 제110회군포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04.3.20(토)	선 임

제2절 주요안건 처리경과 및 결과

1. 조례안

□ 조례 및 기타안전심사특별위원회 구성

○ 운영기간 : 2004.3.22 ~ 3.23(일간)

○ 위 원 수 : 9명

이재수, 송정열, 김재일, 최진학, 김진호, 김제길, 김판수, 이경환, 조완기의원

(위원장: 이재수 의원, 간사: 송정열 의원)

□ 군포시 행정운영동의설치 및 동장정수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제안이유 : 금정동 및 대야동 동사무소가 신청사로 이전됨에 따라 동사무소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금정동사무소의 위치를 금정동 705-5로 하고, 대야동사무소의 위치를 대야미동산 1-7로 변경함.

○ 의 결 : 원안가결(2004.3.24)

□ 군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제안이유 : 2004년부터 당직수당을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산정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지침’으로 시달됨에 따라 우리시 실정에 적합한 당직수당 지급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골자 : 당직근무자에 대하여 수당 지급규정을 신설 함.

○ 의 결 : 원안가결(2004.3.24)

□ 군포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제안이유 : 미래사회의 주역인 청소년들의 수련활동과 정서함양 등 건전한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건립한 군포시 청소년수련관의 설치운영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청소년수련관 운영 및 이용에 따른 방법과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청소년수련관의 설치 및 운영목적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수련관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수련관을 재단법인군포시청소년수련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수련관 사용허가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수련관 사용자에게 징수할 사용료의 징수 및 결정에 따른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수련관의 사용료 면제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의 결 : 원안가결(2004.3.24)

□ 군포시 청소년 수련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제안이유 : 청소년들의 창의성과 올바른 인성개발을 지원하고 다양한 수련활동을 통해 정서함양 등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 조성한 자연권 수련시설인 군포시 청소년수련원의 설치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청소년수련원의 운영 및 이용에 따른 방법과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청소년수련원의 설치 및 운영목적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수련원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수련원을 청소년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수련원 사용허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수련원 사용자에게 징수할 사용료의 징수 및 결정에 따른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수련원의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의 결 : 수정의결(2004.3.24)

(제2차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 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김진호 의원의 수정안에 대한
거수표결 결과 재석위원 7인중 찬성 7인)

2. 동의안

□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하연립 부지매입)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제안이유 :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을 위하여 2004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결을 받고자하는
것임.

○ 주요골자 : 산본동 251-4번지에 위치한 은하연립주택은 1979년 건축된 조적건물로서
내력벽에 균열이 발생하여 96년부터 재난위험건물(D급)로 판정, 재건축이
추진되어 왔으나 건물주들의 사정으로 인하여 장기간 방치됨에 따라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피해가 우려되어 시에서 매입, 건물철거 후 공공시설용지로
활용하고자하는 것임.

○ 의 결 : 원안가결(2004.3.24)

제19장 제11회 임시회

제19장 제111회 임시회

제1절 개 관

1. 개최배경

제111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4년 5월 20일 군포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소집요구일 당일 집회공고를 하여 2004년 5월 27일 개최되었으며 본 회기 중에는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안 등 예산안 3건과 군포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조례안과 기타 안건이 다루어 졌으며

회기는 2004년 5월 27일부터 6월 8일까지 13일간으로 2차의 본회의를 가졌다.

2. 의사일정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고
5.27(목) 10:00	1	1. 제111회군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111회군포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5.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8.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9.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0.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1.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2. 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 13.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4.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5. 2003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안 ○ 휴회의 건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고
5.28(금) ~ 6.7(월)		○ 특별위원회 활동 - 조례 및 기타안전심사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6.8(화) 10:00	2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군포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안 5. 군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6. 군포시폐기물관리예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군포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8. 군포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 9. 군포시시민체육광장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 청소년상담실민간위탁동의안	

3. 의회활동

제111회 군포시의회 임시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례 및 기타 안전심사 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안 등 추경예산안 3건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계획서 승인 군포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조례안과 기타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4. 안전처리상황

안 건		의 결 일 자	처 리 결 과
총 계 : 23건			
조 례 안	소 계 : 7건		
	1. 군포시응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안	'04.6.8(화)	수정의결
	2. 군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04.6.8(화)	원안가결
	3. 군포시수주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04.6.8(화)	심의보류
	4. 군포시폐기물관리예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04.6.8(화)	원안가결
	5. 군포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04.6.8(화)	원안가결
	6. 군포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	'04.6.8(화)	원안가결
	7. 군포시시민체육광장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04.6.8(화)	원안가결
예 산 안	소 계 : 3건		
	•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04.6.8(화)	수정의결
	•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04.6.8(화)	원안가결
	•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04.6.8(화)	원안가결
건의 · 결의 · 동의	소 계 : 6건		
	•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04.5.27(목)	원안가결
	• 조례 및 기타안전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04.5.27(목)	원안가결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04.5.27(목)	원안가결
	•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04.5.27(목)	원안가결
	• 행정조사발의건	'04.5.27(목)	원안가결
	• 청소년상담실민간위탁동의안	'04.6. 8(화)	원안가결
선거 · 선임	소 계 : 5건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04.5.27(목)	선 임
	• 조례 및 기타안전심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04.5.27(목)	선 임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04.5.27(목)	선 임
	•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04.5.27(목)	선 임
	• 2003회계년도결산감사위원선임안	'04.5.27(목)	선 임
회의 · 진행 · 안건	소 계 : 2건		
	• 제111회군포시의회(임시회)회가결정의건	'04.5.27(목)	원안가결
	• 제111회군포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건	'04.5.27(목)	원안가결

제2절 주요안전처리경과 및 결과

1. 조례안

□ 조례 및 기타안전심사특별위원회 구성

○ 운영기간 : 2004.5.28 ~ 5.31(4일간)

○ 위 원 수 : 9명

이재수, 송정열, 김재일, 최진학, 김진호, 김제길, 김판수, 이경환, 조완기의원
(위원장: 최진학 의원, 간사: 김재일 의원)

□ 군포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안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제안이유 : 군포시의 사무 중 각종 용역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용역과제 선정의 타당성 및 합리성에 대한 검증을 통하여 효율적인 사업추진과 예산집행의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임.

○ 주요골자 : 조례의 목적과 용어에 대해 정의하고,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용역 범위를 용역비 2천만원 이상인 학술용역과 용역비가 3천만원 이상이거나 보상비 등을 제외한 순수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인 종합기술용역 및 공사설계 용역으로 하며 용역과 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함.

○ 의 결 : 수정가결(2004.6.8)

(제1차 조례 및 기타안전심사 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조완기 의원 의 수정안에 대한
거수표결 결과 재석위원 7인중 찬성 5인 반대1 인 기권1인)

□ 군포시 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제안이유 : 2030년12월30일자로 행정자치부 소관 지방세법령의 개정에 따라 현행시세
조례의 관련조문을 정비하여 세무행정의 법적근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임.

○ 주요골자

-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수를 6인 이내에서 10인 이내로 상향 조정하여 심사의 객관성을 높이고자 함
- 소액(30만원미만)정기분 납세고지서의 원활한 송달을 위해 일반우편 송달제도를 도입함
- 신고납부 세목에 대하여 신고납부의무를 신고의무와 납부의무로 분리하고, 가산세도 신고 및 납부불이행 가산세로 분리하여 차등 적용함
- 자동차를 승계 취득하는 경우 종전에는 신청이 있는 때에만 그 양도일을 기준으로 1할 계산하여 양도·양수인에게 각각 자동차세를 과세하였으나, 2005년 부터는 일률적으로 그 소유권이전등록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 과세토록 함
- 유류세 인상에 따른 운수업계보조금의 재원확보 등을 위하여 주행세 법정세율을 1,000분의 115에서 1,000분의 175로 인상함
- 담배사업법이 개정되어 '제조담배'의 법령상의 용어가 '담배'로 변경됨에 따라 용어를 개정함

○ 의 결 : 원안가결(2004.6.8)

□ 군포시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제안이유 : 입찰참가수수료를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입찰참가자에게 수수료를 징수하여 왔으나 G2B시스템으로 전자입찰을 실시함에 입찰시 징수하는 수수료의 징수 원인이 소멸되었으므로 수수료 징수조례중 입찰참가수수료를 삭제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 각종 인·허가 등 사항 중 '사' 목의 회계과 종류중 입찰참가신청과 관련한 사항을 삭제함

○ 의 결 : 심의보류(2004.6.8)

□ 군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제안이유 : 폐기물처리업 허가관련 제한 규정을 마련하여 폐기물처리업 허가 신청이 우리시로 과다하게 물리는 것을 예방하고, 적정수의 폐기물처리업체를 유지 관리함으로써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자하며, 폐기물관리시민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폐기물처리업허가시 시장이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신설함
- 폐기물관리시민위원회의 위촉대상 중 폐기물관련 ‘재활용사업자’를 폐기물관련 ‘사업자’로, ‘각동부녀회장’에서 ‘부녀회장 대표’로 ‘각동의 동장이 추천하는 자’로 개정
- 폐기물관리시민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2년의 범위내에서 위촉당시의 자격을 가진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개정

- 의 결 : 원안가결(2004.6.8)

□ 군포시통·반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제안이유 : 당정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및 산본1동 신규모아파트 입주로 인한 인구 증가에 따라 통·반의 조정 및 신설과 일부 불균형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통·반 관할 구역의 조정 사항임

○ 주요골자

- 군포1동 27통 관할 구역내 신규모아파트 및 단독주택 입주에 따라 3개통을 신설함
- 불균형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군포1동 30통 및 31통의 관할구역을 조정함
- 산본1동 개성하이뷰아파트 입주에 따른 18통내 2개 반을 신설함

- 의 결 : 원안가결(2004.6.8)

□ 군포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제안이유 : 우리시 관내에 소재한 초·중·고등학교의 학교급식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과 식생활 개선과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고자 학교급식제도 개선을 위한 운동본부(대표:조성법)에서

군포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청구가 제출되어 동 조례를 제정하고자함

○ 주요골자

- 조례의 목적과 용어에 대하여 정의 함
-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소요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 학교급식의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군포시 관내에 소재한 직영급식학교 중 초·중·고등학교로 규정함
- 학교급식의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지원금의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사용하고, 지원금 사용내역의 정산보고 사항을 보고하도록 규정함
- 지원대상자가 학교급식의 지원금을 지원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시장이 요구한 준수사항 위반시 지원금을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사항을 규정함
- 학교급식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의 결 : 원안가결(2004.6.8)

□ 군포시 시민체육광장시설관리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제안이유 : 시민체육광장 내 체육시설의 확충으로 잔디축구장과 체육관이 새롭게 조성됨에 따라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시설별로 사용료를 책정하여 이용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함

○ 주요골자 : 잔디축구장 조성 및 체육관 신축으로 체육시설의 시설명 및 사용료를 신설하거나 조정함

○ 의 결 : 원안가결(2004.6.8)

2. 예산안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 운영기간 : 2004.6.1 ~ 6.5(5일간)

○ 위 원 수 : 9명

이재수, 송정열, 김재일, 최진학, 김진호, 김제길, 김판수, 이경환, 조완기의원

(위원장: 김제길 의원, 간사: 김판수 의원)

□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예산규모 :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안 (A)	기정예산액 (B)	증△감 (A-B)	비 고
총 계	245,185,431	213,398,838	31,786,593	
일반회계	172,504,403	160,289,914	12,214,489	
특별회계	72,681,028	53,108,924	19,572,104	

○ 의 결 : 수정가결(2004.6.8)

(세출예산 50억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증액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

□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예산규모

(단위: 천원)

구 분		사 업 예 산	자 본 예 산	자 금 운 영
수 입	예 산 액	16,628,763	2,163,984	22,023,373
	기정예산	14,577,611	2,163,300	16,740,911
	증 감	2,051,152	684	5,282,462
지 출	예 산 액	16,628,763	4,795,646	22,023,373
	기정예산	12,487,984	4,252,927	16,740,911
	증 감	4,140,779	542,719	5,282,462

○ 의 결 : 원안가결(2004.6.8)

□ 2004년도 제회 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예산규모

(단위: 천원)

구 분		사 업 예 산	자 본 예 산	자 금 운 영
수 입	예 산 액	5,882,782	1,338,000	12,276,667
	기정예산	5,862,782	1,338,000	8,200,782
	증 감	20,000	0	4,075,885
지 출	예 산 액	5,882,782	2,913,968	12,276,667
	기정예산	5,336,814	2,863,968	8,200,782
	증 감	545,968	50,000	4,075,885

○ 의 결 : 원안가결(2004.6.8)

3. 동의안

□ 청소년상담실위탁동의안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제안이유 : 청소년상담실은 지역사회 청소년의 건전육성과 예방차원의 발달 촉진을 위하여 문제청소년의 교정, 재활 등 상담기능의 전문적 역량 제고 및 전문상담 인력 양성에 역점을 두고자, 상담전문 인력의 안정적 확보 및 상담실 운영의 효율적인 관리체제를 이루어 가는데 원활하다고 판단되는 재단법인청소년수련관에 위탁 운영코자 함

○ 주요골자 : 지역 내 청소년 활동공간 제공 및 원활한 수련활동 지원을 위하여 군포시가 출자하여 설립한 재단법인청소년수련관이 청소년상담의 효율성을 높이고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재단법인청소년수련관을 위탁기관으로 지정

○ 의 결 : 원안가결(2004.6.8)

4. 기타 안

□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
 - 강령시 전문위원으로부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및 토론 없이 원안대로 가결함.
- 감사기간 : 2004.7.3 ~ 7.9일(7일간)
- 대상기관 : 시민만족실, 기획감사실, 시민봉사국, 경제환경국, 건설도시국, 수도사업소, 행정지원국, 보건소, 의회사무과
- 감사반편성
 - 위 원 수: 9명
이재수, 송정열, 김재일, 최진학, 김진호, 김제길, 김판수, 이경환 조완기의원
(위원장: 이경환 의원, 간사: 조완기 의원)

□ 행정사무조사계획서

- 행정사무조사계획안
 -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군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에 의하여 군포시 민간위탁 사무 및 시설에 대한 업무를 조사하여 운영실태와 현황을 확인함
- 활동기간 : 제111회 ~ 제113회 제1차 정례회
- 대상기관 : 군포시민간위탁 사무 및 시설 442개 업무중 14개 시설
- 조사반 편성
 - 위 원 수 : 9명
이재수, 송정열, 김재일, 최진학, 김진호, 김제길, 김판수, 이경환 조완기의원
(위원장: 김진호 의원, 간사: 송정열 의원)

제20장 제112회 임시회

제20장 제112회 임시회

제1절 개 관

1. 개최배경

제112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4년 6월 18일 군포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소집요구일 당일 집회공고를 하여 2004년 6월 28일 개최되었으며 본 회기 중에는 의장·부의장 선거를 실시하였으며 군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이 다루어졌으며 회기는 2004년 6월 28일부터 6월 29일까지 2일간으로 2차의 본회의를 가졌다.

2. 의사일정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고
6.28(월) 10:00	1	1. 제112회군포시의회(임시회)회기 결정의건 2. 제112회군포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조례 및 기타안전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조례 및 기타안전심사특별위원회회의위원선임의건	
6.28(월)		○ 특별위원회활동 - 조례 및 기타안전심사특별위원회	
6.29(화) 10:00	2	1. 군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 군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장선거 4. 부의장선거	

3. 의회활동

제112회 군포시의회 임시회에서는 제4대 후반기 군포시의회 원구성을 위해 의장단을 선출하고, 군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을 심의·의결하였다.

4. 안전처리상황

안 건		의 결 일 자	처 리 결 과
총 계 : 8건			
조 례 안	소 계 : 2건		
	1. 군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04.6.29	부 결
	2. 군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04.6.29	원안가결
건의 · 결의 · 동의	소 계 : 1건		
	• 조례 및 기타안전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04.6.28	원안가결
선거 · 선임	소 계 : 3건		
	• 조례 및 기타안전심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04.6.28	선 임
	• 의 장선거	'04.6.29	선출(김제길)
	• 부의장선거	'04.6.29	선출(이재수)
회의 · 진행 · 안전	소 계 : 2건		
	• 제112회군포시의회(임시회)회가결정의건	'04.6.28	원안가결
	• 제112회군포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04.6.28	선 임

제2절 주요안건 처리경과 및 결과

1. 조례안

□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구성

○ 운영기간 : 2004.6.28

○ 위 원 수 : 9명

이재수 송정열 김재일 최진학 김진호 김제길 김판수 이경환 조완기의원

(위원장: 이재수 의원, 간사: 송정열 의원)

□ 군포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제안이유 : 사회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복무 규정 중 복무 관련제도의 개정 및 경기도의 조례개정 표준안 권고사항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없는 비밀엄수 사항을 규정함
- 토요일 휴무를 2004년 7월 1일부터 월 2회, 2005년 7월 1일부터는 전면실시 함
-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라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전하기 위하여 동절기(11월~2월) 퇴근을 1시간 연장하고, 2006년 1월부터 재직기간별 연가일 수를 1~2일 축소함
- 핵가족화 및 맞벌이 부부의 증가에 따라 산모의 보호 및 간호를 위하여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휴가일 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함

○ 의 결 : 부 결(2004.6.29)

□ 군포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제안이유 : 참여정부의 지방분권과 정부혁신 등 국정목표의 지방적 구현을 위한 지방자치 단체의 추진력확보 인력에 대하여 혁신분권담당기구 정원이 한시적(2007.6.30)으로 승인됨에 따라 정원의 총수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정원의 총수를 658명에서 661명으로 개정
 - 집행기관의 정원을 644명에서 647명으로 개정
 - 부직에 혁신분권담당기구 한시정원 3명(행정6급 1, 행정7급 1, 행정 8급 1명)을 명시함
- 의 결 : 원안가결(2004.6.29)

2. 제4대 제2기 의장단 선출

□ 제4대 제2기 의장단 선출

○ 의장선거

의장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2조 제1항 및 군포시의회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명 투표로 선출함에 따라 의사담당주사의 사회로 이재수 의원, 송정열 의원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하여 의장 선거가 실시되었다

1차 투표결과 총 투표수 10표중 최진학 의원 1표, 김제길 의원4표, 이경환 의원 5표로 군포시의회회의규칙 제8조 제3항에 의거 과반수를 득표한 의원이 없기 때문에 2차 투표 실시 2차 투표결과 총 투표수 10표 중 김제길 의원 5표, 이경환 의원 5표로 과반수를 득표한 의원이 없기 때문에 군포시의회회의규칙 제8조 제3항에 의거 결선투표 실시, 결선 투표결과 김제길 의원 5표, 이경환 의원 5표로 군포시의회회의규칙 제8조 제4항에 따라 연장자인 김제길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되었다.

〈 의장 당선 인사 〉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시민의 의사가 완벽히 대변되는 민의의 전당 군포시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당선 인사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선거

부의장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2조 제1항 및 군포시의회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명 투표로 선출함에 따라 의사담당주사의 사회로 김재일 의원, 최진학 의원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하여 부의장 선거가 실시되었다.

총 투표수 9표 중 이재수 의원 4표, 송정열 의원 1표, 김판수 의원3표, 조완기 의원 1표로 군포시의회회의규칙 제8조 제3항에 의거 과반수를 득표한 의원이 없기 때문에 2차 투표 실시 2차 투표결과 총 투표수 9표 중 이재수 의원6표, 김판수 의원3표로 군포시의회회의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반수를 득표한 이재수의원이 부의장으로 당선되었다.

〈 부의장 당선 인사 〉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부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제4대 의회 후반기 2년 동안 의장님을 보좌하면서 의원여러분들과 함께 군포시의 균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은 물론 우리 군포시의 도약을 위하여 헌신 봉사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21장 제113회 제1차 정례회

제21장 제113회 정례회

제1절 개 관

1. 개최배경

제113회 정례회는 군포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1차 정례회로서 2004년 6월 24일 집회공고하고 2004년 7월 1일 개최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 2003회계년도 결산안을 비롯해 군포시 규제개혁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조례 및 기타 안건이 다루어 졌으며 회기는 2004년 7월 1일부터 7월 16일까지 16일간으로 3차의 본회의를 가졌다..

2. 의사일정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고
7.1(목) 10:00	1	1. 제113회군포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제113회군포시의회(제1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2003회계년도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4. 2003회계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7. 조례 및 기타안전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8. 조례 및 기타안전심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9. 시장출석요구의건	
7.2(금) 10:00	2	1. 시장질문의건 2. 특별위원회위원사임·보임의건 ○ 휴회의건	
7.3 ~ 7.15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7.3~7.15)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7.12~7.14) ○ 조례 및 기타안전심사특별위원회 활동(7.15) ○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7.15)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고
7.16(금) 10:00	3	1. 2003회계년도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2003회계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4.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5. 군포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군포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군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8. 군포시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 9.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변경안(군포역공중화장실신축)	

3. 의회활동

제113회 군포시의회 정례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례 및 기타안전심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03회계년도 결산안 2건과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였다.

4. 안전처리상황

안 건		의 결 일 자	처 리 결 과
총 계 : 17건			
조 례 안	소 계 : 4건		
	• 군포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04.7.16(금)	원안가결
	• 군포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04.7.16(금)	원안가결
	• 군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04.7.16(금)	원안가결
	• 군포시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	'04.7.16(금)	수정의결
결 산 안	소 계 : 2건		
	• 2003회계년도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04.7.16(금)	원안가결
	• 2003회계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04.7.16(금)	원안가결

	안 건	의 결 일 자	처 리 결 과
건의 · 결의 · 동의	소 계 : 5건		
	•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04.7.1(목)	원안가결
	•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04.7.1(목)	원안가결
	•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변경안(군포역공중화장실신축)	'04.7.16(금)	원안가결
	•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04.7.16(금)	원안채택
	•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04.7.16(금)	원안채택
선거 · 선임	소 계 : 2건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인의건	'04.7.1(목)	선 임
	•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위원선인의건	'04.7.1(목)	선 임
회의 · 진행 · 안건	소 계 : 2건		
	• 제113회군포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04.7.1(목)	원안가결
	• 제113회군포시의회(제1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04.7.1(목)	선 임
보고 · 질문	소 계 : 1건		
	• 시장질문의건	'04.7.2(금)	질문,답변
기타	소 계 : 1건		
	• 시장출석요구의건	'04.7.1(목)	원안가결

제2절 주요안건 처리경과 및 결과

1. 조례안

□ 조례 및 기타안전심사특별위원회 구성

○ 운영기간 : 2004.7.15

○ 위 원 수 : 9명

권원혁, 이재수, 송정열, 김재일, 최진학, 김진호, 김판수, 이정환, 조완기의원

(위원장: 권원혁 의원, 간사: 김판수 의원)

□ 군포시 규제개혁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제안이유 : 국무조정실의 ‘자치단체 소관 기존규제에 대한 일제정비계획’에 의하여, 존속기간이 만료된 규제개혁위원회를 새롭게 재구성함으로써, 각종 ‘행정규제’중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함

○ 주요골자 : 군포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존속기간을 삭제함

○ 의 결 : 원안가결(2004.7.16)

□ 군포시 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제안이유 : 입찰참가수수료를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입찰참가자에게 수수료를 징수하여 왔으나 G2B시스템으로 전자입찰을 실시함에 입찰시 징수하는 수수료의 징수원인이 소멸되었으므로 수수료 징수조례중 입찰참가수수료를 삭제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 각종 인·허가 등 사항 중 ‘사’ 목의 회계과 종류중 입찰참가신청과 관련한 사항을 삭제함

○ 의 결 : 원안가결(2004.7.16)

□ 군포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제안이유 : 사회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중 복무 관련제도의 개정 및 경기도의 조례개정표준안 권고사항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토요일 휴무를 2004년7월1일부터 소속공무원을 동시에 휴무하게 할 수있도록 규정함
 -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라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전하기 위하여 동절기(11월~2월)퇴근을 1시간 연장하고, 토요일전일근무제를 폐지하며, 2006년 1월부터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1~2일 축소함
 - 핵가족화 및 맞벌이 부부의 증가에 따라 산모의 보호 및 간호를 위해 배우자에게 부여 하는 휴가일 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함
- 의 결 : 원안가결(2004.7.16)

□ 군포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안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제안이유 : 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대하여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주민특별 법의 제정 및 행정자치부의 조례제정표준안 권고사항에 따라 시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주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조례의 제정목적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 중에서 주민투표의 대상을 규정함
 -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 11분의1의 서명으로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주민투표의 서명요청기간을 청구인대표자증명서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로 함
 - 주민투표의 청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주민투표청구심의회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주민투표운동에 따른 호별방문, 옥외집회 및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하는 때에 제한시간을 규정함

○ 의 결 : 수정가결(2004.7.16)

(제1차 조례 및 기타안전심사 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조완기 의원의 수정안에 대한 거수 표결 결과 재석위원 5인중 찬성 5인)

2. 예산안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 운영기간 : 2004.7.12 ~ 7.14(3일간)

○ 위 원 수 : 9명

권원혁, 이재수, 송정열, 김재일, 최진학, 김진호, 김판수, 이경환, 조완기의원

(위원장: 최진학 의원, 간사: 김재일 의원)

□ 2003회계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세입 및 세출 결산

- 세입결산으로는 일반회계 총수입은 220,129,852,930원으로서

지방세수입이 65,159,843,180원, 세외수입이 66,899,370,750원,

지방교부세 17,037,700,000원, 지방양여금 4,071,428,000원,

조정교부금 28,768,426,000원, 보조금 38,193,085,000원이 수납되었으며,

- 세출결산으로는 세출예산현액은 218,081,445,600원으로서

이중 159,265,585,090원이 지출되었고, 52,498,686,350원이 익년도로 이월 되었으며

6,317,174,160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음.

○ 의 결 : 원안가결(2004.7.16)

□ 2003회계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세입 및 세출 결산

- 2003회계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총 수입은 17,208,357,000원에
징수결정액이 17,231,064,156원이고 수납액은 16,721,724,716원으로
목표액 대비 97.04%을 달성하였으나 509,339,440원의 미수액이 발생하였음.
- 2003회계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사업비용에
예산현액 13,918,336,320원 대비 89.46%인 12,451,718,020원을 지출하였고
자본적 지출은 예산현액 9,867,391,000원 대비 79.87%인 7,881,124,740원을 지출하였으며,
총예산 현액 23,785,727,320원 대비 85.48%인 20,332,842,760원을 지출하였으며,
차기 이월액은 2,573,214,480원임.

○ 의 결 : 원안가결(2004.7.16)

3. 동의안

□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군포역 공중화장실 신축공사)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제안이유 :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지방재정을 건전한 운용을 위하여 2004년도 공유
재산관리계획 변경 안을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임

○ 주요골자

- 군포역 이용객이 현재 일20,000여명으로서, 화장실 신축부지와 접한 지역에 군포역
환승주차장 건설이 추진되고 있으며 당동2지구 및 당정동 토지구획정리지구가 2004년말
준공됨에 따라 향후 군포역 이용객이 현저히 증가될 것으로 사료되어 동역을 이용하는
시민 및 인근 상가이용 주민들에게 쾌적한 화장실 문화환경을 제공코자 함
- 행정자치부의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써
군포역 앞 광장의 기존 화장실을 이용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화장실 신축을 목적으로
당동 133-10번지 사유지에 공중화장실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임

○ 의 결 : 원안가결(2004.7.16)

4. 행정사무감사

□ 감사기간 : 2004.7.3 ~ 7.9(7일간)

□ 대상기관 : 시민만족실, 기획감사실, 시민봉사국, 경제환경국, 건설도시국, 행정지원국,
보건소, 수도사업소, 문화예술회관, 시립도서관, 의회사무과

□ 감사반 편성

○ 위 원 수 : 9인

김제길, 조완기, 김진호, 최진학, 이경환, 송정열, 이재수, 김판수, 김재일의원
(위원장 이경환 의원, 간사 조완기 의원)

□ 시정사항

○ 공통사항

- 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민원인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해주고 한번 맡은 민원은 끝까지
챙길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의회에 제출하는 감사 자료에 대하여는 사전 충분한 검토 후 정확한 자료를 작성바람
- 공공시설물 공사시 안전시설이 선행된 후 공사가 진행되도록 공사 관리감독 철저

○ 시민만족실

- 주민자치프로그램이 너무 많으므로 프로그램을 동별로 특화시키거나 전문화 시키는 방안
강구, 동별 프로그램 수강료가 차이가 남. 통일시킬 수 있도록 방안강구
- 주민포괄사업비 지출내역 중 일부는 해당사업 주관과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사업
인데 포괄사업비로 지출된 문제점이 있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실질적 기능강화를 위해
동별 주민자치위원회에 50%이상의 금액을 배정하여 지출되도록 추진
- 실질적인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을 배정하고 위원회에서 결정된 의견은
적극 반영

○ 기획감사실

- 예비비 사용과 관련 예측가능한 사업에 대하여는 사용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 미래전략, 정체성 확보 용역수행시 시의회 의견이 수렴되도록 절차 이행
- 임의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를 속히 제정하여 보조금이 형평성 있게 운영되도록 할 것

○ 시민봉사국

- 종합민원처리과 : 세외수입의 체납액 감소 방안 강구
- 세정과 : 고액체납자 체납액이 증가되고 있으므로 체납자에 대한 최대한 행정력을 동원해 체납액을 일소해 주기 바람
- 사회과 : 노인주간보호센터의 운영은 시설허가를 득하면 시설기준에 따라 일정비율의 정부보조금이 지원되나 현원과 관계없이 지원될 경우 본연의 업무가 해태될 수 있으므로 차별 지원되도록 추진
- 여성복지과 : 관내 결식아동은 현재 15명이나 홍보와 조사를 통해 더 어려운 아동을 찾아 지원해 주기 바람

○ 경제환경국

- 지역경제과 : 노사정 합동 연찬회 참석에 사측대표가 참석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정산 서류가 부실할 때에는 환불받도록 지적. 대야동 농촌지역의 소득증대 사업을 도입해 농가소득이 늘어날 수 있는 방안강구
- 환경위생과 : 금정역~도장터널 구간에 대한 소음진동 측정시 시민단체, 철도청이 참석하고 공인기관에서 측정하여 누구나 믿을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해 줄 것을 지적
- 청소과 : 기존도시와 부곡동·대야동 GB내 무단투기 쓰레기로 인해 환경이 훼손되고 주민이 악취로 고생하고 있음 단속과 순시로 무단투기 쓰레기가 없어지도록 해주기 바람. 청소차는 화물자동차운송규정에 의거 차고지가 있어야 하에서 관리하는 청소차는 차고지 없이 도로변에 무단하고 있으므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기 바람. 환경관리소가 연속 운영하는 것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나 단속운전이 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

- 공원녹지과 : 수리산 자연생태조사는 5년 주기로 하여 식생상태가 파악되어야 함으로 2005년에는 조사가 되도록 추진

○ 건설도시국

- 건설과 : 설계자문위원회, 안전대책위원회, 재해대책위원회가 운영 실적이 없거나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실제적인 운영이 되도록 해줄 것을 시정 요구함. 도로시설물 설치시 안전시설이 미비하여 시민을 불편함을 겪고 있으므로 안전시설이 설치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 교통안내 표지판 교체로 유모차가 통과할 수 없을 정도로 보도폭이 좁아진 곳도 있으므로 보행자의 입장에서 도로시설물을 설치해 줄 것
- 도시과 : G·B우선 해제 확정 후 이의신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행정심판 중으로 민원인의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해주기 바람. 토지구획정리사업 매각방법을 잘못되어 피해를 준 부분에 대해 시에서 보상해 주는 것이 타당함으로 방안강구
- 건축과 : 행정광고물과 불법광고물이 늘어나고 있어 도시미관을 해치므로 광고물 관리 철저
- 교통행정과 : 신호등 중 점멸표시가 운영되고 있으나 보행자로부터 불안감을 조성하므로 숫자 또는 잔여표시가 나타나도록 검토
- 회계과 : 3천만원 이상은 반드시 공개경쟁입찰로 하고 회계서류가 미비하지 않도록 관리. 공공시설물 신축시에는 반드시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득한 후 공사를 착공할 것
- 문화공보과 :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액 관리 철저
문화의 거리 조형물은 예술품임에도 시공을 강구조물 설치 업체에서 함으로 미적 감각이 떨어지므로 향후에는 수의계약을 검토해 실적 있고 능력있는 업체가 선정되도록 할 것
- 청소년과 : 청소년수련원 개원준비에 만전을 기해 줄 것
청소년수련원이 개원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공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청소년수련원 본래 계획대로 운영되도록 조치
청소년증 발급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도록 홍보 등 노력 강화

- 보건소 : 노인요양시설 GB관리계획이 늦어지고 있음 관련부서를 방문하고 지속적인 관심으로 속히 해결되도록 해 줄 것
- 수도사업소 : 수의계약공사 발주시 예측 가능한 사업과 유사업종 사업의 경우 통합 발주하여 공개경쟁입찰을 하도록 시정요구
수도 공사시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안전관리비가 제대로 집행되는지 관리감독철저
- 시립도서관 : 도서관에 근무하는 환경미화원의 근무조건, 인건비 지급사항을 파악하지 않고 있으므로 계약서 내용이 이행되는지 지도관리를 강화해 줄 것을 지적
- 의회사무과 : 방청석이 방청하기에는 환경이 좋지 않으므로 스피커시설증설, 자료의 비치, 방청객을 쉴 수 있는 공간 확보 등을 검토추진

5.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구성

- 운영기간 : 2004.7.15
- 조사위원 : 9명
김제길, 조완기, 김진호, 최진학, 이경환, 송정열, 이재수, 김판수, 김재일의원
(위원장: 김진호 의원, 간사: 송정열 의원)
- 조사의 목적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군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군포시 민간위탁시설중 14개시설과 업무를 조사하여 운영상 문제점을 파악하고 비효율적인 면을 조사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주민 본위의 행정을 이루어 지도록 하기 위함
- 대상기관 : 군포시 민간위탁시설 42개 업무중 14개 시설 및 업무
- 조사결과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복지회관을 비롯한 각 시설물에 근무하는 관리자와 전직원들은 어려운 근무여건 속에서도 맡은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었으며 각 사회 복지시설의 관리와 프로그램 개발과 도입을 통해 군포시민의 사회복지와 교육분야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었으며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조직의 운영과 직원업무분장에 대한 검토와 각종 시설을 위탁하면 위탁 초기의 재위탁시에만 집행부와 수탁자와의 관계가 긴밀하고 평소운영시에는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소홀과 위탁자는 시설물에 대한 관심부족을 지적

6. 시정질문

제113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2004.7.2)에서 군포시장을 비롯한 관계 실·국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최진학 의원이 다음과 같이 시정 질문을 하고 시장의 답변을 받았다.

□ 시정에 관한 질문

○ 질 문 : 최진학 의원

• 질문내용

산본동 1096번지 아파트형 공장용지 활용계획에 대하여?

→ 답 변(시장)

산본신도시 종합계획수립시 자족도시 기능 확보와 장래에 지역산업발전을 위하여 조성된 부지로서 단순 제조업 위주로 조성하기보다는 시가 추구하는 첨단산업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환경친화적인 사업을 추진하고자 타당성용역조사를 실시했음 앞으로 21세기를 선도하는 국제경쟁력을 갖춘 지식·정보화 산업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부곡동 첨단산업단지 조성과의 연계하여 과학기술산업연구 및 집적시설유치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최적의 활용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음

• 질문내용

금정~안산간 전철고가에 대한 소음·진동과 교각상판의 균열에 의한 누수현상 및 안전에 대하여?

→ 답 변(시장)

정기적으로 소음도를 자체측정 관리하고 있으며 발생원에 대한 시설투자를 철도청에 꾸준히 요청해서 장대레일, 방진 체결장치설치공사 등의 시설투자가 이루어 졌음에도

아직 미흡한 실정에 있어서 보다 장기적이고 효율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여 소음이 심한 3개 지역을 선정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 정밀측정하고 결과에 따라 분석된 대책 보고서를 주민에게 공개함은 물론 주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친 후 철도청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하여 소음·진동저감을 위한 장·단기계획을 수립,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피해를 줄여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음 금정전철고가교의 관리주체는 철도청 수원시설관리사무소로서 C급 시설물로 판정된 고가교를 3억의 사업비를 들여 교좌, 균열부분 등의 보수·보강공사를 실시하였고 매년2회씩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음. 앞으로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시설물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 질문내용

금정동 174-18번지의 명지빌라 진입로 매입건에 대하여?

→ 답 변(시장)

현재로서 동 도로를 매입할 계획이 없으며, 매입할 사항도 아니나 향후 시가 필요시 동지역에 대한 도시계획변경이 있을 경우에 매입 여부를 적절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

• 질문내용

행정서비스현장 제도 도입 및 행정서비스현장 실천 조례제정에 대하여?

→ 답 변(시장)

고객만족 행정의 구현을 위하여 98년 우리나라에 도입된 후 99년7월 민원행정서비스 현장 외1개 현장을 2000년9월 세무행정서비스 현장 외 7개현장등 총10개의 행정서비스 현장을 제정하여 운영해오고 있음 향후 행정서비스현장제정 및 개선의 7대 기본원칙에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 조례안을 만들겠으며 관련 공무원과 주민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제시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제22장 제114회 임시회

제22장 제114회 임시회

제1절 개 관

1. 개최배경

제114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4년 9월 30일 군포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04.10.2일 집회공고를 하여 2004년 10월 8일 개최되었으며 본 회기 중에는 2004년도 추가경정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등 예산안 2건과 군포시 도시계획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조례안과 기타 안건이 다루어졌으며, 회기는 2004년 10월 8일부터 10월 16일까지 9일간으로 2차의 본회의를 가졌다.

2. 의사일정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고
10.8(금) 10:00	1	1. 제114회군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114회군포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7. 조례 및 기타안전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8. 조례 및 기타안전심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 휴회의 건	
10.11(월) ~ 10.15(금)		○ 특별위원회 활동 - 조례 및 기타안전심사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0.16(토) 09:30	2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군포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4. 군포시사회단체임의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군포시행정서비스헌장운영조례제정안 6. 군포시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제정안 7. 군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8. 군포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대야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따른의견청취안 9. 군포·의왕시간행정구역경계조정건의제시의건	

3. 의회활동

제11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례 및 기타 안전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04년도 추가경정일반 및 기타특별세입·세출예산안 등 예산안 2건과 군포시 도시계획 조례중 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과 기타 안전을 심의·의결하였다.

4. 안전처리상황

안 건		의 결 일 자	처 리 결 과
총 계 : 15건			
예산 안	소 계 : 2건		
	•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04.10.16(토)	원안가결
	•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04.10.16(토)	원안가결
조 례 안	소 계 : 5건		
	1. 군포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04.10.16(토)	부 결
	2. 군포시사회단체임의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04.10.16(토)	원안가결
	3. 군포시행정서비스현장운영조례제정안	'04.10.16(토)	원안가결
	4. 군포시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제정안	'04.10.16(토)	원안가결
	5. 군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04.10.16(토)	원안가결
건의 결의 · 동의	소 계 : 4건		
	•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04.10.8(금)	원안가결
	• 조례 및 기타안전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04.10.8(금)	원안가결
	• 군포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대야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따른 의견청취안	'04.10.16(토)	원안가결
	• 군포·의왕시간행정구역경계조정건의제시의건	'04.10.16(토)	원안가결
선거 · 선임	소 계 : 2건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04.10.8(금)	선 임
	• 조례 및 기타안전심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04.10.8(금)	선 임
회의 진행 안전	소 계 : 2건		
	• 제114회군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04.10.8(금)	원안가결
	• 제114회군포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04.10.8(금)	선 임

제2절 주요안전처리경과 및 결과

1. 예산안

□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

○ 운영기간 : 2004.10.12 ~ 10.15(4일간)

○ 위 원 수 : 9명

권원혁, 이재수, 송정열, 김재일, 최진학, 김진호, 김판수, 이경환, 조완기 의원

(위원장: 이경환 의원, 간사: 송정열 의원)

□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예산규모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안 (A)	기정예산안 (B)	증△감 (A-B)	비 고
총 계	251,292,753	245,185,431	6,107,322	
일 반 회 계	178,423,708	172,504,403	5,919,305	
특 별 회 계	72,869,045	72,681,028	188,017	

○ 의 결 : 원안가결(2004.10.16)

□ 2004년도 제2회추가경정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예산규모

(단위: 천원)

구 분		사 업 예 산	자 본 예 산	자 금 운 영
수 입	예 산 액	16,866,359	2,163,984	22,260,969
	기정예산	16,628,763	2,163,984	22,023,373
	증 감	237,596	0	237,596

구 분		사 업 예 산	자 본 예 산	자 금 운 영
지 출	예 산 액	16,866,359	4,795,646	22,260,969
	기정예산	16,628,763	4,795,646	22,023,373
	증 감	237,596	0	237,596

○의 결 : 원안가결(2004.10.16)

2. 조례안

□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구성

○ 운영기간 : 2004.10.11

○ 위 원 수 : 9명

권원혁, 이재수, 송정열, 김재일, 최진학, 김진호, 김판수, 이경환, 조완기 의원

(위원장: 최진학 의원, 간사: 조완기 의원)

□ 군포시 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이재수의원외 6명

○ 제안이유 : 개발제한 구역 내에서 각종 행위제한을 받다가 해제된 자연녹지 지역내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생활환경 개선 및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 하는 사항임

○ 주요골자 : 자연녹지 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호(군포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내에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이하인 일반음식점을 건축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

○ 의 결 : 부 결(2004.10.16)

□ 군포시 사회단체임의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제안이유 :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지원상한기준을 폐지하고 임의보조단체와 정액보조단체를 묶어서 자치단체별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를 운영하도록 예산편성 기본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동 내용 등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
- 주요골자
 - 임의보조단체와 정액보조단체의 구분이 없어짐에 따라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함
 - 사회단체에 대한 용어의 정의 함
 - 보조금의 지원범위는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보조금집행 등에 있어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한 사회단체에 대하여 지원 배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의 결 : 원안가결(2004.10.16)

□ 군포시 행정서비스헌장운영조례제정안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제안이유 : 주민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행정서비스헌장제정지침」이 공포됨에 따라, 우리시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이행하지 못한 서비스에 대한 보상 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조례의 제정목적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업무성격과 고객의 특성에 따라 부서별·업무분야별 기타 가능한 분류방법에 의하여 헌장을 제정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행정서비스에 관한 고객의 관리, 행정서비스의 구현방안, 행정서비스에 대한 실천서약 등 헌장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헌장의 제정 및 개정, 헌장내용의 검토·심사, 헌장의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등을 심의할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민원을 법정처리기간 또는 행정기관이 자체적으로 정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지 못한 경우, 각종 공부를 착오로 기재하여 고객에게 불편을 주는 경우 등 고객불편 사항의 처리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의 결 : 원안가결(2004.10.16)

□ 군포시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제정안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제안이유 : 주민의 자전거이용여건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자전거이용환경을 조성하고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생활속의 '자전거문화'를 조기에 정착시키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조례의 목적과 용어에 대하여 정의 함
- 자전거이용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와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한 주민의 권리와 책무를 규정함
-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한 각종 시책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실무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정상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자전거이용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자 자전거주차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주민에게 대여할 수 있는 주민자전거의 운영과 자전거타기생활화를 위하여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지정·운영 및 주민참여를 위한 자전거이용의 날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의 결 : 원안가결(2004.10.16)

□ 군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제안이유 : 국가기반시설의 재난과 관련되어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상황 관리 및 보고, 지역안전관리위원회 및 지역안전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할 인력에 대하여 2004.9.3일 승인됨에 따라 정원의 총수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정원을 총수를 661명에서 662명으로 개정
 - 집행기관의 정원을 647명에서 648명으로 개정

3. 건의안

□ 군포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대야지구토지구획정리 사업에 따른 의견청취안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제안이유 : 대야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군포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임
- 주요골자 : 대야지구는 도시기반시설의 정비 등 계획적 주거지 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1996년 6월 26일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결정 고시되어 1998년부터 2005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이나 지형적 고저 차에 의한 도시미관 불량, 일반주택용지 위주의 계획에 따른 도시기반시설의 부족 및 주차장미비 등 주거환경의 악화가 예상되고 있어 필지별로 소유자가 상이한 지구내 일부 블록에 대하여 주민들이 주택조합을 결성, 일반주택 위주의 계획에서 공동주택단지로의 계획적 개발을 통해 도시경관 및 토지 이용효율 향상, 도시기반시설의 확보, 사업의 현실화 등을 도모하고자 변경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변경사항은 도로 7개노선 1,214m의 감소와 주차장 4개소, 4,914.8㎡, 어린이공원 1개소 2,295.1㎡, 공공청사 533.7㎡, 공공용지 4개소 2,927.7㎡가 증가되는 사항임
- 의견제시 : 도시계획입안당시 단독주택지로 지정되었던 것은 당시 최적의 도시 계획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시에서는 자부심을 갖고 추진해야 하며 민원으로 인한 도시계획이 변경될 경우에는 향후 군포시에서는 도시계획 업무를 추진하기 어렵게 될 것이며 단독주택지에서 공동주택지로 변경될 때에는 사업추진시 감보율로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당초 계획안에서 공동주택지로 변경될 경우 특혜시비가 우려되고 또한 공동주택으로 개발하면 도시미관 향상을 기대하고

있으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당동2지구의 공동주택 변경으로 인해 주거환경 개선보다는 주거과밀 지역이 되어 오히려 주거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이 예상됨으로 향후 도시계획에 의한 행정의 일관성을 위해서 금번 대야지구 토지구획정리 변경계획안에는 반대하는 의견제시.

□ 군포 · 의왕시간 행정구역경계조정 의견제시의 건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제안이유 : 군포시가 시행한 당정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의왕시 이동 일부가 편입되어 행정구역 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동지역을 포함한 양 시 경계가 불합리한 지역에 대한 행정구역 경계변경을 조정하기 위해 2004.10.13일 양 시 부시장 및 시의원을 포함한 행정구역 경계조정실무협의회에서 경계조정 실무협약서가 체결되어 군포 · 의왕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를 구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군포 · 의왕간 행정구역경계변경은 다음과 같이 한다.
- 당정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내에 포함되어 있는 의왕시 지역 입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각종 행정업무는 행정구역 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군포시에서 관장한다. 단 유보된 지방세 과징업무는 별도 협약에 의하여 처리한다.
- 위 협약 내용대로 행정구역 조정이 조기에 실현되도록 실무 작업반을 편성하여 행정구역 조정철차를 이행한다.

○ 의 결 : 원안가결(2004.10.16)

제23장 제115회 임시회

제23장 제115회 임시회

제1절 개 관

1. 개최배경

제115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4년 11월 12일 군포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소집요구일 당일 집회공고를 하여 2004년 11월 20일 개최되었으며 본 회기 중에는 군포시 근로자장학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의 조례안이 다루어졌으며 회기는 2004년 11월 20일부터 11월 25일까지 6일간으로 2차의 본회의를 가졌다.

2. 의사일정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고
11.20(토) 10:00	1	1. 제115회군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115회군포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조례 및 기타안전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조례 및 기타안전심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5. 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6. 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 휴회의건	
11.22(월) 11:00		○조례 및 기타안전심사특별위원회 활동	
11.23(화) ~ 11.24(수)		○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 활동	
11.25(목) 10:00	2	1. 군포시근로자장학기금설치 및 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군포시축제추진위원회설치 및 운영등에관한조례제정안	

3. 의회활동

제11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에서는 조례 및 기타 안전심사 특별위원회 업무보고 청취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군포시 근로자장학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하고 업무보고청취를 하였다.

4. 안전처리상황

안		의 결 일 자	처 리 결 과
총 계 : 8건			
조 례 안	소 계 : 2건		
	1. 군포시근로자장학기금설치 및 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04.11.25(목)	원안가결
	2. 군포시축제추진위원회설치 및 운영등에관한조례제정안	'04.11.25(목)	보 류
건의 동의 결의	소 계 : 2건		
	• 조례 및 기타안전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04.11.20(토)	원안가결
	• 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04.11.20(토)	원안가결
선거 선임	소 계 : 2건		
	• 조례 및 기타안전심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04.11.20(토)	선 임
	• 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04.11.20(토)	선 임
회의 진행 안건	소 계 : 2건		
	• 제115회군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04.11.20(토)	원안가결
	• 제115회군포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04.11.20(토)	선 임

제2절 주요안전처리경과 및 결과

1. 조례안

□ 조례 및 기타안전심사특별위원회 구성

○ 운영기간 : 2004.11.22

○ 위 원 수 : 9명

권원혁, 이재수, 송정열, 김재일, 최진학, 김진호, 김판수, 이경환, 조완기 의원

(위원장: 권원혁 의원, 간사: 김재일 의원)

□ 군포시 근로자장학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제안이유 : 대학생의 정의를 규정하여 장학금 수혜 대상자의 범위를 분명히 하고, 장학금의 추천과 선발 및 지급을 학기별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장학금 수혜의 폭을 넓혀 장학기금의 운용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 주요골자

- 대학생의 정의를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또는 평생교육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입학하거나 재학중인자로 규정함
- 각 동장 및 기업체의 노사대표가 근로자 및 근로자의 자녀중 관내에 3년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대학생을 학기별로 장학금의 지급대상자로 학기별로 추천할 수 있도록 정함
- 장학금 지급액을 한 학기에 대한 학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되 1인 1회에 한하도록 하며 학기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의 지급대상자를 선발하도록 규정함

○ 의 결 : 원안가결(2004.11.25)

□ 군포시 축제추진위원회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정안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제안이유 : 지역축제(한마음축제, 수리문화축제, 철쭉동산축제)를 하나로 통합하여 군포시민 대축제를 개최해 오고 있으나 법적 제도적인 장치 미비로 지원에 한계가 있어

축제추진위원회 구성 및 사무국을 설치 운영하여 축제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생산적인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조례제정의 목적 및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군포시 축제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축제의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의 설치·운영 및 경비의 지원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 의 결 : 보류

□ 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 구성

○ 운영기간 : 2004.11.23~11.24(2일간)

○ 위 원 수 : 9명

권원혁, 이재수, 송정열, 김재일, 최진학, 김진호, 김판수, 이경환, 조완기 의원

(위원장: 최진학 의원, 간사: 김진호 의원)

제24장 제116회 제2차 정례회

제24장 제116회 제2차 정례회

제1절 개 관

1. 개최배경

제116회 정례회는 군포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1차 정례회로서 2004년 11월 25일 집회공고하고 2004년 12월 1일 개최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 200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등 예산안 3건을 비롯해 군포시 행정정보공개 조례개정조례안 등 조례 및 기타 안건이 다루어 졌으며 회기는 2004년 12월 1일부터 12월 18일까지 18일간으로 3차의 본회의를 가졌다.

2. 의사일정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고
12.1(수) 10:00	1	1. 제116회군포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제116회군포시의회(제2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2005년도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2005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5. 2005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8.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9.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0. 시장출석요구의건	
12.2(목) 10:00	2	1. 시청질문의건 ○휴회의건	
12.3 ~ 12.17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활동(12.3~12.6)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12.7~12.17)	

12.18(토) 10:00	3	1. 2005년도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05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2005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군포시행정정보공개조례개정조례안 5. 군포시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제정안 6. 군포시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조례개정조례안 7. 군포시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 및 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8. 군포시화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 및 신고 9. 군포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10. 군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11. 군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12. 군포시축제추진위원회설치 및 운영등에관한조례제정안 13.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당정경로당 및 노산경로당건립) 14.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포시노인복지회관경로식당확장) 15.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산본1동시립어린이집건립) 16.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광정동사무소청사증축)	
-------------------	---	---	--

3. 의회활동

제116회 군포시의회 정례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례 및 기타 안전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05년도 예산안 3건과 군포시 행정정보공개조례개정조례안 등 조례 및 기타 안전을 심의·의결하고 시정 질문을 하였다.

4. 안전처리상황

안 건		의 결 일 자	처 리 결 과
총 계 : 23건			
예 산 안	소 계 : 3건		
	1. 2005년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04.12.18(토)	수정가결
	2. 2005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04.12.18(토)	수정가결
	3. 2005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04.12.18(토)	원안가결

안		의결일자	처리결과
조 례 안	소 계 : 9건		
	1. 군포시행정정보공개조례개정조례안	'04.12.18(토)	원안가결
	2. 군포시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제정안	'04.12.18(토)	수정가결
	3. 군포시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조례개정조례안	'04.12.18(토)	원안가결
	4. 군포시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 및 수수료등의부과 · 징수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04.12.18(토)	원안가결
	5. 군포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04.12.18(토)	수정가결
	6. 군포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04.12.18(토)	원안가결
	7. 군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04.12.18(토)	원안가결
	8. 군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04.12.18(토)	원안가결
	9. 군포시축제추진위원회설치 및 운영등에관한조례제정안	'04.12.18(토)	수정가결
건의 · 결의 · 동의	소 계 : 6건		
	·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04.12.1(수)	원안가결
	· 조례 및 기타안전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04.12.1(수)	원안가결
	·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당정경로당 및 노산경로당건립)	'04.12.18(토)	수정가결
	·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포시노인복지회관경로식당확장)	'04.12.18(토)	원안가결
	·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산본1동시립어린이집건립)	'04.12.18(토)	원안가결
	·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광정동사무소청사증축)	'04.12.18(토)	원안가결
선거 · 선임	소 계 : 2건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04.12.1(수)	선 임
	· 조례 및 기타안전심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 건	'04.12.1(수)	선 임
회의 · 진행 · 안건	소 계 : 2건		
	· 제116회군포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04.12.1(수)	원안가결
	· 제116회군포시의회(제2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04.12.1(수)	원안가결
보고 · 질문	소 계 : 1건		
	· 시정질문의건	'04.12.2(목)	질문,답변

제2절 주요안건 처리경과 및 결과

1. 예산안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 운영기간 : 2004.12.7~12.17(11일간)

○ 위 원 수 : 9명

권원혁, 이재수, 송정열, 김재일, 최진학, 김진호, 김판수, 이경환, 조완기의원

(위원장: 권원혁 의원, 간사: 조완기 의원)

□ 200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예산규모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안 (A)	전년도예산안 (B)	증△감 (A-B)	비 고
총 계	202,924,373	213,398,838	△10,474,465	
일 반 회 계	166,417,295	160,289,914	6,127,381	
특 별 회 계	36,507,078	53,108,924	△16,601,846	

○ 의 결 : 수정가결(2004.12.18)

(200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23억5,592만 4천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증액하고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3억6,400만원은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증액

□ 2005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예산규모

(단위: 천원)

구 분		사 업 예 산	자 본 예 산	자 금 운 영
수 입	예 산 액	16,669,937	1,664,400	18,334,337
	전년도예산	14,577,611	2,163,300	16,740,911
	증 감	2,092,326	△498,900	1,593,426
지 출	예 산 액	13,416,245	4,918,092	18,334,337
	전년도예산	12,487,984	4,252,927	16,740,911
	증 감	928,261	665,165	1,593,426

○ 의 결 : 수정가결(2004.12.18)

(2005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출예산 139,390 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 200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예산규모

(단위: 천원)

구 분		사 업 예 산	자 본 예 산	자 금 운 영
수 입	예 산 액	6,624,275	2,150,000	13,720,528
	전년도예산	5,862,782	1,338,000	8,200,782
	증 감	761,493	812,000	5,519,746
지 출	예 산 액	5,290,495	4,231,175	13,720,528
	전년도예산	5,336,814	2,863,968	8,200,782
	증 감	△46,319	1,367,207	5,519,746

○ 의 결 : 원안가결(2004.12.18)

2. 조례안

□ 조례 및 기타안전심사특별위원회 구성

○ 운영기간 : 2004.12.3 ~ 12.6(4일간)

○ 위 원 수 : 9명

권원혁, 이재수, 송정열, 김재일, 최진학, 김진호, 김판수, 이경환, 조완기의원

(위원장: 이경환 의원, 간사: 송정열 의원)

□ 군포시 행정정보공개조례 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제안이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전면 개정되어 정보의 전자적 공개근거가 마련됨으로써 행정정보공개범위의 확대, 행정정보의 공표, 행정정보목록의 작성, 비치 등 시민의 편의 위주로 행정정보공개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

○ 주요골자

- 집행기관은 시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행정정보 등에 대하여 공개의 청구가 없더라도 공개의 범위·주기·시기·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근거를 새로이 신설함
- 집행기관이 보유·관리하는 행정정보의 목록을 작성·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제공하도록 하는 등 시민이 행정정보공개청구에 필요한 행정정보의 소재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근거를 새로이 신설함
- 종전 비공개대상 행정정보인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정정보로 축소하는 등 비공개대상 정보의 요건을 강화하고 비공개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행정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근거를 개정함
- 행정정보공개에 대한 청구시 서면으로만 청구하던 것을 구술로써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
- 행정정보공개는 청구인본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하되, 행정정보공개시 신분증명서 등 청구인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함

- 행정정보공개여부 결정시 공개대상 행정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때에는 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행정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형태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자적 행정 정보공개의 근거를 새로이 신설함

○ 의 결 : 원안가결(2004.12.18)

□ 군포시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제정안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제안이유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활공동체등의 복지증진과 자활 및 자립을 도모하기 위한 군포시 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함에 있어 이에 대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간 유사한 성격을 띠고 설치·운용되던 군포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등 3개 기금을 군포시 사회복지기금에 통합하여 운용하기 위함

○ 주요골자

- 조례의 제정목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시의 출연금등기금의 재원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기금의 용도와 목적외 사용제한을 규정함
- 기금운용계획등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위원회구성, 기능, 직무, 임기 등에 관하여 규정함
-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내용 등에 관하여 규정함
- 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공동체 등 기초생활보장사업 지원대상에 관하여 규정함
-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융자대상과 융자대상이면서도 융자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하여 규정함
- 기금을 융자 받은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 위원회 심의를 거쳐 감면할 수 있음을 규정함
- 자립장학금 지원사업 지급대상과 지급대상으로서 장학금 제외대상에 대하여 규정함
- 시 출연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의 결 : 수정가결(2004.12.18) 재석의원 6인중 찬성 6인으로

□ 군포시 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조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제안이유 :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이용 및 위생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및 행정자치부의 조례제정 표준안 권고사항에 따라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 등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

○ 주요골자

-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고 편의용품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함
-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함
-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한 효율적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함
- 청소기준, 대·소변기 소독 주기, 내·외부 도색주기 등 공중화장실 유지·관리기준을 정함
- 시장이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도록 하고, 법인 및 개인의화장실에 대하여는 시설주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장소에서의 행사 등에 참여하는 자의 편의도모를 위해 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 기준을 정함
-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 법률 제7조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시장에게 신고 후 유료화장실로 운영하도록 함
- 공중화장실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일관성을 위하여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

○ 의 결 : 원안가결(2004.12.18)

□ 군포시 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제안이유 : '95년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후 동결된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의 가격에 대하여 쓰레기 배출자 원칙에 따라 봉투가격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함으로써 쓰레기 리비용의 자기(주민)부담률을 높임으로써 부족재원의 확보는 물론 버리는 쓰레기양은 줄이고 재활용을 활성화함으로써 쾌적한 자연환경을 보전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의거 종량제 가격의 산정방식을 개정하고 봉투가격을 현실과 맞게 단계적으로 인상함
- 의 결 : 원안가결(2004.12.18)

□ 군포시 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와 및 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제안이유 :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여 자원의 낭비를 막고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기 위한 효율적인 방안으로 주민참여를 통하여 1회용품의 사용규제를 도모하고자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전문신고꾼들이 포상금만을 노리고 1회용품 사업장에 대하여 위반행위를 유도·신고함으로써 당초 신고포상금 제도의 취지와는 반대로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보완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1회용품의 사용규제를 위반한 사업장을 신고한 자가 '군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근거를 신설함
- 의 결 : 수정가결(2004.12.18) 재석의원 5인중 5인 찬성

□ 군포시 건축조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제안이유 :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로 등의 설치로 인하여 대지의 분할 제한면적에 미달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범위 내에서 증축 또는 개축할 수 있도록 건축허가 기준을 완화하고자 함
 - 재래시장의 환경개선 및 이용자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시장 내 통로 또는 도로에 차양시설 등 가설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함

- 대지안에 설치하는 식재 등 조경기준을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
- 공개공지 등의 확보 대상 건축물, 면적, 비율, 설치기준, 건축완화 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함
- 재해위험구역안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건축법 제54조가 개정되어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자함

○ 의 결 : 원안가결(2004.12.18)

□ 군포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제안이유 :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관련 그동안 운영되어 오던 한시기구를 폐지하고 자치조직권 확대의 일환으로 여유기구로 전환 운영하도록 시행됨에 따라 여유기구 설치시까지 한시기구 존속기간을 연장하기 위함

○ 주요골자

- 2001.7.28일 조례 제709호로 공포된 부칙 제2조 중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변경
- 한시정원 행정5급 1명의 존속기한 '2004년6월30일'까지를 '2005년6월30일'까지로 함
- 한시정원 전산8급 1명을 상시정원으로 조정

○ 의 결 : 원안가결(2004.12.18)

□ 군포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제안이유 :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부서에 대하여 명칭을 변경하여 시민들에게 친근감을 갖도록 하는 한편 보다 큰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로의 이미지를 갖도록 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여성복지과를 여성정책과로 조정함
- 청소과를 환경자원과로 조정함
- 건축과를 주택과로 조정함

○ 의 결 : 원안가결(2004.12.18)

□ 군포시 축제추진위원회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정안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제안이유 : 지역축제(한마음축제, 수리문화예술제, 철쭉동산축제)를 하나로 통합하여 군포 시민대축제를 개최해오고 있으나 법적 제도적인 장치 미비로 지원에 한계가 있어 축제추진위원회 구성 및 사무국을 설치 운영하여 축제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생산적인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조례제정의 목적 및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군포시 축제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축제의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의 설치운영 및 경비의 지원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 의 결 : 수정가결(2004.12.18) 재석의원 6인중 6인의 찬성

3. 동의안

□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당정경로당 및 노산경로당)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제안이유 : 공유재산을 효율적 관리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을 위하여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임

○ 주요골자

(단위: ㎡, 백만원)

위 치	용 도	건 립 규 모			사업비	사업기간	비고
		연면적	규 모	주 요 시 설			
당정동8블럭 2롯데	어린이 공원부지	165.29	2개층 (지상2층)	거실, 주방, 방2(남·여1)	161	2005.5~ 2005.10	
대야동5블럭 1롯데	어린이 공원부지	165.29	2개층 (지상2층)	거실, 주방, 방2(남·여1)	161	2005.5~ 2005.10	

○ 의 결 : 수정가결(2004.12.18)

(노인분들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상 2층인 시설물을 지상 1층으로 수정하여 재석의원 9인중 찬성9인)

□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포시노인복지회관경로식당확장)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제안이유 :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을 위하여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결을 받고자하는 것임

○ 주요골자

(단위: ㎡, 백만원)

위 치	지목	건 립 규 모				사업비	사업기간	비고
		현재 면적	증 축 면적	증축내역	구 조			
군포시 노인 복지회관	대지	141.15	147.15	식당홀 135.55 주방홀 16.6 창고 17.5 좌석수 90석	철근 콘크리트 스라브	363	2005.7 ~ 2005.8	

○ 의 결 : 원안가결(2004.12.18)

□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산본1동 시립어린이집 건립)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제안이유 :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을 위하여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결을 받고자하는 것임

○ 주요골자

(단위: ㎡, 백만원)

위 치	지목	건 립 규 모			사업비	사업기간	비고
		면적	총 수	구 조			
산본동 80-8	대지	792	4개층 (지하1층,지상3층)	철근콘크리트 스라브	1,660	2005.1~ 2006.12	

○ 의 결 : 원안가결(2004.12.18)

□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광정동사무소 증축)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제안이유 :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을 위하여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임
- 주요골자

(단위: ㎡, 백만원)

위 치	지 목	건 립 규 모				사업비	사업기간	비고
		현재 면적	증 축 면적	층 수	구 조			
산본동 1120-2	공공청 사부시	1,104.8	218	1개층	철근 콘크리트 스라브	322	2005.4~ 2005.10	

- 의 결 : 원안가결(2004.12.18)

4. 시정질문

제11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04.12.2)에서 군포시장을 비롯한 관계 실·국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권원혁 의원과 최진학 의원이 다음과 같이 시정 질문을 하고 시장의 답변을 받았다.

□ 시정에 관한 질문

- 질 문 : 권원혁 의원

• 질문내용

당말지하차도의 미 복개부분을 복개하여 차량소음을 방지하고, 주차장시설로 활용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 답 변(시장)

본 지하차도의 미 복개부분인 유타입(U-TYPE)부분을 복개하여 주차장 등의 시설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최소 4.7미터의 차량통과 높이와 적절한 도로의 종단경사가 확보되어야만 복개공사가 가능한 실정이나 본 지하차도는 대부분의 구간이 차량통과 최소기준인 4.7미터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종단경사가 대부분 7.5%수준으로써 미 복개부분을 복개하여 주차장 등의 시설로 이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음. 또한 소음문제에 대하여는 방음돛이나 방음벽 등의 방음대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음

• 질문내용

조기축구회원을 위한 임시 축구장의 설치에 대하여?

→ 답 변(시장)

시민들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2003.8.31일 시민체육광장내에 전용 인조잔디 축구장을 조성하여 조기축구회를 비롯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나 수요에 비해서 시설이 부족하여 이용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향후, 택지개발이나 대단위 사업추진시 체육용지를 확보하여 축구장을 추가 건립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음.

○ 질 문 : 최진학 의원

• 질문내용

어린이와 여성의 유괴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시책 강구에 대하여?

→ 답 변(시장)

보육시설장과 교사들의 안전 교육을 통합적으로 실시하고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예상 상황을 홍보물로 제작하여 보육시설 홈페이지, 인터넷, 유선방송 등을 통해 안전예방 교육을 실시해서 어린이들의 방어능력을 길러주고 각종 어린이행사시에 유괴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미아예방캠페인, 퍼포먼스, 포스터전시회 등을 개최하고 경찰서와 긴밀한 공조체계를 갖추어 미아예방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음 여성관련 범죄예방을 위하여 범죄 발생률이 높은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과 민방위 대원에 대한 양성평등의식 교육시 올바른 가치관과 건실한 생활태도 등 인성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여중생을 대상으로 한 『딸들의 캠프』나 각종 여성관련 행사시에 범죄예방 사전교육 실시로 스스로의 방어능력을 제고하도록 하여 여성과 아동이 살기에 편안하고 행복한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질문내용

생활쓰레기 배출방법과 홍보에 관하여?

→ 답 변(시장)

단독주택지역과 상가밀집지역의 경우에는 주민들의 시책에 대한 이해와 호응부족으로 쓰레기를 일정한 장소에 집중 배출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이에 따라 집중배출 장소에 현수막을 수시로 거첩하여 문전수거방식을 홍보함은 물론 쓰레기와 재활용품 분리배출홍보물을 제작하여 신문, 잡지를 통해 각 세대에 전달하고 있으며 의견을 제시하신 쓰레기 및 재활용품배출방법에 관한 홍보물을 만화로 제작하는 방안을 토대로 취약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계도와 모범지역에 대한 인센티브제공 등을 통해 보다 깨끗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질문내용

고령화 사회대비 시책과 고령화 사회 사업을 위한 기금조성에 대하여?

→ 답 변(시장)

노인인구의 질적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노인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노인생활안정지원, 장기요양보호, 노인취업촉진 및 교육을 통한 여가활동 지원에 중점을 두고 금년에 노인복지정책 5개년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빈곤선상의 노인과 자녀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노인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경로연금 지급, 2006년 개원목표로 추진 중인 노인전문요양시설의 건립, 노인일자리창출, 고령자고용 확대 추진과 노인여가 문화 향상을 위한 노인여가시설 및 프로그램개발지원 등을 통해 노인들이 겪는 빈곤, 질병, 소외의 산중고를 해결해나갈 계획임. 아울러 고령화사회 사업을 위한 기금조성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에서 경로연금의 내실화 및 장기적으로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의 주축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제도의 지속적인 제도 보완 및 노인요양보험제도 시행을 적극 추진 중이므로 이러한 국가정책과 연계하여 어떻게 기금을 조성하고 관리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별도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음.

제25장 제117회 임시회

제25장 제117회 임시회

제1절 개 관

1. 개최배경

제117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4년 12월 14일 군포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04년 12월 15일 집회공고를 하여 2004년 12월 22일 개최되었으며 본 회기 중에는 2004년도 추가 경정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3건의 예산안과 군포시 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조례 및 기타 안건이 다루어졌으며 회기는 2004년 12월 22일부터 12월 27일까지 6일간으로 2차의 본회의를 가졌다.

2. 의사일정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고
12.22(수) 10:00	1	1. 제117회군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117회군포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5.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8. 조례 및 기타안전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9. 조례 및 기타안전심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 휴회의건	
12.22 ~ 12.26		○ 조례 및 기타안전심사특별위원회활동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	
12.27(월) 10:00	2	1.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군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군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국제도시간자매결연체결동의안	

3. 의회활동

제117회 군포시의회 임시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 및 기타 안전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04년도 추가 경정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등 3건의 예산안과 군포시 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조례 및 기타안전을 심의·의결하였다.

4. 안전처리상황

안 건		의 결 일 자	처 리 결 과
총 계 : 12건			
예산 안	소 계 : 3건		
	•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04.12.27(월)	수정가결
	•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04.12.27(월)	원안가결
	•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04.12.27(월)	원안가결
조 례 안	소 계 : 2건		
	1. 군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 군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04.12.27(월) '04.12.27(월)	원안가결 원안가결
건의 결의 동의	소 계 : 3건		
	•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04.12.22(수)	원안가결
	• 조례 및 기타안전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04.12.22(수)	원안가결
	• 국제도시간자매결연체결동의안	'04.12.27(월)	원안가결
선거 선임	소 계 : 2건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04.12.22(수)	선 임
	• 조례 및 기타안전심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04.12.22(수)	선 임
회의 진행 안건	소 계 : 2건		
	• 제117회군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04.12.22(수)	원안가결
	• 제117회군포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04.12.22(수)	원안가결

제2절 주요안전처리경과 및 결과

1. 예산안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 운영기간 : 2004.12.23 ~ 12.24(2일간)
- 위 원 수 : 9명
권원혁, 이재수, 송정열, 김재일, 최진학, 김진호, 김판수, 이경환, 조완기의원
(위원장: 이경환 의원, 간사: 김재일 의원)

□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예산규모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안 (A)	기정예산안 (B)	증△감 (A-B)	비 고
총 계	239,250,775	251,292,753	△12,014,978	
일반회계	186,219,388	178,423,708	7,795,680	
특별회계	53,031,387	72,869,045	△19,837,658	

- 의 결 : 수정가결(2004.12.27)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2억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성)

□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예산규모

(단위: 천원)

구 분		사 업 예 산	자 본 예 산	자 금 운 영
수 입	예 산 액	16,860,862	1,639,184	21,582,518
	기정예산	16,866,359	2,163,984	22,260,969
	증 감	△5,497	△524,800	△678,451
지 출	예 산 액	16,860,662	4,122,892	21582,518
	기정예산	16,866,359	4,795,646	22,260,969
	증 감	△5,697	△672,754	△678,451

○ 의 결 : 원안가결(2004.12.27)

□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예산규모

(단위: 천원)

구 분		사 업 예 산	자 본 예 산	자 금 운 영
수 입	예 산 액	6,244,431	2,978,500	19,197,477
	기정예산	5,882,782	1,338,000	12,276,667
	증 감	341,649	1,640,500	6,920,810
지 출	예 산 액	6,244,431	2,978,500	19,197,477
	기정예산	5,882,782	2,913,968	12,276,667
	증 감	361,649	64,532	6,920,810

○ 의 결 : 원안가결(2004.12.27)

2. 조례안

□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구성

○ 운영기간 : 2004.12.22

○ 위 원 수 : 9명

권원혁, 이재수, 송정열, 김재일, 최진학, 김진호, 김판수, 이경환, 조완기의원
(위원장: 최진학 의원, 간사: 김판수 의원)

□ 군포시 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제안이유 : 관계 법률의 명칭변경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 국가유공자 등 장애인 차량의 감면대상자 범위를 명확히 하며, 중소기업에 대하여 감면혜택을 마련한 행정자치부의 개정표준안 권고사항에 따라 본문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법률명칭의 변경에 따라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반복되는 조문을 간결화하고자 ‘국가유공자·광주(5·18)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 후유의증환자’를 ‘국가유공자 등’으로 약칭함
- 종전에는 국가유공자 등·장애인의 배우자는 주민등록이 달리 기재되어 있더라도 자동차세를 면제하였으나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경우에만 면제하도록 감면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
-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단지 조성이 수반되지 않는 소규모 협동화 사업장들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감면조례를 개정함
- 종합토지세의 감면세액 산정방식을 명확히 하고자 경감비율에 대한 적용 규정을 신설함

○ 의 결 : 원안가결(2004.12.27)

□ 군포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제안이유 : 공무원단체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전담기구 인력 및 복식부기 시범운영 기관 확대관련 인력이 증원됨에 따라 정원의 총 수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정원의 총수를 662명에서 668명으로 개정
- 집행기관의 정원을 648명에서 654명으로 개정

- 의 결 : 원안가결(2004.12.27)

3. 동의안

□ 국제도시간자매결연체결동의안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제안이유 : 21세기 국제화·지방화시대에 국외 지방자치단체와 상호 인적·물적교류 등 다양한 우호교류협력을 통하여 상호견문과 이해의 폭을 넓히고 공동의 이익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1년 유소년 축구단의 군포시 방문을 계기로 시작된 일본 가나가와현 아츠기시와의 민간차원의 친선교류가 2004년 11월 1일 우호 교류협정 체결로 이어지면서 보다 발전된 『자매결연체결』을 통하여 교류협력 추진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체결대상 : 일본국 가나가와현 아츠기시
 - 체결명칭 : 군포시와 아츠기시간 자매결연 체결
 - 체결자 : 양 지역 대표(군포시장 ⇄ 아츠기시장)
 - 국외 지방자치단체간 자매결연 체결 선행절차 이행
 - 상호 방문 및 교류로 신뢰 구축 : 2001~2004
 - 우호교류합의서 체결 : 2004.11.1체결
 - 자매결연 체결시기 및 방법
- 의 결 : 원안가결(2004.12.27)

제26장 제118회 임시회

제26장 제118회 임시회

제1절 개 관

1. 개최배경

제118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5년 3월 4일 군포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05년 3월 7일 집회공고를 하여 2005년 3월 14일 개최되었으며 본 회기 중에는 군포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 및 기타 안건이 다루어졌으며 회기는 2005년 3월 14일부터 3월 17일까지 4일간으로 2차의 본회의를 가졌다.

2. 의사일정

일 수	차수	부 의 안 건	비고
3.14(월) 10:00	1	1. 제118회군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118회군포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 휴회의 건	
3.15~ 3.16		○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활동	
3.17(목) 10:00	2	1. 군포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군포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군포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군포시사회복지관설치 및 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군포시공동주택의지원 및 관리조례안 6. 군포시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군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군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대야하수종말처리장결정(변경)에따른의견제시의건	

3. 의회활동

제118회 군포시의회 임시회에서는 조례 및 기타 안전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군포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 및 기타 안전을 심의·의결하였다.

4. 안전처리상황

안		의 결 일 자	처 리 결 과
총 계 : 13건			
조 례 안	소 계 : 8건		
	1. 군포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05.3.17(목)	원안가결
	2. 군포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05.3.17(목)	원안가결
	3. 군포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05.3.17(목)	수정의결
	4. 군포시사회복지관설치 및 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05.3.17(목)	원안가결
	5. 군포시공동주택의지원 및 관리조례안	'05.3.17(목)	수정가결
	6. 군포시통 · 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05.3.17(목)	원안가결
	7. 군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05.3.17(목)	원안가결
	8. 군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05.3.17(목)	원안가결
건의 · 결의 · 동의	소 계 : 2건		
	• 조례 및 기타안전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대야하수종말처리장결정(변경)에따른의견제시의건	'05.3.14(월) '05.3.17(목)	원안가결 원안가결
선거 · 선임	소 계 : 1건		
	• 조례 및 기타안전심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05.3.14(월)	선 임
회의 · 진행 · 안전	소 계 : 2건		
	• 제118회군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05.3.14(월)	원안가결
	• 제118회군포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05.3.14(월)	선 임

제2절 주요안건 처리경과 및 결과

1. 조례안

□ 조례 및 기타안전심사특별위원회 구성

○ 운영기간 : 2004.3.15 ~ 3.17(3일간)

○ 위 원 수 : 9명

권원혁, 이재수, 송정열, 김재일, 최진학, 김진호, 김판수, 이경환, 조완기의원

(위원장: 권원혁 의원, 간사: 김진호 의원)

□ 군포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조완기 의원외 9인

○ 제안이유 : 지방의회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연간 총회의 일수 80일 범위내에서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자율조정 하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임

○ 주요골자 : 군포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중 정례회의 회기기간 연35일 이내로 규정된 조항을 삭제함

○ 의 결 : 원안가결(2005.3.17)

□ 군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제안이유 :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2001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자동차에 대한 세액이 4년간의 유예를 거쳐 2005년부터 단계적으로 인상조정 되었으나, 사회적인 여건을 감안,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 일부를 경감 하고자 마련한 행정자치부의 개정 표준안에 따라 본문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임

○ 주요골자 :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 부과시 전방 조종 자동차(그레이스 등)에 대하여는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고 그 외는 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이를 2007년12월 31일까지 적용토록 규정함

○ 의 결 : 원안가결(2005.3.17)

□ 군포시 토지평가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제안이유 : 주택에 대한 토지·건물 통합과세를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에 따라 현행 공시지가 제도 외에 주택의 적정가격을 통합 평가하여 공시하는 주택가격 공시제도를 도입하고자 기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을 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당해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현행조례의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사항임

○ 주요골자

- 조례의 제명 ‘군포시 토지평가위원회 설치조례’를 ‘군포시 부동산평가위원회설치조례’로 개정함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명칭을 ‘토지평가위원회’에서 ‘군포시부동산평가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규정함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 위원위촉 대상을 ‘지가에 정통한 자와 토지평가 관련 업무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당해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로 규정함
- 군포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의하여 소관사무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에 대하여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의 결 : 수정가결(2005.3.17)

□ 군포시 사회복지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제안이유 : 「사회복지법인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당해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현행 조례의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함으로써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하여 사회복지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임

○ 주요골자

- 사회복지관운영안내지침에 의거 사회복지관의 기능 및 업무를 가족복지, 지역사회보호, 지역사회조직, 교육·문화, 자활사업, 지역사회복지 향상을 위한제반사업 등으로 규정함
- 사회복지관 운영의 위탁에 관한 관계규정을 명시하고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와 위탁운영에 관하여 협약서에 포함할 사항을 규정함
-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의 결 : 원안가결(2005.3.17)

□ 군포시 공동주택의 지원 및 관리조례안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제안이유 : 주택법 제43조 제8항 및 제52조 제1항을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 단지 안에 설치된 공동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며 공동주택단지 내 각종 분쟁사항의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

○ 주요골자

- 보조금의 지원은 관계법규에 의한 공동주택 중 총 사업비의 100분의 40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고 사업별 지원 상한금액은 3천만원으로 한다.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의 유지보수에 한 하도록 규정함
-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할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보조금을 교부 목적외로 사용하거나 준수사항 위반시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사항을 규정함
- 공동주택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분쟁사건 발생시 조정을 위한 대표자의 선정, 조정서의 작성 조정의 거부 및 중단, 종결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 의 결 : 수정가결(2005.3.17)

□ 군포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제안이유 : 당동2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및 산본1동 신규아파트 건설로 인한 통·반의 조정 및 신설과 일부 불균형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통·반 관할 구역을 일부 조정하기 위함

○ 주요골자

- 군포2동 다가구 주택의 신축 등에 따른 과밀지역 분통과 불합리한 지역을 통합조정하고 당동2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신규아파트 건설에 따라 3개통을 신설함
- 산본1동 임광아파트 및 에덴아파트 건설로 8통의 반별 관할구역을 4개반에서 5개반으로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함

○ 의 결 : 원안가결(2005.3.17)

□ 군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재난 안전관리 전담조직의 보강을 위하여 1개과를 증설할 수 있도록 기구설치 기준이 조정됨에 따라 건설도시국에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고 행정자치부의 한시 기구 승인제도 가폐지되는 한편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여유기구제가 도입됨에 따라 여유기구로 시민 만족실을 두고자 하기 위함

○ 주요골자

- 시민만족실을 여유기구로 규정함
- 건설도시국에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고 재난안전관리 및 민방위에 관한 사항을 건설도시국의 분장사무로 규정함

○ 의 결 : 원안가결(2005.3.17)

□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제안이유 : 행정자치부의 재난관리부서 보강지침에 따라 신설되는 재난안전관리과의 필요인력을 증원하기 위함
- 주요골자
 - 정원을 총수를 668명에서 677명으로 개정
 - 집행기관의 정원을 654명에서 663명으로 개정
 -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을 명시함
- 의 결 : 원안가결(2005.3.17)

2. 동의안

□ 대야하수종말처리장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제안이유 : 군포시 대야동의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한 인구증가와 상업지역의 발달로 발생하수량이 증가하여 죽암천 및 반월저수지의 수질오염이 심각한 수준에 달하여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도록 계획하였으나 반월저수지 주변의 음식점이 점차적으로 증가하여 반월저수지의 수질 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어 당초(폐지)에 계획된 처리시설 위치보다는 민원발생, 유지관리, 경제성 등으로 유리하게 판단 도시관리계획시설에 대한 결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임
- 주요골자

1) 폐지결정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m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1	하수도		하수종말 처리장		둔대동 279번지와 13필지			9,127	감) 9,127	-	2002. 12.5	
	도면 표시 번호	등급	류 별	번호	폭원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비고
	1	소로	2	292	8	국지 도로	330.4	중1-59호선	하수종말처리장 (둔대동 184)			일반 도로	

2) 신설결정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	하수도		하수종말 처리장		둔대동 124-2번지외 27필지			-	증) 8,790	8,790	-	
	도면 표시 번호	등급	류별	번호	목원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비고
	1	소로	2	292	8	국지 도로	65.5	중1-59호선	하수종말처리장 (둔대동 124-1)			일반 도로	

○ 의견제시

대야하수종말처리장은 대야동의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한 인구증가와 상업 지역의 발달로 생활하수 발생량이 증가하여 죽암천 및 반월저수지의 수질 오염이 심각한 수준에 달하여 하수종말처리장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난 98년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이 현재까지 지연되고 있는 것은 혐오시설로 인한 주민과의 협의 지연과 개발제한구역행위허가 행정처리기간, 민자개발에 따른 환경관리 공단, 한화, 군포시와의 역할 분담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며 특히 당초 주민의견 수렴과정을 거쳤음에도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장소를 이전하는 것은 행정에 소신과 원칙이 없는 결과이므로 향후 사업추진 시에는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라며 본 사업의 지연에 따른 행재정 손실을 최소화하고 사업추진 시 죽암천 건천화에 대비한 역류펌핑 등의 시설을 확보하여 주민의 친수기능이 실시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의견제시

제27장 제119회 임시회

제27장 제119회 임시회

제1절 개 관

1. 개최배경

제119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5년 4월 26일 군포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05년 4월 26일 집회공고를 하여 2005년 5월 2일 개최되었으며 본 회기 중에는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안 등 예산안 3건과 군포시 자치법규 입법예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 및 기타 안건이 다루어졌으며 회기는 2005년 5월 2일부터 5월 16일까지 15일간으로 2차의 본회의를 가졌다.

2. 의사일정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고
5.2(월) 10:00	1	1. 제119회군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119회군포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5.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8. 조례 및 기타안전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9. 조례 및 기타안전심사특별위원선임의건 10. 2004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안 ○ 휴회의 건	
5.3(화) ~ 5.13(금)		○ 특별위원회활동 - 조례 및 기타안전심사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고
5.16(월) 10:00	2	1.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군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군포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군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군포시 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군포시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설치 운영조례안 9. 군포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군포시 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한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군포시 빗물이용시설 설치조례안 13. 군포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의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14. 군포시수도사업소 가압장 및 원수관로관리민간위탁동의안	

3. 의회활동

제11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 및 기타 안전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05년도 제1회추가경정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등 예산안 3건과 군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 및 기타 안전을 심의·의결하였다.

4. 안전처리상황

안 건		의 결 일 자	처 리 결 과
총 계 : 21건			
예 산 안	소 계 : 3건		
	•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05.5.16(월)	수정가결
	•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05.5.16(월)	수정가결
	•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05.5.16(월)	원안가결

안		의 결 일 자	처 리 결 과
조 례 안	소 계 : 10건		
	1. 군포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일부개정조례안	'05.5.16(월)	수정가결
	2. 군포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05.5.16(월)	원안가결
	3. 군포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05.5.16(월)	원안가결
	4. 군포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 ·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5.5.16(월)	수정가결
	5. 군포시공공시설내최적의장애인관람석지정설치운영조례안	'05.5.16(월)	원안가결
	6. 군포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05.5.16(월)	원안가결
	7. 군포시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 조례안	'05.5.16(월)	원안가결
	8. 군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05.5.16(월)	원안가결
	9. 군포시빗물이용시설설치조례안	'05.5.16(월)	원안가결
	10. 군포시수도시설의원인자부담금 및 손과자부담금의산정 · 징수 등에관한조례안	'05.5.16(월)	원안가결
건의 · 결의 · 동의	소 계 : 3건		
	•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05.5.2(월)	원안가결
	•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05.5.2(월)	원안가결
	• 군포시수도사업소가압장원수관로 및 관리민간위탁동의안	'05.5.16(월)	부 결
선거 · 선임	소 계 : 3건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05.5.2(월)	선 임
	•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선임의건	'05.5.2(월)	선 임
	• 2004회계년도결산감사위원선임의안	'05.5.2(월)	선 임
회의 · 진행 · 안건	소 계 : 2건		
	• 제119회군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05.5.2(월)	원안가결
	• 제119회군포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05.5.2(월)	선 임

제2절 주요안건처리경과 및 결과

1. 예산안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 운영기간 : 2004.5.9 ~ 5.13(5일간)

○ 위 원 수 : 9명

권원혁, 이재수, 송정열, 김재일, 최진학, 김진호, 김판수, 이경환, 조완기 의원
(위원장: 최진학 의원, 간사: 김판수 의원)

□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예산규모

(단위: 천원)

구분	예 산 안 (A)	기정예산안 (B)	증△감 (A-B)	비 고
총계	235,325,516	202,924,373	32,401,143	
일 반 회 계	196,186,557	166,417,295	29,769,262	
특 별 회 계	39,138,959	36,507,078	2,631,881	

○ 의 결 : 수정가결(2005.5.16)

□ 2005년도 제1회추가경정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예산규모

(단위 : 천원)

구분		사 업 예 산	자 본 예 산	자 금 운 영
수 입	예 산 액	17,033,246	4,127,481	26,771,108
	기정예산	16,669,937	1,664,400	18,334,337
	증 감	363,309	2,463,081	8,436,771

구분		사 업 예 산	자 본 예 산	자 금 운 영
지 출	예 산 액	17,033,246	9,737,862	26,771,108
	기정예산	13,466,245	4,868,092	18,334,337
	증 감	3,567,001	4,869,770	8,436,771

○ 의 결 : 수정가결(2005.5.16)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투자의 우선순위가 맞지 않고 효과가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일부에 대하여는 삭감)

□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예산규모

(단위 : 천원)

구분		사 업 예 산	자 본 예 산	자 금 운 영
수 입	예 산 액	6,624,275	2,150,000	21,354,701
	기정예산	6,624,275	2,150,000	13,720,528
	증 감	0	0	7,634,173
지 출	예 산 액	5,290,495	4,794,475	21,354,701
	기정예산	5,290,495	4,231,175	13,720,528
	증 감	0	563,330	7,634,173

○ 의 결 : 원안가결(2005.5.16)

2. 조례안

□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구성

○ 운영기간 : 2005.5.3~5.7(5일간)

○ 위 원 수 : 9명

권원혁, 이재수, 송정열, 김재일, 최진학, 김진호, 김판수, 이경환, 조완기 의원

(위원장: 이경환 의원, 간사: 조완기 의원)

□ 군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제안이유 : 시민생활과 관련된 자치법규 등을 입법예고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을 원칙으로 모든 자치법규 등을 대상으로 입법예고하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자치법규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임

○ 주요골자

- 원칙적으로 모든 자치법규를 입법예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절차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 후 중요내용의 변경이나 추가시에는 해당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도록 함
- 자치법규안에 입법예고에 관하여 중복되는 조문은 삭제하고 시정의 중요사항이나 주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주민에게 널리 예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유료광고를 게재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를 예고할 수 있도록 함

○ 의 결 : 수정가결(2005.5.16)

□ 군포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제안이유 : 지방세법령이 개정되어 현행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 세무행정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행정자치부의 개정표준안 권고사항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임

○ 주요골자

-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 종합토지세에 대한 관련규정을 삭제함
- 재산세의 과세대상 중 토지와 주택이 추가됨에 따라 세부담 완화를 위해 재산세 납기일을 각 과세대상 별로 세분화 하도록 규정함
- 재산세의 과세표준액의 변경으로 인한 세부담의 증가를 막기 위하여 과세표준 구간조정 및 세율을 인하함
- 토지에 대한 재산세중 종합합산대상 및 별도합산대상 토지는 군포시내토지를 합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하여 세율을 적용하며 주택은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함
- 자동차세 중 영업용(시시당18원), 비영업용(시시당140원)의 배기량기준을 1,500cc에서

1,600cc로 조정함

- 주행세의 세율을 1,000분의 175에서 1,000분의 215로 인상함
- 도시계획세 과세대상 등에 주택을 추가하고 종합토지세 문구를 삭제함
-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 및 납기를 재산세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과세표준액의 증가에 따라 급격한 세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세율을 0.2퍼센트에서 0.15퍼센트로 인하함

○ 의 결 : 원안가결(2005.5.16)

□ 군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제안이유 : 지방세법령이 개정되어 현행 종합토지세 규정이 삭제되고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 감면조례상의 조문을 정비하고 임대주택활성화를 위한 임대주택 감면 확대 및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자 한 행정자치부의 개정표준안 권고사항에 따라 동 감면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 주요골자

- 종합토지세 감면규정을 삭제하고 재산세 감면규정으로 흡수 통합 규정함
- 임대주택에 대하여 건설임대사업자와 매입임대사업자의 감면조항을 따로 규정하고 감면 대상 면적을 확대 규정함
-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미 분양된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최저세율을 적용함
-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 의 결 : 원안가결(2005.5.16)

□ 군포시 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례안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제안이유 :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이 폐지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관계 조문을 정비하고 당해법령에서 정한 과태료를 상향조정하려는 사항임

○ 주요골자

- 「국토이용관리법」이 폐지되고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관계 조문을 정비함
- 과태료의 부과기준 중 부과대상 일부 조항을 삭제하고 부과대상위반내용별 과태료를 현행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또는 '1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함

○ 의 결 : 수정가결(2005.5.16)

□ 군포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지정설치·운영조례제정안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제안이유 : 현재 대다수 공연 및 관람시설 내 장애인관람석이 관람하기 불편한 관람석의 끝 또는 난간뒷부분에 위치하고 있어 장애인들의 관람 편의를 높여주기 위하여 일정비율의 장애인석을 관람하기 좋은 위치에 설치하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사항임

○ 주요골자

-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운동시설 별로 설치기준 좌석의 50% 이상을 장애인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도록 함
- 시비가 투자되는 공연장 등에 대한 투·융자심사와 설계 심사 시 장애인최적관람석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함
- 장애인이 최적관람석에서 출입구 및 피난통로까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장애인 전용통로 리프트 등 장애인편의 시설을 설치하도록 함
- 장애인용 최적관람석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을 배정하도록 함
- 기존의 공연장 등이 장애인 최적관람석을 설치하는 경우 시비의 보조가 가능하도록 함
- 기존의 공연장 등은 장애인 최적관람석의 설치를 2년간 유예 하도록 함

○ 의 결 : 원안가결(2005.5.16)

□ 군포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제안이유 : 환경관계법에 적용되는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의 개정 및 환경부의 조례개정 권고 사항에 따라 상위법령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태료 부과 기준을 개정·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임

○ 주요골자

- 환경부의 「과태료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조정함
- ‘방지되는 폐기물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세분화함
- ‘별도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담배꽂초,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5만원에서 3만원으로 조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과태료 부과대상을 개정하고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과태료 부과 대상을 신설함

- 의 결 : 원안가결(2005.5.16)

□ 군포시 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제안이유 : 1회용품 사용규제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신고포상금제를 도입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업종에 신고가 집중되는 등 제도 운영상 일부 문제점이 제기되어 이를 개선·보완하고자 마련한 환경부의 조례개정표준안 권고 사항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 주요골자

- 고의로 법규를 준수하지 않는 사업자를 근절하고 지도·점검에 의한 과태료 부과와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반횟수와 상관없이 항상 1차위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함
- 환경부 고시에 의거 1회용품의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대상에서 A4규격의 종이봉투가 제외됨에 따라 삭제함
- 위반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와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현행 부과기준에 사업자나 신고인에게 요구되는 준수비용 및 신고비용 등을 감안하여 이를 조정함

- 의 결 : 원안가결(2005.5.16)

□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제안이유 : 개별주택가격평가, 동학농민혁명 및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에 관한 업무추진을 위한 정원승인에 따른 정원의 총 수를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임
- 주요골자
 - 정원의 총수를 677명에서 681명으로 개정
 - 집행기관의 정원을 663명에서 667명으로 개정
 -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명시함
- 의 결 : 원안가결(2005.5.16)

□ 군포시 빗물이용시설 설치조례안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제안이유 : 21세기 물위기에 대비한 환경친화적인 대체 수자원으로 빗물이 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빗물이용시설 설치자에 대하여 수도요금의 감면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환경부의 조례제정표준안 권고사항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이 조례의 제정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함
 - 빗물이용시설 설치를 권장할 대상에 대하여 규정하고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절차에 대하여 규정함
 - 빗물이용시설 설치자에 대하여 빗물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을 100분의 20내지 100분의 65 범위안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수도요금을 감면 받은 자 중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감면 받은 경우에는 수도요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의 결 : 원안가결(2005.5.16)

□ 군포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의 산정·징수등에 관한 조례안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제안이유 : 수도공사를 행함에 있어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자에게 그 수도 공사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원인자부담금과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 또는 행위를 하는 자가 있는 경우 그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수도시설의 수선·유지에 관한 비용 손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해당사업자 또는 행위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손괴자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려는 사항임

○ 주요골자

- 이 조례의 제정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함
- 수도공사를 행하거나 수도시설을 손괴한자에 대한 부담금의 부과대상 및 범위를 규정하고 이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기준을 규정함
- 사전에 수도공사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원인자부담금과 손괴된수도시설의 수선 및 유지에 필요한 손괴자부담금의 징수 및 부과절차를 규정함
- 사업 또는 행위로 인하여 수도시설을 손괴한 자의 신고의무 및 사유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한 수도시설의 주의의무를 규정함
- 수도시설의 손괴로 인하여 타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의 피해배상과 상수도 공사의 하자 시 원상복구에 따른 손괴자부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의 규정을 정함
- 납부된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이 사용한 비용과 차액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환불 또는 추가징수 할 수 있도록 부담금의 정산 및 과오납의 처리규정을 정함
- 수도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되는 타 시설물의 설치한계와 이에 따른 이설 비용 등 제반사항을 규정함

- 의 결 : 원안가결(2005.5.16)

3. 동의안

□ 군포시 수도사업소 기압장 및 원수관로관리 민간위탁동의안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제안이유 : 상수도사업 경영합리화를 위해 전문기술력을 갖춘 민간업체에 원수공급 시설을 위탁하여 예산 및 인력을 절감하고자 하기 위한 사항임

○ 주요골자

- 군포시와 한국수자원공사는 군포시 상수도사업 효율화를 위하여 가압장 및 원수관로에 대한 사업진단 실시
- 사업진단 결과를 토대로 위탁기간, 위탁범위, 위탁비용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실시 협약 체결시 약정
- 상수도 시설의 소유권은 군포시에서 보유하고 한국수자원공사는 위탁 범위내에서 시설 운영·관리 위·수탁에 필요한 시설 설치비 및 관리비는 군포시가 부담
- 양 당사자간의 협약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위·수탁 계약해지

○ 의 결 : 부 결

제28장 제120회 임시회

제28장 제120회 임시회

제1절 개 관

1. 개최배경

제120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5년 5월 16일 이재수의원의 4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05년 5월 21일 집회공고를 하여 2005년 5월 27일 개최되었으며 본 회기 중에는 군포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 및 기타 안건이 다루어졌으며 회기는 2005년 5월 27일부터 5월 30일까지 4일간으로 2차의 본회의를 가졌다.

2. 의사일정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고
5.27(금) 10:00	1	1. 제120회군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120회군포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조례 및 기타안전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조례 및 기타안전심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5.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6.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 휴회의건	
5.27(금) 11:00		○ 특별위원회활동 - 조례 및 기타안전심사특별위원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5.30(월) 10:00	2	1. 군포시 시세감면 일부개정조례안 2.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안(노상경로당 신축위치 변경)	

3. 의회활동

제12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와 조례 및 기타 안전심사 특별 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반을 편성하고 군포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 및 기타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4. 안전처리상황

안 건		의 결 일 자	처 리 결 과
총 계 : 8건			
조 례 안	소 계 : 1건		
	1. 군포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5.5.30(월)	원안가결
건의 · 결의 · 동의	소 계 : 3건		
	• 조례 및 기타안전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05.5.27(금)	원안가결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05.5.27(금)	원안가결
	•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노상경로당신축위치변경)	'05.5.30(월)	원안가결
선거 · 선임	소 계 : 2건		
	• 조례 및 기타안전심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05.5.27(금)	선 임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05.5.27(금)	선 임
회의 · 진행 · 안건	소 계 : 2건		
	• 제120회군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05.5.27(금)	원안가결
	• 제120회군포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05.5.27(금)	선 임

제2절 주요안건 처리경과 및 결과

1. 조례안

□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구성

○ 운영기간 : 2005.5.27

○ 위 원 수 : 9명

권원혁, 이재수, 송정열, 김재일, 최진학, 김진호, 김판수, 이경환, 조완기 의원

(위원장: 권원혁 의원, 간사: 송정열 의원)

□ 군포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제안이유 : 재산세 중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액이 시가를 반영한 개별주택가격과 국세청 기준시가로 변경되어 재산세의 인상이 불가피함에 따라 세율을 인하하는 조례를 개정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 주고자 하는 사항임

○ 주요골자 : 2005년도 재산세 인상률을 완화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18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주택에 대한 재산세 표준세율을 30%인하 조정함

○ 의 결 : 원안가결(2005.5.30)

2. 동의안

□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노산경로당 신축위치 변경)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제안이유 :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을 위하여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임

○ 주요골자 : 대야동 중1-2호선 도로개설 공사구간에 수용되어 철거된 노산경로당을 대체 할 경로당을 대야동 구획정리사업지구내 5블럭 1롯트(대야1호공원)에 신축 할 계획이었으나 대야동 토지이용계획변경(2005.4.15일)으로 당초 계획된 부지가

아파트부지로 편입되었으며 어린이공원의 위치가 변경되고 면적이 축소되어
동 지구내 14블럭 일원(대야2호공원)으로 신축부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 의 결 : 원안가결(2005.5.30)

3. 기타안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감사의 목적 :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지방행정 업무를 감사하여 시정의 전반적인 실태와 현황을 감사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주민본위의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
- 감사기간 : 2005.7.5 ~ 7.11(7일간)
- 감사실시대상기관 : 시민만족실, 기획감사실, 시민봉사국, 경제환경국, 건설도시국, 행정지원국, 보건소, 수도사업소, 문화예술회관, 시립도서관, 의회사무과
- 감사위원 : 9인
권원혁, 이재수, 송정열, 김재일, 최진학, 김진호, 김판수, 이경환, 조완기 의원
(위원장: 최진학 의원, 간사: 김진호 의원)

제29장 제121회 제1차 정례회

제29장 제121회 제1차 정례회

제1절 개 관

1. 개최배경

제121회 정례회는 군포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1차 정례회로서 2005년 6월 24일 집회공고하고 2005년 7월 1일 개최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 2004회계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등 3건의 결산안과 군포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 및 기타 안건이 다루어 졌으며 회기는 2005년 7월 1일부터 7월 19일까지 19일간으로 3차의 본회의를 가졌다.

2. 의사일정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고
7.1(금) 10:00	1	1. 제121회군포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제121회군포시의회(제1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2004회계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4. 2004회계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5. 2004회계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8.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9.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0. 시장출석요구의건	
7.4(월) 10:00	2	1. 시정질문의건 ○휴회의건	
7.5 ~ 7.18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7.5~7.18)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7.12~7.15) ○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활동(7.18)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7.19(화) 10:00	3	1. 2004회계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2004회계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2004회계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4.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5. 군포시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군포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제정안 7. 군포시 인정시장의 신설기준·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정안 8. 군포시 시장상인회 등록 및 운영관리 조례제정안 9. 군포시 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정안 10.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회활동

제121회 군포시의회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례 및 기타 안전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2004회계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 등 결산안 3건과 군포시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시정질문을 하였다.

4. 안전처리상황

안 건		의 결 일 자	처 리 결 과
총 계 : 18건			
결 산 안	소 계 : 3건		
	• 2004회계년도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05.7.19(화)	원안가결
	• 2004회계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05.7.19(화)	원안가결
	• 2004회계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05.7.19(화)	원안가결

안 건		의 결 일 자	처 리 결 과
조 례 안	소 계 : 6건		
	1. 군포시수주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05.7.19(화)	원안가결
	2. 군포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제정안	'05.7.19(화)	부 결
	3. 군포시인정시장의시설기준·운영 및 관리에관한조례안	'05.7.19(화)	원안가결
	4. 군포시시장상인회등록 및 운영관리조례제정안	'05.7.19(화)	원안가결
	5. 군포시시장시설현대화사업으로설치한시설물의사후관리등에관한 조례제정안	'05.7.19(화)	원안가결
	6. 군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05.7.19(화)	원안가결
건의 · 결의 · 동의	소 계 : 3건		
	•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05.7.1(금)	원안가결
	•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05.7.1(금)	원안가결
	•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05.7.19(화)	원안채택
선거 · 선임	소 계 : 2건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05.7.1(금)	선 임
	•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05.7.1(금)	선 임
회의 · 진행 · 안건	소 계 : 2건		
	• 제121회군포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05.7.1(금)	원안가결
	• 제121회군포시의회(제1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05.7.1(금)	선 임
보고 · 질문	소 계 : 1건		
	• 시정질문의건	'05.7.4(월)	질문,답변
기타	소 계 : 1건		
	• 시장출석요구의건	'05.7.1(금)	원안가결

제2절 주요안건 처리경과 및 결과

1. 결산안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 운영기간 : 2005.7.12 ~ 7.15(4일간)

○ 위 원 수 : 9명

권원혁, 이재수, 송정열, 김재일, 최진학, 김진호, 김판수, 이경환, 조완기 의원

(위원장: 권원혁 의원, 간사: 조완기 의원)

□ 2004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세입 및 세출 결산

- 세입결산으로는 일반회계 총수입은 242,377,473,660원으로서

지방세수입이 75,779,493,400원, 세외수입이 83,111,050,760원,

지방교부세 15,924,000,000원, 지방양여금 1,468,466,000원,

재정보전금 24,500,945,000원, 보조금 36,593,518,000원,

지방채 5,000,000,000원이 수납되었으며,

- 세출결산으로는 세출예산현액은 238,718,074,350원으로서

이중 173,430,752,014원이 지출되었고 57,200,704,540원이 익년도로 이월 되었으며

8,086,581,796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음.

○ 의 결 : 원안가결(2005.7.19)

□ 2004회계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세입 및 세출 결산

- 2004회계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총 수입은 16,860,662,000원에

징수결정액이 16,250,582,270원이고 수납액은 15,393,974,680원으로

목표액 대비 97.72%을 달성하여 856,587,590원의 미수액이 발생하였음.

-- 2003회계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사업비용에 예산현액 16,860,662,000원 대비 65.98%인 11,125,436,380원을 지출하였고
자본적 지출은 예산현액 4,721,855,540원 대비 99.34%인 4,218,392,600원을
지출하였으며, 총예산 현액 21,582,517,540원 대비 71.09%인 15,343,829,980원을
지출하였으며, 차기 이월액은 4,644,250,160원임.

○ 의 결 : 원안가결(2005.7.19)

□ 2004회계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세입 및 세출 결산

-- 2004회계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총 수입은 6,244,431,000원에

징수결정액이 6,439,543,570원이고 수납액은 6,097,480,190원으로

목표액 대비 94.68%을 달성하여 342,063,080원의 미수액이 발생하였음.

-- 2003회계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사업비용에 예산현액 6,244,431,000원 대비 61.64%인 3,849,289,710원을 지출하였고

자본적 지출은 예산현액 2,978,500,000원 대비 63.60%인 1,894,302,920원을

지출하였으며, 총예산 현액 9,222,931,000원 대비 62.27%인 5,743,592,6300원을

지출하였으며, 차기 이월액은 12,609,504,767원임.

○ 의 결 : 원안가결(2005.7.19)

2. 조례안

□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구성

○ 운영기간 : 2005.7.18

○ 위 원 수 : 9명

권원혁, 이재수, 송정열, 김재일, 최진학, 김진호, 김판수, 이경환, 조완기 의원

(위원장: 이경환 의원, 간사: 김판수 의원)

□ 군포시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제안이유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가격공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매년 결정·공시되는 주택가격에 대하여 개별주택가격확인서 및 공동주택가격확인서 발급시 소정의 수수료를 징수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 제증명확인 발급사항 중 '나' 목의 세정과 종류 중 주택가격확인서 발급에 대한 수수료 징수금액을 신설함
 - 개별주택가격확인서(1통) 500원
 - 공동주택가격확인서(1통) 500원
- 의 결 : 원안가결(2005.7.19)

□ 군포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제안이유 :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고 사회복지·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 서비스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군포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과,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증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건의 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는 등 협의체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협의체 위원장 및 위원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협의체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협의체 사무처리를 위한 간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관계인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함

-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함
 - 협의체에 출석한 위원·전문가·관계인 등에게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함
 -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함
- 의 결 : 부 결(2005.7.19)

□ 군포시 인정시장의 시설기준·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제안이유 :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시장이 아닌 것 중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인정한 인정시장의 기준·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시 조례로 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인정시장의 구역에 관한 사항
 - 주요 시설물과 편의 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의 결 : 원안가결(2005.7.19)

□ 군포시 시장상인회 등록 및 운영관리조례안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제안이유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 또는 비용을 지원 받아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 상인회를 설립·등록하여야 하며 상인회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시 조례로 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상인회를 적합하게 구성하여 시장에게 등록한 단체
 - 시장 시설현대화를 위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또는 보조하는 환경개선 사업의 수행
 - 상인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약 또는 정관으로 정함

- 시장상인회 등록 및 신고 사항 등

○ 의 결 : 원안가결(2005.7.19)

□ 군포시 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제안이유 : 우리시 재래시장의 경우 시설물이 노후화 되어있어 환경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며 현재 산본 재래시장은 환경개선사업을 추진 중에 있어 완공된 후 시설물의 안전사고 예방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시 조례로 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
-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시장상인 또는 고객의 시설물 사용료에 관한 사항
- 시설현대화사업에 따른 인·허가 사항의 일괄처리에 관한 사항

○ 의 결 : 원안가결(2005.7.19)

□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제안이유 : We Start 시범마을 운영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관련 업무추진을 위한 정원승인에 따른 정원의 총수 증원하려는 사항임

○ 주요골자

- 정원의 총수를 681명에서 691명으로 개정
- 집행기관의 정원을 667명에서 677명으로 개정
-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명시함

○ 의 결 : 원안가결(2005.7.19)

3. 행정사무감사

□ 감사기간 : 2005.7.5 ~ 7.11(7일간)

- 대상기관 : 시민만족실, 기획감사실, 시민봉사국, 경제환경국, 건설도시국,
행정지원국, 보건소, 수도사업소, 문화예술회관, 시립도서관, 의회사무과

□ 감사반편성

○ 위 원 수 : 9인

권원혁, 이재수, 송정열, 김재일, 최진학, 김진호, 김판수, 이경환, 조완기 의원
(위원장: 최진학 의원, 간사: 김진호 의원)

□ 시정사항

○ 공통사항

- 전문을 요구하는 부서에는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전문지식 습득을 위한교육과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해 한 부서에 2~3명의 전문인력은 항상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강구
- 상급기관의 감사지적 사항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와 문제점에 대한 분석과 검토 등을 통하여 추후 지적사항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
- 매년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채권확보와 징수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당부
- 행정사무감사 작성시 전년도 자료 등을 대비하여 정확하게 작성하기바람

○ 시민만족실

- 각 주민자치센터의 실정에 맞는 예산지원을 통하여 모든 시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도록 주민자치센터 예산지원 개선요구
- 주민자치센터 운영시 규정된 조례 원칙대로 적용해야하나 운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규정된 조례에 문제점이 있다면 조례개정을 통하여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여 주기 바람

○ 기획감사실

- 중심상가내 보도블럭 교체작업 중에 발생한 보행자 상처건은 해당사업장내에서 발생한 사고임에도 시가 사건을 처리함은 부당하며 공사계약 내용 등을 확인하여 구상 조치토록 하고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요구
- 보조금을 목적 외에 부당하게 사용한 보훈단체의 사례를 지적하고 차후 엄격한 제재를 통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주기 바람

- 지역정체성 확보방안에 대한 연구용역과 좀더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무형의 도시계획을 추진할 것을 요청
- 각종 투융자 심사가 면밀하게 검토되어 적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효율적으로 적정하게 우선순위에 따라 집행할 것과 예산편성 시 투융자 사업 등은 위원회의 철저한 심사를 거쳐 반영할 것을 요구
- 신도시내 종교부지 매입 추진은 무리한 지방채 발행을 지향하고 소유자와 협의를 통하여 주차장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검토 권고
- 승소판결 확정시 바로 구상권 청구 및 재산에 대한 채권확보를 통하여 소송비용이 회수될 수 있도록 요구

○ 시민봉사국

① 세정과

- 군포시 관내 대기업의 타 지역 이전에 따른 세수감수가 우려되므로 세수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② 토지관리과

- 공시지가의 오름폭이 시민들의 세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차후 지가 조정 시심도 있고 내실 있는 지가조정을 당부

③ 사회과

- 장애인 전용주차장의 일반인 주차에 대해 공용주차장 및 일반주차장에 대해서도 수시 단속 강화 요구
- E-마트앞 사거리 장애인 점자블럭에 진행 및 멈춤 표시수정과 산본역 노약자 접근로 정상적인 통행을 위해 철도청과 협의 조속히 통행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 요구함
- 지체와 시각장애단체의 심부름센터 통합 운영방안 검토요구

④ 여성정책과

- 어린이집 점검시 안전시설(미끄럼대)이 영구적으로 설치되어 탈착, 분리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구함
- 어린이집 점검 시 먹는 음식과 관련 유통기간, 재료, 조리시설, 영양사가 편성해준 식단표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줄 것을 요구함

- 세자녀 이상 출산 가정에 대해서는 다양한 지원대책 강구
- 보육기자재 구입과 관련 예산을 지원할 때에는 관련 장비가 구입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
- 군포시 관내 중식 결식아동 430명에 대한 지원을 교육청과 협의하여 교육청 또는 시에서 전액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요구함

○ 경제환경국

① 노사경제과

- 광견병 예방접종시 각 동사무소 및 동물병원 등에 홍보 플래카드를 설치하여 관내에서 사육되는 개가 광견병 예방주사에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기바람
- 군포 중·소벤처 박람회의 계획과 사업성과에 대한 미흡 및 비효율적인 운영과 집행에 대하여 차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요구함
- 송전탑 지중화는 신도시 계획당시 고압선이 지중화 계획이었으므로 주택공사에 당시의 계획을 확인하고 협의를 통해 재정적인 부담을 주택공사에서 부담되도록 요구
- 중장기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추진 중인 부곡동 첨단산업단지는 추상적인 사업이 될 수 있으므로 경기도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계획으로만 남지 않도록 추진해 줄 것을 요구함
- G·S전선 부지가 부곡동 첨단산업단지 추진면적과 비슷하므로 두 가지 사업을 연계해 추진하는 방안 검토요구
- 근로자 복지매장의 현재 운영상황을 점검하여 지원당시 지원요건에 부합되는지를 확인하고 당초 목적과 맞지 않으면 환수조치토록 할 것

② 환경위생과

- 특수수질 및 유해물질 문제업소 등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한 관리를 요구함

③ 환경자원과

- 폐기물관리 시민위원회 위원 위촉시 열린행정 측면에서 특정인이 배제되지 않고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 추가 위촉시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재검토 당부

- 환경관리소 가동을 저하에 따른 단속운전의 해소를 위한 대책을 주민협의체 및 시민과의 지속적인 대화 또는 공청회 등을 통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줄 것을 당부
- 환경미화타운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건축면적을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람

④ 공원녹지과

- 수리산과 연계한 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해 수리산을 보호하여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할 것을 요구

○ 건설도시국

① 건설과

- E-마트의 사거리와 어두운 횡단주변의 가로등과 표지판을 설치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조치요구
- 관내 횡단보도 가로등 설치여부를 파악 미 설치지역은 즉시 설치할 것을 요구
- 학교주변과 아파트 진입로 등이 차량과속으로 인해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곳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해 위험지역에 대해서는 경찰서와 협의하여 과속방지턱을 설치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해 줄 것을 요구함
- 금정역 택시 승강장 옆 표지판이 휘어져 본격 장마가 시작될 경우 상당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니 조속히 철거 또는 교체작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요구함

② 도시과

- 대야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대한 민원인 의견을 시가 열린 마음으로 소수의 의견도 최대한 존중하는 배려와 민원인에 대한 잘못된 부문에 대해서는 죄송한 마음을 담은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여 줄 것을 요구함

③ 교통행정과

- 서울~천안간 급행전철 금정역 정차를 적극 추진하고 현재 정차하지 못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시 홈페이지 및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바람

④ 교통지도과

- 중심상업지역지하주차장을 장애인단체에게 위탁 목적의 취지대로 징수원의 채용은 장애인이나 그의 가족이 채용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바람

○ 행정지원국

① 행정지원과

- 자전거 구입 및 활성화 계획 등은 자전거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사업계획과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고 고장난 자전거에 대한 수리대책도 강구하여 줄 것을 요구함
- 각 실,과,소에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가 3년간 한번도 개최되지 않는 위원회가 존재하고 있으므로 존치가 필요하지 않은 위원회는 향후 폐지 또는 그에 맞는 대안을 강구해 주기 바람

② 회계과

- 시청사 청소용역에 지급된 인부임에 대하여 계약서상의 금액이 정확히 지급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미지급 금액은 환수하여 재 지급토록 하고 계약서상의 내용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와 같은 조치를 취해 줄것을 요구함
- 운전직원의 피로와 사고 등을 감안 주말에 공무이외의 행사에 대해서는 관용버스의 배차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치요망

③ 문화공보과

- 전국수리음악콩쿨 및 동요제 등의 사업실시에 따른 정산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요구함
- 문화육성기금 운영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를 예상하여 차후 꼭 필요한 사업 2~3개를 선정 사업의 내실을 도모하기 바람
- 문화공보과는 많은 단체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예산 편성시 중복되는 사업이 없도록 편성에 세심한 주의를 요구

④ 청소년과

- 100대 프로젝트 청소년 정책의 경우에는 시의회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요구함
- 청소년 수련원의 경우 수용능력의 한계, 지리적 원거리, 프로그램 등을고려 군포시 청소년 수련원만이 할 수 있는 특화된 프로그램을 만들 것을 권고
- 고등학교 급식시설의 경우 각 학교가 직영을 기피하고 위탁 운영되고 있으므로 학생들의 안전한 식단확보를 위하여 예산지원 축소 등을 통해서라도 직영으로 전환에 특단의 노력을 당부

- 군포시는 사실상 특목고 유치를 취소하고 학교 명문화를 이루기 위해 청소년 100대 프로젝트 추진과 교육발전기금 100억을 조성하고 있는 만큼 시민들이 혼선을 갖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기 바람

⑤ 정보통신과

- 금년 홈페이지 개편시 출력이 필요한 부문에 대하여 이용자의 측면에서 출력시 A4용지 출력이 가능하도록 개선을 요구함

○ 문화예술회관

- 공유재산 임대료 등 체납액 발생시 결손 우려를 지적하고 채권압류가 어려운 것에 대하여는 보증금 제도와 선납제도 도입 등을 통하여 체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여 추진할 것을 요구

○ 보건소

- 국가필수예방접종 보장법위 확대사업 홍보물 제작의 잘못된 점을 거울삼아 보건행정 관련 홍보물 제작시 보건소 무료접종사실을 크게 홍보하고 시민들에 대한 보건행정의 신뢰성과 예산 절감노력을 더욱 확고히 하도록 할 것과 홍보물 제작시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요구함

○ 수도사업소

- 각종 공사의 안전관리비 지급시 사전에 철저한 현장 안전관리 등의 확인 철자를 거쳐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요구
- 공사발주시 시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낙찰율이 적용되도록 개선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요구함
- 노후상수관 교체공사시 철저한 철거작업과 고철 매각을 통하여 예산절감은 물론 지반과 도로침하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요구함

4. 시정질문

제121회 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2005.7.4)에서 군포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최진학 의원과 조완기 의원이 다음과 같이 시정 질문을 하고 시장의 답변을 받았다.

□ 시정에 관한 질문

○ 질 문 : 최진학 의원

• 질문내용

급속히 증가하는 노령인구에 대한 취업대책과 향후 정책방향에 대하여?

→ 답 변(시장)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에 의해 정부에서 입안한 종합적인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에 맞추어 지역 실정에 맞는 시책을 마련하여 공공부문부터 민간기업까지 노인취업이 활성화 되도록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임 의견이 제시된 노인복지회관에 실버근로대학을 설립하여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노인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방안과 창업교육을 프로그램에 추가하는 방안, 취업강좌개설운영 등에 공감하며 이미 시행중인 사업은 물론 앞으로 시책을 입안할 경우에도 적극 보완·반영토록 하겠으며 노인건강, 연령, 전문성 등을 고려 노인육구에 맞게 교육부터 취업까지 체계화하여 취업을 원하는 어르신들의 일자리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경로당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노인건강 프로그램을 더욱 다양하고 질 높은 수준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보람 있는 노후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음

• 질문내용

자원봉사 마일리지 제도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한 대책에 대하여?

→ 답 변(시장)

실질적으로 마일리지를 활용하고 차감하는 시·군은 없는 실정이며 단지 자원봉사 활성화 및 봉사자의 격려, 사기진작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인센티브가 시·군별로 이루어지고 있음 시에서는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 표창수여, 자원봉사관련 교육비 지원, 각종 교육제공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며 봉사자들 스스로가 어떠한

인센티브를 바라고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인센티브에 대하여 적극적인 검토가 미흡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봉사자의 사기진작 및 격려, 자원봉사의 활성화 차원에서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만큼 자원봉사 정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가 지원되도록 적극 검토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음

• 질문내용

시민체육광장내 주식회사 대림에서 지원하려는 인라인 스케이트장 설치배경과 인라인스케이트장 설치시 이용자의 편익, 안전문제에 대하여

→ 답 변(시장)

시민체육광장의 시민이용을 제고를 위하여 단계별 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해왔으나 2003.9월 1,2단계 정비사업이 완료된 후 3단계 정비는 재정여건상 시행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지역의 향토기업인 '대림'에서 지역주민을 위해 3단계 정비방안으로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대림'에서 정비방안에 대하여 다각도로 검토해 왔음 3단계 정비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제안이 협의될 시 이용자의 안전문제는 물론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최고의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질 문 : 조완기 의원

• 질문내용

태을초등학교 앞 삼거리 육교 연장 설치건에 대하여?

→ 답 변(시장)

현장여건과 육교 이용실태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대로변 완충녹지를 훼손하면서까지 육교를 연장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등·하교를 하는 학생들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해 현재 추진 중인 도로인도 확장공사와 연계하여 육교연장 설치를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조속한 시일내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육교연장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음

• 질문내용

가로수 및 녹지관리정책 입안 추진상황에 대하여?

→ 답 변(시장)

가로수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수종선정과 식재관리 등에 적극 활용하고 있음. 앞으로 가로수 관련 시책의 추진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의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고 내년도에는 녹지관리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도시기본계획과 연계된 녹지행정의 기틀을 마련하고 연차적으로 실행해 나감으로써 친환경도시로서의 이미지를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음

• 질문내용

‘양성평등사업의 일환인 등 성별영향평가 사업에 대하여’

→ 답 변(시장)

성별영향평가는 정책수립과 시행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차이를 반영하여 성적 불평등을 발생하지 않도록 영향을 사전에 분석 평가하는 것으로 41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광역자치단체를 시범 대상으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고 경기도에서도 본청과 2청의 모든 실과소를 대상으로 적용이 필요한 1개 정책을 선정하여 실시하고 기초자치단체는 관련 공무원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이에 주요부서 6급이상 공무원40명과 특히 성비의 불균형을 두드러진 사회복지통계인사, 고용, 농업분야의 부서장을 대상으로 정책의 입안, 집행, 평가단계에서부터 공무원의 성별영향평가 분석력을 향상시키는 교육실습과정을 금년, 10월에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에서 실시할 예정임 성별영향평가 추진방향은 모든 정책에 성비의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기도 성별영향평가분석 연구결과와 경기도성별영향분석단의 시범사업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평가목록이 작성된 후 2006년까지 도입단계를 거쳐 실시할 계획임

• 질문내용

정신보건사업에 대하여?

→ 답 변(시장)

정신장애인들의 재활을 돕고자 방문보건사업 대상자 중심으로 정신보건사업을 시작 하였으나 사업내용이 미흡하여 2002년 보건소를 신축 이전하면서 현 보건소에 정신보건 센터를 설치하고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정신전문의료기관인 계요병원에 위탁 운영하여 정신장애 예방, 치료, 재활 등 정신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정신보건 센터에서는 환자 등록관리, 가정방문, 주간재활프로그램, 사회적응훈련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한 정신보건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는 등 정신장애인과 더불어 사는 사회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으며 정신 장애인에 대한 차별규정의 개정은 정신장애인의 인권보호차원에서 시정해야 할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되어 관련 규정을 적극 검토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음 아동정신 건강사업에 대한 사항은 지난해부터 매년 관내 초등학교 1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소아 정신건강 선별검사를 시행하는 등 아동정신건강사업을 추진하여 어린이가 편안하고 행복한 도시 건강한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고 보건소·정신보건센터·We Start팀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빈곤가정의 아동 지원을 통해 정신건강증진과 신체발육을 위한 영양사업도 함께 전개하여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행정으로 건강한 시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음

제30장 제122회 임시회

제30장 제122회 임시회

제1절 개 관

1. 개최배경

제122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5년 9월 1일 군포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05년 9월 1일 집회공고를 하여 2005년 9월 6일 개최되었으며 본 회기 중에는 군포시 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 및 기타 안건이 다루어졌으며 회기는 2005년 9월 6일부터 9월 9일까지 4일간으로 2차의 본회의를 가졌다.

2. 의사일정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고
9.6(화) 09:30	1	1. 제122회 군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122회 군포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조례 및 기타안전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조례 및 기타안전심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 휴회의건	
9.6 ~ 9.8		○조례 및 기타안전심사특별위원회활동	
9.9(금) 10:00	2	1. 군포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관한조례 2. 군포시 청소년칭찬 조례안 3. 군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군포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 5. 군포시 장애인복지시설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군포시 폐기물관련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군포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군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 9. 군포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 10. 군포시 안전관리자문단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고
9.9(금) 10:00	2	11.군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안 12.군포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군포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군포시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군포시 문화예술회관운영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군포시 정신보건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안 17.군포시 보건소수수료 및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군포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군포시 시립보육시설 민간위탁동의안 20.2005년도 군포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공유재산매각 및 대체재산취득) 21.2005년도 군포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시민체육광장 관리동건립)	

3. 의회활동

제122회 군포시의회 임시회에서는 조례 및 기타 안전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군포시 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등 조례 및 기타 안전을 심의·의결하였다.

4. 안전처리상황

안 건		의 결 일 자	처 리 결 과
총 계 : 25건			
조 례 안	소 계 : 18건		
	1. 군포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관한조례	'05.9.9(금)	원안가결
	2. 군포시청소년청찬조례안	'05.9.9(금)	원안가결
	3. 군포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05.9.9(금)	원안가결
	4. 군포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	'05.9.9(금)	수정가결
	5. 군포시장에인복지시설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05.9.9(금)	원안가결
	6. 군포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05.9.9(금)	원안가결
	7. 군포시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05.9.9(금)	원안가결
	8. 군포시재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05.9.9(금)	원안가결
	9. 군포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05.9.9(금)	수정가결
	10.군포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 및 운영에관한조례안	'05.9.9(금)	원안가결

안		의 결 일 자	처 리 결 과
조 례 안	소 계 : 18건		
	11.군포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05.9.9(금)	원안가결
	12.군포시동의명칭 및 관할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05.9.9(금)	원안가결
	13.군포시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05.9.9(금)	원안가결
	14.군포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05.9.9(금)	원안가결
	15.군포시문화예술회관운영 및 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05.9.9(금)	원안가결
	16.군포시정신보건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안	'05.9.9(금)	원안가결
	17.군포시보건소수수로 및 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05.9.9(금)	원안가결
	18.군포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5.9.9(금)	원안가결
건의 · 결의 · 동의	소 계 : 4건		
	• 조례 및 기타안전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05.9.6(화)	원안가결
	• 군포시 시립보육시설민간위탁동의안	'05.9.9(금)	원안가결
	• 2005년도 군포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공유재산매각 대체재산취득)	'05.9.9(금)	원안가결
	• 2005년도 군포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시민체육광장 관리동 건립)	'05.9.9(금)	원안가결
선거 · 선임	소 계 : 1건		
	• 조례 및 기타안전심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05.9.6(화)	선 임
회의 · 진행 · 안건	소 계 : 2건		
	• 제122회 군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05.9.6(화)	원안가결
	• 제122회 군포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05.9.6(화)	원안가결

제2절 주요안건 처리경과 및 결과

1. 조례안

□ 조례 및 기타안전심사특별위원회 구성

○ 운영기간 : 2005.9.6 ~ 9.8(3일간)

○ 위 원 수 : 9명

권원혁, 이재수, 송정열, 김재일, 최진학, 김진호, 김판수, 이경환, 조완기 의원
(위원장: 최진학 의원, 간사: 송정열 의원)

□ 군포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제안이유 : 지방의회의원의 회기수당을 현실에 맞게 조정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05.8.5일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의원에게 지급하는 회기수당은 출석일수 1일에 100,000원으로 한다.

○ 의 결 : 원안가결(2005.9.9)

□ 군포시의회 청소년 칭찬 조례안

○ 제 출 자 : 최진학의원외 5인

○ 제안이유 : 청소년을 사회폭력과 학교폭력·각종 범죄와 탈선·학교부적응 등으로부터 자아를 회복하고 건전한 청소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칭찬과 격려로 꿈과 희망을 회복할 수 있는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미래사회의 바람직한 일원으로서의 성장을 돕기 위함

○ 주요골자 :

- 칭찬받을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칭찬받은 청소년의 수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한 수당 및 여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의 결 : 원안가결(2005.9.9)

□ 군포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제안이유 :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 공시일의 변경으로 인하여 토지분 재산세과세표준 2년간의 상승분이 일시에 반영됨으로써 전반적인 세부담 증가가 예상되어 지가가 인상된 토지에 한하여 과세표준 경감을 통하여 시민의 세금부담을 덜어 주고자 개정함

○ 주요골자

- 2005년도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전년도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보다 상승한 경우 그 상승한 공시지가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경감은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로 적용
- 시행일을 2005년 6월1일로 소급 적용
- 적용시한을 2005년 12월 31일까지 적용

○ 의 결 : 원안가결(2005.9.9)

□ 군포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제안이유 :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고 사회복지·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군포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과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증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건의 하거나 자문에 응하도록 하는 등 협의체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협의체 위원장 및 위원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협의체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협의체 사무처리를 위한 간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관계인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함
 -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함
- 의 결 : 수정가결(2005.9.9)

□ 군포시 장애인복지시설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제안이유
 -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를 정비하기 위한 우리시 규제정비 계획(국무총리실 규제개혁기획단 권고)에 의거 불명확한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 위탁법인의 복지시설 시설물 훼손시 복구와 배상으로 이중부담 시키는 조항을 삭제하고 위탁운영에 관한 운영능력유무의 판단기준이 모호한 상태에서 요구되는 계약해제의 일방적인 조치사항에 대한 부담함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위탁법인이 복지시설 사용 중 시설 및 장비를 훼손 또는 망실한 경우 원상 복구를 하거나 시장이 정하는 상당액의 비용을 배상하여야 한다.
- 의 결 : 원안가결(2005.9.9)

□ 군포시 폐기물관련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제안이유 : 국무총리실소속 규제개혁기획단의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모델마련』 추진 계획과 상위법령인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과 상이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상의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골자 : 환경부의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의 조문과 동일하게 조례상의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한 사무절차를 조정하여 독촉장 발부일을 과태료 납부기간이 지난 후 7일 이내에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의 조문과 동일하게 45일 이내로 함
- 의 결 : 원안가결(2005.9.9)

□ 군포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제안이유 : 2005 규제개혁 추진계획과 관련 「군포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조항 중 임의성이 개입될 수 있는 모호한 규정과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법령명칭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동 규정에 인용된 내용 중 ‘생활보호대상자’를 ‘수급권자’로 규정함
 - 임의성 개입이 충분하고 모호한 규정을 일부 삭제함
- 의 결 : 원안가결(2005.9.9)

□ 군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제안이유 :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군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에 관하여 소방방재청의 조례 제정 표준안 권고사항에 따라 동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재난에 관련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대책본부의 운영기간 및 구성과 임무에 대하여 규정함
 - 재난대비 체제 단계를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를 구분하고 기반재난의 경우 예방·대비·대응·복구단계로 구분하여 재난상황에 적합하도록 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및 체제를 정하도록 규정함
 - 재난안전대책본부장(시장)은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반의 편성을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소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고 파견근무자에 대한 사전교육 및 근무자의 복무에 대하여 규정함

- 본부장은 자연·인적재난상황관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재난 관리책임기관·각종 구호기관 및 관련단체 등과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합동훈련과 인력 및 장비동원 체제·자원동원·비상연락망 구축하는 등 준비태세를 유지하도록 규정함
- 재난상황 전파체계요령과 기반재난 단계별 (재난예방·대비·대응·복구단계) 상황 관리에 대하여 규정함

○ 의 결 : 원안가결(2005.9.9)

□ 군포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제안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서 지역별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 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과 지역별 안전관리업무의 협의·조정 그 밖에 법이 정하는 지역별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행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장,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군포시 관할 구역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와 관련 있는 기관·단체의 장 등으로 규정함
- 위원회의 기능은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안전관리 계획안의 심의 재난관리 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조정,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당해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및 기타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여하는 안전심의로 규정함
-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고 실무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실무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된 기관·단체의장이 지명하는 자로 규정함
-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 및 연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의 결 : 수정가결(2005.9.9)

□ 군포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제안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운영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한 자문단의 기능 및 구성인원과 위원회의 임기와 해촉에 대하여 규정함
 - 자문단의 회의는 매년 1회의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시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장 및 단장의 요청에 따라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등 자문단 회의에 관하여 규정함
 - 시장이 자문단에 대한 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함
- 의 결 : 원안가결(2005.9.9)

□ 군포시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 조례안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제안이유 :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 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거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의 조례 제정 표준안 권고 사항에 따라 동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30이상 금액은 기금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는 등 기금의 운용·관리에 대하여 규정함
 -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등 기금사용 용도에 대하여 규정함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0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대피 및 퇴거 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용자규모는 70% 이하로 하고 용자한도액은 3천만원이하로 하도록 규정함

-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
·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의 결 : 원안가결(2005.9.9)

□ 군포시 등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제안이유 : 토지구획정리사업 및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택지가 서로 다른 관할 구역에 걸쳐 있어 주민의 불편과 행정의 비능률이 예상됨에 따라 관할구역을 조정 주민의 불편 해소 및 행정능률 제고하기 위함

○ 주요골자

- 군포시 당정동 706번지 외 38필지 군포시에서 제외
- 의왕시 고천동 438-7번지 외 2필지 군포시 당정동으로 편입
- 의왕시 이동 24-1번지 외 21필지 군포시 당정동으로 편입
- 의왕시 이동 166번지 외 103필지 군포시 부곡동으로 편입
- 의왕시 삼동 441번지 외 26필지 군포시 부곡동으로 편입
- 의왕시 초평동 15-1번지 외 4필지 군포시 부곡동으로 편입

○ 의 결 : 원안가결(2005.9.9)

□ 군포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제안이유

- 군포·의왕시간 행정 관할구역 변경으로 당정토지구획정리지구내 고천동 및 이동 일부 지역을 군포 1동(당정동)으로 편입
- 당동 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등 일부 불균형적으로 설치되어있는 통·반 관할구역 조정

○ 주요골자

- 군포·의왕시간 행정 관할구역 변경으로 양시 경계에 걸쳐 있던 LG아파트 107, 109동 2개반을 31통에 4개반으로 조정하고 59블럭을 33통에 1개반 설치
- 당동 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1~5블럭지역과 일부 불균형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통·반 관할구역 조정

- 의 결 : 원안가결(2005.9.9)

□ 군포시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제안이유

-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를 정비하기 위한 우리시 규제정비 계획(국무총리실 규제개혁기획단 권고)에 의거 불명확한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대상·자격·지급정지 사유의 명료화하기 위한

○ 주요골자

- 제2조 제2호의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수립하여 대상 선정시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
- 제8조 제 1항의 제4호의 ‘품행이나 학업 또는 특기성적이 불량한 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수립하여 대상 선정 시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

- 의 결 : 원안가결(2005.9.9)

□ 군포시 문화예술회관운영 및 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제안이유 :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를 정비하기 위한 군포시 규제정비 계획(국무총리실 규제개혁기획단 권고)에 의거 군포시 문화예술회관운영 및 사용료징수조례를 개정하여 규제완화와 함께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자함

○ 주요골자

-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납부는 사용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허가일을 기준으로 10일 이내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사용료를 사용예정일 10일내 납부토록 납부 기한을 조정함으로써 주민규제 완화
- 제10조 중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를 사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사용료의 전부 또는 그 일부를 반환하도록 개정

○ 의 결 : 원안가결(2005.9.9)

□ 군포시 정신보건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안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제안이유 : 지역주민의 정신질환 예방, 정신질환자의 발견, 치료, 재활 및 사회 복귀를 도모하고 정신보건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군포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한 법적근거를 정하기 위함

○ 주요골자

- 정신보건센터설치 및 운영위치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정신보건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정신보건센터를 정신의료기관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정함
- 정신보건센터의 인력과 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정신보건센터의 운영비 지원 및 이용제한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정신보건센터의 지도·감독 및 변상책임, 비용의 징수 등을 규정함

○ 의 결 : 원안가결(2005.9.9)

□ 군포시 보건소 수수료 및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제안이유 : 정부의 「호국보훈정책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가족에 대한 예우시책 증진의 일환으로 보다 많은 의료수혜를 받도록 하고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를 정비하기 위한 우리시 규제정비 계획(국무총리실 규제 개혁기획단 권고)에 의거 불명확한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국가유공자 등의 예우증대를 위한 의료지원 혜택의 대상범위 확대를 위해 5·18민주 유공자와 그 유가족,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참전유공자, 20년 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 등을 면제 대상에 추가함
- 불명확하게 규정된 사항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대상을 세분화하여 규정함

○ 의 결 : 원안가결(2005.9.9)

□ 군포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제안이유 : 청소년의 출입이 사회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아니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청소년의 흡연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법령의 개정취지에 맞도록 조례내의 과태료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아니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에 대하여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함
- 1차 위반 시 현행 과태료 체계에서는 70만원 또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있으나 1차 위반시 경고차원에서 과태료 부과금액을 30만원 또는 5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여 부과하고 위반행위 증가시마다 과태료 금액을 가중하여 주민에게는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부과규정을 개정함

○ 의 결 : 원안가결(2005.9.9)

2. 동의안

□ 군포시 시립보육시설 민간위탁동의안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제안이유 : 2005.12월 준공예정인 재궁 및 오금 어린이집의 수탁운영자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코자 함

○ 주요골자

- 위 수탁하는 시설은 다음과 같다
- 1. 명칭 : 재궁, 오금어린이집

2. 위 수탁사무 및 시설

1) 사무 : 어린이집 운영전반(정원:86명/시설별)

2) 시설 :

재궁 : 군포시 금정동872-5번지 /연면적 348평

오금 : 군포시 산본동 1156-6번지 /연면적 367평

- 보육할 아동은 0세~12세까지로 하되 영아 등 특수보육 대상 아동을 우선 보육대상으로 한다.
- 위·수탁기간은 0000.00.00일부터 2009.2.28일까지로 한다.
- 보육은 종일제(1일 12시간)를 원칙으로 하되 토요일은 14:00까지로 한다.
- 보육료, 기부금 등 모든 수익금은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회계처리는 투명한 방법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 어린이집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당해연도 보육사업 지침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 수탁한 모든 시설물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영유아보육법, 군포시보육조례, 군포시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협약, 지시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 해약할 수 있다
- 수탁한 시설 등에 대하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하여야 하며 해지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기본시설, 부대시설, 물품 등을 즉시 또는 시가 지정하는 일시에 인계하여야 한다.
- 어린이집을 관리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한 민·형상의 책임 및 시설의 훼손에 대한 원상복구 등 모든 책임을 지어야 한다.

○ 의 결 : 원안가결(2005.9.9)

□ 2005년도 군포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공유재산매각 및 대체재산취득)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제안이유 :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을 위하여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의 의거 의회의결을 받고자하는 것임

○ 주요골자

-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 중 장기간 미 활용되고 있고 향후에도 사용계획이 없는 토지를 매각하여 그 재원으로 대체재산을 취득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매각예정 재산은 산본동 1145-6번지의 자동차정류장부지와 산본동1057-16번지의 공공청사용지로서 자동차정류장부지는 규모 및 입지여건이 자동차정류장부지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고 공공청사용지는 향후에도 공공시설용지로 사용할 계획이 없어 매각하고자 하는 것임
- 대체재산으로 취득코자하는 재산은 산본동 1151-10, 11번지의 대한기독교연합회 어린이 선교회 소유의 종교용지로서 면적은 22,772㎡이며 취득 후 사용계획은 영어체험시설, 원어민숙소, 아동보육시설 등 교육지원시설 건립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임

○ 의 결 : 원안가결(2005.9.9)

□ 2005년도 군포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시민체육광장 관리동 건립)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제안이유 :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을 위하여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임

- 주요골자 : 시민체육 광장을 이용하는 1일평균 인원이 3천명이상으로서 관리에 따른 사무실공간이 마련되어야 하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은 체육관내에 위치하고 있고 공간 또한 협소하며 기자재를 보관하는 공간이 없고 제3단계 공사가 마무리 될 경우 체육시설물의 확충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급증할 것으로 판단되어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와 부족한 편의시설 확충을 위하여 관리동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임

○ 의 결 : 원안가결(2005.9.9)

제31장 제123회 임시회

제31장 제123회 임시회

제1절 개 관

1. 개최배경

제123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5년 9월 27일 군포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05년 9월 28일 집회공고를 하여 2005년 10월 4일 개최되었으며 본 회기 중에는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 및 기타특별 회계세입·세출예산안 등 예산안 2건과 군포시 가두판매대 설치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 및 기타 안건이 다루어 졌으며 회기는 2005년 10월 4일부터 10월 11일까지 8일간으로 2차의 본회의를 가졌다.

2. 의사일정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고
10.4(화) 10:00	1	1. 제123회군포시의회(임시회)회가결정건 2. 제123회군포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2005년도 제2회추가경정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7.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8.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 휴회의 건	
10.5(수) ~ 10.10(화)		○ 특별위원회활동 -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0.11(화) 10:00	2	1.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군포시 가두판매대설치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군포시 보훈회관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군포시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군포시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군포시 창업보육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군포청소년교육특구 추진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3. 의회활동

제12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 및 기타 안전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등 2건의 예산안과 군포시 가두판매대 설치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 및 기타 안전을 심의·의결하였다.

4. 안전처리상황

안		의 결 일 자	처 리 결 과
총 계 : 14건			
예 산 안	소 계 : 2건		
	•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05.10.11(화)	수정의결
	•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05.10.11(화)	수정의결
조 례 안	소 계 : 5건		
	1. 군포시 가두판매대 설치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5.10.11(화)	원안가결
	2. 군포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5.10.11(화)	원안가결
	3. 군포시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5.10.11(화)	원안가결
	4. 군포시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5.10.11(화)	원안가결
	5. 군포시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5.10.11(화)	원안가결
건의 · 결의 · 동의	소 계 : 3건		
	•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05.10.4(화)	원안가결
	• 조례 및 기타안전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05.10.4(화)	원안가결
	• 군포청소년교육특구 추진에 따른 의견제시의건	'05.10.11(화)	원안가결
선거 · 선임	소 계 : 2건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05.10.4(화)	선 임
	• 조례 및 기타안전심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05.10.4(화)	선 임
회의 · 진행 · 안건	소 계 : 2건		
	• 제123회군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05.10.4(화)	원안가결
	• 제123회군포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05.10.4(화)	선 임

제2절 주요안건 처리경과 및 결과

1. 예산안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 운영기간 : 2005.10.6 ~ 10.10(5일간)

○ 위 원 수 : 9명

권원혁, 이재수, 송정열, 김재일, 최진학, 김진호, 김판수, 이경환, 조완기 의원

(위원장: 권원혁 의원, 간사: 김판수 의원)

□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예산규모

(단위: 천원)

구분	예 산 안 (A)	기정예산안 (B)	증△감 (A-B)	비 고
총계	243,009,818	235,323,006	7,686,812	
일 반 회 계	203,870,859	196,184,047	7,686,812	
특 별 회 계	39,138,959	39,138,959	0	

○ 의 결 : 수정가결(2005.10.11)

□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예산규모

(단위: 천원)

구분		사 업 예 산	자 본 예 산	자 금 운 영
수 입	예 산 액	17,725,741	4,440,070	27,776,192
	기정예산	17,033,246	4,127,481	27,776,192
	증 감	692,495	312,589	0

구분		사 업 예 산	자 본 예 산	자 금 운 영
지 출	예 산 액	17,725,741	10,050,451	27,776,192
	기정예산	17,033,246	9,737,862	27,776,192
	증 감	692,495	312,589	0

○ 의 결 : 수정가결(2005.10.11)

2. 조례안

□ 조례 및 기타안전심사특별위원회 구성

○ 운영기간 : 2005.10.5

○ 위 원 수 : 9명

권원혁, 이재수, 송정열, 김재일, 최진학, 김진호, 김판수, 이경환, 조완기 의원

(위원장: 이경환 의원, 간사: 김진호 의원)

□ 군포시 가두판매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제안이유 : 국무총리실 행정규제개혁기획단 권고에 의한 우리시 행정규제개혁 정비계획에 따라 다소 시민에게 규제적인 조항을 개정 완화하고자 개정함

○ 주요골자 :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를 ‘영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 대체장소를 제공해 줄 수 있다.’로 개정

○ 의 결 : 원안가결(2005.10.11)

□ 군포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제안이유 : 국무총리실 행정규제개혁기획단 권고에 의한 우리시 행정규제개혁 정비계획에 따라 다소 시민에게 규제적인 조항을 개정 완화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수탁관리자의 의무중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수탁자는 그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이를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를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로 개정

- 위탁관리의 해제 사유중 ‘수탁관리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를 ‘수탁관리자가 파산 부도 등으로 인하여 자격을 상실한 때’로 개정
- 위탁관리의 해제사유중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때’를 삭제
- 위탁관리 기간의 정지에 대한 규정을 신설

○ 의 결 : 원안가결(2005.10.11)

□ 군포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제안이유 : 국무총리실 행정규제개혁기획단 권고에 의한 우리시 행정규제개혁 정비계획에 따라 다소 시민에게 규제적인 조항을 개정 완화하고자 개정함

○ 주요골자

- 사회복지기금 용도 중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기타 군포시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저소득층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사업’으로 개정
- 대학이상의 재학생에게만 제한적으로 용자하던 것을 ‘2년제 대학이상 입학생 및 재학생’으로 개정
- 기금 용자대상 중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을 ‘기타 위원회에서 저소득층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사업자금’으로 개정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자를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용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용자를 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학자금 용자대상 선정시 영세민지원 본연의 성격에 위배되지 않도록 규제 완화

○ 의 결 : 원안가결(2005.10.11)

□ 군포시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제안이유 : 조례의 정의 중 ‘공장등록’의 적용 법률이 개정되어 개정된 법률명칭으로 개정하기 위함

- 주요골자
 - ‘공장등록’의 정의 중 해당 법률 명칭으로 개정
 - ‘용자대상’중 해당 법률 명칭으로 개정
- 의 결 : 원안가결(2005.10.11)

□ 군포시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제안이유 : 국무총리실 소속 규제개혁기획단의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모델 마련』 추진 계획에 따라 군포창업보육센터 입주대상 및 입주자의 선정 기준이 과도한 요건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적합하게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창업자를 입주대상으로 함
 -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한 도시형공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은 입주자의 선정 대상에서 제외함
- 의 결 : 원안가결(2005.10.11)

3. 동의안

□ 군포청소년교육특구추진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제안이유 : 청소년이 으뜸인 도시를 지향하는 우리시가 재경부로부터 『군포청소년교육 특구』로 지정받아 국제화시대에 걸맞는 청소년인재 육성·지역경제 활성화·교육도시 위상 정립·도시가치상승·도시경쟁력 등을 제고시키기 위함
- 주요골자
 - 특구의 명칭 : 군포청소년교육특구
 - 특구의 위치 : 42개소(39개 학교, 영어체험마을, 청소년수련관, 만남의 광장)
 - 특구의 면적 : 488,269㎡(147,701평)
 - 특화사업기간 : 2006.1~2010.12(5년간)

- 특화사업비(5년간) : 33,626백만원 내외

○ 의견제시

- 군포청소년교육특구 추진은 청소년이 으뜸인 도시를 지향하는 우리시가 재경부로부터 「군포청소년교육특구」로 지정받아 국제화시대에 걸맞은 청소년 인재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교육도시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도시가치 상승 및 도시경쟁력 등을 제고 시키고자 군포시청소년교육특구를 추진하는 것이므로 교육특구지정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고 군포청소년교육특구 추진시 관련기관, 단체, 교육청, 시민 등과의 충분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기 바람
- 군포청소년교육특구가 지정이 되면 특구사업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어떻게 추진 할 것인가에 대해 교육인프라 구축을 위한 내실화를 도모하시기 바람
- 군포청소년교육특구 지정이후 추진 상에 수반되어야 하는 예산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이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주시기 바람이란 의견을 제시

제32장 제124회 임시회

제32장 제124회 임시회

제1절 개 관

1. 개최배경

제124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5년 11월 14일 이재수 의원의 7인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05년 11월 15일 집회공고를 하여 2005년 11월 21일 개최되었으며 본 회기 중에는 2006년도 업무보고청취와 군포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 및 기타 안건이 다루어졌으며 회기는 2005년 11월 21일부터 11월 25일까지 5일간으로 2차의 본회의를 가졌다.

2. 의사일정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고
11.12(월) 10:00	1	1. 제124회군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124회군포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조례 및 기타안전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조례 및 기타안전심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5. 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6. 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 휴회의건	
11.22(화) 10:00		○ 조례 및 기타안전심사특별위원회 활동	
11.23(수) ~ 11.24(목)		○ 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 활동	
11.25(금) 10:00	2	1. 군포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군포시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군포시 지방세체납정리위원회 조례안 4. 군포시 위스타트마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군포도시계획사업(당동2토지구획정리사업)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건 7. 산본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지정 및 정비계획에따른 의견제시의건	

3. 의회활동

제12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에서는 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와 조례 및 기타 안전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06년도 업무보고서청취와 군포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 및 기타 안전을 심의·의결하였다.

4. 안전처리상황

안 건		의 결 일 자	처 리 결 과
총 계 : 13건			
조 례 안	소 계 : 5건		
	1. 군포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05.11.25(금)	수정가결
	2. 군포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05.11.25(금)	원안가결
	3. 군포시 지방세체납정리위원회 조례안	'05.11.25(금)	원안가결
	4. 군포시 위스타트마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05.11.25(금)	보 류
	5.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5.11.25(금)	원안가결
건의 · 결의 · 동의	소 계 : 4건		
	• 조례 및 기타안전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05.11.12(월)	원안가결
	• 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05.11.12(월)	원안가결
	• 군포도시계획사업(당동2토지구획정리사업)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건	'05.11.25(금)	원안채택
	• 산본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지정 및 정비계획에 따른 의견제시의건	'05.11.25(금)	원안채택
선거 · 선임	소 계 : 2건		
	• 조례 및 기타안전심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05.11.12(월)	선 임
	• 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05.11.12(월)	선 임
회의 · 진행 · 안건	소 계 : 2건		
	• 제124회군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05.11.12(월)	원안가결
	• 제124회군포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05.11.12(월)	선 임

제2절 주요안전처리경과 및 결과

1. 조례안

□ 조례 및 기타안전심사특별위원회 구성

○ 운영기간 : 2005.11.22 ~ 11.25(4일간)

○ 위 원 수 : 9명

권원혁, 이재수, 송정열, 김재일, 최진학, 김진호, 김판수, 이경환, 조완기 의원

(위원장: 최진학 의원, 간사: 조완기 의원)

□ 군포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소송제도가 도입되면서 필수적 절차로 주민감사 전치주의를 채택함에 따라 「군포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감사청구 주민수를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범위 이내로 하향 조정하여 주민감사청구를 활성화 하고자 함

○ 주요골자

- 법 제13조의4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를 150명 이상으로 개정함

- 법 제13조의4 제2항 규정의 신설에 따라 주민감사의 청구는 당해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 또는 종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제기할 수 없는 규정을 신설 함

○ 의 결 : 수정가결(2005.11.25)

□ 군포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제안이유 : 현행 군포시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고액채납징수에 따른 지급 상한금액 설정으로 다수의 참여를 유도하여 누증되어 가는 채납액을 효율적으로 징수하고자 개정함

○ 주요골자

- 과년도 체납액을 징수한 자에 대한 지급 대상을 공무원에서 자치단체의 하부조직 및 민간인까지 확대함
- 회계연도 폐쇄와 관계없이 1년이 경과한 미수액의 징수에 대한 연차별 차등 지급
- 과도한 포상금 지급에 따른 부작용과 다수참여에 의한 체납액 징수의 효율화를 위하여 개인별 지급한도 신설
- 체납액공적 및 세정발전 제안 등의 공적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구성 등
-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지급이나 과오납, 이중납부 등에 의한 사유발생 시 환수조치를 위한 조항 신설

○ 의 결 : 원안가결(2005.11.25)

□ 군포시 지방세체납정리위원회 조례안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제안이유 : 지방세 체납정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건전한 지방 재정을 구현하고 누증되는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정리 및 관리

○ 주요골자

- 위원회의 위원은 임기 2년으로 5인 이상 9인으로 하고 변호사, 회계사 등 지방세정 전문가와 시의원, 시민단체 임원 등 민간단체의 임원으로 구성하여 공정성유지
- 위원회의 기능으로 500만원이상 결손 처분 등 공정한 체납정리 심의
- 타지역 거주, 지방세 체납 등 사유발생시 해촉

○ 의 결 : 원안가결(2005.11.25)

□ 군포시 위스타트마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제안이유 : 빈곤층의 확대, 계층간 소득격차의 심화, 가정기능의 약화 등으로 발생하는 빈곤아동에 대한 가난의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군포시 위스타트마을 조성사업’을 안정적·체계적으로 지원·육성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위스타트' '위스타트마을' 등 사업과 관련한 용어를 정의함
- 군포시가 지원하는 위스타트 사업의 범위를 정함
- 위스타트 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
- 위스타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군포시 위스타트마을 운영위원회의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의 결 : 보류(2005.11.25)

□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제안이유 : 사업별 예산제도 시범운영 및 지방행정 혁신업무의 기능강화 업무추진을 위한 정원승인에 따른 정원의 총수 증원

○ 주요골자

- 정원의 총수를 691명에서 695명으로 개정
- 집행기관의 정원을 677명에서 681명으로 개정
-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명시함

○ 의 결 : 원안가결(2005.11.25)

2. 동의안

□ 군포도시계획사업(당동2토지지구구획정리사업)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견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제안이유 : 경기도 고시 제258호로 결정되고 경기도 고시 253호로 사업시행 인가된 당동2토지지구구획정리사업을 2006년 6월 환지확정 처분코자 추진 중에 있으나 14블럭 수도시설로 결정된 부지가 사실상의 도로법면부지일 뿐만 아니라 수도시설로서 기능이 불가능하여 수도시설을 도로부지로 변경하고 지적확정 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 증·감 사항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22조 규정에 의거 종전의 도시계획법 제24조 규정에

의한 군포도시계획사업변경결정을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22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 주요골자

- 당동2토지구획정리사업 14블럭 수도시설을 도로시설로 변경
-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 증·감 내역 조정

○ 의견제시 : 당동2토지구획정리사업을 2006년 6월 환지확정 처분코자 추진 중에 있는
14블럭 수도시설로 결정된 부지가 사실상의 도로 법면부지일 뿐만 아니라
수도시설로서 기능이 불가능하여 수도시설을 도로부지로 변경하고 지적확정
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 증·감 사항을 조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것이므로 적극 추진하여 조기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기바람

□ 산본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제안이유 : 산본 구주공아파트에 대한 주택재건축을 추진하여 열악한 주민들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쾌적한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작성한 정비계획을 주민이 제안하여 제안된 정비
구역 및 정비계획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건축 된지 20년이 경과된 구주공아파트를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하여 현재
1,763세대에서 약2,960세대의 규모의 주택단지를 조성하되 2005년 10월 10일
경기도 고시 제2005-316호로 결정된 산본2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으로서 당초계획을 최대한 수렴하여 작성한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임

○ 의견제시 : 산본주공아파트 주택 재건축은 2005년 10월 10일 경기도 고시 제2005-316호로
결정된 산본2지구 제1종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된 지역으로써 산본 구주공
아파트에 대한 주택재건축을 추진하여 열악한 주민들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쾌적한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당초 계획을 최대한 수렴하여 작성한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산본주공 아파트 주택 재건축정비에 따른 주택재건축선 후퇴와 통학로 부문 및 아파트 동의 배치시 고층부 부분을 뒤편 배치 등을 고려하고 아파트 재건축에 따른 적극적인 행정절차 추진을 통하여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군포의 도시미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 사업추진이 원활히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여 주기바람

□ 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 구성

- 운영기간 : 2005.11.23 ~ 11.24(2일간)
- 위 원 수 : 9명

권원혁, 이재수, 송정열, 김재일, 최진학, 김진호, 김판수, 이경환, 조완기 의원
(위원장: 이경환 의원, 간사: 송정열 의원)

제33장 제125회 제2차 정례회

제33장 제125회 제2차 정례회

제1절 개 관

1. 개최배경

제125회 정례회는 군포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2차 정례회로서 2005년 11월 25일 집회공고하고 2005년 12월 1일 개최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 200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등 3건의 예산안과 군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 및 기타 안건이 다루어 졌으며 회기는 2005년 12월 1일부터 12월 16일까지 16일간으로 3차의 본회의를 가졌다.

2. 의사일정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고
12.1(목) 10:00	1	1. 제125회군포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제125회군포시의회(제2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3. 200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2006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5. 200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8.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9.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0. 시장출석요구의건	
12.2(금) 10:00	2	1. 시장질문의건 ○휴회의건	
12.5 ~ 12.15		○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활동(12.5~12.6)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12.7~12.15)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고
12.16(금) 10:00	3	1. 2006년도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06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2006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군포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5.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산본1동진설미경로당부지매입 및 건립) 6.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대양경로당철거 및 신축) 7.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산본1동시립어린이집취득) 8.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산본시장공중화장실건립) 9.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산본1동원일연립부지매입) 10.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공무원휴양시설(콘도회원권)구입) 11.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산본2동사무소증축)	

3. 의회활동

제125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례 및 기타 안전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0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안 등 예산안 3건과 군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 및 기타 안전을 심의·의결하고 시정질문을 하였다.

4. 안전처리상황

안 건		의 결 일 자	처 리 결 과
총 계 : 19건			
예 산 안	소 계 : 3건		
	• 2006년도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05.12.16(금)	수정가결
	• 2006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05.12.16(금)	원안가결
	• 2006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05.12.16(금)	원안가결
조 례 안	소 계 : 1건		
	1. 군포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05.12.16(금)	원안가결

안		의 결 일 자	처 리 결 과
건의 · 결의 · 동의	소 계 : 9건		
	•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05.12.1(목)	원안가결
	• 조례 및 기타안전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05.12.1(목)	원안가결
	•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산본1동진설미경로당부지매입 및 건립)	'05.12.16(금)	원안가결
	•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대양경로당철거 및 신축)	'05.12.16(금)	원안가결
	•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산본1동시립어린이집취득)	'05.12.16(금)	원안가결
	•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산본시장공중화장실건립)	'05.12.16(금)	원안가결
	•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산본1원일연립부지매입)	'05.12.16(금)	원안가결
	•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공무원휴양시설(콘도회원권)구입)	'05.12.16(금)	원안가결
	•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산본2동사무소증축)	'05.12.16(금)	원안가결
선거 · 선임	소 계 : 2건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05.12.1(목)	선 임
	• 조례 및 기타안전심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05.12.1(목)	선 임
회의 · 진행 · 안건	소 계 : 2건		
	• 제125회군포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05.12.1(목)	원안가결
	• 제125회군포시의회(제2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05.12.1(목)	원안가결
보고 · 질문	소 계 : 1건		
	• 시정질문의건	'05.12.2(금)	질문,답변
기타	소 계 : 1건		
	• 시장출석요구의건	'05.12.1(목)	원안가결

제2절 주요안건 처리경과 및 결과

1. 예산안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 운영기간 : 2005.12.7 ~ 12.15(9일간)

○ 위 원 수 : 9명

권원희, 이재수, 송정열, 김재일, 최진학, 김진호, 김판수, 이경환, 조완기 의원

(위원장: 최진학 의원, 간사: 김판수 의원)

□ 200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예산규모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안 (A)	전년도예산안 (B)	증△감 (A-B)	비 고
총 계	245,103,253	202,924,373	42,178,880	
일 반 회 계	215,210,254	166,417,295	48,792,959	
특 별 회 계	29,892,999	36,507,078	△6,614,079	

○ 의 결 : 수정가결(2005.12.16)

(200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13억5,13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증액)

□ 2006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예산규모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안 (A)	전년도예산액 (B)	증△감 (A-B)	비 고
총예산	28,170,051	18,334,337	9,835,714	

○ 의 결 : 원안가결(2005.12.16)

□ 200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예산규모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안 (A)	전년도예산액 (B)	증△감 (A-B)	비 고
총예산	18,394,909	13,720,528	4,674,381	

○ 의 결 : 원안가결(2005.12.16)

2. 조례안

□ 조례 및 기타안전심사특별위원회 구성

○ 운영기간 : 2005.12.5 ~ 12.6(2일간)

○ 위 원 수 : 9명

권원혁, 이재수, 송정열, 김재일, 최진학, 김진호, 김판수, 이경환, 조완기 의원

(위원장: 권원혁 의원, 간사: 김진호 의원)

□ 군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제안이유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이 경기도 조례를 폐지하고 시·군·구 조례로 개정토록 위임됨에 따라 행자부 표준조례(안)을 근간으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규정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옥상간판의 표시방법에 있어 옥상간판의 상단 높이가 지표로부터 60미터 이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항공법」 제83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항공장애 등을 설치 관리하는 규정을 추가 함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5호 규정에 의거 행정 및 공공목적의 현수막에 한하여 표시기준을 완화하고자 함
-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시범가로를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고 지정고시 한 지역의 요건이 구비된 옥외광고물에 대하여 「옥외광고물관리법」 제3조 「동법시행령」 제4조, 제5조의 허가, 신고, 연장신고 규정을 완화하고자 함
- 도시경관 향상, 미풍양속의 유지, 시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지정한 특정구역의 광고물 등의 정비를 할 수 있으며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 함

○ 의 결 : 원안가결(2005.12.16)

3. 동의안

□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산본1동 진설미경로당부지매입및건립)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제안이유 :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을 위하여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결을 받고자하는 것임
- 주요골자 : 산본동 진설미공원주변에 지역 어르신들의 휴식 및 여가활동장소로 활용할 수 있는 경로당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토지는 2006년에 250백만원의 예산을 반영, 산본1동 16통~18통지역중 적합한 장소를 선정하여 취득할 계획이고 건물은 2006년도 추경에 258백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여 지상2층에 건평 165.29㎡의 면적으로 신축하고자 하는 것임
- 의 결 : 원안가결(2005.12.16)

□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대양경로당 철거 및 신축)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제안이유 :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을 위하여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결을 받고자하는 것임

- 주요골자 : 산본시장과 인접한 지역에 있는 대양경로당은 건립 된지 17년이 경과된 노후 건물로서 매년 보수를 하고 있으나 구조 및 환경이 열악한 실정임에 따라 철거하고 동 공원부지 내 적합한 장소에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건물철거비용으로 15백만원이 예상되며 건물신축은 258백만원의 예산으로 지상2층, 연면적 165.4㎡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임

○ 의 결 : 원안가결(2005.12.16)

□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산본1동 어린이집 취득)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제안이유 :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을 위하여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결을 받고자하는 것임
- 주요골자
 -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 및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본1동 지역에 시립어린이집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동 지역은 건물을 신축할만한 적당한 토지가 없고 건물규모도 작아 기존건물 중에서 산본동 82-9번지, 지상3층, 연면적 242.2㎡와 산본동 79-17번지 지하1층, 지상4층의 연면적 355.89㎡를 취득하여 시립 어린이집 용도에 맞게 리모델링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것임
 - 그러나 동 지역은 최근 재개발 소문으로 물건변동(매매)등이 매우 빈번한 지역으로 상기 어린이집으로 지정된 건물도 매매의 가능성이 있는 특수성이 있어 시에서 취득 이전에 매매시 인근지역의 비슷한 규모의 건물을 취득할 수도 있음
- 의 결 : 원안가결(2005.12.16)

□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산본시장 공중화장실 건립)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제안이유 :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을 위하여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임

- 주요골자 : 산본 재래시장의 환경개선을 통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함에 따라 이용 주민들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나 공중화장실 부재로 상인 및 이용고객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산본동 251-4번지(구 은 하연립 부지)에 공중화장실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임

○ 의 결 : 원안가결(2005.12.16)

□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산본1동 원일연립 부지매입)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제안이유 :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을 위하여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결을 받고자하는 것임
- 주요골자 : 산본1동 원일연립 건물은 1978년도에 건축된 조적건물로서 내력벽에 균열이 발생하여 2005년7월8일 재난위험시설물(D급)로 지정되어 이를 시에서 매입, 재난위험시설 해소 및 인근 주택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임

○ 의 결 : 원안가결(2005.12.16)

□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공무원 휴양시설(콘도회원권)구입)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제안이유 :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을 위하여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임
- 주요골자 : 공직자들의 업무연찬 장소 활용과 기존 콘도이용 시설이 수요에 비하여 공급이 부족한 상태이고 지역 또한 동해와 중부에 편중되어 있어 콘도이용시설을 다변화하여 직원복지기능을 향상하는 차원에서 콘도이용시설구좌를 추가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현재 콘도 이용시설은 12구좌를 운영하고 있는바 웰빙시대와 주5일근무 시행으로 직원들의 여가활동 증가로 기존의 콘도이용 시설로는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실정임에 따라 5구좌를 추가로 구입하고자 함

○ 의 결 : 원안가결(2005.12.16)

□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산본2동사무소 증축)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제안이유 :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을 위하여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결을 받고자하는 것임
- 주요골자 : 산본2동 주민자치센터가 설치 된지 6년이 경과되면서 이용주민이 폭증함에 따라 현재의 시설로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프로그램 운영이 지난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강좌를 운영할 수 없어 산본2동 주민자치센터를 증축하여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현재 건물은 3층 건물로서 1층은 행정민원실로 사용하고 민원실내 일부 공간을 인터넷방을 설치 운영중이며, 2층은 회의실, 체력단련장, 3층은 동대본부로 사용하고 있는바 1개층을 증축하여 현재 3층에 설치된 동대본부를 4층으로 이전하고 3층 전체를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력단련장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임
- 의 결 : 원안가결(2005.12.16)

4. 시정질문

제125회 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2005.12.2)에서 군포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최진학 의원과 김진호 의원 이경환 의원 조완기 의원이 다음과 같이 시정 질문을 하고 시장의 답변을 받았다.

□ 시정에 관한 질문

- 질 문 : 최진학 의원

- 질문내용

대야미역에서 안산시계간 도로개설공사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 답 변(시장)

이 공사는 2004년 9월 지장물과 토지이용상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3개 감정평가 기관으로 하여금 평가를 실시한 후 보상중에 있으며 농업기반공사 소유의 총 63필지중 보상금을 지급한 32필지를 제외한 31필지에 대해서는 현재 보상금 지급을 보류하고 있는

실정으로 공부상 지목과 현황지목이 다른 필지의 보상부분에 대한 검토를 거쳐 감정평가사, 한국감정평가협회와 건설교통부에 질의하였으나 저수지 주변 도로개설공사 편입당시의 지목과 이용상황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평가하였다는 답변이었음 그러나 건교부 및 한국감정평가협회와 시간의 토지 평가에 대한 법률해석상의 의견차이를 해소하지 못해 법제처에 검토를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지적공부의 정리문제는 담수지역내 토지가 공부상 전,답 등으로 관리되고 있던 것을 지목변경 및 합병신청 공문을 받아 57필지를 유지로 지목변경 처리하고 저수지내 토지 132필지를 합병하여 10필지로 지적공부를 관리해오고 있으며 공사부지에 포함되지 않는 담수지역 밖의 토지는 농업기반공사에 지목변경 신청을 종용하고 신청이 없을 때에는 사업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직권으로 공부를 정리하도록 하겠음

• 질문내용

산본1동 국민주택단지 재개발사항에 대하여

→ 답 변(시장)

이 지역은 노후된 도시기반시설로 인하여 생활환경이 열악하여 지역주민들께서 소외감을 느끼고 있으며 생활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조기에 재개발이 추진되길 원하고 있으나 재개발을 추진하기 앞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의 미래상 및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하여 주는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현재 계획수립중인 ‘2020군포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 계획안’에 수도권전철 경수선과 안산선의 환승역인 금정역주변의 역세권 개발계획과 산본1동 지역에 대한 발전계획을 함께 검토하고 있으며 이러한 계획에 대하여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주민 공청회등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설명할 계획으로 절차를 밟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음

○ 질 문 : 김진호 의원

• 질문내용

저출산 문제에 대한 출산장려 대책과 시 정책의 방향

→ 답 변(시장)

금년 6월부터 출생 축하용품을 모든 출산가정에 지원하고 있으며 임신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시범사업, 취약계층 영·유아 건강관리,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임신부 건강교실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건소내에 모자건강증진센터를 설치운영 할 계획이며 국비지원사업으로 불임부부 시험관 아기 시술비 지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또한 보육 정책도 검토하여 2005년도 이후 출생한 신생아에게는 보육료와 보육시설 입소료를 지원하고 보육시설의 아동에게 간식비를 지원하는 등 자녀 보육부담을 경감하여 저출산 문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

• 질문내용

군포환경관리소운영에 관하여?

→ 답 변(시장)

환경관리소 위탁업체에 대한 기술료 지급과 시의 운영기술 축적문제는 별개의 사안 이지만 시의 기술축적에 매우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환경관리소는 고도의 운영 기술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과 환경보전, 생활쓰레기의 원활한 처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설이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이 필요하여 전문 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부가세에 대해서는 위탁 운영사에서 구입하던 시에서 구입하던 마찬가지이고 보험료와 수도료의 경우에는 시에서 직접 집행할 경우 부가세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향후 두 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음 교부금 불이익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 에서 매년 예산편성지침 등을 통해 경상경비의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있으며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상 자구노력을 촉진하기 위해 지방교부세 교부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경상 경비 편성 및 집행실적을 반영하고 있으나 경상경비 증가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액은 각 자치단체의 현황과 전국의 현황을 평가하여 결정하므로 구체적인 금액을 산정할 수 없음

• 질문내용

도시계획에 관한 미래 정책방향과 국도1호선과의 연계 과제에 대하여?

→ 답 변(시장)

시를 통과하고 있는 경부선 철도로 인하여 국도1호선과 연계되는 도로망 구축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연례 도로망 부족으로 일부 구간에서 출·퇴근시간대에 차량들의 일시 집중으로 교통정체 현상이 발생되고 있어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당동에서 의왕 고천간 도로를 확장 개설하였고 2010년 준공 예정으로 우리은행에서 국도1호선간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하고자 사업 추진중에 있으며 인접된 의왕시와 수원시와의 연계도로 구축을 위하여 당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서 의왕 이동간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자 추진중에 있어 계획된 가로망의 개설 이후에는 국도1호선 및 인접시와의 연계성이 보다 향상될 것으로 판단됨

• 질문내용

복합화물터미널에 대한 중앙정부의 추진현황과 우리시의 대응에 대하여?

→ 답 변(시장)

이 사업은 2003년 5월 국가정책사업이 확정되고 2004년 11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그린벨트 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이 상정 되었으며 2005년 7월 14일 변경안이 승인되었음 군포복합화물터미널로부터 반경2km안에 화물터미널 확장을 비롯하여 4대 국책사업이 동시다발로 계획됨에 따라 우리시 도시장기개발구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서 시에서는 국책사업을 반대만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 분석하여 대안을 마련하고 시행 방안을 강구한 다음 국책사업을 시행하자는 것이나 건설교통부에서는 우리시의 주장과 요구사항에 대하여 대안 제시 없이 군포복합화물터미널확장을 위한 그린벨트 관리계획 변경안을 승인하여 지역여건과 주민의 반대여론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군포복합화물터미널을 중심으로 임대택지개발사업지구가 지정되고 사업이 완료되면 주거지역 중심부에 위치되고 있는 화물터미널로 인하여 주거환경은 더욱 열악해 질 것으로 판단되어 군포복합화물터미널 확장은 군포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에서 재검토 되어야 할 것임

• 질문내용

송전선로 지중화에 대하여?

→ 답 변(시장)

시를 통과하고 있는 고압송전선로에 대한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으며 관련 사업비의 30%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경우 지중화 사업을 최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는 한국전력공사의 주장은 내부규정이며 지방비를 부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전기사업법」에 지방비 부담 근거를 확보하고자 법 개정을 건의해 놓았으며 법령이 개정되면 지중화가 실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질 문 : 이경환 의원

• 질문내용

국가균형 발전계획과 관련하여 수도권 규제에 대한 입장과 관내 기업과 소상공인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 답 변(시장)

유한양행과 LG전선 이전 부지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제한 고시를 통하여 공업지역을 보존하는 등 지역산업의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고 부곡동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지역산업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내는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나가고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운전자금을 지원하고 창업보육센터 기능을 확대 발전시켜 창업 업체를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임 아울러 재래시장에 대한 시설과 경영 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대형유통센터와 차별화 되는 특색 있는 시장으로 거듭나도록 지원하겠음 이와 함께 중소기업청 산하 소상공인 지원센터와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창업교육, 창업자금 융자알선을 적극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음

• 질문내용

사회복지에 대한 생각과 독거노인 등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빈곤층의 보호대책에 대하여?

→ 답 변(시장)

금년도 사회복지사업 예산을 50억원이 증액된 229억원을 편성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한부모 가정에는 생계·교육·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가구원의 갑작스런 사망, 질병, 실직 등으로 삶의 한계상황에 처해있는 빈곤층에게는 한시적 생계구호를 통하여 세심하게 보호관리하고 있지만 이들에게 월동 응급구호비 등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금번 추경예산에 1억 5천만원의 예산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고 수요자 중심의 보건복지 전달체계를 강화하고자 민·관이 함께 협력하고 시의 복지 비전과 방향, 자원조달 등이 포함된 중장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을 2006년도에 수립하여 시행하겠음

• 질문내용

지역문화의 활성화와 여가시설의 확충 시민문화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 답 변(시장)

현재 봄철 군포시민대축제와 가을철 시민의 날 행사가 가장 큰 축을 이루고 있으며 이런 행사와 함께 연중 펼쳐지고 있는 다채로운 문화행사, 각종 전시회와 공연, 발표회, 경연 대회 등이 우리 시민문화의 큰 흐름을 형성하고 있으며 철쭉동산축제와 한마음축제가 포함된 군포시민대축제는 해가 거듭될수록 많은 시민들의 호응속에 성숙도를 더해가고 있어 기획과 운영에 더 많은 시민과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다양한 콘텐츠 개발과 알찬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음

○ 질 문 : 조완기 의원

• 질문내용

시민참여 정책에 대한 활성화에 관하여?

→ 답 변(시장)

민선2기부터 실시한 주민의견반영 예산제도, 각종 평가에 시민전문가 참여, 각 동의 주민자치 실시 등 많은 참여시책 이외에도 선계획 후 예산제도의 실질화를 위해 계획 단계에서부터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폭넓은 인력풀을 확보, 각종 사업의 계획 단계에서부터 시민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단위사업으로 시민과 공무원의 인식차를 극복하기 위한 의식조사를 실시하는 등 시민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는 정책토론방을 개설하여 시민의 의견과 아이디어를 접수할 창구를 마련하였음 민선3기인 지난 2003년 6월부터는 시민감사관제를 도입하여 시정에 대한 시민의 감시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으며 2006년 1월 1일부터 주민감사청구제도와 주민소송제가 도입 시행됨에 따라 주민감사청구제를 활성화하고 신뢰받는 시정을 펼치고자 관련 조례 정비를 위하여 제124회 임시회 개최시 감사청구인 수를 조정하는

안을 상정하였음 아울러 주민정보공개 청구시 원본문서 공개는 모든 문서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지만 법상 가능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부분이 아니라면 최대한 공개하도록 하겠음

• 질문내용

주차문제에 대한 수요관리 필요성에 대하여?

→ 답 변(시장)

현재 도로주차장 등의 교통시설 공급이 교통수요증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 이어서 지역주차난을 해소하고자 2004년도부터 14개소의 공영주차장을 확보하였고 환승주차장과 주차타워를 건립하는 등 주차장 확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주차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하여 2006년도에는 군포시 대중교통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대중교통 서비스개선 추진으로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주차환경개선 기본계획수립 용역으로 중·장기적 주차장 확충계획은 물론 다양한 주차환경 개선대책과 수요관리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음 거주자 우선 주차제와 차고지 증명제 등은 문제점 및 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정책수립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음

• 질문내용

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에 대하여?

→ 답 변(시장)

금정역 삼거리에서 구주공 사거리간 등 16개구간에 보도 확·포장과 노후 보도정비를 실시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였으며 산본 중심상업지역에 보행자 위주의 도로정비와 도시환경 재정비 공사를 추진하고 있고 내년에는 당정동 공업지역 등 9개 구간에 대하여 협소한 보도를 확장하고 노후화 된 보도를 정비하여 보행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할 계획임

제34장 제126회 임시회

제34장 제126회 임시회

제1절 개 관

1. 개최배경

제126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5년 12월 12일 군포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05년 12월 13일 집회공고를 하여 2005년 12월 19일 개최되었으며 본 회기 중에는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등 예산안 3건과 군포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 및 기타 안건이 다루어졌으며 회기는 2005년 12월 19일부터 12월 23일까지 5일간으로 2차의 본회의를 가졌다.

2. 의사일정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고
12.19(월) 10:00	1	1. 제126회군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126회군포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2005년도 제3회추가경정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2005년도 제3회추가경정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5. 2005년도 제2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8. 조례 및 기타안전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9. 조례 및 기타안전심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 휴회의건	
12.20 ~ 12.22		○ 조례 및 기타안전심사특별위원회활동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	
12.23(금) 10:00	2	1.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군포시 노인복지회관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군포시 사회복지관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회활동

제12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 및 기타 안건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등 예산안 3건과 군포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4. 안건처리상황

안 건		의 결 일 자	처 리 결 과
총 계 : 11건			
예 산 안	소 계 : 3건		
	•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05.12.23(금)	원안가결
	•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05.12.23(금)	원안가결
	•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05.12.23(금)	원안가결
조 례 안	소 계 : 2건		
	1. 군포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05.12.23(금)	원안가결
	2. 군포시 사회복지관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5.12.23(금)	원안가결
건의 · 결의 · 동의	소 계 : 2건		
	•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05.12.19(월)	원안가결
	•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05.12.19(월)	원안가결
선거 · 선임	소 계 : 2건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05.12.19(월)	선 임
	•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05.12.19(월)	선 임
회의 · 진행 · 안건	소 계 : 2건		
	• 제126회군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05.12.19(월)	원안가결
	• 제126회군포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05.12.19(월)	선 임

제2절 주요안건 처리경과 및 결과

1. 예산안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 운영기간 : 2005.12.20~12.23(4일간)

○ 위 원 수 : 9명

권원혁, 이재수, 송정열, 김재일, 최진학, 김진호, 김판수, 이경환, 조완기 의원

(위원장: 권원혁 의원, 간사: 송정열 의원)

□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예산규모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안 (A)	기정예산액 (B)	증△감 (A-B)	비 고
총 계	244,077,307	243,009,818	1,067,469	
일반회계	211,742,817	203,870,859	7,871,958	
특별회계	32,334,490	39,138,959	△6,804,469	

○ 의 결 : 원안가결(2005.12.23)

□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예산규모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액 (A)	기정예산액 (B)	증△감 (A-B)	비 고
총예산	27,701,526	27,776,192	△74,666	

○ 의 결 : 원안가결(2005.12.23)

□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예산규모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액 (A)	기정예산액 (B)	증△감 (A-B)	비 고
총예산	21,894,976	21,354,701	540,275	

○ 의 결 : 원안가결(2005.12.23)

2. 조례안

□ 조례 및 기타안전심사특별위원회 구성

○ 운영기간 : 2005.12.20 ~ 12.22(3일간)

○ 위 원 수 : 9명

권원혁, 이재수, 송정열, 김재일, 최진학, 김진호, 김판수, 이경환, 조완기 의원

(위원장: 이경환 의원, 간사: 조완기 의원)

□ 군포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제안이유 : 위탁법인의 복지회관시설 신·증축 및 내부시설 개조·변경시 사전승인과 기부채납의 부담 등 규제적인 조항을 개정 완화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수탁자의 의무 중 '복지회관내의 시설을 신·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변경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수탁자는 그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이를 기부 채납하여야 한다.'를 삭제

○ 의 결 : 원안가결(2005.12.23)

□ 군포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제안이유 : 국무총리실 행정규제개혁기획단 권고에 의한 우리시 행정규제개혁정비계획에 따라 시민에게 다소 규제적인 조항을 개정 완화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수탁자의 의무중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수탁자는 그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이를 기부 채납하여야 한다.'를 삭제
 - 위탁의 취소 사유중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를 삭제
- 의 결 : 원안가결(2005.12.23)

제35장 제127회 임시회

제35장 127회 임시회

제1절 개 관

1. 개최배경

제127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6년 1월 17일 군포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06년 1월 17일 집회공고를 하여 2006년 1월 24일 개최되었으며 본 회기 중에는 군포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 및 기타 안건이 다루어졌으며 회기는 2006년 1월 24일부터 1월 25일까지 2일간으로 2차의 본회의를 가졌다.

2. 의사일정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고
1,24(화) 10:00	1	1. 제127회군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127회군포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조례 및 기타안전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조례 및 기타안전심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24		○ 조례 및 기타안전심사특별위원회 활동	
1,25(수) 10:00	2	1. 군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군포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군포시 도시개발 조례안 4. 군포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군포시 시민체육광장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3. 의회활동

제127회 군포시의회 임시회에서는 조례 및 기타 안전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군포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4. 안전처리상황

안 건		의 결 일 자	처 리 결 과
총 계 : 9건			
조 례 안	소 계 : 5건		
	1. 군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1.25(수)	원안가결
	2. 군포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1.25(수)	원안가결
	3. 군포시 도시개발 조례안	'06.1.25(수)	원안가결
	4. 군포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1.25(수)	원안가결
	5. 군포시 시민체육광장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06.1.25(수)	원안가결
건의 · 결의 · 동의	소 계 : 1건		
	• 조례 및 기타안전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06.1.24(화)	원안가결
선거 · 선임	소 계 : 1건		
	• 조례 및 기타안전심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06.1.24(화)	선 임
회의 · 진행 · 안건	소 계 : 2건		
	• 제127회군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06.1.24(화)	원안가결
	• 제127회군포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06.1.24(화)	선 임

제2절 주요안건 처리경과 및 결과

1. 조례안

□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구성

○ 운영기간 : 2006.1.24

○ 위 원 수 : 9명

권원혁, 이재수, 송정열, 김재일, 최진학, 김진호, 김판수, 이경환, 조완기 의원

(위원장: 최진학 의원, 간사: 김진호 의원)

□ 군포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제안이유 :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변경되는 자동차의 감면대상 포함으로 감면 조례의 안정적 운영을 기하고 임대 의무기간이 분리되어 규정됨에 따라 「임대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사항과 터미널용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별도의 감면 규정을 폐지하고 사권제한 토지 등에 대한 감면대상 명확화 반영 등 지방세 감면 제도개선 토론회 채택안과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 주요골자

- 자동차관리법령의 개정으로 화물적재면적이 2㎡미만인 화물자동차가 승용자동차로 분류 기준이 변경되는 자동차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면제대상에 포함하도록 조례 개정
- 종전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일괄적으로 규정되었던 임대 의무기간이 임대 주택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분리되어 규정됨 임대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여객자동차터미널용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터미널용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별도의 감면 불필요
-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 된 토지 및 지상건축물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 토지·지상건축물·주택으로 조문수정

○ 의 결 : 원안가결(2006.1.25)

□ 군포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례안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제안이유 :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원활한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일부 규정을 변경코자 함
- 주요골자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당연직 위원에 부시장을 포함하고 위원장은 시장에서 임명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하도록 변경 규정함
- 의 결 : 원안가결(2006.1.25)

□ 군포시 도시개발 조례안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제안이유 : 도시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여 시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골자
 -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람 및 공청회를 통하여 주민 또는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도록 하는 등 기타 세부적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
 -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에 의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구역특성에 맞게 사업구역 별로 시행조례를 정하도록 함
 -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지원 등을 위하여 도시개발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하며 이에 따른 재원의 조성에 관하여 규정함
 - 특별회계의 운용·관리에 따른 특별회계의 용도, 특별회계의 보조 및 용자 범위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 특별회계의 용자에 따른 용자신청, 용자기간, 용자금의 상환방법 및 용자목적 외의 사용시 용자금의 회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용자금의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함
 -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위하여 도시개발 특별회계관리 운영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기능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 의 결 : 원안가결(2006.1.25)

□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제안이유 : 과거사 진실규명 신고서 접수 및 상담업무, 보육사업 업무의 증가 및 어린이 도서관 업무 추진을 위한 정원승인에 따른 정원의 총수 증 원
- 주요골자
 - 정원의 총수를 695명에서 707명(12명 증가)으로 개정
 - 집행기관의 정원을 681명에서 693명으로 개정
 -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함
 - ① 일반직 : 11명
 - 본청 : 2명(6급 1, 7급 3, 8급 1 △1)
 - 사업소 : 8명(6급 1, 7급 3, 8급 1, 9급 3)
 - 동사무소 : 1명(8급 1)
 - ② 기능직 : 1명
 - 본청 : 2명(8급 1, 9급 1)
 - 직속기관 : 1명(8급 1)
 - 사업소 : △2명(8급 △2, 9급 △1, 9급 1)
- 의 결 : 원안가결(2006.1.25)

□ 군포시 시민체육광장 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제안이유 :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를 정비하기 위한 우리시 규제정비계획(국무 총리실 규제개혁기획단 권고)에 의거 불명확한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시민체육광장 입장의 제한에 대하여 입장의 제한범위를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함
 - 시민체육광장 사용료의 감면 및 반환에 대하여 명확히 구분하고 부득이 사용을 취소할 경우 이용자 편에서 사용료의 반환율을 규정함
- 의 결 : 원안가결(2006.1.25)

제36장 제128회 임시회

제36장 제128회 임시회

제1절 개 관

1. 개최배경

제128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6년 3월 9일 군포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06년 3월 9일 집회공고를 하여 2006년 3월 15일 개최되었으며 본 회기 중에는 군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 및 기타 안건이 다루어졌으며 회기는 2006년 3월 15일부터 3월 17일까지 3일간으로 2차의 본회의를 가졌다.

2. 의사일정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고
3.15(수) 10:00	1	1. 제128회군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128회군포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조례 및 기타안전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조례 및 기타안전심사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건 ○ 휴회의 건	
3.16(목) 10:00		○ 조례 및 기타안전심사특별위원회 활동	
3.17(금) 10:00	2	1. 군포시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군포시 여성발전기본조례(제정)안 3. 군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조직 및 운영조례(제정)안 4. 군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군포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6. 군포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06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청취의 건	

3. 의회활동

제128회 군포시의회 임시회에서는 조례 및 기타 안건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군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4. 안건처리상황

안 건		의 결 일 자	처 리 결 과
총 계 : 11건			
조 례 안	소 계 : 6건		
	1. 군포시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3.17(금)	원안가결
	2. 군포시 여성발전기본조례(제정)안	'06.3.17(금)	원안가결
	3. 군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조직 및 운영조례(제정)안	'06.3.17(금)	원안가결
	4. 군포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3.17(금)	원안가결
	5. 군포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조례(제정)안	'06.3.17(금)	원안가결
	6. 군포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3.17(금)	원안가결
건의 · 결의 · 동의	소 계 : 2건		
	•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2006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청취의건	'06.3.15(수) '06.3.17(금)	원안가결 원안가결
선거 · 선임	소 계 : 1건		
	•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건	'06.3.15(수)	선 임
회의 · 진행 · 안건	소 계 : 2건		
	• 제128회군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제128회군포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06.3.15(수) '06.3.15(수)	원안가결 선 인

제2절 주요안건 처리경과 및 결과

1. 조례안

□ 조례 및 기타안전심사특별위원회 구성

○ 운영기간 : 2006.3.16 ~ 3.17(2일간)

○ 위 원 수 : 9명

권원혁, 이재수, 송정열, 김재일, 최진학, 김진호, 김판수, 이경환, 조완기 의원
(위원장: 이경환 의원, 간사: 김판수 의원)

□ 군포시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제안이유

- 동사무소 등 관내 시설을 활용,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확산 유도
-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위원회 심의기능 강화
- 지방선거제도 개편에 따라 시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 개선

○ 주요골자:

- 동 관내 시설을 활용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프로그램운영 관련조문 정비
 - ‘동사무소’로 규정된 조문을 ‘동’으로 개정
 - 동사무소 이외의 관내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주민 편의와 복리증진 도모
 - 시장과 동장이 관할 구역내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와의 연계방안을 강구하여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도모
-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주민자치위원회 심의기능 강화
 - 주민자치센터시설·프로그램 운영에 주민자치위원회의 관심과 역할제고를 위해 동장이 위원회와 심의하여 처리
-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변경 및 위원회 의무 강화
 - 지방의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중선거구제)에 따라 지방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 개선

- 의원장·부위원장·감사·위원 및 고문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여 위원회 운영 및 자치센터 활성화 도모
- 위원회는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노력, 각종 교육·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 위원들의 책임의식 제고
- 주민자치위원회의 수입·지출에 관한 자체 감사기능 부여

○ 의 결 : 원안가결(2006.3.17)

□ 군포시 여성발전 기본조례안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제안이유 : 「여성발전기본법」과 기타 여성관계법령에 따라 우리시의 여성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사회의 모든 영역에 남녀평등과 여성참여를 촉진하여 여성발전과 복지증진을 도모코자 함

○ 주요골자

- 여성정책의 세부기준과 시와 시민의 책무 제시 등 여성정책의 종합적 사항을 명시
- 여성의 복지증진과 양성평등문화 정착을 위하여 이행하여야 할 구체적인 여성정책을 규정
- 여성정책의 수립과 관련한 시장에 대한 자문과 여성발전기금의 운용·관리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여성발전위원회 설치·운영
- 여성의 권익증진과 복지증진 등을 지원하기 위한 군포시 여성발전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규정

○ 의 결 : 원안가결(2006.3.17)

□ 군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안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제안이유 :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코자 ‘군포시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에 의한 제정근거 및 제정취지규정
- 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적용될 시설 설치요건과 기능, 조직, 종사자 자격기준 등을 규정
- 센터의 사업수행 및 효율성 도모를 위해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
- 사업의 원활한 추진, 전문적 교육과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자원봉사자와 강사의 활용에 관한 사항 규정
- 센터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위해 민간위탁 운영방안과 주민의 적극적 참여방안 규정
- 지도감독 및 센터 지원근거 마련
-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규칙으로 규정

○ 의 결 : 원안가결(2006.3.17)

□ 군포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제안이유 :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및 개발부담금제 등 토지관련업무 증가에 따른 정원 승인으로 정원의 총수 증원

○ 주요골자

- 정원의 총수를 707명에서 708명(1명 증가)으로 개정
- 집행기관의 정원을 693명에서 694명으로 개정
-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함
 - 본청 : 일반직 6급 1명 증가

○ 의 결 : 원안가결(2006.3.17)

□ 군포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제안이유 : 지난해 우리나라 가임 여성의 합계 출산율이 1.16명으로 사상 최저치로 떨어져 최근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고 우리시 역시 2000년 이후 출생아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 출산을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의 적극적인

대처와 건강한 육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출산 장려금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이 조례의 제정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함
-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자는 신생아의 부모가 출산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군포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며 지원 금액은 둘째아이는 500,000원, 셋째아이 이상은 1,000,000원으로 규정함
-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 후 60일 이내에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고 해당부서에서 신청서를 확인, 검토하여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지원신청 및 지원절차를 규정함
- 지원 대상자가 아닌 자에 대한 환수조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 의 결 : 원안가결(2006.3.17)

□ 군포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제안이유 : 행정규제 일제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불명확한 내용을 명확하게 하여 규제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규제 요건 등을 간소화하여 주민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

○ 주요골자

- 급수공사 설계수수료 납부시기를 명확하게 하고 신청인에게 불리한 설계수수료 반환 조항 삭제
- 급수공사 신청시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하는 범위를 명확하게 개정
- 급수공사 시행에 수반한 책임 중 신청인에게 불리한 조항은 삭제하고 시장의 책임에 대한 면책 사유를 명확하게 규정
- 수도사용자 신고사항 중 불필요한 조항 삭제
- 누수요금 감면범위를 1개월에서 2개월로 확대

○ 의 결 : 원안가결(2006.3.17)

제37장 제129회 임시회

제37장 제129회 임시회

제1절 개 관

1. 개최배경

제129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6년 4월 5일 군포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06년 4월 5일 집회공고를 하여 2006년 4월 10일 개최되었으며 본 회기 중에는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등 예산안 3건과 군포시 결산감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 및 기타 안건이 다루어졌으며 회기는 2006년 4월 10일부터 4월 17일까지 8일간으로 2차의 본회의를 가졌다.

2. 의사일정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고
4.10(월) 10:00	1	1. 제129회군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129회군포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5.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8. 조례 및 기타안전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9. 조례 및 기타안전심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휴회의 건	
4.12(화) ~ 4.14(금)		○특별위원회활동 - 조례 및 기타안전심사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 사	차수	부 의 안 건	비고
4.17(월) 10:00	2	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군포시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군포시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 6. 군포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군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군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군포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등에 관한 조례안 10. 2020군포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3. 의회활동

제12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 및 기타 안전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등 예산안 3건과 군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 및 기타 안전을 심의·의결하였다.

4. 안전처리상황

안 건		의 결 일 자	처 리 결 과
총 계 : 16건			
예 산 안	소 계 : 3건		
	•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06.4.17(월)	원안가결
	•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06.4.17(월)	원안가결
	•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06.4.17(월)	원안가결

안 건		의 결 일 자	처 리 결 과
조 례 안	소 계 : 6건		
	1. 군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4.17(월)	원안가결
	2. 군포시 조례의 제정 및 폐제청구에 관한조례안	06.4.17(월)	원안가결
	3. 군포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4.17(월)	원안가결
	4. 군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4.17(월)	원안가결
	5. 군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4.17(월)	원안가결
	6. 군포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06.4.17(월)	원안가결
건의 결의 동의	소 계 : 3건		
	•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06.4.10(월)	원안가결
	• 조례 및 기타안전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06.4.10(월)	원안가결
	• 2020군포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건의	06.4.17(월)	원안가결
선거 · 선임	소 계 : 2건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건의	06.4.10(월)	선 임
	• 조례 및 기타안전심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건의	06.4.10(월)	선 임
회의 진행 안건	소 계 : 2건		
	• 제129회군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06.4.10(월)	원안가결
	• 제129회군포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06.4.10(월)	선 임

제2절 주요안건 처리경과 및 결과

1. 예산안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 운영기간 : 2006.4.12 ~ 4.14(3일간)

○ 위 원 수 : 9명

권원혁, 이재수, 송정열, 김재일, 최진학, 김진호, 김판수, 이경환, 조완기 의원

(위원장: 최진학 의원, 간사: 송정열 의원)

□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예산규모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안 (A)	기정예산액 (B)	증△감 (A-B)	비 고
총 계	282,338,940	245,103,253	37,235,687	
일반회계	235,374,759	215,210,254	20,164,505	
특별회계	46,964,181	29,892,999	17,071,182	

○ 의 결 : 원안가결(2006.4.17)

□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예산규모

(단위: 천원)

구 분	1회추경 (A)	본예산 (B)	증△감 (A-B)	비 고
총 예산	28,144,856	28,170,051	△25,195	

○ 예산규모 : 원안의결(2006.4.17)

□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예산규모

(단위: 천원)

구 분	1회추경 (A)	본예산 (B)	증△감 (A-B)	비 고
총 예산	24,060,921	18,394,909	5,666,012	

- 의 결 : 원안의결(2006.4.17)

2. 조례안

□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구성

- 운영기간 : 2006.4.11
- 위 원 수 : 9명
권원혁, 이재수, 송정열, 김재일, 최진학, 김진호, 김판수, 이경환, 조완기 의원
(위원장: 권원혁 의원, 간사: 조완기 의원)

□ 군포시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제안이유 : 군포시 결산검사를 위하여 선임되는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인력에 대한 일비를 현실화하고 변경된 여비의 적용규정을 정비하는 사항
- 주요골자
 - 위원의 일비를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
 - 여비에 대한 적용기준을 '국내여비규정'에서 '공무원여비규정'으로 변경규정
- 의 결 : 원안가결(2006.4.17)

□ 군포시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3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 주민수를 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주민이 시장에게 조례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하여야 할 주민 수를 규정함
- 조례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폐지를 청구하는데 연서할 수 있는 주민 자격을 규정함

- 의 결 : 원안가결(2006.4.17)

□ 군포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제안이유 :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로 주민세의 착오납부에 따른 민원발생과 재산세 징세비 및 인력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자동차세의 납부대상 명확화로 불형성 문제를 해소하며 담배소비세의 세율 변동 등에 따른 조문 정비

- 주요골자

- 소액 지방세 수납관련 조문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던 것을 삭제하고 시행령에 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 정비
- 소득할 주민세 수정신고대상에 납세지 착오에 대하여 수정 신고 납부가능 토록하여 납세자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부여
- 지방세법 제191조 제1항이 개정되고 주택분재산세의 세액 과다에 대한 고려없이 2회로 나누어 고지하는 것은 소액인 경우 납세자 불편을 초래하고 징세비 및 인력낭비 등 업무의 효율성 문제가 있으므로 주택분 재산세의 산출세액을 5만원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하도록 함
- 지방세법과 동일한 내용이고 또한 조례 제2조에서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지방세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별도규정 불필요
- 차량을 공매로 인도 받은 후 자동차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자동차세를 과세 하지 못하는 과세 불형평 문제 해소를 위한 조문 정비

- 의 결 : 원안가결(2006.4.17)

□ 군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제안이유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신설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이 법 시행당시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의료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지방공사가 설립하는 지방의료원의 시세 면제조항 신설
- 주요골자 : 지방의료원의 신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의 면제조항 신설
- 의 결 : 원안가결(2006.4.17)

□ 군포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등에 관한 조례안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2005년8월4일 제정 공포되고 같은 법 시행령이 2006년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 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와 제32조 3항 및 제109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사항의 적정성과 적법성을 심의하기위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생활에 밀접하게 관련 있는 공사계약에 대하여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을 규정하기 위한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
- 주요골자
 - 조례 제정의 목적과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임무 및 임기, 기능에 관한사항을 규정
 - 계약심의위원회 회의소집 및 심의, 심의요청 및 심의결과 통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규정
 - 계약심의위원회 의견청취, 심의사항의 사후관리,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주민참여대상공사, 감독보고 및 조치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와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한 수당 및 여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의 결 : 원안가결(2006.4.17)

□ 군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제안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위지침인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개정 내용을 도시계획조례에 반영하여 지구단위계획 주민제안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지구단위계획제도 이용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 개발행위허가기준의 경사도 및 입목본수도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기준 및 조사방법을 제시하여 개발행위를 수반하는 토지에 대한 모든 행정행위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주민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안 중 지구단위계획 수립의 제안의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서를 대상지안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토지소유자의 80% 이상의 동의를 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구단위계획제도 이용 및 활성화를 도모코자 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으로 완화하여 규정
-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중 경사도 및 입목본수도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기준 및 조사방법이 없어 이에 대한 명확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별표19 및 별표20에 별도 규정

○ 의 결 : 원안가결(2006.4.17)

3. 동의안

□ 2020군포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제안이유 : 우리시를 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방향 제시와 도시공간 구조 설정 및 바람직한 미래상 제시를 위하여 수립중인 2020군포도시기본 계획(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함

○ 주요골자

- 2020군포도시기본계획(안)개요

가. 시간적 범위 : 기준연도 2003년 목표연도 2020년

나. 공간적 범위 : 군포시 행정구역 전역

다. 내용적 범위

1) 도시여건 변화에 따른 도시공간구조 및 계획의 재검토

2) 친환경적 도시기본계획수립 지침에 의거한 기본계획 작성

라. 주요내용: 계획의 목표 및 지표설정, 도시공간구조 구상, 부분별 계획 등

○ 의견제시

- 도시여건 변화에 따른 도시공간구조 및 계획수립시 친환경적인 도시기본계획이 될 수 있도록 장기적 안목으로 목표 및 지표설정, 도시공간구조구상, 부분별 계획 등을 고려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그린벨트내 조정가능지역을 경기도와 건교부에 적극 건의하여 최대한확보토록하고 토지이용 및 활용의 극대화를 적극적으로 도모하여 주시고 아울러 대야동(대야교회 앞) 일반상업지역내 토지이용계획의 불합리한 지역을 적합하게 조정하고 금정IC주변의 기존 주택지에 대한 용도변경 계획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8장 제130회 임시회

제38장 제130회 임시회

제1절 개 관

1. 개최배경

제130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6년 5월 3일 군포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06년 5월 4일 집회공고를 하여 2006년 5월 10일 개최되었으며 본 회기 중에는 2006년도 군포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 및 기타 안건이 다루어졌으며 회기는 2006년 5월 10일부터 5월 11일까지 2일간으로 2차의 본회의를 가졌으며 본회기의 총 회의시간은 00분이었다.

2. 의사일정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고
5.10(수) 10:00	1	1. 제130회 군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130회 군포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조례 및 기타 안건 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5. 2005회계년도 결산감사위원선임안	
5.10(수) 11:00		○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활동	
5.11(목) 10:00	2	1. 군포시의회위원의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군포시의회 의원상해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회활동

제13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에서는 조례 및 기타 안전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군포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 및 기타 안전
심의·의결하였다.

4. 안전처리상황

안 건		의 결 일 자	처 리 결 과
총 계 : 8건			
조 례 안	소 계 : 3건		
	1. 군포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5.11(목)	원안가결
	2. 군포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5.11(목)	원안가결
	3.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5.11(목)	원안가결
건의 · 결의 · 동의	소 계 : 1건		
	• 조례 및 기타안전 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06.5.10(수)	원안가결
선거 · 선임	소 계 : 2건		
	• 조례 및 기타안전심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 2005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선임안	'06.5.10(수) '06.5.10(수)	선 인 선 임
회의 진행 안건	소 계 : 2건		
	• 제130회 군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제130회 군포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06.5.10(수) '06.5.10(수)	원안가결 선 임

제2절 주요안건 처리경과 및 결과

1. 조례안

□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구성

○ 운영기간 : 2006.5.10

○ 위 원 수 : 6명

권원혁, 송정열, 김진호, 김판수, 이경환, 조완기 의원

(위원장: 이경환 의원, 간사: 김진호 의원)

□ 군포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제안이유 : 군포시의 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의원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결정에 따른
관련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골자

- 회기수당이 월정수당으로 전환됨에 따라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결정

-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의회의원 국내·외 여비지급범위 변경에 따라 여비지급범위 규정

○ 의 결 : 원안가결(2006.5.11)

□ 군포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3 (지방의회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중 지방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기준이
도의회 의원의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조항에
맞추어 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용어의 정의중 회기수당을 의정활동비로 개정

- 보상금의 지급기준을 도의회의원의 당해연도 회기수당에서 당해연도 의정활동비로 개정

○ 의 결 : 원안가결(2006.5.11)

□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군포시장

○ 제안이유 : 교육 프로그램 연구·개발, 교육 운영 평가 및 성과측정기법 등을 교육관련
업무 증가에 따른 정원승인으로 정원의 총수 증원

○ 주요골자

- 정원의 총수를 708명에서 709명으로(1명 증가)으로 개정
- 집행기관의 정원을 694명에서 695명으로 개정
-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함
 - 본청 : 일반직 6급 1명 증가

○ 의 결 : 원안가결(2006.5.11)

제3편 자 료 편

제1장 운영현황

제1장 운영현황

제1절 제4대 군포시의회 운영현황

1. 의회 조직 및 구성의 변화

제4대 군포시의회의 조직 및 구성은 지방의회를 대표하는 기관이 의장단이므로 이들의 구성 변화를 살펴보고 ‘작은 의회’라고 불리는 위원회와 의회의 지원조직으로서 사무과의 현황을 살펴본다.

1) 의장

구 분	성 명	지역구	피선일	임기만료일	취임당시연령	의정경력
제1기	권원혁	군포1동	2002. 7. 3	2004. 6. 30	53	삼선
제2기	김제길	오금동	2004. 6. 29	2006. 6. 30	52	삼선

2) 부의장

구 분	성 명	지역구	피선일	임기만료일	취임당시연령	의정경력
제1기	김진호	재궁동	2002. 7. 3	2004. 6. 30	36	초선
제2기	이재수	군포2동	2004. 6. 29	2006. 6. 30	46	재선

3) 제4대 군포시의회 의원총람

성 명	학력 및 경력
 군포1동 권원혁 1949. 1. 14	· 선인상고 졸업 · 경기방송 고문 · 경기일보 자문위원 · 군포시 도로관리심의 위원 · 군포시 뽕소니감시단 고문 · 군포 개인택시조합 조합장 · 군포시 교통안전위원회 부위원장 · 군포시 모범운전자회 고문 · 군포시 문화육성기금심의위원 · 군포시 공공근로심의위원 부위원장 · 군포시 문화예술회관운영위원 · 제2,3,4대 군포시 의원 · 3대 후반기 부의장 · 제4대 군포시의회 전반기 의장 · 민주당 군포시지역 운영위원회 수석위원장
주소 및 전화	
군포시 당동 775-15 (사) 390-0515 (자) 452-1171 (휴) 011-474-1171 e-Mail : kwhk21@hanmail.net	

성 명	학력 및 경력
 군포2동 대야동 이재수 1958. 11. 23	· 군포초·안양 신성중·고 졸업 · 방송통신대 행정학 졸업 · 한세대 사회복지대학원 중퇴 · (주)보광농장 대표 군포시 당동 921 · 신성고등학교 총동문회장 역임 · 군포청년회의소 특우회회장 역임 · 군포·안양·의왕 환경운동연합 집행위원 · 군포 YMCA이사 · 군포 G·B 주민대책위원회 고문 · 군포시 도시계획 위원 · 군포시 장애인복지관 운영위원 · 군포시 노인복지회관 운영위원 · 뇌성마비 재활원 양지의집 운영위원 · 군포문화센터 운영위원 · 군포시 여성발전기금 심의위원 · 군포2동, 대야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군포2동, 대야동 체육회 고문 · 제3,4대 군포시 의원 · 제4대 군포시의회 후반기 부의장
주소 및 전화	
군포시 당동 921 (사) 399-9936 (자) 393-6223 (휴) 016-348-6223 e-Mail : ljsc021@hanmail.net	

성 명

학력 및 경력



산본1동

송정열
1968. 11.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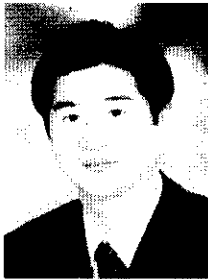
주소 및 전화

군포시 산본동 235-2 201호
(사) 392-4001
(자) 391-0546
(휴) 011-238-5994
e-Mail : ilovegunpo@yahoo.co.kr

- 안양 만안초등학교 졸업
- 안양 신안중학교 졸업
- 안양 양명고등학교 졸업
- 한양대학교 무역학과 4년 졸업
- 한양대학교 경상대학 학생회장
- 초대 민선 군포시장 비서실장
- 군포시 성오장학재단 사무국장
- 군포시 생활체육 야구협회 감사
- 미래연대 회원
- 사)한국지역복지정책연구회 회원
- 산본1동 재향군인회 부회장
- 군포시 시정발전 위원
- 군포시 시립도서관 운영위원
- 군포시 도로관리 심의위원
- 군포시 창업보육센터 운영위원
- 복합터미널 확장반대 군포시의회 소위원장
- 복합화물터미널 확장반대 범시민 공동대표

성 명

학력 및 경력



산본2동

김재일
1967. 10. 10

주소 및 전화

군포시 산본동 1059 동백A 1303-1501
(사) 392-4002
(자) 393-1002
(휴) 011-733-9486
e-Mail : jeilpro@lycos.co.kr
www.ilovesanbon.co.kr

- 군포초등학교 졸업
- 안양 신성중·고등학교 졸업
- 안양과학대 졸업
- 군포청년회의소 감사
- 군포시 장애인학부모 회원
- 군포경제정의실천협의 회원
- 군포신문 후원회 이사
- (·주)제이오커뮤니티 대표이사
- 군포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
- 군포시 노인복지기금 운용 심의위원
- 푸른희망 군포21 실천 협의위원
- 군포시 체육진흥협의위원
- 군포시 창업보육센터 운영위원

성 명

학력 및 경력



김정동

최진하
1957. 3. 25

주소 및 전화

군포시 금정동 725-31
(사) 453-2233
(자) 395-3344
(휴) 019-245-3344
e-Mail : kunpo_choi@yahoo.co.kr
www.higunpo.co.kr

-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2년) 졸업(행정학 석사)
- 중앙대 대학원 박사 취득(행정학 박사)
- 해군병장 만기 제대
- 한국우주소년단 경기도지부 부지부장
- 재향군인회 금정동 회장
- 금정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군포YMCA 부이사장
- 군포시 평생학습추진 위원
- 폐기물관리시민위원회 위원장
- 한국국제기아대책 군포지역회 이사
- 재단법인 군포시청소년수련관 이사
- 군포시 지역정보화 추진위원
- 국가정책연구소 전임연구원
- 한나라당 군포시협의회 운영위원
- 제2,3,4대 시의원

성 명

학력 및 경력



제궁동

김진호
1966. 1. 10

주소 및 전화

군포시 금정동 876 읍곡A 338-202
(사) 392-4001
(자) 395-9562
(휴) 011-9741-9562
e-Mail : 1000ceo@hanmail.net

- 서울 한강중, 오산고 졸업
- 인하대학교 전기공학과 졸업
-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에너지대학원 졸업
(에너지 정책과 석사 취득)
- 에너지정책연구소 연구원
- 군포시 공직자윤리 위원
- 군포시 여성발전기금운용 심의위원
- 군포교육청 학교급식 위원
- 군포고등학교 운영위원
- 한국스카우트 군포지구연합회 명예위원
- 군포시 폐기물관리 시민위원회 위원
- 군포환경관리소 운영을 위한 주민지원협의회 위원
- 복합화물터미널 확장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 군포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위원
- 제4대 군포시의회 전반기 부의장

성 명

학력 및 경력



오금동

김제길
1952. 9. 5

주소 및 전화

군포시 금정동 871-11 소월A 372-202
(사) 392-4000
(자) 392-0050
(휴) 011-334-0500
e-Mail : kcgco21@hanmail.net

- 상명대학교 정치경영대학원 재학
- 금환건설(주) 대표이사
- 대한주택건설협회 경기도회 감사
- 안양만안로타리클럽 회장 역임
- 화산초등학교 운영위원 역임
- 흥진중학교 학부모회 감사 역임
- 흥진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산본 새마을금고 이사
- 민주평통 군포시협의회 위원
- 군포시 시정발전 위원
- 군포시 중소기업융자 심의위원
- 오금동 주민자치위원장 역임
- 바르게살기 오금동 자문위원
- 군포시 환경관리소주민지원협의체 위원
- 제2,3,4대 군포시 의원
- 제2대 전반기 운영위원장
- 제4대 군포시의회 후반기 의장

성 명

학력 및 경력



수리동

김판수
1957. 1. 8

주소 및 전화

군포시 수리동 1152-7 계룡A 838-1301
(사) 392-4001
(자) 392-9180
(휴) 011-270-9180
e-Mail : kps9180@hanmail.net

- 경기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금천세무회계 무료상담 소장
- 군포청년포럼 자문위원장
- 군포환경관리소 운영을 위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 군포시 자원봉사 발전위원
- 군포시 건축심의위원회 위원
- 군포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
- 군포시 폐기물관리 심의위원
- 푸른희망군포21 실천협의위원
- 재단법인 군포시청소년수련관 이사
- 군포시 체육진흥회 위원
- 군포시 새마을회 이사
- 북한화물터미널 확장반대 군포시의회 소위원회위원
- 도장초등학교 운영위원
- 군포시 가야사회복지관 운영위원

성 명

학 력 및 경 력



궁내동

이경환
1962. 9. 26

주 소 및 전 화

군포시 궁내동 한양A 996-2101
(사) 399-1007
(자) 391-1199
(휴) 011-257-9747
e-Mail : dkh119@hanmail.net

- 신성중 · 양명고 · 호서대학교 졸업
- 수원대학교 경영대학원졸업(경영학 석사)
- 안양청년회의소(JC)회장 역임
- 사단법인) e-환한 시민경제포럼 이사장
- 군포시 성오장학재단 이사
- 군포문화원 이사
- 군포 YMCA 이사
- 푸른희망 군포21추진협의회 운영위원
- 군포시 지체장애인협회 자문위원
- 군포시 법무부 범죄예방 자문위원
- 군포시 생활체육족구연합회 회장
- 사)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군포지회 자문위원
- 한나라당 군포지구당 부위원장
- 제3,4대 시의원



광정동

조완기
1963. 9. 14

주 소 및 전 화

군포시 산본동 1120 주몽A 1003-1002
(사) 392-4001
(자) 398-4246
(휴) 011-784-7904
e-Mail : wgcho2002@hanmail.net
www.okgunpo.com

- 한신대학교 사회학과 졸업
- 경기남부 민주청년단체협의회 의장
- 푸른희망 군포21실천협의회 사무국장
- 안양, 군포, 의왕 환경운동연합 집행위원
- 군포시 시정발전위원
- 군포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
- 군포시 자원봉사 발전위원
- 군포시 좋은학교만들기 추진위원
- 군포시 학교급식 지원위원
- 한국청년연합회(KYC) 지방자치센터 부소장
- (사)디딤돌문화원 전문위원
- 군포YMCA 시민사업위원
- (사)자치분권 연구소 이사
- 자치분권 전국연대 상임운영위원회

4) 특별위원회 구성

위원회명	활동기간	위원장·간사	성명	위원수
조례및기타안전심사특별위원회	'02.7.27	위원장	이재수	9
		간사	송정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02.9.3 ~ 9.9	위원장	이재수	9
		간사	송정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02.9.10 ~ 9.13	위원장	최진학	9
		간사	김재일	
조례및기타안전심사특별위원회	'02.9.14 ~ 9.16	위원장	김제길	9
		간사	김판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02.10.14 ~ 10.18	위원장	이경환	9
		간사	조완기	
조례및기타안전심사특별위원회	'02.10.19 ~ 10.21	위원장	이재수	9
		간사	송정열	
조례및기타안전심사특별위원회	'02.12.4 ~ 12.5	위원장	최진학	9
		간사	김재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02.12.6 ~ 12.17	위원장	김제길	9
		간사	김판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02.12.21 ~ 12.26	위원장	이경환	9
		간사	조완기	
조례및기타안전심사특별위원회	'03.3.6	위원장	이재수	9
		간사	송정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03.3.7 ~ 3.12	위원장	최진학	9
		간사	김재일	
조례및기타안전심사특별위원회	'03.5.9 ~ 5.10	위원장	김제길	9
		간사	김판수	
조례및기타안전심사특별위원회	'03.6.9	위원장	이경환	9
		간사	조완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03.6.10 ~ 6.13	위원장	이재수	9
		간사	송정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03.7.3 ~ 7.9	위원장	최진학	9
		간사	김재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03.7.10 ~ 7.14	위원장	김제길	9
		간사	김판수	
조례및기타안전특별위원회	'03.7.15. ~ 7.16	위원장	이재수	9
		간사	송정열	

위원회명	활동기간	위원장·간사	성명	위원수
조례및기타안전특별위원회	'03.9.23 ~ 9.25	위원장	이경환	9
		간사	조완기	
조례및기타안전심사특별위원회	'03.10.11	위원장	이재수	9
		간사	송정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03.10.13 ~ 10.15	위원장	최진학	9
		간사	김재일	
조례및기타안전심사특별위원회	'03.11.18	위원장	김제길	9
		간사	김판수	
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	'03.11.19 ~ 11.20	위원장	이경환	9
		간사	조완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03.10.14 ~ 10.18	위원장	최진학	9
		간사	김재일	
조례및기타안전심사특별위원회	'03.12.3 ~ 12.4	위원장	이재수	9
		간사	송정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03.12.5 ~ 12.16	위원장	최진학	9
		간사	김재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03.12.22 ~ 12.23	위원장	김제길	9
		간사	김판수	
조례및기타안전심사특별위원회	'04.2.16 ~ 2.17	위원장	이경환	9
		간사	조완기	
조례및기타안전심사특별위원회	'04.3.22 ~ 3.23	위원장	이재수	9
		간사	송정열	
조례및기타안전심사특별위원회	'04.5.28 ~ 5.31	위원장	최진학	9
		간사	김재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04.6.1 ~ 6.5	위원장	김제길	9
		간사	김판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04.6.7	위원장	이경환	9
		간사	조완기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04.6.7	위원장	김진호	9
		간사	송정열	
조례및기타안전특별위원회	'04.6.28	위원장	이재수	9
		간사	송정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04.7.3 ~ 7.9	위원장	이경환	9
		간사	조완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04.7.12 ~ 7.14	위원장	최진학	9
		간사	김재일	

위원회명	활동기간	위원장·간사	성명	위원수
조례및기타안전심사특별위원회	'04.7.15	위원장	권원혁	9
		간사	김판수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04.7.15	위원장	김진호	9
		간사	송정열	
조례및기타안전심사특별위원회	'04.10.11	위원장	최진학	9
		간사	조완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04.10.12 ~ 10.15	위원장	이경환	9
		간사	송정열	
조례및기타안전심사특별위원회	'04.11.22	위원장	권원혁	9
		간사	김재일	
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	'04.11.23 ~ 11.24	위원장	최진학	9
		간사	김진호	
조례및기타안전심사특별위원회	'04.12.3 ~ 12.6	위원장	이경환	9
		간사	송정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04.12.7 ~ 12.17	위원장	권원혁	9
		간사	조완기	
조례및기타안전심사특별위원회	'04.12.22	위원장	최진학	9
		간사	김판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04.12.23 ~ 12.24	위원장	이경환	9
		간사	김재일	
조례및기타안전심사특별위원회	'05.3.15 ~ 3.16	위원장	권원혁	9
		간사	김진호	
조례및기타안전심사특별위원회	'05.5.3 ~ 5.7	위원장	이경환	9
		간사	조완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05.5.9 ~ 5.13	위원장	최진학	9
		간사	김판수	
조례및기타안전심사특별위원회	'05.5.27	위원장	권원혁	9
		간사	송정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05.5.27	위원장	최진학	9
		간사	김진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05.7.5 ~ 7.18	위원장	최진학	9
		간사	김진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05.7.12 ~ 7.15	위원장	권원혁	9
		간사	조완기	
조례및기타안전심사특별위원회	'05.7.18	위원장	이경환	9
		간사	김판수	

위원회명	활동기간	위원장·간사	성명	위원수
조례및기타안전심사특별위원회	'05.9.6 ~9.8	위원장	최진학	9
		간사	송정열	
조례및기타안전심사특별위원회	'05.10.5	위원장	이경환	9
		간사	김진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05.10.6 ~ 10.7	위원장	권원혁	9
		간사	김판수	
조례및기타안전심사특별위원회	'05.11.22	위원장	최진학	9
		간사	조완기	
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	'05.11.23 ~ 11.24	위원장	이경환	9
		간사	송정열	
조례및기타안전심사특별위원회	'05.12.5 ~ 12.6	위원장	권원혁	9
		간사	김진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05.12.7 ~ 12.15	위원장	최진학	9
		간사	김판수	
조례및기타안전심사특별위원회	'05.12.20	위원장	이경환	9
		간사	조완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05.12.21 ~12.22	위원장	권원혁	9
		간사	송정열	
조례및기타안전심사특별위원회	'06.1.24	위원장	최진학	8
		간사	김진호	
조례및기타안전심사특별위원회	'06.3.16	위원장	이경환	8
		간사	김판수	
조례및기타안전심사특별위원회	'06.4.11	위원장	권원혁	8
		간사	조완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06.4.12 ~ 4.14	위원장	최진학	8
		간사	송정열	
조례및기타안전심사특별위원회	'06.5.10	위원장	이경환	8
		간사	김진호	

5) 사무국(과)

□ 사무국·과장

기 간	성 명	취임당시 직급
2002. 7. 1 ~ 2002.10. 1	성 시 규	지방행정사무관(과장)
2002.10. 2 ~ 2004. 5.31	박 홍 복	지방행정사무관(과장)
2004. 6. 1 ~ 현재	이 병 호	지방행정사무관(과장)

□ 전문위원

기 간	성 명	취임당시 직급
2002. 7. 1 ~ 현재	강 영 시	지방행정사무관

□ 사무과 직원 정원

계	일 반 직								기능직
	계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14	7			2	1	4			7

6) 의회시설

기 준 일	전용면적	방 청 석	PC	홈페이지운영여부	기 타
2002.12	2,139㎡	138석	13	○	
2003.12	2,139㎡	138석	13	○	
2004.12	2,139㎡	138석	13	○	
2005.12	2,139㎡	138석	13	○	
2006.12	2,139㎡	138석	13	○	

제2절 제4대 군포시의회 회기운영 실적

1. 회기운영 실적

제4대 군포시의회(2002.7.1 ~ 2006.6.30)는 제93회부터 제130회까지 총 38회기를 운영하였으며 정례회 8회, 군포시장 요구에 의한 임시회가 24건, 의원 요구에 의한 임시회가 6건이었으며 회기일수는 총 311일 이었다.

그 중 회의일수는 총 311일로 본회의 개최일수가 82일, 위원회 개최일수가 229일로 파악되었다.

1) 회기별 집회요구

회 기	집 회 요구자	집회요구	집회공고	개회일시	폐회일시	집회요구사유
제93회	군포시장	'02.6.25	'02.6.25	'02.7.3	'02.7.3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한 최초집회(4대의회 개최)
제94회	의원요구	'02.7.20	'02.7.20	'02.7.26	'02.7.26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 등
제95회	조례규정 (정례회)	'02.8.24	'02.8.24	'02.8.31	'02.9.17	지방자치법 제38조에 의한 제1차 정례회(행감,결산)
제96회	군포시장	'02.10.5	'02.10.5	'02.10.12	'02.10.22	조례 및 예산안 심의
제97회	의원요구	'02.11.12	'02.11.12	'02.11.18	'02.11.18	군포부곡택지개발사업에 관한 건의건
제98회	조례규정 (정례회)	'02.11.22	'02.11.22	'02.12.2	'02.12.18	지방자치법 제38조에 의한 제2차 정례회(예산안등)
제99회	의원요구	'02.12.12	'02.12.12	'02.12.21	'02.12.26	조례 및 예산안 심의
제100회	군포시장	'03.2.27	'03.2.27	'03.3.5	'03.3.13	조례 및 예산안 심의
제101회	군포시장	'03.5.1	'03.5.1	'03.5.7	'03.5.12	조례안 심의
제102회	군포시장	'03.5.30	'03.5.30	'03.6.7	'03.6.14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과 조례 및 기타안건
제103회	조례규정 (정례회)	'03.6.24	'03.6.24	'03.7.1	'03.7.18	지방자치법 제38조에 의한 제1차 정례회(행감,결산)
제104회	군포시장	'03.9.22	'03.9.22	'03.9.22	'03.9.26	조례안 심의
제105회	군포시장	'03.10.2	'03.10.2	'03.10.9	'03.10.16	조례 및 예산안심의

회 기	집 회 요구자	집회요구	집회공고	개회일시	폐회일시	집회요구사유
제106회	의원요구	'03.11.10	'03.11.12	'03.11.18	'03.11.21	업무보고청취
제107회	조례규정 (정례회)	'03.11.25	'03.11.25	'03.12.1	'03.12.1	지방자치법 제38조에 의한 제2차 정례회(예산안등)
제108회	군포시장	'03.12.12	'03.12.13	'03.12.20	'03.12.24	예산안심의
제109회	군포시장	'04.2.3	'04.2.7	'04.2.14	'04.2.18	조례 및 기타안건 심의
제110회	군포시장	'04.3.12	'04.3.12	'04.3.20	'04.3.24	조례안 심의
제111회	군포시장	'04.5.20	'04.5.20	'04.5.27	'04.6.8	조례 및 예산안 심의
제112회	군포시장	'04.6.18	'04.6.18	'04.6.28	'04.6.29	조례안 심의
제113회	조례규정 (정례회)	'04.6.24	'04.6.24	'04.7.1	'04.7.16	지방자치법 제38조에 의한 제1차 정례회(행감 결산등)
제114회	군포시장	'04.9.30	'04.10.2	'04.10.8	'04.10.16	조례 및 예산안 심의
제115회	군포시장	'04.11.12	'04.11.12	'04.11.20	'04.11.25	조례안심의 및 업무보고청취
제116회	조례규정 (정례회)	'04.11.25	'04.11.25	'04.12.1	'04.12.18	지방자치법 제38조에 의한 제2차 정례회(예산안등)
제117회	군포시장	'04.12.14	'04.12.15	'04.12.22	'04.12.27	조례 및 예산안 심의
제118회	군포시장	'05.3.4	'05.3.7	'05.3.14	'05.3.17	조례 및 기타안건 심의
제119회	군포시장	'05.4.26	'05.4.26	'05.5.2	'05.5.16	조례 및 예산안 심의
제120회	의원요구	'05.5.16	'05.5.21	'05.5.27	'05.5.30	조례 및 기타안건 심의
제121회	조례규정 (정례회)	'05.6.24	'05.6.24	'05.7.1	'05.7.19	지방자치법 제38조에 의한 제1차 정례회(행감 결산등)
제122회	군포시장	'05.9.1	'05.9.1	'05.9.6	'05.9.9	조례 및 기타안건 심의
제123회	군포시장	'05.9.27	'05.9.28	'05.10.4	'05.10.11	조례 및 예산안 심의
제124회	의원요구	'05.11.14	'05.11.15	'05.11.21	'05.11.25	조례안심의 및 업무보고청취
제125회	조례규정 (정례회)	'05.11.25	'05.11.25	'05.12.1	'05.12.16	지방자치법 제38조에 의한 제2차 정례회(예산안등)
제126회	군포시장	'05.12.12	'05.12.13	'05.12.19	'05.12.23	조례 및 예산안 심의
제127회	군포시장	'06.1.17	'06.1.17	'06.1.24	'06.1.25	조례안 심의
제128회	군포시장	'06.3.9	'06.3.9	'06.3.15	'06.3.17	조례 및 기타안건 심의
제129회	군포시장	'06.4.5	'06.4.5	'06.4.10	'06.4.17	조례안 심의 및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제130회	군포시장	'06.5.3	'06.5.4	'06.5.10	'06.5.11	조례안 심의 및 결산감사위원 선임

2) 회의일수

회 수	회 기	회 의 일 수			비 고
		소 계	본회의	위원회	
제93회	'02.7.3	1	1		
제94회	'02.7.26 ~ 7.29	4	2	2	
제95회	'02.8.31 ~ 9.17	18	3	15	
제96회	'02.10.12 ~ 10.22	11	2	9	
제97회	'02.11.18	1	1		
제98회	'02.12.2 ~ 12.18	17	3	14	
제99회	'02.12.21 ~ 12.26	6	2	4	
제100회	'03.3.5 ~ 3.13	9	2	7	
제101회	'03.5.7 ~ 5.12	6	2	4	
제102회	'03.6.7 ~ 6.14	8	2	6	
제103회	'03.7.1 ~ 7.18	18	3	15	
제104회	'03.9.22 ~ 9.26	5	2	3	
제105회	'03.10.9 ~ 10.16	8	2	6	
제106회	'03.11.18 ~ 11.21	4	2	2	
제107회	'03.12.1 ~ 12.12	17	3	14	
제108회	'03.12.20 ~ 12.24	5	2	3	
제109회	'04.2.14 ~ 2.18	(5)	2	3	
제110회	'04.3.20 ~ 3.24	5	2	3	
제111회	'04.5.27 ~ 6.8	13	2	11	
제112회	'04.6.28 ~ 6.29	2	2	1	¹ (본회의 날 특위)
제113회	'04.7.1 ~ 7.16	16	3	13	
제114회	'04.10.8 ~ 10.16	9	2	7	
제115회	'04.11.20 ~ 11.25	6	2	4	

회 수	회 기	회 의 일 수			바 고
		소 계	본회의	위원회	
제116회	'04.12.1 ~ 12.18	18	3	15	130 - 1
제117회	'04.12.22 ~ 12.27	(6)	2	4	131 -
제118회	'05.3.14 ~ 3.17	(4)	2	2	132 - 1
제119회	'05.5.2 ~ 5.16	15	2	13	133 - 14
제120회	'05.5.27 ~ 5.30	4	2	2	134 - 2
제121회	'05.7.1 ~ 7.19	17	3	14	135 - 0
제122회	'05.9.6 ~ 9.9	4	2	2	136 - 5
제123회	'05.10.4 ~ 10.11	8	2	6	137 - 16
제124회	'05.11.21 ~ 11.25	5	2	3	138 - 2
제125회	'05.12.1 ~ 12.16	16	3	13	139 - 4
제126회	'05.12.19 ~ 12.23	(5)	2	3	140 - 2
제127회	'06.1.24 ~ 1.25	(2)	2	1	(본회의 1일 특위)
제128회	'06.3.15 ~ 3.17	3	2	1	141 - 2
제129회	'06.4.10 ~ 4.17	8	2	6	142 - 0
제130회	'06.5.10 ~ 5.11	2	2	1	(본회의 1일 특위)

2. 의정활동 실적

제93회부터 제130회까지 조례안, 예, 결산안, 동의(승인)안, 건의·결의안, 규칙·규약안, 청원 처리를 각 회기별·연도별로 구분하여 의안처리 결과를 살펴보았다.

조례안 심의가 171건, 예·결산안 심의가 50건, 동의 및 승인안 처리 72건, 건의·결의안 63건, 기타 159건으로 총 515건의 안건을 처리하였다.

조례안건 171건 중 원안가결 134건(78.4%), 수정가결 25건(14.6%), 부결12건(7.0%)으로 분석 되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36 - 7
137 - 10
138 - 4

139 + 246 = 246
108 = 246

1) 회기별 의안처리

회 수	계	조례안	예·결산안	동의(승인)안	건의·결의안	청원	기타
계	515	171	50	72	63	0	159
제93회	6						6
제94회	6	1		1	1		3
제94회	18	6	2	4	2		4
제96회	14	6	2		2		4
제97회	3				1		2
제98회	25	6	2	9	2		6
제99회	6		2		1		3
제100회	13	3	2	2	2		4
제101회	10	4	0	1	1		4
제102회	13	3	2		3		5
제103회	19	5	2	5	2		5
제104회	14	8		2	1		3
제105회	16	8	1	1	2		4
제106회	9	1		2	2		4
제107회	21	5	3	6	2		5
제108회	9		2	3	1		3
제109회	12	4		4	1		3
제110회	9	4		1	1		3
제111회	23	7	3	2	4		7
제112회	8	2			1		5
제113회	17	4	2	3	2		6
제114회	15	5	2	2	2		4
제115회	8	2			2		4

	회 수	계	조례안	예·결산안	동의(승인)안	건의·결의안	청원	기타
2004	제116회	23	9	3	4	2		5
"	제117회	12	2	3	1	2		4
2005	제118회	13	8		1	1		3
"	제119회	21	10	3	1	2		5
	제120회	8	1		1	2		4
	제121회	18	6	3	1	2		6
	제122회	18	18		3	1		3
	제123회	14	5	2	1	2		4
	제124회	13	5		2	2		4
	제125회	19	1	3	7	2		6
"	제126회	11	2	3		2		4
2006	제127회	9	5			1		3
"	제128회	11	6		1	1		3
"	제129회	16	6	3	1	2		4
"	제130회	8	3			1		4

2) 의안별 처리현황

의안별 회기별	조례안			예산결산안			동의(승인)안			건의·결의안			기타
	원안 가결	수정 가결	부결 기타	원안 가결	수정 가결	부결 기타	원안 가결	수정 가결	부결 기타	원안 가결	수정 가결	부결 기타	
합 계	136	23	12	33	17		67	1	4	63			159
제93회													6
제94회	1						1			1			3
제95회	6			2			4			2			4
제96회	4	1	1	1	1					2			4
제97회										1			2
제98회	6			1	1		8		1	2			6
제99회				2						1			3
제100회	3			1	1		2			2			4
제101회	1	2	1				1			1			4
제102회	3				2					3			5
제103회	3	2		2			5			2			5
제104회	5	3					2			1			3
제105회	6		2	1			1			2			4
제106회	9	1					1		1	2			4
제107회	4		1		3		5		1	2			5
제108회				2			2		1	1			3
제109회	3		1				4			1			3
제110회	3	1					1			1			3
제111회	5	1	1	2	1		2			4			7
제112회	1		1							1			5

의안별 회기별	조례안			예산결산안			동의(승인)안			건의·결의안			기타
	원안 가결	수정 가결	부결 기타	원안 가결	수정 가결	부결 기타	원안 가결	수정 가결	부결 기타	원안 가결	수정 가결	부결 기타	
제113회	3	1		2			3			2			6
제114회	4		1	2			2			2			4
제115회	1		1							2			4
제116회	6	3		1	2		3	1		2			5
제117회	2			2	1		2			2			4
제118회	6	2					1			1			3
제119회	8	2		1	2		1			2			5
제120회	1						1			2			4
제121회	5		1	3			1			2			6
제122회	16	2					3			1			3
제123회	5				2		1			2			4
제124회	3	1	1				2			2			4
제125회	1			2	1		7			2			6
제126회	2			3						2			4
제127회	4	1								1			3
제128회	6						1			1			3
제129회	6			3			1			2			4
제130회	3									1			4

3) 조례개정 및 폐기

회기별	건수	가 결			부결 철회	폐기
		계	원안가결	수정의결		
계	171	159	134	25	12	
제93회 임시회	0					
제94회 임시회	1	1	1			
제95회 정기회	6	5	3	2	1	
제96회 임시회	6	5	4	1	1	
제97회 임시회	0					
제98회 임시회	6	6	6			
제99회 임시회	0					
제100회 임시회	3	3	3			
제101회 임시회	4	3	1	2	1	
제102회 임시회	3	3	3			
제103회 정기회	5	5	3	2		
제104회 임시회	8	8	5	3		
제105회 임시회	8	6	6		2	
제106회 정례회	1	1		1		
제107회 임시회	5	4	4		1	
제108회 임시회	0					
제109회 임시회	4	3	3		1	
제110회 정례회	4	3	3	1		
제111회 임시회	7	6	5	1	1	
제112회 임시회	2	1	1		1	
제113회 임시회	4	4	3	1		
제114회 임시회	5	4	4		1	
제115회 임시회	2	1	1		1	
제116회 정례회	9	9	6	3		

회기별	건수	가 결			부결	폐기
		계	원안가결	수정의결		
제117회 임시회	2	2	2			
제118회 임시회	8	8	6	2		
제119회 정례회	10	10	8	2		
제120회 임시회	1	1	1			
제121회 임시회	6	6	5	1		
제122회 임시회	18	18	16	2		
제123회 임시회	5	5	5			
제124회 임시회	5	4	3	1	1	
제125회 임시회	1	1	1			
제126회 임시회	2	2	2			
제127회 정례회	5	5	4	1		
제128회 임시회	6	6	6			
제129회 임시회	6	6	6			
제130회 임시회	3	3	3			

4) 시정질문

회 기	대집행기간질문기간(일)	질문의원수	질문건수
계	8	17	55
제95회 제1차 정례회	1	2	9
제98회 제2차 정례회	1	2	6
제103회 제1차 정례회	1	2	5
제107회 제2차 정례회	1	2	6
제113회 제1차 정례회	1	1	4
제116회 제2차 정례회	1	2	5
제121회 제1차 정례회	1	2	7
제125회 제2차 정례회	1	4	13

5)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년 도	회기	대상기관수	감 사 기 간	자료요구건수	처리건수	기타
2002	제95회	27	'02.9.3 ~ 9.9	346	346	
2003	제103회	27	'03.7.3 ~ 7.9	343	343	
2004	제113회	27	04.7.3 ~ 7.9	317	317	
2005	제121회	28	05.7.5 ~ 7.11	287	287	

6) 진정서 처리

년도별	접수 건수	처 리 내 역						기타
		의 회 소 관				집행부 이 첩	타기관 이 첩	
		수용처리	부분수용	기각/불가	미처리			
계	63	27	16	4		9		7
2002	9	2		1				6
2003	16	4	2	1		9		
2004	24	8	13	2				1
2005	10	9	1					
2006	4	4						



軍浦市議會